발 간 등 록 번 호
51-B552667-000128-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서울시복지재단-2025-24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울시복지재단-2025-24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김혜정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유선치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2025. 12.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 수 희**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

- 24년 기준 서울시 주간이용시설은 134개(보조금 미지원 시설 4개 포함)로 거의 30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양한 낮활동 지원 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공급되면서부터 유사 서비스와 경쟁구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주간이용시설은 유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역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택권을 기초로 활발한 낮활동 참여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법적 기준이나 법규 개정)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지역돌봄서비스 확대, 장애인인구 변화 및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 인적·물리적·재정적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및 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사업운영 안내, 서울시 내부자료 등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지역돌봄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하였음
- 선행연구 분석과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울시 소재 134개(보조금 미지원 기관 4개소 포함)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현황(이용료, 시설 설비, 예산, 이용자, 서비스 제공 수준, 전문성, 지원 인력 등) 및 종사자 직무 현황(기본·핵심·부가 업무 및 종사자 직종별 세부 직무 투입 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양한 지역돌봄서비스 이용자(부모) 1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주간이용시설과 유사 서비스 비교, 주간이용시설 경쟁력 등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간이용시설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종사자 배치기준 및 운영비 지원기준 방향성, 적정 공간 기준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제한하였음

2 주요 조사 결과

1) 서울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시설 이용제한 기준

○ 장애인주간이용시설(120개소) 중 약 절반 정도의 시설(48.3%)이 연령 상한(평균 50세 미만)을 두고 있으며, 총 이용기간 상한이 있는 시설은 25%임(평균 7년 미만). 기관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 거주할 경우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 60%로 비교적 높음

연구요약_표 1 시설 이용제한 기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단위: 개소, %)

시설 이용제한 사항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연령 상한	없음	(62)	51.7	(56)	54.4	(4)	40.0	(2)	40.0	(0)	0.0
	있음	(58)	48.3	(47)	45.6	(6)	60.0	(3)	60.0	(2)	100.0
총 시설 이용기간 상한	없음	(90)	75.0	(76)	73.8	(7)	70.0	(5)	100.0	(2)	100.0
	있음	(30)	25.0	(27)	26.2	(3)	30.0	(0)	0.0	(0)	0.0
기관 소재지와 다른 시도 거주	제한사항 아님	(50)	41.7	(44)	42.7	(3)	30.0	(1)	20.0	(2)	100.0
	제한사항 해당	(70)	58.3	(59)	57.3	(7)	70.0	(4)	80.0	(0)	0.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제한사항 아님	(113)	94.2	(99)	96.1	(8)	80.0	(4)	80.0	(2)	100.0
	제한사항 해당	(7)	5.8	(4)	3.9	(2)	20.0	(1)	20.0	(0)	0.0
휠체어 장애인 이용제한	제한사항 아님	(73)	60.8	(62)	60.2	(10)	100.0	(1)	20.0	(0)	0.0
	제한사항 해당	(47)	39.2	(41)	39.8	(0)	0.0	(4)	80.0	(2)	100.0
자차 또는 자립 등·하원가능정도	제한사항 아님	(112)	93.3	(98)	95.1	(10)	100.0	(3)	60.0	(1)	50.0
	제한사항 해당	(8)	6.7	(5)	4.9	(0)	0.0	(2)	40.0	(1)	50.0
도전적 행동	제한사항 아님	(78)	65.0	(71)	68.9	(5)	50.0	(1)	20.0	(1)	50.0
	제한사항 해당	(42)	35.0	(32)	31.1	(5)	50.0	(4)	80.0	(1)	50.0

시설 이용제한 사항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신변처리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0)**	**91.7**	(97)	94.2	(10)	100.0	(3)	60.0	(0)	0.0
	제한사항 해당	**(10)**	**8.3**	(6)	5.8	(0)	0.0	(2)	40.0	(2)	100.0
의사소통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6)**	**96.7**	(103)	100.0	(9)	90.0	(3)	60.0	(1)	50.0
	제한사항 해당	**(4)**	**3.3**	(0)	0.0	(1)	10.0	(2)	40.0	(1)	50.0
약물복용	제한사항 아님	**(118)**	**98.3**	(103)	100.0	(10)	100.0	(3)	60.0	(2)	100.0
	제한사항 해당	**(2)**	**1.7**	(0)	0.0	(0)	0.0	(2)	40.0	(0)	0.0
식사수행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7)**	**97.5**	(103)	100.0	(10)	100.0	(4)	80.0	(0)	0.0
	제한사항 해당	**(3)**	**2.5**	(0)	0.0	(0)	0.0	(1)	20.0	(2)	100.0
보행 능력	제한사항 아님	**(102)**	**85.0**	(89)	86.4	(10)	100.0	(3)	60.0	(0)	0.0
	제한사항 해당	**(18)**	**15.0**	(14)	13.6	(0)	0.0	(2)	40.0	(2)	100.0
기타	제한사항 아님	**(7)**	**41.2**	(7)	43.8	(0)	0.0	(0)	0.0	(0)	0.0
	제한사항 해당	**(10)**	**58.8**	(9)	56.3	(1)	100.0	(0)	0.0	(0)	0.0

1인당 월 이용료

- 1인당 월 이용료는 전체 시설 평균 241,200원(최대 38만 원)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인 전담과 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다른 이용자 유형별 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음

연구요약_표 2 1인당 월 이용료

(단위: 개소, 원)

구분		시설 수	1인당 월 이용료		
			평균	최대	최소
전체		**(120)**	**241,200**	**380,000**	**0**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248,636	380,000	0
	병설시설	(25)	221,360	310,000	150,000
	자치구 위탁시설	(7)	218,571	300,000	10,0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253,922	380,000	150,000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230,000	310,000	150,0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86,000	200,000	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30,000	50,000	10,000
건물 소유형태	전세	(1)	50,000	50,000	50,000
	반전세	(5)	302,000	350,000	270,000
	월세	(26)	256,154	350,000	10,000
	무상임대	(88)	235,500	380,000	0

월 이용료 할인

○ 시설 이용료 할인 중 이용료 감면 인원은 시설 1개소당 평균 2.0명으로 나타났으며, 월 이용료 감면비율은 평균 36.0%임. 무료인원은 평균 0.4명으로 나타남

연구요약_표 3 월 이용료 할인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설 수	이용료 할인								
			무료인원(명)			감면인원(명)			감면비율(%)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전체		**(120)**	**0.4**	**13**	**0**	**2.0**	**10**	**0**	**36.0**	**100.0**	**0.0**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0.4	13	0	2.0	10	0	33.2	100.0	0.0
	병설시설	(25)	0.5	4	0	2.6	7	0	51.8	100.0	0.0
	자치구 위탁시설	(7)	0.1	1	0	0.7	2	0	15.7	50.0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0.2	7	0	2.1	10	0	34.0	100.0	0.0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0.7	3	0	2.0	10	0	63.4	100.0	16.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3.6	13	0	1.8	6	0	38.0	100.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0	0	0	0.0	0	0	0.0	0.0	0.0
건물 소유 형태	전세	(1)	0.0	0	0	0.0	0	0	0.0	0.0	0.0
	반전세	(5)	0.4	1	0	1.2	3	0	31.2	100.0	0.0
	월세	(26)	0.1	2	0	1.8	9	0	28.5	83.0	0.0
	무상임대	(88)	0.5	13	0	2.2	10	0	38.9	100.0	0.0

1인당 월 송영 서비스 차량 이용료 및 중식비

○ 1인당 월 송영 서비스 이용료는 평균 42,619원(이용시설 기준), 1인당 월 중식비는 전체 시설 평균 66,935원으로 나타남

연구요약_표 4 1인당 월 송영 서비스 차량 이용료 및 중식비

(단위: 개소, 원)

구분		송영 서비스 이용료		중식비	
		n	평균	n	평균
전체		**(42)**	**42,619**	**(120)**	**66,935**
운영 형태	단독시설	(35)	42,571	(88)	64,866
	병설시설	(4)	25,000	(25)	77,760
	자치구 위탁시설	(3)	66,667	(7)	54,286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0)	43,500	(103)	67,15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	20,000	(10)	90,0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	30,000	(5)	35,0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0)	-	(2)	20,000

구분		송영 서비스 이용료		중식비	
		n	평균	n	평균
건물 소유형태	전세	(0)	-	(1)	82,000
	반전세	(3)	43,333	(5)	67,000
	월세	(10)	36,000	(26)	67,827
	무상임대	(29)	44,828	(88)	66,497

*송영 서비스 이용료는 송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63개소) 중 응답한 시설(42개소)의 평균 이용료임

중식 제공 방법

○ 시설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방법은 '부설복지기관 구내식당 및 인근 일반식당 이용'이 40%(48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자체조리'(23.3%), '반찬배달'(14.2), '도시락배달'(14.2%)순으로 나타남

연구요약_표 5 중식 제공 방법(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부설복지기관 구내식당 및 인근 일반식당		자체조리		반찬배달		도시락배달		기타	
			n	%	n	%	n	%	n	%	n	%
전체		**(120)**	**(48)**	**40.0**	**(28)**	**23.3**	**(17)**	**14.2**	**(17)**	**14.2**	**(10)**	**8.3**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22)	25.0	(28)	31.8	(16)	18.2	(15)	17.0	(7)	8.0
	병설시설	(25)	(23)	92.0	(0)	0.0	(0)	0.0	(0)	0.0	(2)	8.0
	자치구 위탁시설	(7)	(3)	42.9	(0)	0.0	(1)	14.3	(2)	28.6	(1)	14.3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41)	39.8	(25)	24.3	(14)	13.6	(14)	13.6	(9)	8.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6)	60.0	(1)	10.0	(1)	10.0	(1)	10.0	(1)	1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1)	20.0	(2)	40.0	(0)	0.0	(2)	40.0	(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	0.0	(0)	0.0	(2)	100.0	(0)	0.0	(0)	0.0

시설 설치 공간 현황

○ 전체 시설의 설치 신고면적은 전체(총 120개소) 평균 163.3㎡(이용자 1인당 평균 면적 : 정원기준 13.7㎡, 현원기준 14.6㎡)로 나타남

- '이용자 개별활동실'과 '이용자 공용휴게실'을 전용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극히 적고, 다른 용도의 공간과 통합 운영(약 60%)하거나 없는 비율(약 30%)이 높음. '심리안정실'이나 '상담실'이 없는 시설이 약 25%, '직원 공용휴게실'이 없는 시설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요약_표 6 현재 설치 수준_운영 형태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운영 형태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n	%	n	%	n	%	n	%
프로그램실 (복수응답)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비율(%)	**(63)**	**52.5**	(49)	55.7	(10)	40.0	(4)	57.1
		평균(개)	**(63)**	**1.5**	(49)	1.6	(10)	1.3	(4)	1.5
	전용 운영	비율(%)	**(73)**	**60.8**	(51)	58.0	(19)	76.0	(3)	42.9
		평균(개)	**(73)**	**1.5**	(51)	1.5	(19)	1.2	(3)	2.3
심리안정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56)**	**46.7**	(48)	54.5	(6)	24.0	(2)	28.6
	전용 운영		**(33)**	**27.5**	(19)	21.6	(11)	44.0	(3)	42.9
	없음		**(31)**	**25.8**	(21)	23.9	(8)	32.0	(2)	28.6
이용자 개별 활동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73)**	**60.8**	(58)	65.9	(13)	52.0	(2)	28.6
	전용 운영	비율(%)	**(8)**	**6.7**	(7)	8.0	(0)	0.0	(1)	14.3
		평균(개)	**(8)**	**1.5**	(7)	1.4	(0)	-	(1)	2.0
	없음		**(39)**	**32.5**	(23)	26.1	(12)	48.0	(4)	57.1
상담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72)**	**60.0**	(59)	67.0	(10)	40.0	(3)	42.9
	전용 운영		**(20)**	**16.7**	(10)	11.4	(8)	32.0	(2)	28.6
	없음		**(28)**	**23.3**	(19)	21.6	(7)	28.0	(2)	28.6
이용자 공용 휴게실	이용자·직원용 통합 운영		**(28)**	**23.3**	(23)	26.1	(5)	20.0	(0)	0.0
	이용자 전용 운영		**(15)**	**12.5**	(7)	8.0	(6)	24.0	(2)	28.6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47)**	**39.2**	(36)	40.9	(8)	32.0	(3)	42.9
	없음		**(30)**	**25.0**	(22)	25.0	(6)	24.0	(2)	28.6
직원 공용 휴게실	이용자·직원용 통합 운영		**(28)**	**23.3**	(23)	26.1	(5)	20.0	(0)	0.0
	직원 전용 운영		**(10)**	**8.3**	(5)	5.7	(5)	20.0	(0)	0.0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20)**	**16.7**	(15)	17.0	(3)	12.0	(2)	28.6
	없음		**(62)**	**51.7**	(45)	51.1	(12)	48.0	(5)	71.4
사무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41)**	**34.2**	(30)	34.1	(9)	36.0	(2)	28.6
	전용 운영		**(79)**	**65.8**	(58)	65.9	(16)	64.0	(5)	71.4
장애인 화장실	있음		**(94)**	**78.3**	(65)	73.9	(22)	88.0	(7)	100.0
	없음		**(26)**	**21.7**	(23)	26.1	(3)	12.0	(0)	0.0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있음		**(98)**	**81.7**	(73)	83.0	(19)	76.0	(6)	85.7
	없음		**(22)**	**18.3**	(15)	17.0	(6)	24.0	(1)	14.3
조리실	있음		**(84)**	**70.0**	(64)	72.7	(15)	60.0	(5)	71.4
	없음		**(36)**	**30.0**	(24)	27.3	(10)	40.0	(2)	28.6
전체 시설 면적 평균(㎡)			**(120)**	**163.3**	(88)	164.7	(25)	131.2	(7)	259.6
이용자 1인당 평균 면적(㎡)		정원기준	**(120)**	**13.7**	(88)	14.1	(25)	10.5	(7)	20.8
		현원기준	**(120)**	**14.6**	(88)	14.7	(25)	11.1	(7)	25.6

전용 공간 필요 여부

- 전용 공간 필요 여부에 대해 '직원 공용휴게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사무실 전용 공간 필요는 73.3%로 나타남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볼 때, '프로그램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이용자 개별활동실 79.2%, 심리안정실과 상담실 78.3%, 이용자 공용휴게실 77.5%,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70%, 장애인화장실 67.5%, 조리실 64.2%순으로 나타남

연구요약_표 7 전용 공간 필요 여부_운영 형태별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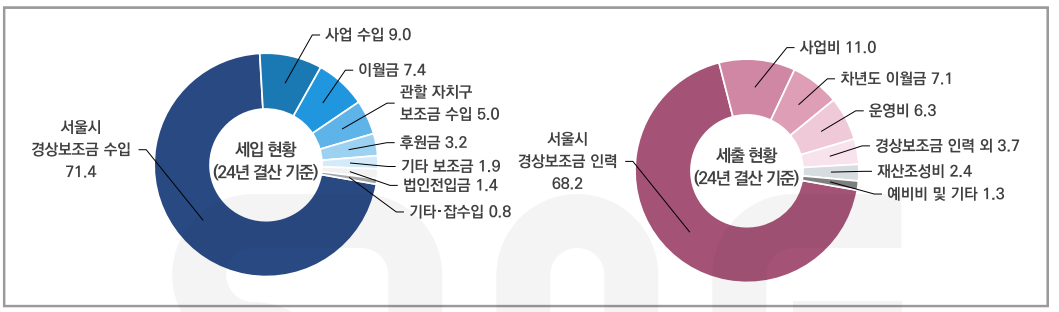
구분		전체		운영 형태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n	%	n	%	n	%	n	%
프로그램실 (복수응답)	필요	**(97)**	**80.8**	(70)	79.5	(21)	84.0	(6)	85.7
	불필요	**(23)**	**19.2**	(18)	20.5	(4)	16.0	(1)	14.3
심리안정실	필요	**(94)**	**78.3**	(67)	76.1	(20)	80.0	(7)	100.0
	불필요	**(26)**	**21.7**	(21)	23.9	(5)	20.0	(0)	0.0
이용자 개별활동실	필요	**(95)**	**79.2**	(70)	79.5	(18)	72.0	(7)	100.0
	불필요	**(25)**	**20.8**	(18)	20.5	(7)	28.0	(0)	0.0
상담실	필요	**(94)**	**78.3**	(71)	80.7	(17)	68.0	(6)	85.7
	불필요	**(26)**	**21.7**	(17)	19.3	(8)	32.0	(1)	14.3
이용자 공용휴게실	필요	**(93)**	**77.5**	(68)	77.3	(19)	76.0	(6)	85.7
	불필요	**(27)**	**22.5**	(20)	22.7	(6)	24.0	(1)	14.3
직원 공용휴게실	필요	**(101)**	**84.2**	(74)	84.1	(20)	80.0	(7)	100.0
	불필요	**(19)**	**15.8**	(14)	15.9	(5)	20.0	(0)	0.0
사무실	필요	**(88)**	**73.3**	(61)	69.3	(21)	84.0	(6)	85.7
	불필요	**(32)**	**26.7**	(27)	30.7	(4)	16.0	(1)	14.3
장애인화장실	필요	**(81)**	**67.5**	(55)	62.5	(20)	80.0	(6)	85.7
	불필요	**(39)**	**32.5**	(33)	37.5	(5)	20.0	(1)	14.3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필요	**(84)**	**70.0**	(60)	68.2	(18)	72.0	(6)	85.7
	불필요	**(36)**	**30.0**	(28)	31.8	(7)	28.0	(1)	14.3
조리실	필요	**(77)**	**64.2**	(54)	61.4	(18)	72.0	(5)	71.4
	불필요	**(43)**	**35.8**	(34)	38.6	(7)	28.0	(2)	28.6

세입·세출 현황

○ 2024년 결산 기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세입 및 세출금액은 전체 평균 약 3억 3,380만 원으로 나타남

- 세입 내역 : 서울시 경상보조금(71.4%), 사업 수입(9.0%), 자치구 보조금 (5.0%), 후원금(3.2%), 기타 보조금(1.9%) 등으로 나타남
- 세출 내역 : 인건비(71.9%), 사업비(11.0%), 운영비(6.3%)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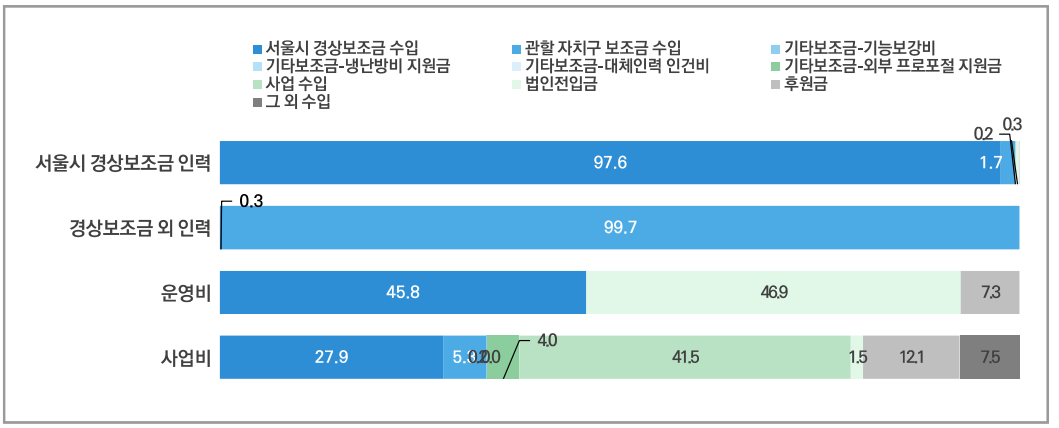
(단위: %)



▌연구요약_그림 1 ▌ 세입 및 세출 현황

○ '운영비'의 주요 세입 재원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37.6%, 사업 수입 34.5%,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7.6%, 후원금 7.4%, 법인전입금 4.4% 등이며, '사업비'의 주요 세입 재원은 사업 수입 41.5%,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27.9%, 후원금 12.1%,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5.3%,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4.0% 등임

(단위: %)



▌연구요약_그림 2 ▌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

서울시 지원 외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현황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120개소 중 절반은 서울시 지원 외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요약_표 8 서울시 지원 외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24년				2025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n	%	n	%	n	%	n	%
전체		**(60)**	**50.0**	**(60)**	**50.0**	**(61)**	**50.8**	**(59)**	**49.2**
운영 형태	단독시설	(44)	50.0	(44)	50.0	(44)	50.0	(44)	50.0
	병설시설	(13)	52.0	(12)	48.0	(13)	52.0	(12)	48.0
	자치구 위탁시설	(3)	42.9	(4)	57.1	(4)	57.1	(3)	42.9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50)	48.5	(53)	51.5	(51)	49.5	(52)	50.5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7)	70.0	(3)	30.0	(7)	70.0	(3)	3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2)	40.0	(3)	60.0	(2)	40.0	(3)	6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1)	50.0	(1)	50.0	(1)	50.0	(1)	50.0

최근 3년간 시설 이용자 현황

○ 2025년 기준 서울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120개소 전체 이용자는 정원 1,478명(현원 1,389명)으로 나타남(2023년 대비 2025년에 정원 15명, 현원 22명 증가)

- 시설당 평균 정원은 12.3명, 평균 현원은 11.6명임
-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은 95.6%임(2023년 대비 2025년에 0.3%p 증가)

연구요약_표 9 최근 3년간 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총 정원 합계(명)	**1,463**	**1,474**	**1,478**
		총 현원 합계(명)	**1,367**	**1,382**	**1,389**
		시설당 평균 정원(명)	**12.2**	**12.3**	**12.3**
		시설당 평균 현원(명)	**11.4**	**11.5**	**11.6**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95.3**	**95.5**	**95.6**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n=103)	총 정원 합계(명)	1,271	1,288	1,290
		총 현원 합계(명)	1,192	1,213	1,220
		시설당 평균 정원(명)	12.3	12.5	12.5
		시설당 평균 현원(명)	11.6	11.8	11.8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95.6	95.9	96.3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n=10)	총 정원 합계(명)	119	113	115
		총 현원 합계(명)	104	103	103
		시설당 평균 정원(명)	11.9	11.3	11.5
		시설당 평균 현원(명)	10.4	10.3	10.3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90.1	93.2	91.2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n=5)	총 정원 합계(명)	66	66	66
		총 현원 합계(명)	64	59	60
		시설당 평균 정원(명)	13.2	13.2	13.2
		시설당 평균 현원(명)	12.8	11.8	12.0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97.3	90.7	92.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2)	총 정원 합계(명)	7	7	7
		총 현원 합계(명)	7	7	6
		시설당 평균 정원(명)	3.5	3.5	3.5
		시설당 평균 현원(명)	3.5	3.5	3.0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100.0	100.0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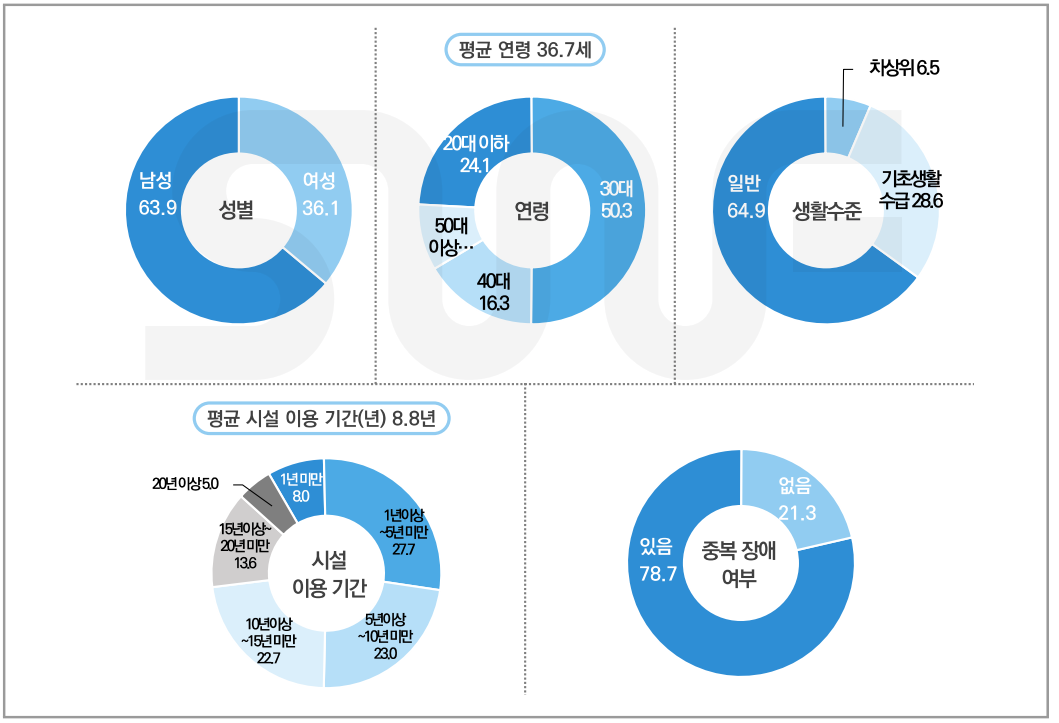
*장애인이용시설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가능하며 시설이 임의로 설정한 기본 서비스 제공 인원 규모를 의미함

이용자 기본 특성

○ 2025년 기준 서울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120개소 전체 이용자(현원 1,389명) 중 남성 63.9%(887명), 여성 36.1%(502명)이며, 중복장애 있는 비율 78.7%임

- 연령대 : 이용자 평균연령(36.7세)로 30대가 50.3%(698명)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 25.7%(356명), 20대 이하 24.1%(335명)임
- 생활수준 : 일반(64.9%), 기초생활수급(28.6%), 차상위(6.5%)순
- 시설 이용기간 : 평균 105.1개월(8.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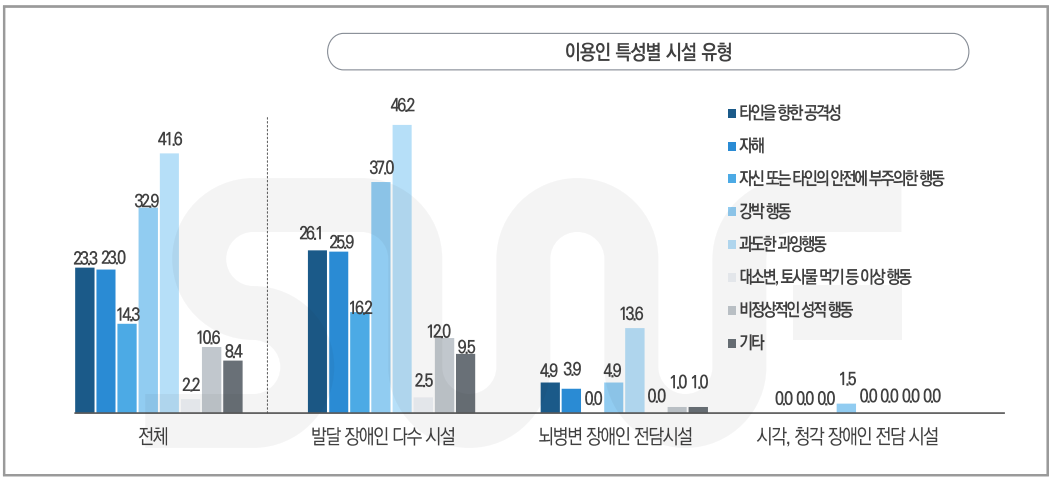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3▐ 이용자 기본 특성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 도전적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용자는 65.4%(908명)이며, 이용자 1인당 평균 1.6개의 도전적 행동을 보임

- 도전적 행동 유형(중복응답)은 '과도한 과잉행동'이 4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박 행동'(32.9%), '타인을 향한 공격성'(23.3%), '자해'(23.0%),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부주의한 행동'(14.3%), '비정상적인 성적행동'(10.6%)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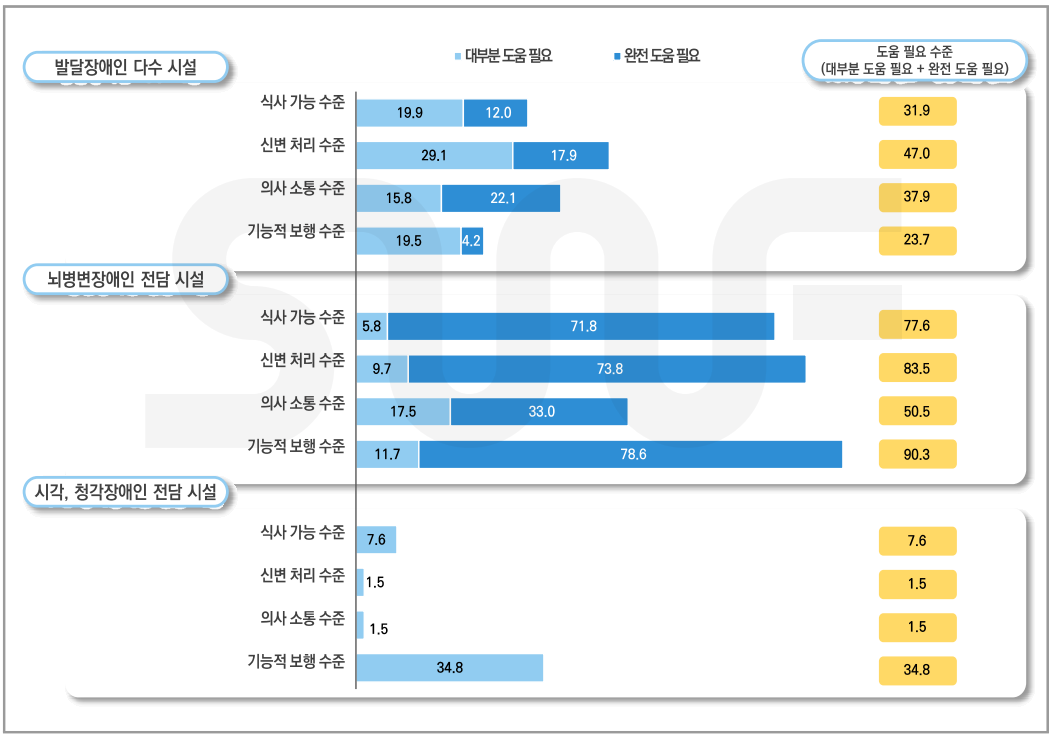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4▐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이용자의 일상생활 수행수준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이용자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완전+대부분 도움 필요)는 신변처리 47.0%, 식사 도움 31.9%, 보행 도움 23.7%이며,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37.9%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보행에 도움이 필요(완전+대부분 도움 필요)한 비율이 90%이상으로 높고, 신변처리 83.5%, 식사 77.6%, 의사소통 도움 필요 비율도 50.5%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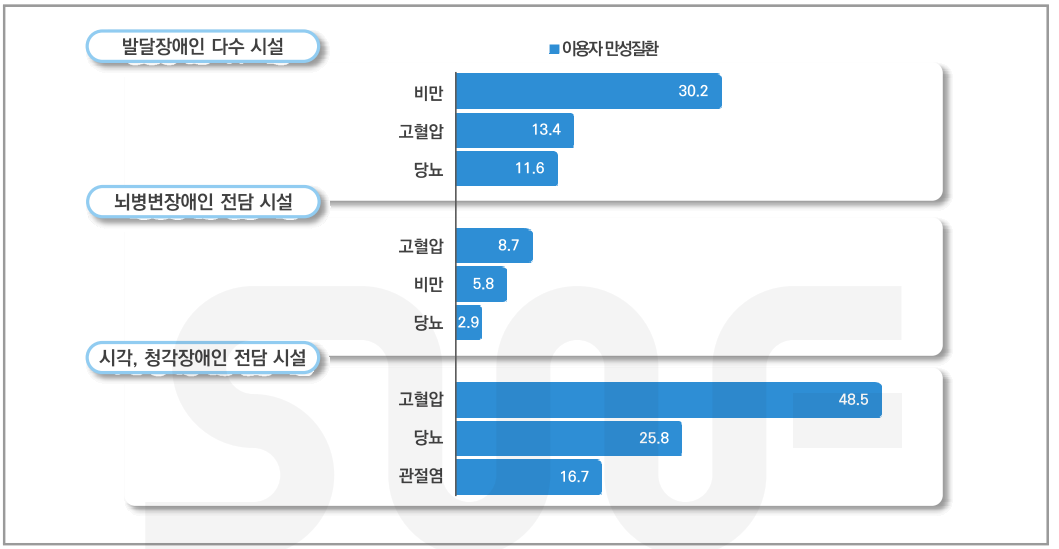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5▐ 이용자의 일상생활 수행수준

이용자의 만성질환

○ 전체 시설 이용자 중 1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53.3%이며, 이용자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0.9개임. 만성질환(중복응답)은 비만(27.2%)이 가장 많고 특히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이용자의 비만률이 30.2%로 가장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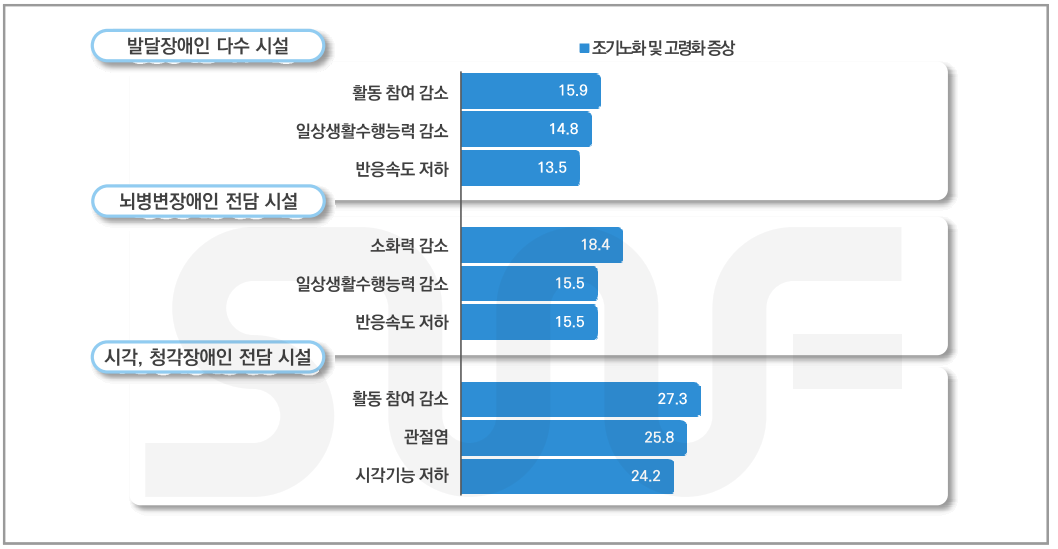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6 이용자의 만성질환

이용자의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

○ 전체 시설 이용자 중 38%가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을 살펴보면, 활동 참여 감소(16.3%),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15%), 반응속도 저하(14%), 무기력(12%), 상황이해력 저하(11%), 반복행동(10.7%) 등이 나타남

(단위: %)



연구요약_그림 7 이용자의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

종사자 규모 및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 2025년 6월 기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수는 평균 5.2명(현원)으로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장/팀원)는 평균 4.0명이며,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자 수는 현원기준 3.0명(정원기준 3.2명)임

연구요약_표 10 종사자 규모 및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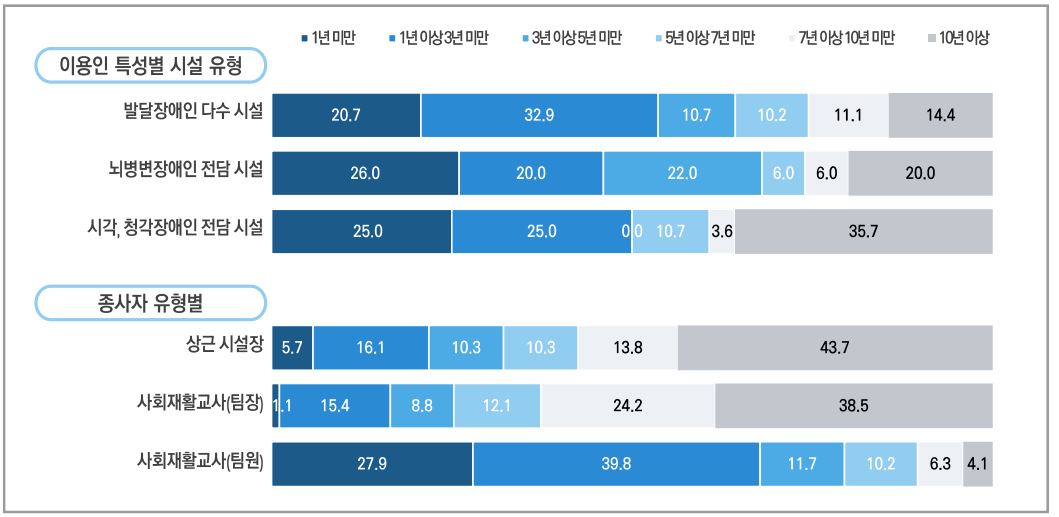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사례 수			**(120)**	(103)	(10)	(5)	(2)
종사자 유형별 규모	상근시설장	평균 (명)	**0.7**	0.8	0.3	0.6	0.5
	겸임시설장		**0.2**	0.2	0.6	0.4	0.5
	사회재활교사(팀장)		**0.8**	0.8	0.9	0.6	0.0
	사회재활교사(팀원)		**3.3**	3.4	3.0	2.6	2.5
	사무원, 기능직 등		**0.2**	0.2	0.2	0.0	0.0
총원			**5.2**	5.3	5.0	4.2	3.5
이용자 정원		평균 (명)	**12.3**	12.5	11.5	13.2	3.5
이용자 현원			**11.6**	11.8	10.3	12.0	3.0
사회재활교사(팀장/팀원)			**4.0**	4.1	3.9	3.2	2.5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정원기준)			**3.2**	3.2	3.0	4.5	1.5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현원기준)			**3.0**	3.1	2.7	4.1	1.3

*이용자 정원 및 현원은 2025년 6월 기준임

종사자 현 기관 근속기간

- 2025년 6월 기준, 전체 시설 종사자의 현 기관 근속기간은 평균 4년 9개월임(상근시설장 평균 9년 3개월, 사회재활교사 팀장 평균 9년 1개월, 팀원 평균 2년 9개월)
  - 1년 이상~3년 미만(31.5%)이 가장 많고, 이어서 1년 미만(21.3%) 또는 10년 이상(15.8%)으로 근속기간이 짧거나 긴 경우가 많음
- 상근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팀장)는 현 기관 근속기간 10년 이상 비율이 약 40% 전후로 높고, 사회재활교사(팀원)는 3년 미만 비율이 약 70%에 가까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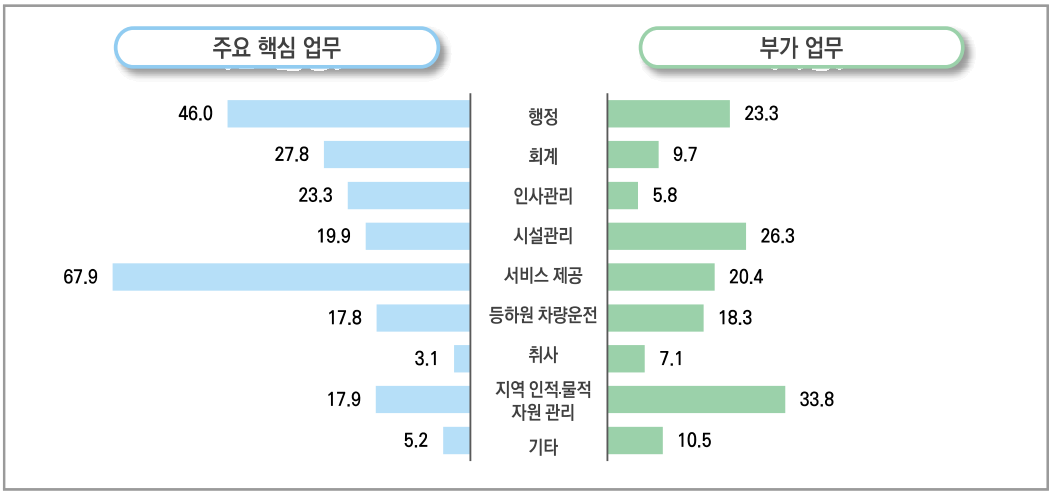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8▐ 종사자 현 기관 근무 경력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 종사자의 주요 핵심 업무(중복응답)는 서비스 제공(67.9%), 행정(46.0%), 회계(27.8%), 인사관리(23.3%)순으로 나타남
- 부가 업무(중복응답)는 지역 인적·물적 자원관리(33.8%), 시설관리(26.3%), 행정(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연구요약_그림 9▐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추가 인력 필요 여부

○ 시설 운영을 위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84.2%(101개소)임

연구요약_표 11 시설 운영 시 추가 인력 필요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추가 인력 필요함		현재 인원으로 충분함	
			n	%	n	%
전체		**(120)**	**(101)**	**84.2**	**(19)**	**15.8**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72)	81.8	(16)	18.2
	병설시설	(25)	(22)	88.0	(3)	12.0
	자치구 위탁시설	(7)	(7)	100.0	(0)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85)	82.5	(18)	17.5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10)	100.0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4)	80.0	(1)	2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2)	100.0	(0)	0.0

추가 필요한 종사자 유형 및 필요인원

○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1순위)는 사회복지사가 7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행정사무원(10.9%), 조리사(7.9%), 운전원(5.9%)순으로 나타남

- 필요인원(평균) : 사회복지사 1.5명, 운전원 1.2명, 행정사무원 1.1명, 조리사 1명

연구요약_표 12 시설 운영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 유형 1(1순위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회복지사			행정사무원			조리사			운전원		
		n	%	평균(명)	n	%	평균(명)	n	%	평균(명)	n	%	평균(명)
전체		**(73)**	**72.3**	**1.5**	**(11)**	**10.9**	**1.1**	**(8)**	**7.9**	**1.0**	**(6)**	**5.9**	**1.2**
운영 형태	단독시설	(49)	68.1	1.5	(8)	11.1	1.1	(8)	11.1	1.0	(5)	6.9	1.2
	병설시설	(18)	81.8	1.3	(2)	9.1	1.0	(0)	0.0	-	(1)	4.5	1.0
	자치구 위탁시설	(6)	85.7	1.7	(1)	14.3	1.0	(0)	0.0	-	(0)	0.0	-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62)	72.9	1.5	(10)	11.8	1.1	(5)	5.9	1.0	(5)	5.9	1.2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8)	80.0	1.5	(1)	10.0	1.0	(1)	10.0	1.0	(0)	0.0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	25.0	1.0	(0)	0.0	-	(2)	50.0	1.0	(1)	25.0	1.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00.0	1.0	(0)	0.0	-	(0)	0.0	-	(0)	0.0	-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101개소)에서 추가 필요한 종사자 유형임

연구요약_표 13 시설 운영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 유형 2(1순위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간호사/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기타		
		n	%	평균(명)	n	%	평균(명)	n	%	평균(명)
전체		**(1)**	**1.0**	**1.0**	**(1)**	**1.0**	**1.0**	**(1)**	**1.0**	**3.0**
운영 형태	단독시설	(0)	0.0	-	(1)	1.4	1.0	(1)	1.4	3.0
	병설시설	(1)	4.5	1.0	(0)	0.0	-	(0)	0.0	-
	자치구 위탁시설	(0)	0.0	-	(0)	0.0	-	(0)	0.0	-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	1.2	1.0	(1)	1.2	1.0	(1)	1.2	3.0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0)	0.0	-	(0)	0.0	-	(0)	0.0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0)	0.0	-	(0)	0.0	-	(0)	0.0	-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0)	0.0	-	(0)	0.0	-	(0)	0.0	-

대체인력 활용 경험 및 활용 일수 및 필요 일수

- 최근 3년간 대체인력을 활용한 경험이 있고 향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 있는 시설은 69.2%로 나타남(전체 시설의 30%는 활용 경험 없음)
  - 대체인력 필요 일수는 연 평균 16.3일인데 비해, 실제 대체인력 활용 일수는 연 평균 5.5일에 불과함

연구요약_표 14 대체인력 활용 경험 및 활용 일수/필요 일수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대체인력 활용 경험						대체 인력 활용 일수	대체 인력 필요 일수
			활용 경험 없음		활용 경험 있고 향후에도 계속 활용 계획		활용 경험 있으나 향후에 활용 의사 없음			
			n	%	n	%	n	%	평균(일)	평균(일)
전체		**(120)**	**(36)**	**30.0**	**(83)**	**69.2**	**(1)**	**0.8**	**5.5**	**16.3**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20)	22.7	(67)	76.1	(1)	1.1	6.3	19.3
	병설시설	(25)	(10)	40.0	(15)	60.0	(0)	0.0	3.7	8.7
	자치구 위탁시설	(7)	(6)	85.7	(1)	14.3	(0)	0.0	1.4	5.7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27)	26.2	(75)	72.8	(1)	1.0	5.7	17.8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5)	50.0	(5)	50.0	(0)	0.0	5.3	10.2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3)	60.0	(2)	40.0	(0)	0.0	2.0	4.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	50.0	(1)	50.0	(0)	0.0	2.5	2.5

최근 3년간 종사자 퇴직 인원

○ 2024년도 시설 전체(120개소) 퇴직 인원은 115명(시설당 평균 0.9명)으로 나타남. 이 중 정년퇴직 외 인원이 87%(100명)이며, 정년퇴직 인원은 13%(15명)임

연구요약_표 15 최근 3년 종사자 퇴직 인원

(단위: 명)

구분		2022년 정년퇴직		2022년 정년퇴직 외		2023년 정년퇴직		2023년 정년퇴직 외		2024년 정년퇴직		2024년 정년퇴직 외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시설장		0.0	1	0.0	2	0.0	2	0.1	9	0.0	5	0.1	6
사회재활교사	정규직	0.1	11	0.5	56	0.0	4	0.8	98	0.1	8	0.7	81
	계약직 전일제	0.0	0	0.1	7	0.0	0	0.0	1	0.0	1	0.1	8
	계약직 시간제	0.0	0	0.0	0	0.0	0	0.0	0	0.0	1	0.0	0
사무원	정규직	0.0	0	0.0	1	0.0	0	0.0	0	0.0	0	0.0	1
	계약직 전일제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계약직 시간제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기능직	정규직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계약직 전일제	0.0	0	0.0	0	0.0	1	0.0	0	0.0	0	0.0	0
	계약직 시간제	0.0	0	0.0	0	0.0	0	0.0	2	0.0	0	0.0	3
소계		**0.1**	**12**	**0.6**	**66**	**0.1**	**7**	**0.9**	**110**	**0.1**	**15**	**0.8**	**100**

종사자 퇴직 주요 영향 요인

○ 시설 종사자 퇴직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은 '개인사유'가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희박한 승진 기회'(26.7%), '저임금'(25.0%), '높은 업무강도'(24.2%), '번아웃'(23.3%) 순으로 나타남

연구요약_표 16 종사자 퇴직 주요 영향 1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개인사유		희박한 승진 기회		저임금		높은 업무강도		번아웃		과중한 업무량	
			n	%	n	%	n	%	n	%	n	%	n	%
전체		**(120)**	**(46)**	**38.3**	**(32)**	**26.7**	**(30)**	**25.0**	**(29)**	**24.2**	**(28)**	**23.3**	**(22)**	**18.3**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32)	36.4	(24)	27.3	(27)	30.7	(22)	25.0	(23)	26.1	(17)	19.3
	병설시설	(25)	(12)	48.0	(8)	32.0	(2)	8.0	(4)	16.0	(4)	16.0	(4)	16.0
	자치구 위탁시설	(7)	(2)	28.6	(0)	0.0	(1)	14.3	(3)	42.9	(1)	14.3	(1)	14.3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39)	37.9	(28)	27.2	(27)	26.2	(25)	24.3	(27)	26.2	(21)	20.4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5)	50.0	(3)	30.0	(3)	30.0	(3)	30.0	(1)	10.0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2)	40.0	(0)	0.0	(0)	0.0	(1)	20.0	(0)	0.0	(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	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복수응답

연구요약_표 17 종사자 퇴직 주요 영향 2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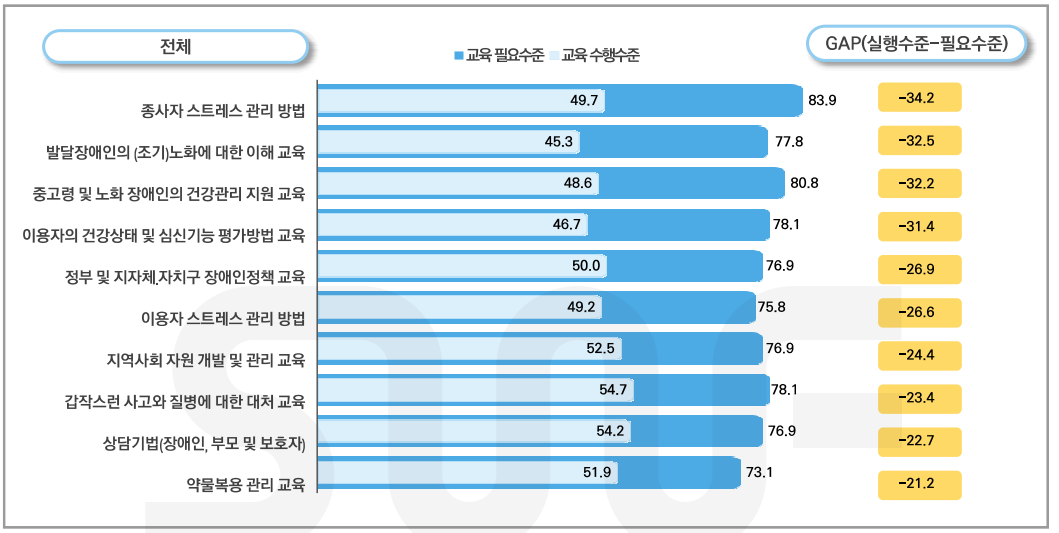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조직 내 갈등		유사 장애인 돌봄기관의 처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정년퇴직		자기계발 기회 부족		자유로운 연차, 교육시간 사용 어려움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120)**	**(13)**	**10.8**	**(11)**	**9.2**	**(10)**	**8.3**	**(1)**	**0.8**	**(1)**	**0.8**	**(29)**	**24.2**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8)	9.1	(7)	8.0	(10)	11.4	(1)	1.1	(1)	1.1	(19)	21.6
	병설시설	(25)	(2)	8.0	(3)	12.0	(0)	0.0	(0)	0.0	(0)	0.0	(8)	32.0
	자치구 위탁시설	(7)	(3)	42.9	(1)	14.3	(0)	0.0	(0)	0.0	(0)	0.0	(2)	28.6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10)	9.7	(9)	8.7	(9)	8.7	(1)	1.0	(1)	1.0	(25)	24.3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0)	0.0	(1)	10.0	(0)	0.0	(0)	0.0	(0)	0.0	(4)	4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2)	40.0	(0)	0.0	(1)	20.0	(0)	0.0	(0)	0.0	(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응답 : 계약 기간 종료,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으로 인한 퇴사, 타 기관 이직 등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행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 교육 필요수준 대비 현재 실행수준이 낮은 항목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34.2점 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장애인 노화 및 건강 관련 교육에서 필요수준 대비 실행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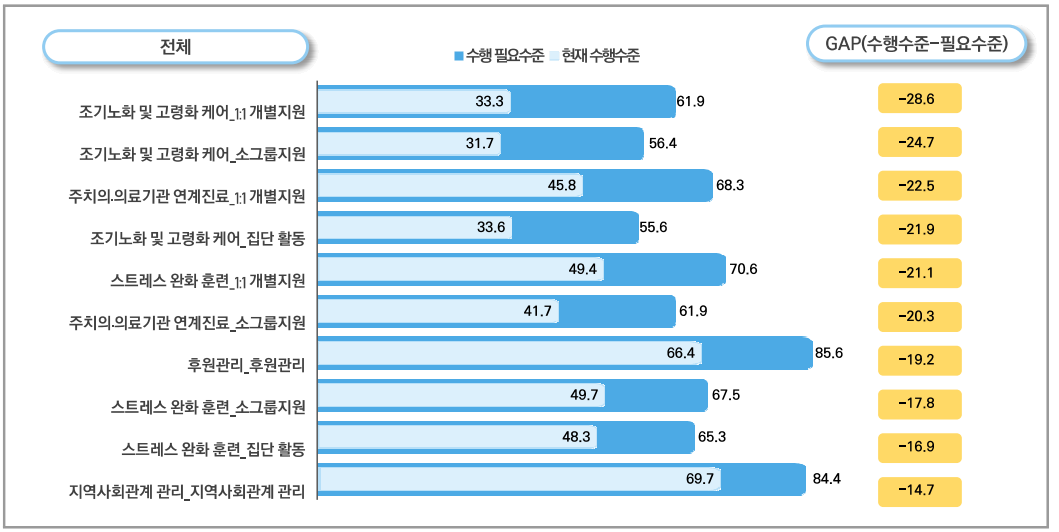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10▐ 종사자 역량강화교육_강화가 필요한 교육

현재 사업 수행수준 및 수행 필요수준 차이

○ 대부분 사업에서 현재 사업 수행수준 대비 필요수준이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현재 사업 수행수준 대비 수행 필요수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영역(고령화 케어, 의료기관 연계 등)이며, 이어서 스트레스 완화 훈련, 후원관리, 지역사회관계 관리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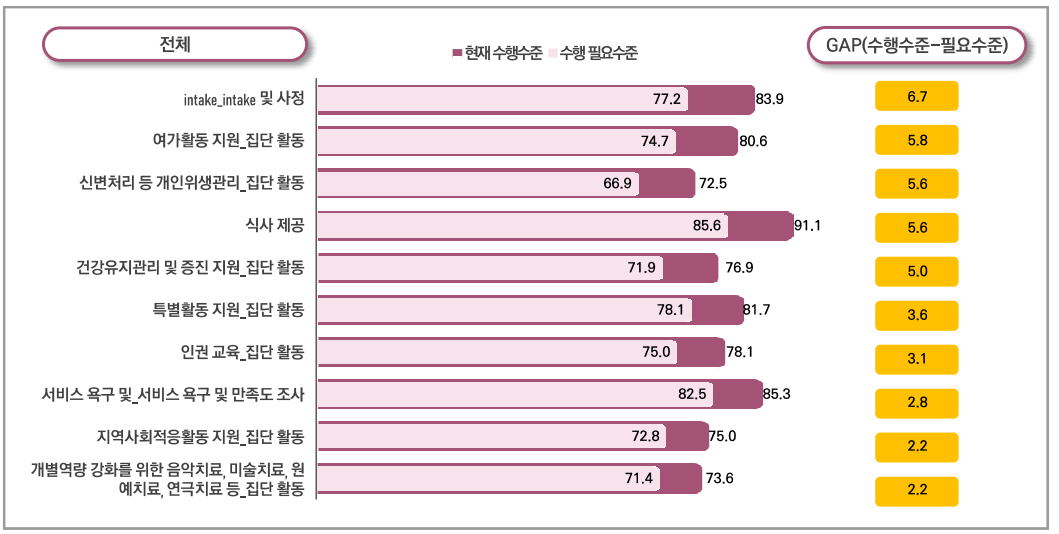
(단위: 점)



▌연구요약_그림 11▐ 수행 확대가 필요한 사업(상위 10순위)

○ 반면, 필요수준이 비교적 높은 항목 중 현재 수행수준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일부 존재함. 식사제공, intake 및 사정,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 필수사업이 이에 해당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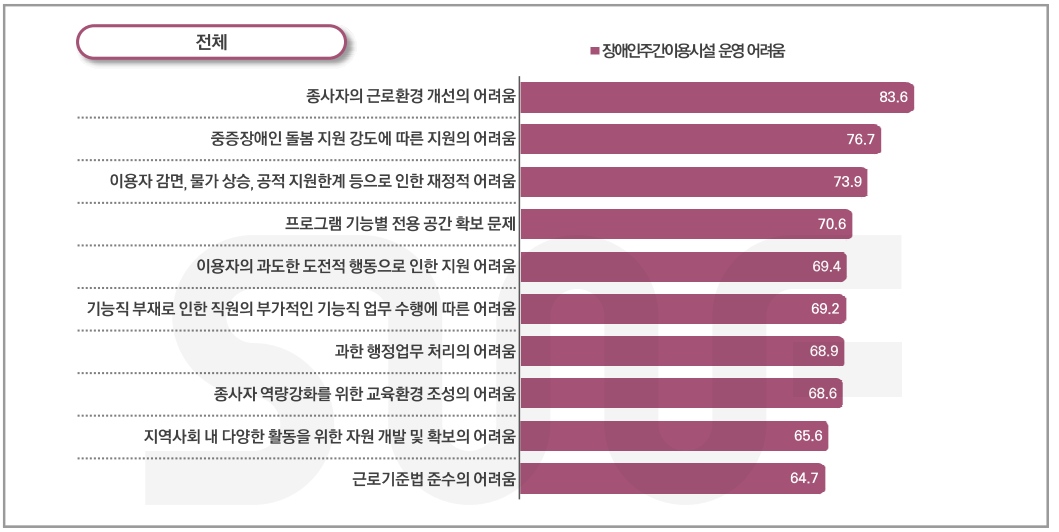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12▐ 수행 축소가 필요한 사업(상위 10순위)

시설 운영 어려움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시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어려움'이 평균 83.6점(100점 환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도에 따른 지원 어려움'(76.7점), '이용자 감면, 물가 상승, 공적 지원한계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73.9점), '프로그램 기능별 전용 공간 확보 문제'(70.6점) 등이 높게 나타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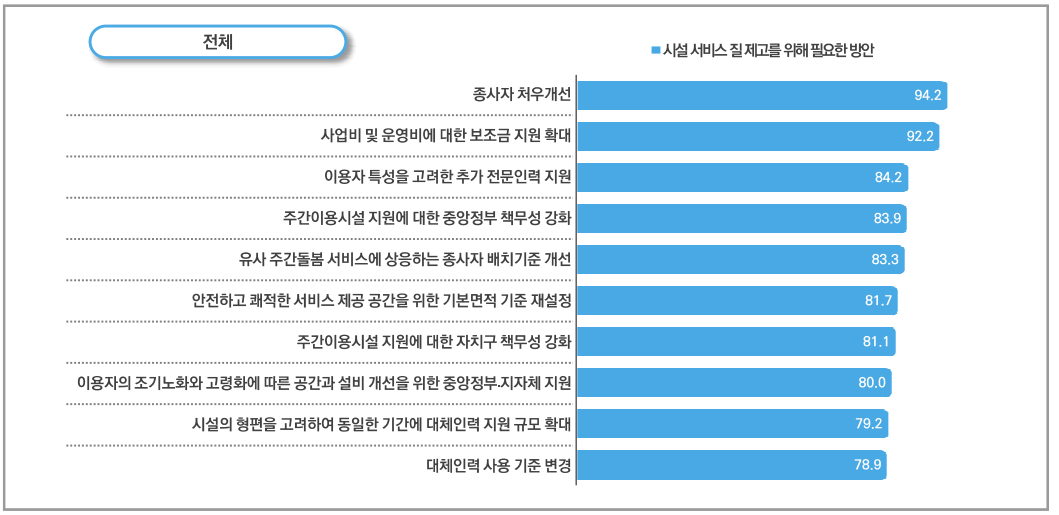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1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

○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종사자 처우개선'(94.2점)과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92.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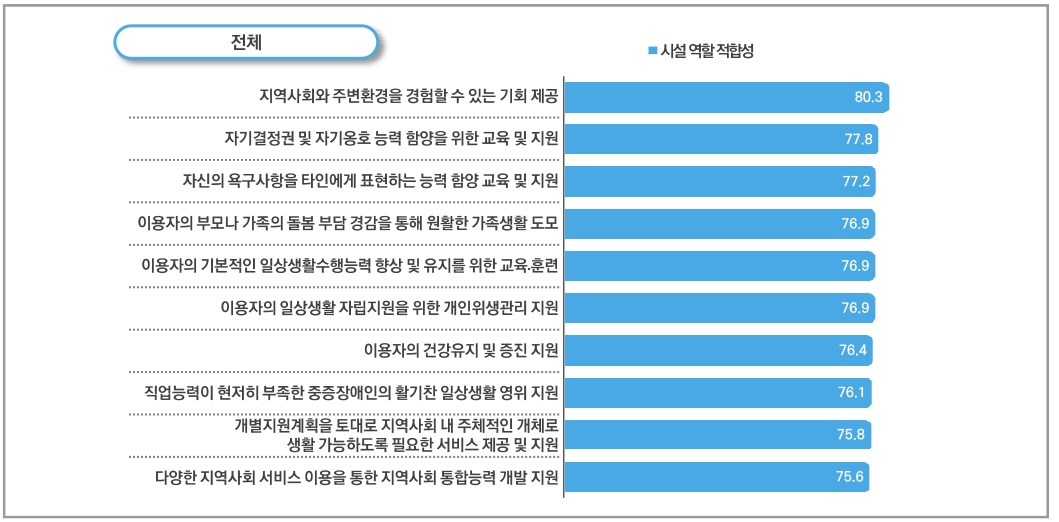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14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

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적합성

- 현재 및 향후 중앙정부·서울시 주간돌봄서비스 정책 방향을 고려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적합성은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80.3점),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77.8점), '자신의 욕구사항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능력 함양 교육 및 지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남

(단위: 점)



연구요약_그림 15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적합성

종사자, 향후 이직 의향 여부

○ 시설 종사자(응답자)의 약 20%는 향후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40%는 향후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이직 의향 : 있음 20.8%, 없음 42.4%, 모르겠음 36.8%

연구요약_표 18 향후 이직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n	%	n	%	n	%
전체		**(495)**	**(103)**	**20.8**	**(210)**	**42.4**	**(182)**	**36.8**
성별	남성	(224)	(39)	17.4	(92)	41.1	(93)	41.5
	여성	(271)	(64)	23.6	(118)	43.5	(89)	32.8
연령	20대	(95)	(15)	15.8	(32)	33.7	(48)	50.5
	30대	(200)	(47)	23.5	(81)	40.5	(72)	36.0
	40대	(121)	(29)	24.0	(48)	39.7	(44)	36.4
	50대	(74)	(12)	16.2	(45)	60.8	(17)	23.0
	60대	(5)	(0)	0.0	(4)	80.0	(1)	20.0
현 소속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37)	(4)	10.8	(25)	67.6	(8)	21.6
	팀장급 사회재활교사	(83)	(15)	18.1	(43)	51.8	(25)	30.1
	사회재활교사	(335)	(78)	23.3	(128)	38.2	(129)	38.5
	사무원, 기능직 등	(40)	(6)	15.0	(14)	35.0	(20)	5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35)	(87)	20.0	(191)	43.9	(157)	36.1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39)	(10)	25.6	(15)	38.5	(14)	35.9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5)	(5)	33.3	(3)	20.0	(7)	46.7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6)	(1)	16.7	(1)	16.7	(4)	66.7

향후 이직 의향 주요 배경

○ 향후 이직 의향이 있는 종사자의 이직 이유(중복응답)를 살펴보면 '번아웃'이 46.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열악한 처우'(39.8%), '과중한 업무'(22.3%), '높은 노동 강도'(21.4%), '수행 업무와 본인 전문성과 괴리'(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구요약_표 19 향후 이직 의향 주요 배경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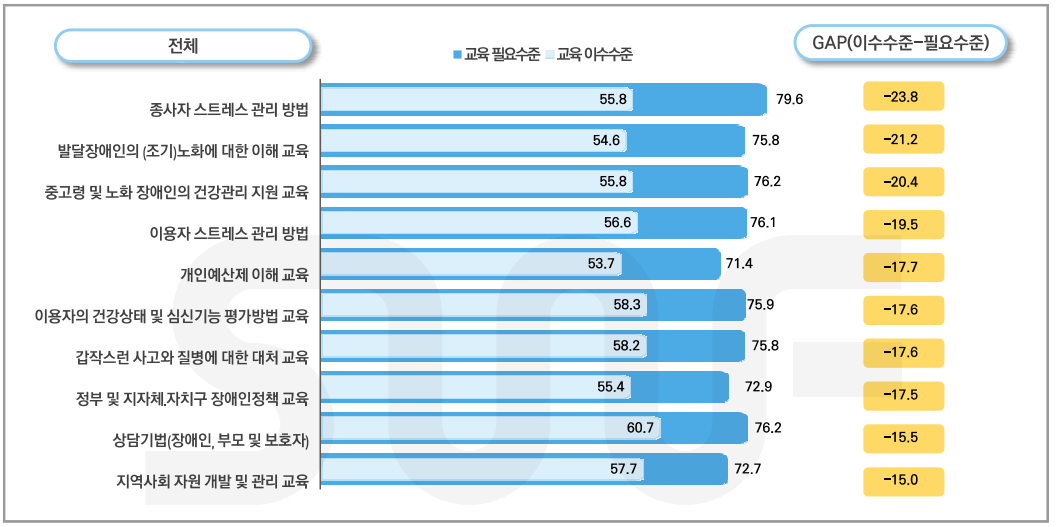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번아웃		열악한 처우		과중한 업무		높은 노동 강도		수행 업무와 본인 전문성 과의 괴리	
			n	%	n	%	n	%	n	%	n	%
전체		**(103)**	**(48)**	**46.6**	**(41)**	**39.8**	**(23)**	**22.3**	**(22)**	**21.4**	**(13)**	**12.6**
성별	남성	(39)	(18)	46.2	(18)	46.2	(7)	17.9	(5)	12.8	(5)	12.8
	여성	(64)	(30)	46.9	(23)	35.9	(16)	25.0	(17)	26.6	(8)	12.5
연령	20대	(15)	(5)	33.3	(5)	33.3	(2)	13.3	(3)	20.0	(2)	13.3
	30대	(47)	(24)	51.1	(20)	42.6	(8)	17.0	(12)	25.5	(3)	6.4
	40대	(29)	(15)	51.7	(12)	41.4	(8)	27.6	(5)	17.2	(6)	20.7
	50대	(12)	(4)	33.3	(4)	33.3	(5)	41.7	(2)	16.7	(2)	16.7
	60대	(0)	(0)	0.0	(0)	0.0	(0)	0.0	(0)	0.0	(0)	0.0
현 소속 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4)	(2)	50.0	(2)	50.0	(3)	75.0	(1)	25.0	(1)	25.0
	팀장급 사회재활교사	(15)	(10)	66.7	(7)	46.7	(5)	33.3	(6)	40.0	(2)	13.3
	사회재활교사	(78)	(34)	43.6	(29)	37.2	(14)	17.9	(14)	17.9	(10)	12.8
	사무원, 기능직 등	(6)	(2)	33.3	(3)	50.0	(1)	16.7	(1)	16.7	(0)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87)	(40)	46.0	(33)	37.9	(16)	18.4	(18)	20.7	(11)	12.6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5)	50.0	(6)	60.0	(4)	40.0	(3)	30.0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3)	60.0	(1)	20.0	(3)	60.0	(1)	20.0	(1)	2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1)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향후 이직 의향이 있는 응답자(103명)의 이직 의향 배경임(복수응답)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이수 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 종사자 교육 이수 수준 대비 필요수준이 높은 항목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3.8점 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21.2점 차),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20.4점 차) 등 장애인의 노화에 관련된 교육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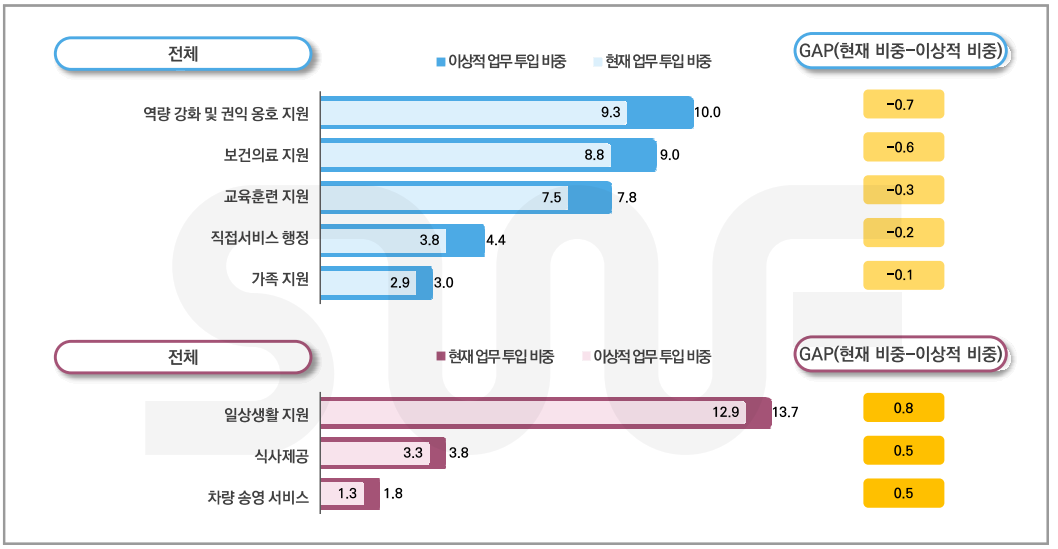


▌연구요약_그림 16▐ 종사자 개인 직무역량강화 교육_강화가 필요한 교육(상위 10순위)

종사자 개인별 이상적 업무투입 비중

○ 종사자가 판단할 때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상생활 지원(13.7%→12.9%), 차량 송영 서비스(1.8%→1.3%), 식사제공(3.8%→3.3%)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9.3%→10.0%), 보건의료 지원(8.8%→9.0%), 교육훈련 지원(7.5%→7.8%), 직접 서비스 행정(3.8%→4.4%), 가족 지원(2.9%→3.0%)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연구요약_그림 17▐ 업무투입 비중 확대 및 축소가 필요한 사업

2)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 결과

○ 다양한 지역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부모)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에 대한 대면 인터뷰 결과 요약임

연구요약_표 20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조사 결과 요약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돌봄 서비스 정보 수집 경로	• 같은 처지 부모들 간의 교류를 통한 돌봄서비스 정보 수집 • 복지시설을 통합돌봄서비스 정보 습득 • 졸업 전 학교 선생님의 정보제공
	돌봄 서비스 선택 기준	• 최초로 접하는 서비스 정보, 돌봄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학교 선생님의 추천 등으로 돌봄서비스 선택 • 희망 돌봄서비스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성, 거주지와의 거리 등 불가피한 선택 • 장애 자녀의 특성에 대한 부모의 자가 판단으로 선택
	돌봄 서비스 이용 접근성	• 다양한 돌봄서비스 유형의 증가로 서비스 선택권 확대 체감 •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상담 부재로 이용접근성 제한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여전히 부족 • 현재 이용 돌봄서비스 기한 만료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부족 • 긴급돌봄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 기준으로 부모 욕구 대응 미흡하며, 보호자의 온전한 돌봄휴식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부재 • 고령화 장애인 자녀 지역돌봄서비스 부재
주간 이용 시설 인식 및 평가	긍정적 인식	• 장기이용자에게 제2의 집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인식 • 전문적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어 이용 선호도가 높은 돌봄기관 • 과거 단순 돌봄 중심에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변화 노력 • 부모에게 돌봄휴식 제공,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규칙적인 보통의 삶 제공
	부정적 인식	• 장기이용자 부모의 텃세 형성으로 신규 진입 및 신규 이용자 교류 어려움 •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 욕구를 볼모로 이용자와 시설 간 힘의 불균형 존재 •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한 열악한 서비스 제공 환경 •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장 미약 • 단순 돌봄 및 보호 중심 서비스 •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도전적 행동 등) 기피 등 이용제한 • 시설이 정원 미충족 상태로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
	이용 의향 주요 요인	• 다른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기간 제한 및 적응 불확실성으로 계속 이용 • 다양한 수준의 이용 장애인 구성으로 인한 긍정적 상호 작용 • 유사 돌봄서비스 수준 정도의 이용자 개인별 지원 • 이용자 제한, 단순 돌봄 등 부정적 인식 개선되면 이용 고려 • 장애 자녀의 중·고령 연령 진입 시 이용 고려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서비스 이용 중단 사유	• 서비스 이용기한 만료 •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상대적 기능(신체적·정신적) 저하 등으로 계속 이용에 대한 심적 부담감, 자발적 서비스 중단 • 종사자의 이용자 도전적 행동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 보호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종사자 대응 태도
	신규 이용자 모집 영향 요인	• 주간이용시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유사 돌봄서비스의 다양한 장점(직업생활과 연계 가능, 무료 이용료, 1:1 또는 1:2 개인별 지원, 활발한 외부활동 등) • 신규 돌봄서비스 이용 진입자는 주간이용시설 외 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 •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으로 애초 서비스 선택지에서 제외 •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 확보된 시설 서비스 선호
주간 이용 시설 발전 방향	지역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중추적 역할	•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서비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노후생활 영위 지원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 지원기관 역할 • 이용자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자의 돌봄 공백 대응 • 이용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경험 등) • 기본적인 일상생활 훈련 교육 강화를 통한 자립역량 향상 • 보호자의 돌봄휴식과 이용자의 자립생활 훈련 욕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숙박체험 •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이용자 고령화 대응 프로그램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 학령기 이후 적절한 돌봄서비스 선택을 위해 학교 대상 홍보 활동 • 돌봄서비스 이용 진입자 대상으로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홍보
주간 이용 시설 운영 개선 정책 제언	시설 인프라 개선	• 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선호도 대응을 위한 공급 확대 • 주간돌봄과 함께 응급 및 일시 돌봄 시스템 병행 운영 •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 시설 운영 • 최중증 돌봄 시설 정원 규모 하향 조정 • 서비스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충
	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 돌봄서비스 통합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비교가 가능한 보호자(장애인 부모) 정보 플랫폼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	• 지원 인력의 발달장애인 이해 등 교육 필요 • 추가급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종사자 장기근속 유도

3 결론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개선방안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돌봄서비스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필요함
-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을 고려한 이용자 맞춤형 장애인주간이용시설유형(예시: 뇌병변 주간이용시설, 40+ 주간이용시설, 통합돌봄형 주간이용시설 등)이 필요함
- 중고령 발달장애인 인구가 증가 추세이고 현행 장애인주간이용시설도 이미 이용자가 중고령화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확충
- 유사 돌봄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돌봄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발달장애 인구 대비 지역돌봄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부터 신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돌봄서비스 제공 기피 대상과 유사 서비스 이용 기피자에게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집중 돌봄 지원 이용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을 유사돌봄서비스 수준(1:2 또는 최중증 1:1)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주간이용시설별 대체인력 지원은 최대 5일인데, 본조사 결과 시설에서는 적어도 16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현실과 괴리가 큼. 주간이용시설도 최소한 단기거주시설 기준(1인당 3일)으로 변경하여 유사시설 간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주간이용시설 운영비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시설의 사업수익과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 시설 운영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특성(이용자 특성 시설유형)을 고려한 차등 운영비 지원기준이 필요함
- 쾌적한 시설환경에 대한 이용자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가 중고령화 단계에 진입하여 돌봄 통합지원에 봉착하였음. 이에 주간이용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연면적으로 설정할 경우 노인데이케어센터(1인당 18.0m^2) 수준, 활동공간 기준일 경우 1인당 8.3m^2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고 중고령화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종사자의 교육 욕구가 높음.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

센터의 관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간이용시설에 교육 참여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본조사 결과 이직 및 이직 고려의 주요 사유는 번아웃과 열악한 처우가 압도적이며, 종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데 실행되지 못하는 교육이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나타났음. 이에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됨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보험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동일한 서비스 대상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돌봄 위험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과거 부정적 이미지 고착, 정보 부재가 주요 원인이므로 특수학교 및 학급, 장애인 부모(보호자)가 이용하는 정보 플랫폼,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구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제언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중고령 이용자의 돌봄통합지원(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설로 운영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체계적·효율적 지역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중앙환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주간이용시설의 중앙환원은 지역돌봄서비스의 총 공급량 관리가 가능하여 지역 서비스 불균형과 이용제한 및 누락 등과 같은 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 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행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기준을 뛰어 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지역돌봄서비스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주간이용시설 확충은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함. 이에 주간이용시설의 실 대기인원 파악 및 유사 서비스 공급 확대, 유사 서비스 이용 전환 의향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해 시설 확충의 우선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급변하는 장애인 지역돌봄서비스 정책으로 인해 주간이용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종사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 대응에 대한 연대도 매우 중요함
- 다양한 지역돌봄서비스 확대 공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이용자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임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3. 연구 추진체계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1. 장애인 돌봄서비스 정책 환경 분석 11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해 15
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유사 서비스 27

제3장 서울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47

1. 조사 개요 49
2.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현황 51
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근로 현황 146
4. 소결 171

제4장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 결과 175

1. 조사 개요 177
2. 주요 분석 결과 180
3. 소결 204

제5장 결론 207

1.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개선방안 209
2. 제언 228

참고문헌 231

표 목차

[표 2-1]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주 이용대상 연령별 인구 변화(2020~2023년) ····· 12
[표 2-2] 전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2019.12.~2024.4.) ····· 18
[표 2-3] 전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2021~2023) ····· 19
[표 2-4]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정원충족률(5개 시도) ····· 20
[표 2-5] 2019년,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 연령 현황 비교 ····· 21
[표 2-6] 2019년,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 도전적 행동 ····· 22
[표 2-7] 2019년,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 일상생활 수행 정도 ····· 23
[표 2-8]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정원충족률 및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인 수(전국) ····· 24
[표 2-9]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근속년수(전국) ····· 25
[표 2-10] 서울시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비교(2025.1.기준) ····· 31
[표 2-11] 국외 주간보호서비스 사례 ····· 44
[표 3-1] 조사 방법 ····· 49
[표 3-2] 기관용 설문조사 주요 내용 ····· 50
[표 3-3] 기관용 설문조사 주요 내용 ····· 50
[표 3-4] 시설 일반 현황 ····· 52
[표 3-5] 건물 소유 형태_운영주체별 ····· 53
[표 3-6] 건물 소유 형태_운영 형태별 ····· 54
[표 3-7] 유상임대 임대료 지급액 ····· 54
[표 3-8] 시설 이용제한 기준_운영 형태별 ····· 56
[표 3-9] 시설 이용제한 기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57
[표 3-10] 시설 운영시간 ····· 58
[표 3-11]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여부 ····· 59
[표 3-12]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시간 ····· 59
[표 3-13] 시설 추가 이용 가능 여부 ····· 60
[표 3-14] 시설 추가 이용 가능 시간 ····· 60

[표 3-15] 1인당 월 이용료 ····· 61
[표 3-16] 월 이용료 할인 ····· 62
[표 3-17] 정규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실비 부여 여부 ····· 63
[표 3-18] 1인당 월 송영 서비스 차량 이용료 및 중식비 ····· 64
[표 3-19] 중식 제공 방법 ····· 64
[표 3-20] 차량 보유 현황 ····· 65
[표 3-21] 차량 보유 경로_운영 형태별 ····· 66
[표 3-22] 추가 필요 차량 수 ····· 67
[표 3-23] 주요 공간 운영 총괄 현황 ····· 68
[표 3-24] 현재 설치공간 현황_운영 형태별 ····· 70
[표 3-25] 현재 설치공간 현황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72
[표 3-26] 전용 공간 필요 여부_운영 형태별 ····· 73
[표 3-27] 전용 공간 필요 여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74
[표 3-28] 세입 및 세출 현황_전체 ····· 76
[표 3-29] 세입 및 세출 현황_운영 형태별 ····· 79
[표 3-30] 세입 및 세출 현황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81
[표 3-31]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 1 ····· 83
[표 3-32]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 2 ····· 83
[표 3-33] 서울시 지원 외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현황 ····· 84
[표 3-34] 최근 3년간 시설 이용자 현황 ····· 85
[표 3-35] 이용자 기본 특성 ····· 88
[표 3-36] 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 ····· 89
[표 3-37]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 90
[표 3-38] 이용자 일상생활 수행수준 ····· 92
[표 3-39] 이용자의 만성질환 ····· 93
[표 3-40] 이용자의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 ····· 95
[표 3-41] 종사자 규모 및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 96
[표 3-42] 종사자 보유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증 ····· 97
[표 3-43] 종사자 현 기관 근무 경력 ····· 98
[표 3-44] 복지시설 근무 경력 ····· 99

[표 3-45]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1 ····· 103
[표 3-46]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2 ····· 104
[표 3-47]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3 ····· 104
[표 3-48] 시설 운영 시 추가 인력 필요 여부 ····· 105
[표 3-49] 시설 운영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 유형 1(1순위 기준) ····· 106
[표 3-50] 시설 운영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 유형 2(1순위 기준) ····· 106
[표 3-51] 대체인력 활용 경험 및 활용 일수/필요 일수 ····· 107
[표 3-52] 대체인력 활용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107
[표 3-53] 최근 3년 종사자 퇴직 인원 ····· 109
[표 3-54] 종사자 퇴직 주요 영향 1 ····· 110
[표 3-55] 종사자 퇴직 주요 영향 2 ····· 110
[표 3-56] 종사자(시설장 포함) 교육비 및 교육 이수 시간 ····· 111
[표 3-57]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현재 실행수준 ····· 112
[표 3-58]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필요수준 ····· 114
[표 3-59]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행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 117
[표 3-60]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행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118
[표 3-61] 현재 사업 수행수준 ····· 120
[표 3-62] 사업 수행 필요수준 ····· 122
[표 3-63] 현재 사업 수행수준 및 수행 필요수준 차이 ····· 126
[표 3-64] 현재 사업 수행수준 및 수행 필요수준 차이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131
[표 3-65]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_전체 ····· 136
[표 3-66]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_시설 특성별 ····· 137
[표 3-67]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_전체 ····· 140
[표 3-68]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_시설 특성별 ····· 141
[표 3-69] 시설 역할 적합성_전체 ····· 144
[표 3-70] 시설 역할 적합성_시설유형별 ····· 145
[표 3-71] 종사자 일반 현황 ····· 146
[표 3-72] 향후 이직 의향 ····· 147
[표 3-73] 향후 이직 의향 주요 배경_1 ····· 149
[표 3-74] 향후 이직 의향 주요 배경_2 ····· 150

[표 3-75] 실제 초과근무 시간 ····· 151
[표 3-76] 인정 시간 외 초과근무 시간보상 1 ····· 152
[표 3-77] 인정 시간 외 초과근무 시간보상 2 ····· 152
[표 3-78] 초과근무 시 주요 수행 업무 1 ····· 153
[표 3-79] 초과근무 시 주요 수행 업무 2 ····· 154
[표 3-80]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현재 이수 수준 ····· 155
[표 3-81]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필요수준 ····· 157
[표 3-82]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이수 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 161
[표 3-83]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이수 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_직종 및 직위별 ····· 162
[표 3-84]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이수 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163
[표 3-85] 종사자 개인별 업무투입 비중_전체 ····· 165
[표 3-86] 종사자 개인별 업무투입 비중_직종 및 직위별 ····· 170
[표 3-87] 종사자 개인별 업무투입 비중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170
[표 4-1]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방법 ····· 178
[표 4-2]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주요 내용 ····· 178
[표 4-3]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참여자 주요정보 ····· 179
[표 4-4]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조사 결과 요약 ····· 180
[표 5-1]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역할 변화 ····· 211
[표 5-2]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수요 추정 ····· 215
[표 5-3] 서울시 자치구별 발달장애 인구 및 장애인주간돌봄시설 분포 현황 ····· 216
[표 5-4]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력 배치기준 비교(복지부 vs. 서울시) ····· 217
[표 5-5]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비 및 이용료 지원기준 비교(복지부 vs. 서울시) ····· 220
[표 5-6]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주요세입재원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 현황 ····· 221
[표 5-7] 유사 지역돌봄서비스간 시설면적 비교 ····· 222
[표 5-8] 발달장애인 지원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 224
[표 5-9] 서울시 마음건강 관련 교육과정 ····· 225
[표 5-1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22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7
[그림 2-1]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수(2020~2023년) ····· 11
[그림 3-1] 세입 현황 ····· 75
[그림 3-2] 세출 현황 ····· 76
[그림 3-3] 세입 현황_운영 형태별 ····· 78
[그림 3-4] 세출 현황_운영 형태별 ····· 78
[그림 3-5]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 ····· 82
[그림 3-6] 이용자 기본 특성_전체 ····· 87
[그림 3-7] 이용자 기본 특성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87
[그림 3-8]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 90
[그림 3-9] 이용자 일상생활 수행수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91
[그림 3-10] 이용자 만성질환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3순위) ····· 93
[그림 3-11] 이용자의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3순위) ····· 94
[그림 3-12] 종사자 현 기관 근무 경력 ····· 98
[그림 3-13]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_전체 ····· 100
[그림 3-14]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_종사자 직위별 ····· 101
[그림 3-15]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_이용인 특성 시설별 종사자 ····· 102
[그림 3-16] 강화가 필요한 교육_전체(상위 10순위) ····· 116
[그림 3-17] 강화가 필요한 교육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 116
[그림 3-18] 수행 확대가 필요한 사업_전체(상위 10순위) ····· 125
[그림 3-19] 수행 축소가 필요한 사업_전체(상위 10순위) ····· 126
[그림 3-20] 수행 확대가 필요한 사업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 130
[그림 3-21] 수행 축소가 필요한 사업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 130
[그림 3-22]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_전체(상위 10순위) ····· 135
[그림 3-2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 135

[그림 3-24]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_전체(상위 10순위) ····· 139
[그림 3-25]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 139
[그림 3-26] 시설 역할 적합성_전체(상위 10순위) ····· 143
[그림 3-27] 시설 역할 적합성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 143
[그림 3-28] 강화가 필요한 교육_전체(상위 10순위) ····· 158
[그림 3-29] 강화가 필요한 교육_직종·직위별(상위 5순위) ····· 159
[그림 3-30] 강화가 필요한 교육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 160
[그림 3-31]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확대 및 축소가 필요한 사업_전체 ····· 165
[그림 3-32]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확대가 필요한 사업_직종·직위별(상위 3순위) ····· 167
[그림 3-33]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축소가 필요한 사업_직종·직위별(상위 3순위) ····· 167
[그림 3-34]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확대가 필요한 사업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3순위) 169
[그림 3-35]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축소가 필요한 사업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3순위) 169
[그림 5-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210

제 1 장

연구 개요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격히 변화하는 장애인복지환경에 따른 지역돌봄서비스 확대

- 장애인주간이용시설(2024년 이전 주간보호시설)은 1996년 복지부의 시범사업 이후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법정 장애인복지시설유형으로 포함되었음
- 주간이용시설은 거의 30년 동안 중증장애인의 지역돌봄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2005년만 하더라도 서울시 소재 시설이 60개이었으나 2024년은 134개(보조금 미지원 시설 4개 포함)로 2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주간이용시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 5. 20. 제정)에 따른 다양한 낮활동 지원 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공급되기 전에는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에 독보적인 존재이었으나 지금은 유사 서비스와 경쟁구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개별지원 중심의 발달장애인지원사업으로 인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역할 변화 요구

- 초창기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설립 목적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게 보호(Care)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정의 경제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었음.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면 2011년부터는 낮 동안의 단순보호에서 벗어나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 제공을 강조하였고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는 지역사회생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

원 기회 제공이 시설의 운영 목적으로 발전하였음

- 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주간이용시설은 유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역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택권을 기초로 활발한 낮활동 참여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 주간보호시설이 2024년 주간이용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역할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설 운영 환경

-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같은 낮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간이용시설의 이용자 특성이나 서비스 내용에서 서로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이용시설과 다르게 1:1 집중지원 또는 1:2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용료도 없음. 또한 서비스 제공의 기본설비 환경도 주간이용시설에 비해 양호함
-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 인력 배치기준이 운영 초창기보다 상향 조정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이용자 특성(도전적 행동, 뇌병변·발달 중복장애, 중고령층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인력 배치기준, 최소 시설 설치 면적 기준, 증가하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운영비 지원, 이용료 의존도가 높은 시설 운영 등으로 시설 역할 변화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장애인복지환경 변화는 주간이용시설에 개별지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임.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법정 장애인복지시설유형으로 포함되었으나, 그 후 단 한 번도 법적 기준이나 법규 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변화하는 장애인복지환경에 대응 가능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지역돌봄서비스 확대, 장애인인구 변화 및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간이용시설 역할 재정립에 따른 인적·물리적·재정적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개선에 요구되는 법적·행정적 실행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국·내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지역돌봄 지원사업 현황 분석

- 관련 선행연구 및 사업운영 안내, 서울시 내부자료 등을 통해 장애인 지역돌봄 지원사업의 도입 배경, 사업 내용 및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하였고 주간이용시설을 비롯한 평생교육센터,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상호 비교·분석하였음
- 미국·유럽·일본 등 국외 장애인주간돌봄 시설과 국내 주간이용시설 간 운영체계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실태 분석

- 선행연구 분석과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울시 소재 134개(보조금 미지원 기관 4개소 포함)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직무 현황에 대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음. 본조사 전 조사표 오류를 찾고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Pre-test)를 실시하였음
- 2025년 6월 기준 서비스 이용료 및 시간, 시설 설비, 예산(2024년 결산 기준), 이용자, 인력, 서비스 제공 수준, 전문성, 교육, 시설 운영 어려움 및 필요 지원 등에 대한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음. 시설 운영현황 조사 결과는 인력 배치, 예산 지원, 시설 기능 재정립 방향성 설정,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종사자 직무 현황 조사는 종사자의 기본·핵심·부가 업무 및 종사자 직종별 세부 직무에 대한 투입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고 직무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강화될 직무를 도출하고자 함

주간이용시설 이용자(부모 및 보호자) 지역돌봄서비스 욕구 파악

- 다양한 지역돌봄서비스 이용자(부모) 1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주간이용시설과 유사 서비스 비교, 주간이용시설 경쟁력 등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인터뷰 결과는 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 및 유사 서비스 대비 경쟁적 강화 방안 도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정책과제 도출

- 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및 이용자 대면조사 결과, 지역돌봄 정책환경 변화를 토대로 주간이용시설의 기능 재정립 방향성을 제안함
-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정립된 주간이용시설 기능에 대응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종사자 배치기준 및 운영비 지원기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이용자 개별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공간 기준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제안한 정책과제 실행에 요구되는 주요 이해관계자(보건복지부,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을 제안함

3 연구 추진체계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개선방안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성과 개선방안의 전문성, 현장성 및 정책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연구착수 간담회(3월)

- 서울시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관련 협회 관계자 등 6명
- 연구 추진배경, 연구 내용 및 범위 등 논의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6~9월)

- 조사표 2종(시설용, 종사자용) 구성 및 현장전문가 검토 2회(4~5월)
- 주간이용시설 4개소 조사표 사전검사(6월)
- 시설조사 표본 134개 중 120개소 참여, 회수율 89.5%
- 전체 종사자 592명 중 495명 참여, 회수율 83.6%

⇩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8월) 및 분석(9~10월)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유사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부모) 16명 대면 인터뷰
- 서비스 이용 장애인 특성 기준 총 6개 그룹 구성, 그룹별 1회씩 진행(그룹당 2~4명 참석)
- 주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이용 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향후 주간이용시설 이용 욕구 등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개선방안 도출(10~11월)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 재정립안
- 인력 배치 및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방안
-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 서울시, 주간이용시설 역할 등

⇩

관련 전문가 자문(11월)

- 연구계 및 현장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7명
- 주간이용시설 개선방안 논의
- 수정·보완 사항 자문

⇩

최종보고서 제출(12월)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배경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2장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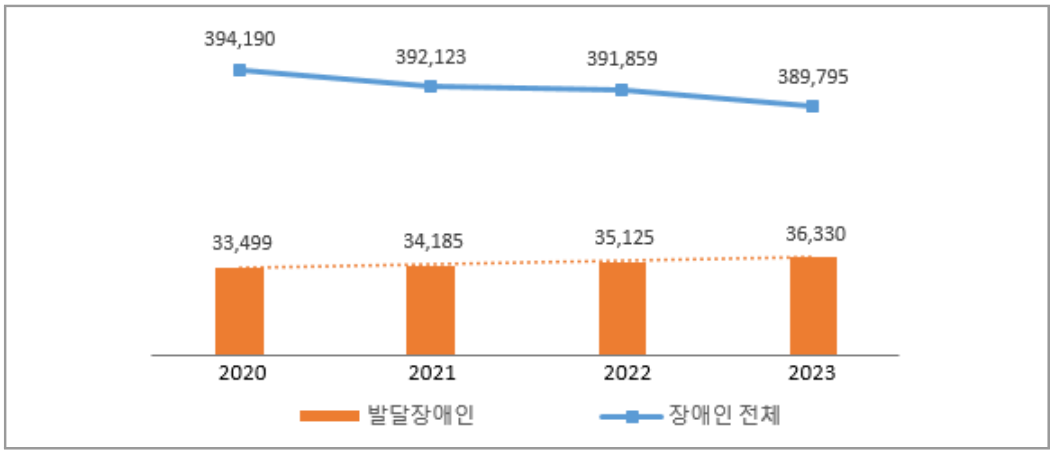
1 장애인 돌봄서비스 정책 환경 분석

1) 주요 서비스 이용자 인구 변화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 증가

- 최근 4년간(2020~2023년) 서울시 총인구 감소와 함께 전체 등록 장애인 수가 감소하는 데 비해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함(2020년 33,499명 → 2023년 36,330명)

(단위: 명)



▌그림 2-1 ▌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수(2020~2023년)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 검색일 2025.4.9.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주 이용대상 장애유형(발달장애,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중 발달장애, 청각/언어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각, 뇌병변장애 인구수는 감소함

- 4개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 인구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함
- 주간이용시설 주 이용 연령층인 20~50대의 시각, 청각언어, 뇌병변장애 인구는 감소함.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청각언어장애 인구가 증가함

▌표 2-1▐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주 이용대상 연령별 인구 변화(2020~2023년)

(단위: 명)

구분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합계	33,499	34,185	35,125	36,330	40,905	40,299	39,859	38,940	41,624	41,220	40,991	40,706	60,844	63,130	65,416	67,166
9세 이하	2,783	2,826	2,976	3,319	911	870	838	791	134	121	109	103	741	716	672	571
10~19세	6,190	6,316	6,582	6,871	936	896	857	825	328	303	309	297	573	554	536	512
20~29세	9,316	9,256	9,048	8,873	1,238	1,221	1,215	1,210	1,262	1,188	1,149	1,135	1,065	1,020	1,015	963
30~39세	6,000	6,207	6,499	6,819	1,386	1,325	1,277	1,254	2,385	2,256	2,122	2,012	1,258	1,225	1,150	1,149
40~49세	4,302	4,392	4,540	4,647	2,706	2,602	2,496	2,411	4,414	4,181	3,940	3,755	2,253	2,124	2,053	1,910
50~59세	2,837	2,958	3,126	3,324	5,322	5,080	4,975	4,836	7,033	6,781	6,513	6,434	5,042	4,672	4,431	4,256
60~69세	1,555	1,695	1,783	1,871	9,972	10,019	9,703	9,490	9,497	9,538	9,502	9,415	10,464	10,896	10,836	11,145
70~79세	402	416	446	482	11,515	10,977	10,595	10,283	10,409	10,207	9,932	9,743	18,527	18,864	18,795	19,246
80세 이상	114	119	125	124	6,919	7,309	7,903	7,840	6,162	6,645	7,415	7,812	20,921	23,059	25,928	27,414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 검색일 2025.4.9.

중고령 발달장애인 증가 추세

- 과거와 달리 발달장애인의 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학 발전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의 영향으로 추정함(세계장애동향, 2025). 최근 10년간 전국 등록 발달장애인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령 발달장애인(40세 이상)의 증가율은 더욱 높게 나타남(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현황)
  - 40세 미만 : 2015년 143,193명 → 2024년 186,266명(연평균 3.0% 증가)
  - 40세 이상 : 2015년 67,662명 → 2024년 94,406명(연평균 3.8% 증가)
-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도 최근 4년간(2020~2023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령 발달장애인(40세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이 40세 미만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40세 미만 : 2020년 24,289명 → 2023년 25,882명(연평균 2.1% 증가)
  - 40세 이상 : 2020년 9,210명 → 2023년 10,448명(연평균 4.3% 증가)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비중도 높게 나타남
  - 2022년 말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중고령 발달장애인(45세 이상)은 전체 이용자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김미옥 외, 2023),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에서 중고령 발달장애인(40세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약 29%로 나타남(경기복지재단, 2023).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에서 이용자 중 중고령 장애인(40세 이상)의 비중은 22.2%로, 2019년 16.7% 대비 5.5%p 증가함(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4)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주요 정책 변화

UN장애인권리협약 발효 및 발달장애인법 제정

- 1992년 정부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중복장애인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보호수준 향상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책을 발표함
- 1996년부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 운영되었으나 활동 지원 서비스 및 주간보호 등의 필요량에 비해 제공량이 부족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짐(발달장애인맞춤형지원계획, 2012, p18)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2009년 1월),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 및 사회적 관심 확대 등에 따라 정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을 제정(2014.5.20.제정, 2015.11.21.시행)하고, 제2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 정부는 2012년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2016.1.7.제정·시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

- 2018년 9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둔 계획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함
- 2019년부터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함.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64세(2025년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임
- 「발달장애인법」의 개정(2022.6.10.일부개정. 2024.6.11.시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2024년 6월)이 포함됨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및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 평일 낮 시간을 주로 집 안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60.1%(2023년 기준)로 높고, 2025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2025.3.18.제정, 2027.3.19.시행) 제정으로 지역사회 내 주간이용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임. 특히 탈시설로 거주지가 변경된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있는 안전한 시설에서 낮 시간 동안 돌봄과 활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2024.3.26.제정, 2026.3.27.시행) 시행 후 통합지원 대상자(일상생활 유지에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가 자신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해

1)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변천 과정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변천사

- 1996년 장애인복지관 등에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시작
- 초기에는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으로 운영(~2004년까지)
  - 2004년까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국비 40%, 지방비 60%)으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사업 수행
  - 시설당 보호대상 실인원 최소 10인 운영(2025년 현재까지 유지)
  - 인력 지원기준 : 주간보호시설 시설장 포함 3인(~2010년까지)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
  - 2005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운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운영지침이 존재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함

장애인의 '이용자성 강조' 기조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 구체화

- 2009년 이용 장애인 15인 이상 시설 인력가중지원
- 2011년 장애인을 '보호대상' ⇒ '이용주체'로 변화, 시설은 단독시설로 운영
- 2013년 종사자 배치기준 구체화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력 지원기준은 총 인원수 기준 2010년 이전 시설장 포함 3인 ⇒ 2011년 4인 ⇒ 2012년 5인에서 2013년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이용장애인 4인당 1인 기준), 기능직 1명'으로 구체화 함
- 2018년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신설
- 2019년 이용시간 삭제, 수행사업 전면수정, 시설공간 배치기준 명시
  - 2019년부터 운영지침에서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각 기관의 자율에 맡김

- 또한 사업 내용은 실제 수행사업으로 보완하여 전면 수정함(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특별활동 지원 등)
- 이용 장애인을 위한 시설공간 배치기준(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 서비스 공간 확보 및 배치) 명시, 지자체장의 인력 배치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등

시설 종사자 배치 확대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명칭 변경

○ 2022년 개별지원 공간 확보 명시, 시설 종사자 배치 확대(3:1)

-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에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해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 확보'를 추가함
- 추가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인력 배치기준에 사무원 1인 추가(지자체 협의 가능)하고, 2022년 사회재활교사를 이용 장애인 3인당 1인 배치로 변경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2013년~2019년)

직종별	비고
시설장 1인	상근 원칙(단, 시설 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 가능)
사회재활교사 3인	이용 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복합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022년 이후)

직종별	비고
시설장	상근 원칙(단, 시설 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 가능)
사회재활교사	이용 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에 복합 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 승인하에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가능.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2023년 서비스 최저기준, 최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마련 노력 명시

○ 2024년 시설명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변경

- 2024년부터 시설명칭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변경함과 더불어 시설 운영 목적에서 장애인 가족 관련 내용을 삭제함
- 이로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초기의 보호자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중심에서 최근에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시설임을 명확히 함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목적

(2010년 이전)	(2011년~2023년)	(2024년 이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018년~ : 재활 프로그램 ⇒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출처: 보건복지부, 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현황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전국 현황

- 2024년 4월 기준 전국 849개소(종사자 4,647명), 서울 135개소(종사자 631명)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운영 중임
- 전국적으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와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임
  - 전국 시설 2019년 769개소에서 2023년 849개소로 80개소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종사자 수는 3,266명에서 4,358명으로 1,092명 증가함
  - 시설 수는 연평균 2.51% 증가한데 비해 종사자 수는 연평균 7.48% 증가로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데, 2022년도 인력 배치기준 변경(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 장애인 4명 → 3명으로 변경)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 시설은 2019년 128개소에서 2023년 135개소로 증가, 종사자 수는 2019년 437명에서 2023년 614명으로 증가함

▌표 2-2▐ 전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2019.12.~2024.4.)

(단위: 개소,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4.기준	
	시설 수	종사자	시설 수	종사자	시설 수	종사자	시설 수	종사자	시설 수	종사자	시설 수	종사자
전국	**769**	**3,266**	**797**	**3,526**	**818**	**3,716**	**840**	**3,971**	**849**	**4,358**	**849**	**4,647**
서울	128	437	128	458	132	502	134	526	135	614	135	631
부산	61	184	63	202	65	210	67	217	67	212	67	220
대구	51	166	51	170	51	171	51	181	53	204	53	206
인천	39	155	39	156	42	178	42	199	43	206	43	210
광주	37	163	38	169	38	174	39	175	39	202	39	211
대전	42	141	46	156	47	162	49	164	48	165	48	248
울산	37	122	39	130	39	140	41	148	42	153	42	154
세종	2	14	3	22	3	24	3	27	3	27	3	27
경기	136	871	143	934	148	1,015	152	1,082	158	1,228	158	1,300
강원	18	80	19	89	19	104	19	107	19	119	19	138
충북	18	106	21	118	22	127	25	152	26	170	26	175
충남	15	76	16	107	19	89	19	94	19	101	19	103
전북	31	105	33	133	34	126	34	143	35	156	35	158
전남	27	122	27	122	27	136	28	139	29	158	29	177
경북	50	214	53	221	53	219	55	223	51	225	51	237
경남	51	163	52	180	52	173	53	194	51	191	51	202
제주	26	147	26	159	27	166	29	200	31	227	31	250

출처: 보건복지부(2020~2024). '(각 년도)보건복지통계연보'. 2019~2023년도(시설 수/종사자 수)
2024년4월기준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보건복지부_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현황표. 검색일 2025.4.3. *2024년부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명칭변경

- 2024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5.5명,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는 3.1명이며, 서울시는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 4.7명,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 2.7명임(※ 종사자 : 사회재활교사 포함 전체 종사자)
- 전국 시설 이용 정원 평균은 16.9명(2024.4.기준)이며, 전국 시설 총 894개 중 522개소(61.5%)는 이용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함
  - 서울시는 이용 정원 평균 12.8명(2024.4.기준)으로 소규모 운영시설이 다수임. 최소 운영 기준인 이용 정원 10명인 시설이 총 135개 중 40개소(29.6%)이며, 이용 정원 20명을 초과하는 시설은 1개소에 불과함. 서울시 시설 중 66개소(48.8%)는 이용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함

▌표 2-3▐ 전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명)

구분	2021년					2022년(2023.8.기준)					2023년(2024.4.기준)				
	시설 수	종사자(정원)	이용자(정원)	시설당 평균 종사자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시설 수	종사자(정원)	이용자(정원)	시설당 평균 종사자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시설 수	종사자(정원)	이용자(정원)	시설당 평균 종사자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전국	**818**	**3,869**	**13,989**	**4.7**	**3.6**	**840**	**4,155**	**14,336**	**4.9**	**3.5**	**849**	**4,647**	**14,383**	**5.5**	**3.1**
서울	132	505	1,658	3.8	3.3	134	523	1,700	3.9	3.3	135	631	1,724	4.7	2.7
부산	65	213	1,009	3.3	4.7	67	217	1,015	3.2	4.7	67	220	1,028	3.3	4.7
대구	51	170	846	3.3	5.0	51	183	855	3.6	4.7	53	206	895	3.9	4.3
인천	42	182	644	4.3	3.5	42	205	646	4.9	3.2	43	210	658	4.9	3.1
광주	38	178	743	4.7	4.2	39	182	738	4.7	4.1	39	211	709	5.4	3.4
대전	47	214	672	4.6	3.1	49	239	694	4.9	2.9	48	248	685	5.2	2.8
울산	39	137	520	3.5	3.8	41	147	560	3.6	3.8	42	154	569	3.7	3.7
세종	3	27	76	9.0	2.8	3	27	71	9.0	2.6	3	27	70	9.0	2.6
경기	148	1,052	3,310	7.1	3.1	152	1,117	3,386	7.3	3.0	158	1,300	3,413	8.2	2.6
강원	19	105	369	5.5	3.5	19	121	376	6.4	3.1	19	138	363	7.3	2.6
충북	22	131	437	6.0	3.3	25	157	468	6.3	3.0	26	175	485	6.7	2.8
충남	19	90	320	4.7	3.6	19	100	315	5.3	3.2	19	103	307	5.4	3.0
전북	34	133	561	3.9	4.2	34	147	585	4.3	4.0	35	158	595	4.5	3.8
전남	27	155	594	5.7	3.8	28	139	582	5.0	4.2	29	177	611	6.1	3.5
경북	53	224	832	4.2	3.7	55	232	859	4.2	3.7	51	237	782	4.6	3.3
경남	52	181	892	3.5	4.9	53	203	936	3.8	4.6	51	202	904	4.0	4.5
제주	27	172	506	6.4	2.9	29	216	550	7.4	2.5	31	250	585	8.1	2.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보건복지부_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현황. 검색일 2025.4.3.
*종사자 수는 '정원'기준으로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와 차이가 존재함.
*2024년부터 주간보호시설에서 주간이용시설로 명칭변경

○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최근 3개년 이용자 정원충족률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2021년 94.1%에서 2023년 89.6%로 4.5%p 낮아짐. 반면 2021년 정원충족률이 85% 이하로 낮았던 타 지역의 이용자 정원충족률은 전반적으로 다소 높아짐

- 이용자 정원충족률 100%인 시설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지역은 서울시와 제주 지역이며, 경기, 세종, 대전 지역은 3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다수의 시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정원충족률(5개 시도)

(단위: 명, 개소, %)

구분		서울	경기	세종	대전	제주
2023년	이용자(정원)	1,724	3,413	70	685	585
	이용자(현원)	1,545	2,949	56	575	545
	전체 정원충족률	89.6	86.4	80.0	83.9	93.2
	시설 수	135(100.0)	158(100.0)	3(100.0)	48(100.0)	31(100.0)
	100%충족**	69(51.1)	45(28.5)	-	15(31.3)	16(51.6)
	99~95%	-	13(8.2)	-	-	1(3.2)
	94~90%	18(13.3)	35(22.2)	1(33.3)	8(16.7)	4(12.9)
	89~85%	8(5.9)	13(8.2)	-	2(4.2)	5(16.1)
	84~80%	20(14.8)	16(10.1)	1(33.3)	7(14.6)	3(9.7)
	80%미만	20(14.8)	36(22.8)	1(33.3)	16(33.3)	2(6.5)
2022년	이용자(정원)	1,700	3,386	71	694	550
	이용자(현원)	1,579	2,861	57	599	511
	전체 정원충족률	92.9	84.5	80.3	86.3	92.9
	시설 수	134(100.0)	152(100.0)	3(100.0)	49(100.0)	29(100.0)
	100%충족**	79(59.0)	34(22.4)	-	18(36.7)	16(55.2)
	99~95%	-	15(9.9)	-	-	1(3.4)
	94~90%	13(9.7)	19(12.5)	1(33.3)	6(12.2)	2(6.9)
	89~85%	7(5.2)	16(10.5)	-	5(10.2)	5(17.2)
	84~80%	19(14.2)	28(18.4)	1(33.3)	8(16.3)	1(3.4)
	80%미만	16(11.9)	40(26.3)	1(33.3)	12(24.5)	4(13.8)
2021년	이용자(정원)	1,658	3,310	76	672	506
	이용자(현원)	1,560	2,734	55	541	429
	전체 정원충족률	94.1	82.6	72.4	80.5	84.8
	시설 수	132(100.0)	148(100.0)	3(100.0)	47(100.0)	27(100.0)
	100%충족**	82(62.1)	39(26.4)	-	15(31.9)	11(40.7)
	99~95%	1(0.8)	10(6.8)	-	-	1(3.7)
	94~90%	15(11.4)	28(18.9)	-	7(14.9)	3(11.1)
	89~85%	10(7.6)	11(7.4)	1(33.3)	3(6.4)	2(7.4)
	84~80%	9(6.8)	22(14.9)	-	6(12.8)	2(7.4)
	80%미만	15(11.4)	38(25.7)	2(66.7)	16(34.0)	8(29.6)

출처: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보건복지부_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현황. 검색일 2025.4.3.
**이용자 정원충족률 100%충족은 정원초과도 포함한 수치임

서울시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인력 지원 현황

- 서울시는 이용인 상시 10명 이상인 주간이용시설에 서비스 인력(시설장 포함) 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시설(128개소)은 2023년부터 1명을 추가지원하여 시설별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함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107개소)*은 2023년 5월부터 이용인 3명당 사회재활교사 1인을 추가 배치(최대 2명)하고, 운전원·조리원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을 지원(계약직, 생활임금기준, 1일 최대 6시간)함

  *상시 이용자가 10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정책 방향에 따라 2025년부터 이용인 15인 이상인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사회재활교사 인력을 추가지원함

- 이용인 10~11인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총 인력 5명(시설장 1, 사회재활교사 3, 기타 1)
- 이용인 12~14인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총 인력 6명(시설장 1, 사회재활교사 4, 기타 1)
- 이용인 15인 이상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총 인력 7명(시설장 1, 사회재활교사 5, 기타 1)

  *단, 시설장 겸직시설(또는 병설시설)은 시설장 인건비 제외

3)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주요 현안

이용인 20대 이하 감소, 30대 이상 증가

○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대비 이용인의 20대 이하 비율은 15.5%p 감소하고, 30대 이상은 1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5 | 2019년,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 연령 현황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2024년 연령 분포 비중	
			증감	차이(%p)
18세 이하	272 (6.0)	230 (3.5)	감소	2.5
20대	2,354 (52.0)	2,545 (39.0)	감소	13.0
30대	1,138 (25.2)	2,299 (35.3)	증가	10.1
40대	364 (8.0)	800 (12.3)	증가	4.3
50대	144 (3.2)	261 (4.0)	증가	0.8
60대	83 (1.8)	145 (2.2)	증가	0.4
70대 이상	169 (3.7)	238 (3.7)	동일	-
전체	4,524 (100.0)	6,518 (100.0)	-	

출처: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2024.2.).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21
한국장애인개발원(2019.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재인용)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18세 이하는 4~18세, 20대는 19~29세임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자·타해 및 기물파손) 및 일상생활 도움 필요 증가

○ 2019년 대비 2024년도 이용인의 심한 도전적 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타해, 기물파손 등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 2019년,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 도전적 행동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2024년 도전적 행동 비중 증감률	
			증감	차이(%p)
타해	482 (10.7)	701 (10.8)	증가	0.1
자해	400 (8.9)	656 (10.1)	증가	1.2
기물파손	99 (2.2)	223 (3.4)	증가	1.2
이탈행위	209 (4.7)	346 (5.3)	증가	0.6
소리지르기	497 (11.1)	647 (9.9)	감소	1.2
집착	580 (12.9)	825 (12.7)	감소	0.2
기타	576 (12.8)	546 (8.4)	감소	4.4
없음	1,643 (36.6)	2,574 (39.5)	증가	2.9
전체	4,486 (100.0)	6,518 (100.0)	-	

출처: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2024.2.).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19
한국장애인개발원(2019.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재인용)

○ 2019년 대비 2024년도 이용인의 일상생활 수행(외부활동, 신변처리, 식사)의 도움 필요 정도가 증가함

- 완전+약간 도움 필요 : 외부활동(10.1%p 증가), 신변처리(16.9%p 증가), 식사(10.8%p 증가)

▌표 2-7▐ 2019년,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 일상생활 수행 정도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2024년 수행정도 비중 증감률	
				증감	차이(%p)
외부활동 가능 정도	완전한 도움 필요	1,245 (27.5)	2,399 (36.8)	증가	9.3
	약간의 도움 필요	1,209 (26.6)	1,792 (27.5)	증가	0.9
	대부분 혼자서 가능	1,091 (24.0)	1,224 (18.8)	감소	5.2
	혼자서 가능	994 (21.9)	1,103 (16.9)	감소	5.0
신변처리 정도	완전한 도움 필요	805 (17.7)	1,622 (24.9)	증가	7.2
	약간의 도움 필요	800 (17.6)	1,779 (27.3)	증가	9.7
	대부분 혼자서 가능	1,213 (26.7)	1,404 (21.5)	감소	5.2
	혼자서 가능	1,720 (37.9)	1,713 (26.3)	감소	11.6
식사가능 정도	완전한 도움 필요	568 (12.6)	1,066 (16.4)	증가	3.8
	약간의 도움 필요	618 (13.6)	1,343 (20.6)	증가	7.0
	대부분 혼자서 가능	1,094 (24.1)	1,663 (25.5)	증가	1.4
	혼자서 가능	2,254 (49.7)	2,446 (37.5)	감소	12.2
전체		4,538 (100.0)	6,518 (100.0)	-	

출처: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2024.2.).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19~20
한국장애인개발원(2019.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재인용)
*2019년도는 활동 구분에 따라 전체 인원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 정원 미충족 상태

-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 2024년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 정원충족률은 전국 평균 88.1%, 서울 평균 90.7%로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인 수는 서울시 정원기준 1:3.3(현원기준 1:3.0) 으로 현원은 보건복지부 인력 배치기준(1:3.0)을 충족함. 이는 전국 평균 정원기준 1:4.2(현원기준 1:3.7) 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정원충족률 및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인 수(전국)

(단위: 명, %)

구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 수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인 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정원기준	현원기준
전국	7,381	6,506	88.1	1:4.2	1:3.7
서울	913	828	90.7	1:3.3	1:3.0
부산	688	636	92.4	1:6.4	1:5.9
대구	387	364	94.1	1:5.7	1:5.4
인천	592	515	87.0	1:3.7	1:3.2
광주	374	314	84.0	1:4.2	1:3.5
대전	166	136	81.9	1:5.2	1:4.3
울산	217	195	89.9	1:4.0	1:3.6
세종	55	42	76.4	1:3.7	1:2.8
경기	1,864	1,614	86.6	1:3.4	1:2.9
강원	167	143	85.6	1:3.6	1:3.0
충북	275	260	94.5	1:3.4	1:3.2
충남	150	137	91.3	1:3.4	1:3.1
전북	277	242	87.4	1:4.5	1:4.0
전남	416	359	86.3	1:4.5	1:3.9
경북	281	254	90.4	1:3.9	1:3.5
경남	292	218	74.7	1:5.7	1:4.3
제주	267	249	93.3	1:3.4	1:3.2

출처: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2024.2.).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21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짧은 근속기간

-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시설 종사자의 과반수가 근속기간 3년 미만, 68.7%가 근속년수 5년 미만으로 나타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 5년 미만이 58.8%(현명이, 2022)로 이와 비교해 보아도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근속기간 5년 미만 비율(68.7%)이 훨씬 높음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이 증가(2019년 20.2% → 2023년 45.0%)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5년 미만 종사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신규 인력을 유치하고 양성할 노력이 필요함(김미옥 외, 2023. p19)

▌표 2-9▐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근속년수(전국)

(단위: 명, %)

구분	계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10년	10년 이상
전국	2,366 (100)	424 (17.9)	631 (26.7)	375 (15.8)	267 (11.3)	232 (9.8)	437 (18.5)
서울	358 (100)	95 (26.5)	94 (26.3)	57 (15.9)	26 (7.3)	27 (7.5)	59 (16.5)
부산	150 (100)	25 (16.7)	32 (21.3)	21 (14)	15 (10)	22 (14.7)	35 (23.3)
대구	92 (100)	10 (10.9)	16 (17.4)	8 (8.7)	6 (6.5)	16 (17.4)	36 (39.1)
인천	195 (100)	19 (9.7)	57 (29.2)	37 (19)	10 (5.1)	23 (11.8)	49 (25.1)
광주	109 (100)	19 (17.4)	21 (19.3)	18 (16.5)	19 (17.4)	11 (10.1)	21 (19.3)
대전	44 (100)	0 (0)	13 (29.5)	7 (15.9)	5 (11.4)	8 (18.2)	11 (25)
울산	69 (100)	13 (18.8)	18 (26.1)	12 (17.4)	10 (14.5)	3 (4.3)	13 (18.8)
세종	17 (100)	2 (11.8)	7 (41.2)	8 (47.1)	0 (0)	0 (0)	0 (0)
경기	669 (100)	128 (19.1)	194 (29)	105 (15.7)	107 (16)	46 (6.9)	89 (13.3)
강원	61 (100)	13 (21.3)	17 (27.9)	10 (16.4)	7 (11.5)	6 (9.8)	8 (13.1)
충북	94 (100)	14 (14.9)	29 (30.9)	14 (14.9)	12 (12.8)	9 (9.6)	16 (17)
충남	51 (100)	10 (19.6)	12 (23.5)	19 (37.3)	4 (7.8)	4 (7.8)	2 (3.9)
전북	78 (100)	9 (11.5)	23 (29.5)	6 (7.7)	9 (11.5)	11 (14.1)	20 (25.6)
전남	117 (100)	17 (14.5)	30 (25.6)	13 (11.1)	12 (10.3)	19 (16.2)	26 (22.2)
경북	94 (100)	11 (11.7)	28 (29.8)	13 (13.8)	14 (14.9)	10 (10.6)	18 (19.1)
경남	66 (100)	14 (21.2)	17 (25.8)	10 (15.2)	6 (9.1)	5 (7.6)	14 (21.2)
제주	102 (100)	25 (24.5)	23 (22.5)	17 (16.7)	5 (4.9)	12 (11.8)	20 (19.6)

출처: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2024.2.).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15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심리지원' 부족

- 2023년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복지서비스 중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것은 보수교육비(78.4%)이며, 장기근속휴가와 자녀돌봄휴가 제공률은 각 72% 이상임. 반면, 종사자의 건강검진(27.9%)과 심리지원(16.0%) 제공률은 낮게 나타남(김미옥 외, 2023. p22)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중 해당 복지서비스 '있음' 비율 : 유급병가 83.0%, 장기근속휴가 72.9%, 자녀돌봄휴가 72.3%, 보수교육비 78.4%, 복지포인트 55.9%, 종사자특별수당 41.9%, 직책수당 39.8%, 건강검진 27.9%, 심리지원 16.0% 등
-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 조사(이병화 외, 2020)에서 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비율이 49.3%에 이름
  - 별도의 휴게시간 보장 23.5%, 점심시간 이용 휴식 23.5%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의 90% 이상, 현 시설 계속 이용 희망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실태 및 욕구조사(한연주 외, 2022)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92.6%에 달함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옮긴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33.2%이며, 옮긴 주된 이유의 47.9%가 '기관의 이용기간 제한'으로 나타남
  - 옮긴 이유 : 이용기간 제한 47.9%, 도전적 행동 등 부적격 행동 8.5% 등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해 57.6%가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곳을 대기해 둠' 20.1%, '쉬다가 찾아볼 예정' 6.0%, '가정에서 지낼 계획' 3.5%로 나타남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낮 시간 돌봄과 관련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 25.8%, '장애인 특성별 중점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22.6%, '소규모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19.1% 등이 나타남

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유사 서비스

1) 국내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이 있으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서비스 개념의 혼동이 있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지원금으로 운영하여 이용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바우처(주간활동 급여)는 해당 월이 지나면 소멸됨. 이용자는 급여자격(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주간활동을 이용할 수 있으며, 80% 이상 출석해야 바우처 비용을 100% 청구 가능함

- 이용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갱신 신청 시 심의 결과에 따라 갱신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명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은 매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시간만큼 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서비스 제공단가는 1인 집중지원(시간당 24,930원), 2인 그룹(시간당 16,620원), 3인 그룹(시간당 13,300원)으로 차등 단가가 적용됨
- 수급자가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는 외부활동 30% 이상 포함하고,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구성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간 및 인력 기준

- 공간: 활동공간(이용자 1명당 3.3㎡ 이상의 전용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전용공간 면적에서 3.3㎡를 나눈 인원수를 정원으로 함(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 지자체 신고 필요).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함
- 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용자 1개 그룹당 1인, 상근), 전담 관리인력(상근), 시설장(겸직 가능)을 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함.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은 사회복지사, 특수학

교 정교사/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평생교육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등으로 채용해야 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약칭: 통합돌봄서비스)

-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국비:시비(주간그룹형 50:5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25년 정부 사업 규모(24시간개별 340명, 주간개별 500명, 주간그룹 1,500명)임
  - 이용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제외
  -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갱신 신청 시 심의 결과에 따라 총 2회(회당 1년) 연장 가능.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은 매월 생성 및 소멸되며, 이용자가 월 급여시간(176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해야 바우처 비용을 100% 청구 가능함
  - 이용시간은 주중 낮 시간(주말·공휴일 휴무)으로 주간그룹형 월 최대 176시간임
  - 바우처로 본인부담금이 없으나 서비스 이용 중 식비, 송영비, 필요시 프로그램 활동비에 대해 실비 수준의 이용자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는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 차감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명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매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시간만큼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서비스 제공 기준단가는 시간당 24,930원(30분 단위 12,470원)임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지정원칙: 공개공모, 유효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 공간: 낮 활동공간(투명창 설치)은 24시간개별형과 주간개별형은 이용자 4명당 최소 33㎡ 이상, 주간그룹형은 이용자 2명당 최소 16.5㎡를 갖추어야 함. 24시간개별형은 1인 추가 시 9.9㎡ 공간 추가(야간 주거는 별도 기준), 주간그룹형은 1인 추가 시 6.6㎡ 공간 추가, 심신안정실 최소 6.6㎡ 이상, 기타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별도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인력: 제공인력과 이용자는 반드시 1:1 매칭을 준수해야 하며, 24시간개별형과 주간

개별형은 사업관리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24시간개별형은 제공인력 14명(이용인 10인기준), 주간개별형은 제공인력 5명(이용인 4인 기준), 주간그룹형은 제공인력과 이용자 1:1 매칭(그룹 구성 시 이용인 최대 3인)으로 운영함

- 주간그룹형 제공기관은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급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이용계약을 체결 후 이용 가능함(동시에 여러 곳 계약 불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시행됨. 학령기 이후(만 18세 이상)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함
  -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수업실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학생 3명당 교사 1명 이상 배치
  - 학업기간 : 5년(신규 모집자가 없을 경우 종결자 중 재이용 의사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 연장 가능). 타 자치구 평생교육센터 이용 이력도 확인함
  - 운영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수업시간: 오전 10시~오후4시). 방학 있음
  - 교육과정 : 필수과목(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긍정적 행동 지원), 선택과목(문화, 여가, 스포츠 등 발달장애인 희망과목 우선)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26조(평생교육지원)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 지정·위탁기관(설치주체 : 자치구청장)으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각 1개소씩 설치 운영 중임
  - 공간 : 센터당 전용면적 500㎡ 이상(「평생교육법」 시행령 시설·설비기준 준수 : 시설 총 면적이 300㎡ 이상일 것), 사무업무 공간 별도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된 공간에 우선 설치함
  - 인력(정원) : 센터당 12명 이상(학생 3명당 교사 1명 이상)이며, 센터당 특수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교사 채용 자격 요건은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작업치료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심리적 소진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됨('24년 시범, 2025년 본사업)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돌봄 지원), 제29조의 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며, 보호자의 긴급한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상황 등이 있을 때 일시돌봄(일상생활, 사회참여활동, 식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
  -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일~최대 7일(연 최대 30일)
  - 이용료 :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본인부담 15,000원) 선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
  - 이용사유 : 보호자의 치료/입원/재난/재해, 보호자 및 보호자 가족의 경조사,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최근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및 소견서·진료기록확인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서비스 사실확인서 등 증빙 필요)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성별을 구분하여 남·녀 총 2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동시에 운영 가능한 법인·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수행기관 신청이 가능하며, 3가지 유형(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 공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준하는 시설 기준을 준용함. 거실 1명당 최소 3.3㎡ 이상, 침실 1인실, 화장실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인력: 남·여 1개소당 이용 정원은 4명, 이용자 4인당 돌봄 인력 1인으로 운영(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동성 간 돌봄 원칙으로 배치)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장애인 1인이 입소한 날은 이용 정원 3명으로 조정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유사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비교

- 이용대상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유형 및 연령에 제한이 없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평생교육센터에 비해 이용자 폭이 넓지만 주요 이용자가 성인 발달장애인(80% 이상)으로 유사 서비스와 이용대상이 겹침

- 사업내용 : 지원하는 서비스도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특별활동 지원 등 유사 장애인주간돌봄서비스와 상당부분 유사함
- 활동공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 이상(개인당 9.9㎡ 권장)으로 주간활동서비스(이용자 1인당 전용면적 3.3㎡)나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이용자 2명당 최소 16.5㎡, 1인 추가 시 6.6㎡ 추가)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함. 평생교육센터는 시설 총면적 500㎡ 이상으로 공간이 비교적 넓음
- 제공인력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이용 장애인 3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을 배치해야 함. 평생교육센터도 학생 3명당 교사 1인 이상으로 주간이용시설과 비슷하며,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 1개 그룹(2~3명)당 제공인력 1인 지원,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인력 1:1 매칭 필수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 지원이 가능함
- 운영체계 : 주간활동서비스와 통합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받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설치 주체가 자치구청장으로 각 자치구에서 수행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을 함. 반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운영지침을 따르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지역(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함. 서울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을 꾀함

▌표 2-10▐ 서울시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비교(2025.1.기준)

구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2023년까지 주간보호시설 (지방이양사업,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시, 자치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바우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바우처)
설치 운영	- 1996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복지부 사업)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 - 2014년 7월 최중증 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운영(서울시) - 2024년 시설명칭 변경 :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용'시설 명확화)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 제공 - 2016년 3월 시행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스스로 원하는 일상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2016~2019.2.시범사업 - 2019년 3월 시행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한 돌봄체계 지원 필요 - 2024년6월(주간개별) - 2024년7월(주간그룹형) 시행

구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2023년까지 주간보호시설 (지방이양사업,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시, 자치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바우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바우처)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시행령 제44조	「발달장애인법」 제26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 2,3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 제공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낮활동 지원 통해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의미 있는 삶 추구 및 삶의 만족도 향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
대상	(지방이양사업)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장애유형·성별에 따라 시설에서 대상자 선정)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학령기 이후(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보건복지부): 2025년부터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통합돌봄이 필요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65세 이상 제외.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제외
이용료	- 모든 이용자 대상 수납 (지원 프로그램별 이용료 상이) ⇒ 이용료는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등은 일부징수 또는 무료	월 이용료 20~33만 원 (중식비 별도)	*기본단가 16,620원 - 1인 집중지원 24,930원 - 2인 그룹 16,620원 - 3인 그룹 13,300원 *바우처로 본인부담금 없음. 식비 및 입·퇴소 송영지원 등은 자부담 실비	*기본단가 1시간 24,930원 (30분 단위 12,470원) *바우처로 본인부담금 없음. 식비 및 입·퇴소 송영지원 등은 자부담 실비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여가활동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 특별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 기타 : 교통편의, 가족지원 등	- 사회성 및 의사소통 증진, 직업전환교육, 신체활동 강화 등 - 필수과목(선임교사 담당) :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과목(교사 담당)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이용인이 희망하는 과	-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교육·취미 프로그램 지원 (일상생활 자립, 안전교육, 음악·미술·체육활동, 문화체험 등) *지원유형 : 기본형 (일 6시간, 월 132시간), 취약계층의 경우 확장형(일 8시간, 월 176시간)	주간그룹형 : 낮 시간 그룹 활동 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제공인력:이용자=1:1 매칭) - 주간개별형 : 낮 시간 1:1 돌봄 지원(수행기관 전문인력을 통해 개인별 낮 활동 지원 (18개소)) - 24시간개별형 : 낮 활

구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2023년까지 주간보호시설 (지방이양사업,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시, 자치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바우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바우처)
		목을 우선하며, 운영위원회 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3명에게 그룹 서비스 제공	동 + 주거지원·야간돌봄(지역사회기관 낮활동 지원 및 주거지원을 통해 야간돌봄서비스 제공(3개소))
인력 배치 기준	*1개 시설당 이용 장애인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관리 및 운영요원 3명 이상 배치 - 시설장 : 상근(겸임가능) 사회재활교사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 시설 운영에 필요한 1인(겸직 시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서울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사회재활교사 추가 배치 (2025.1.기준) - 10~11인 시설 3명 12~14인 시설 4명 15인 이상 시설 5명 *모든 시설 기능직+1명 지원	*입학정원 : 센터당 이용자 30명 이상(수업실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 학업기간 최대 5년 - 학생 3명당 교사 1명 이상(센터당 특수교사 1명 반드시 포함) - 종사자(정원): 센터당 12명 이상(센터장 1명, 팀장 1명, 선임교사 5명, 교사 5명, 행정직원 1명 ⇒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사가 행정직원 겸직 가능	-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2~3명 지원 (보건복지부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은 주간활동 제공인력(이용자 1개 그룹당 1인, 상근), 전담 관리인력(상근), 시설장(겸직 가능)을 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함	- 제공인력과 이용자는 반드시 1:1 매칭 준수 *24시간형과 개별형은 관리자 1인 반드시 포함 (보건복지부 기준) : - 주간그룹형 : 제공인력과 이용자 1:1 매칭 - 주간개별형 : 이용인 4인 기준 제공인력 5명 - 24시간개별형(낮활동) : 이용인 10인 기준 제공인력 14명
사업 규모 (2024년 말 기준)	- 총 134개소 - 종사자 644명 - 이용자 정원 1,712명 ⇒ 서울시지원시설 130개소(종사자 626명, 정원 1,655명) ⇒ 미지원 시설 4개소 (종사자 8명, 정원	- 총 25개소(누적) - 종사자 310명(누적) - 이용자 676명(누적) *각 자치구별 1개소	- 총 70개소 - 종사자 294명 - 이용자 983명 ('24년 11월 말 기준)	- 주간그룹형 23개소 (주간활동바우처제공기관) 주간그룹형 이용자 168명 - 주간개별형 18개소 (1개소당 종사자 5명) 주간개별 이용자 72명 - 24시간개별형 3개소

구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2023년까지 주간보호시설 (지방이양사업,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시, 자치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바우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바우처)
	57명)			(1개소당 종사자 10명) 24시간개별 이용자 30명 *지원유형별 중복기관 포함
시설 면적	- 건축물 연면적 : 최소 66㎡ 이상 (개인당 9.9㎡ 권장) - 기본설비 : 거실, 조리실, 의무실, 사무실, 집단 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이용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간(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배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준 - 시설 총면적 300㎡ 이상(서울시는 500㎡ 이상) -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시설 면적 300㎡, 500㎡ 에 따라 다름)	- 활동공간: 이용자 1명당 3.3㎡ 이상 전용공간 필요(전용 공간 면적에서 3.3㎡를 나눈 인원수가 정원) ⇒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지자체 신고 필요)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함	- 주간그룹형 활동공간 : 이용자 2명당 최소 16.5㎡(1인 추가시 6.6㎡ 추가) - 주간개별형 활동공간 : 이용자 4명당 최소 33㎡ - 24시간개별형 활동공간 : 이용자 4명당 최소 33㎡(1인 추가 시 9.9㎡ 추가) *공통사항 :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은 분리하여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 심리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출처: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p293~302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4.2.8.일부개정, 2025.1.1.시행).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2021.12.9.개정). [별표1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1.23.일부개정, 2024.6.14.시행)
서울시내부자료(2025.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

2) 국외 주간보호서비스

-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2006.12.13.채택, 2008.5.8.발효)으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면서 최근 주간보호의 세계 동향은 전통적인 주간보호시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형태로 변화함
- 미국 등은 전체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장애인만이 아닌 장애인과 노인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을 추구함(황주희 외. 2017. p126. p211). 영국, 캐나다도 장애인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영국의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 영국은 2014년 케어법(Care Act 201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돌봄 및 지원계획'을 제공할 법적 책임을 부여함. 개인예산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주간보호서비스는 개인맞춤형서비스로 발전해 나감
  - 케어법(Care Act)의 취지는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돌봄과 지원이 다르므로 각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돌봄 및 지원계획'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임. 계획 수립에 개인예산 안내가 포함되며, 당사자, 돌보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하고 합의된 계획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돌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짐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are-act-2014-part-1-factsheets/care-act-factsheets)
- 병원 기반으로 시작된 영국의 주간보호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성격이 강해서 이용자의 욕구에 초점을 둔 자립지원 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이후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전환됨(이병화 외, 2020)
  - 지역사회 기반의 주간보호서비스는 센터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가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다양성, 시간의 유연성, 인간중심 서비스 원칙 등에 따라 운영됨. 개별지원계획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설이 아닌 거주지 근처의 장소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 가능함

○ 영국의 주간보호서비스 사례 : Achieve Together의 Educational Day Services[1)]

- 개요 : Achieve Together의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돌봄센터(Day Care Centres for Adults with Disabilities)는 학습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17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 및 복합장애(정신건강, 문제행동, 시각/청각장애 등)가 있는 성인도 포함함. 개인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돌봄 및 지원계획'에 따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주간서비스를 제공함
- 인간중심 :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도움, 커뮤니티에 접근하는 방법,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경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 : Educational Day Service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수준은 매우 유연하여 이용자 개인의 능력, 선호, 목표 등에 맞춰 개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원하는 활동에 따라 일대일 또는 소규모 그룹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내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서비스도 가능함. 일상생활 기술 외에도 새로운 활동(도예, 작곡, 연극, 목공, 공예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용자 : 가정뿐 아니라 생활시설이나 주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함
- 이용시간 : 이용기간 및 시간도 유연하여 주 2시간부터 집중적인 일일 지원까지 다양함
- 이용료 :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함(개인예산을 통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 의사소통 : 참여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참여 :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가, 갤러리, 박물관 등과 협력하여 참여자들이 지역 커뮤니티 워크숍과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아름다운 물건과 선물을 만들고 종종 판매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성취감과 더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음

1) Achieve Together(https://www.achievetogether.co.uk/our-services/disability-day-centres/) 검색일 2025.5.8.

- 직원복지 : 정규직, 파트타임, 유연한 근무 기회 등 다양한 근무 패턴 제공
- 서비스 품질관리 : 영국에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케어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 웨일즈케어조사단(Care Inspectorate Wales, CIW)의 기준 및 절차, 지침을 준수함

미국의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 미국의 성인주간보호사업(Adult Day Care)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낮 동안 일시보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가 발전하였는데, 주요 대상자는 고령 노인 중심이며 개별지원계획에 의해 다양한 활동서비스를 제공함(이병화 외. 2020.)
  - 미국은 장애인과 노인을 각각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므로 서비스와 제도설계, 전달체계 등이 통합적임(황주희 외. 2017. p211)
  - 미국 보건복지부 정책 중 하나인 HCBS(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임(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s://www.hhs.gov. 2025.5.7.)
-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시설(주간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격인증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례관리자가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연결하고, 연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함(이병화 외. 2020. p29).
- 미국의 주간보호서비스 사례 : Adult Day Services[2)]
  - 개요 : 성인주간서비스(Adult Day Services, Adult Day Program)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으로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활동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식사, 목욕, 몸단장 등), 사회활동(미술, 공예, 외출, 레크리에이션 등), 생활기술 훈련, 교육, 교통편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규모 : 2022년 기준 미국 전역에 5,000개 이상의 성인주간보호서비스 센터가 있으며,

2) NADSA(https://www.nadsa.org/about/about-adult-day-services/). 검색일 2025.5.7.

25만 명 이상의 참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유형 :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성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①Social(식사, 레크리에이션, 일부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②Medical/health(사회활동, 보다 집중적인 건강 및 치료서비스 제공), ③Specialized(치매, 발달장애 등 특정 돌봄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등이 있어 보호자는 보통 보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치료에 따라 시설 유형을 선택함
- 운영 : 센터는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시간 동안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저녁과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함. 참가자의 80% 이상이 하루 종일, 46%가 주 5일 참석하여 가족 보호자가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센터는 보호자지원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보호자지원그룹, 개별 상담 등)을 제공함
- 인력 : 센터 중 약 80%는 간호전문가, 약 50%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직원으로 두고 있으며, 개인 중심의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함(1인당 6명의 참가자를 돌봄)
- 특별 프로그램 : 센터의 약 90%는 치매 관련 인지자극프로그램 제공, 약 80%는 당뇨·심혈관질환 관련 신체활동프로그램 제공, 약 60%는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약 50%는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을 제공함.
- 이용료 : 성인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주(지역), 제공되는 서비스(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함
- 재정지원 : 성인주간보호서비스는 Medicare(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미 연방 건강보험제도)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Medicaid(저소득층 성인과 아동을 위한 미 연방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일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22년 성인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미국인의 79%가 Medicaid에 의존함. 버몬트 주는 주 및 연방 기금을 성인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저소득 및 중소득층 성인에게 지원함
- 홍보 : NADSA(National Adult Day Services Association, 전국 성인 주간서비스 협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관련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센터도 찾을 수 있음
- 인증 : 미국 성인주간보호센터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비영리 국제인증기관(CARF International. https://carf.org/about/)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가치를 인정받음

캐나다의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노인인구 증가, 돌봄 제공자의 부족, 개별적인 돌봄서비스 요구 증가 등에 따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구축함
  - 가정 및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 대한 주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로 성인주간활동서비스(Adult Day Services) 및 생활보조서비스 같은 필요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확장됨(OCSA. 2025)
  -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온타리오 주 정부는 온타리오 커뮤니티지원협회(Ontario Community Support Association), 홈 케어 온타리오(Home Care Ontario)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인지원종사자(Personal Support Worker, PSW)의 혜택과 성장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 개인지원종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관련 훈련 및 교육, 나아가 전문 인력(등록간호사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함(https://www.workforlife.ca/).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풀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모집 캠페인과 자원봉사활동 관련 비용(교통비, 자재비 등) 지원도 예산 계획에 포함함
- 온타리오의 '가정간호 및 지역사회지원 서비스(Home Care & Community Support Services)'는 노인, 장애인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 및 웰빙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등 의료시스템 전체에 도움을 줌
- 캐나다의 주간보호서비스 사례 : VON Canada의 Adult Day Programs[3)]
  - 개요 : VON Canada의 성인주간프로그램(Adult Day Programs, ADP)은 안전한 환경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개별 능력에 적합한 치료 활동, 문화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캐나다 전역에서 운영되며 시설 별로 지원 서비스와 이용시간, 비용 등이 다르며, 특정 질환(치매, 알츠하이머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도 있음
  - 운영주체 : 간호사, 치료사, 기타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캐나다 간호사 빅토리아 협회(Victorian Order of Nurses for Canada, VON)에서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

3) VON Canada(https://von.ca/en/von-care/adult-day-program). 검색일 2025.5.12.

- 이용대상 : 신체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또는 성인장애인, 인지장애인
- 이용료 : 온타리오 건강보험 적용 또는 개별 지불
- 인력 : 자원봉사자 및 의료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협회 소속 등록간호사, 전문간호사, 치료보조원 등 전문인력 보유, 프로그램 담당자, 프로그램 보조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 서비스 내용 : 사회적 여가활동 및 치료 활동, 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 교통 지원, 가족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건강이 증진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중요하며 고립의 위험을 감소시킴

일본의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장애인의 중증화 및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 중임. 장애인이 고령화 및 중증화가 진행되면서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를 필요로 함에 따라 고령화된(65세 이상) 장애인이 기존에 이용하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생형 개호서비스를 도입(2018년)하고, 의료적 지원, 재활치료, 강도행동장애 지원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사업소에 상근 간호직원 배치 시 가산 확대 등)하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함(原田 将寿. 2018)
  - 2024년 4월 개정된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総合支援法)'에 따라 장애인의 중증화 및 고령화, 그리고 부모 부재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상황 대응과 시설 및 병원에서 지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생활지원거점' 등에 대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의무화됨(https://www.mhlw.go.jp/content/12200000/001321736.pdf)
- 일본의 주간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의 핵심역할을 하는 다기능 주간보호시설로 변화하는 추세임. 재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지원 등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와 활동 지원 측면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함. 주요 서비스는 개별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제공함(이병화 외. 2020. p25).
- 최근에는 중증장애인이 특별지원학교 졸업(18세) 후 이용하는 생활개호사업소(生活介護事業所)에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능력 향상과 공생사회(共生社会)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함
  -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생활개호사업소에 신청하며, 생활개호사업소(후생노동성에서

보조금 지급)는 사업 추진 후 후생노동성에 사례 및 성과 보고를 하게 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교육 노하우를 갖춘 특별지원학교 퇴직 교사 등을 고용하여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능력 향상을 도모함(https://www.mhlw.go.jp/stf/newpage_57417.html . 2025.4.25.)

- 우리나라 주간보호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생활개호사업소(生活介護事業所)의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도입 이후 12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본 장애인 복지서비스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 중 하나임(原田 将寿. 2018)
  - 전체 시설 현황 : 2020년 4월 기준 사업소 11,117개소, 이용자 288,771명
  - 이용자 수 : 시설당 평균 29.7명
  - 이용 대상 : 항상 돌봄(개호介護)이 필요한 장애지원구분 3 이상인 자[4)]
  - 이용 연령 : 35세 이상 50세 미만 이용자가 많음
  - 장애 특성 : 장애지원구분 5 또는 6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중증인 구분 6 이용자의 비율이 증가함. 이용자 중 강도행동장애 16.5%, 중증심신장애 8.2%, 의료적 케어 필요한 자 6.3% 등임
  - 인력 배치 : 서비스관리책임자 외에 생활지원원(生活支援員) 1인당 장애인 3~6명으로 이용자의 평균 장애지원구분 등에 따라 인력 배치기준이 정해짐
  - 재정지원 : 생활지원 서비스(生活介護)는 수가제(報酬制度)로 운영됨. 생활개호사업소(生活介護事業所)의 기본 보수단가(수가)는 이용 정원의 총합 및 장애지원구분(구분 2~6)에 따라 소정 단위 수를 산정(중증일수록 가산)하여 지급하며, 다양한 가산방식(가산에 따라 적용되는 단위 수 차등 적용)을 반영함
  - 주요 가산 : 장애 특성(장애지원구분, 중증, 행동장애, 의료케어필요 등)에 따른 가산, 방문지원 특별 가산(거주지를 방문하여 상담지원 등을 수행한 경우), 연장지원 가산(영업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력 배치 가산(직접돌봄직원을

4) 장애지원구분(障害支援区分) : 일본 지자체는 장애인 등이 요양급여비 등의 지급과 관련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장애지원구분 인정'을 수행함. 장애지원구분 인정 조사항목은 80개 항목이며, 지자체 심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구분 1(경증)~6(최중증)단계로 나뉨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hahukushi/kubun/index.html 검색일 2025.5.9.)

1:1.7~1:2.5 비율로 추가 배치한 사업소에 가산,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 등(https://www.mhlw.go.jp/content/12401000/000684672.pdf)

- 서비스 내용 : 주로 낮 시간 동안 개인생활 지원(목욕, 배변,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요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상담 및 조언(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창작 활동 및 생산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 일본의 주간보호서비스 사례 : 生活介護 ライフサポートはる(Life Support HAL)[5)]

- 개요 : 사회복지법인 하루(はる)에서 운영하는 생활지원 서비스(生活介護)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개별 활동(각각의 장애 특성이나 상태에 맞춘 활동으로 자립 과제, 가벼운 작업 등) 및 그룹 활동(수영, 걷기, 쇼핑, 미술, 밸런스볼 운동, 이벤트 참가, 노래방, 볼링, 1박 여행 등), 송영 서비스 등을 지원함
- 이용자 : 정원 20명, 평균연령 30세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4시)
- 전문인력 : 인센티브 가산 대상 연수(강도행동장애 지원자 양성연수, 정신장애인 지역이행 추진 연수 등)를 수료한 전문원을 배치하여 정신장애인과 강도행동장애(強度行動障害)가 있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적절한 계획(서비스 이용조정,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된 상담지원을 실시함
- 직원복지 : 다양한 수당제도(통근수당, 주택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지원시간(외출지원, 연말연시)수당, 건강개선수당, 처우개선수당 등)를 운영함. 복지법인 내부에 자체적인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외부 연수도 법인 부담으로 수강 가능함. 또한 멘토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입 직원이 선배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지역참여 : 지역의 이벤트나 쓰레기 줍기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지역과 밀접한 공생사회(共生社会)를 만들어 나감
- 시설구조 : 외부에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건축된 개방적인 1층 건물에 넓게 볼 수 있는 실내 활동공간과 장애 특성에 맞춰 구조화된 공간을 설치하여 이용자 개개인의 니즈에 맞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함

5) 独立行政法人 国立重度知的障害者総合施設 のぞみの園(2019).「生活介護事業所 就労継続支援Ｂ型事業所実践事例集」. p13. はる홈페이지(http://life-support-hal.net/) 검색일 2025.5.7.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 활동 공간		
장애 특성에 맞춰 구조화된 개별 공간		

각 국의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사례 비교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도 고령화 및 중증화가 더해짐에 따라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응 할 수 있는 간호인력 배치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협력 등을 강조함
  - 일본은 고령화된 장애인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에 상근 간호직원 배치시 가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있음
  - 영국과 캐나다는 이용자의 욕구에 초점을 둔 자립지원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협력을 강조함
  - 미국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시설 내에 치매, 노인성 질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다수임
- 장애인 돌봄 인력의 복지뿐 아니라 성장 과정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와 지역 전체적인 지원시스템 안정화를 유지함
  - 영국과 캐나다는 업무유연성이 뛰어나 지원근로자가 종일, 반일,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 가능함
  - 일본은 직원복지를 위한 다양한 수당제도, 내·외부 연수제도, 멘토시스템 등을 운영하

여 돌봄 인력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캐나다는 단순 돌봄 인력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간호 인력으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Approved nursing programs)을 운영하여 인력 확보와 동시에 지역 전체적인 케어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함

○ 서비스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노력과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구함

- 미국 주간보호서비스 사례(NADSA)는 인증제도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영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 및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감독하는 규제기관(Care Quality Commission)의 기준 및 절차,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관리함
- 일본은 이용인 장애특성(중증, 행동장애, 의료케어필요 등)에 따른 가산, 인력 배치 가산(간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 직접처우직원을 1:1.7~1:2.5 비율로 추가 배치한 사업소에 가산)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함

| 표 2-11 | 국외 주간보호서비스 사례

(단위: 명)

구분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특성	인간중심, 당사자의 통제권 강조,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인예산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Medicaid 지원, 개인부담)	가정 간호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주 건강보험, 개인부담)	커뮤니티 케어, 고령화, 중증화 대응체계 정비 (수가제, 다양한 가산방식)
명칭 (사례)	Day Care Centres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성인장애인주간돌봄센터	Adult Day Service 성인주간서비스	Adult Day Program 성인 주간 프로그램	生活介護事業所 생활개호사업소
기능 및 목적	개인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들이 센터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도록 지원	노인 및 성인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 보호자에게는 휴식을 제공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개인생활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 대상	서비스에 따라 다름. Educational Day Services의 경우: 학습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17세 이상 성인 대상(중증 및 복합장애 포함)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자	신체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또는 성인 장애인	항상 돌봄(介護)이 필요한 장애지원구분 3 이상인 자

구분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이용 시간	이용자와 협의로 결정. 주 2시간부터 집중적인 일일 지원까지 다양(필요시 방문 지원 가능)	주 5일 근무 시간 동안 운영 (일부 프로그램은 저녁, 주말에도 서비스 제공)	주중, 오전 8시~오후 4:30 (시설마다 다름)	주중, 오전 9시~오후 4시 (필요시 연장 지원, 방문 지원 가능)
이용 요금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	주(지역),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
지원 인력	단체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체계에 따른 전문인력 지원으로 1:1 또는 소규모 그룹 활동 지원 가능. 병원기관의 주간보호서비스는 의료전문인력 배치	1:6 비율로 이용자 돌봄. 센터의 80%는 간호전문가를 배치함.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센터 다수(치매 관련 인지 프로그램, 노인성 질환관련 신체활동 프로그램, 작업/언어/물리치료 등)	개인지원종사자(PSW), 자원봉사자, 의료전문가 들이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협회 소속 등록간호사, 전문간호사, 치료보조원 등 전문인력 보유)	장애지원구분 등에 따라 인력 배치기준 다름: 보통 생활지원인(生活支援員) 1인당 장애인 3~6명 (1:1.7~1:2.5로 추가 배치한 사업소에 가산.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시 가산)
지원 서비스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 : 맞춤형 '돌봄 및 지원계획'에 따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주간서비스 제공. 이용자 개인의 능력, 선호, 목표 등에 맞춰 지원	필요한 유형의 서비스 선택: ① Social(식사, 레크리에이션, 일부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② Medical/health (사회활동, 보다 집중적인 건강 및 치료서비스 제공), ③ Specialized(치매, 발달장애 등 특정 돌봄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문화여가 및 사회 활동, 식사, 돌봄, 치료, 기본적인 건강관리, 자원봉사자 방문 서비스 등 *치매 등 특정 질환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음 → 이용자 개별 능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제공	개인생활 지원(목욕, 배변,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요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상담 및 조언(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창작 활동 및 생산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비고	장애인 돌봄을 제공하는 영국 Achieve Together 단체의 Educational Day Services 중심 내용임	미국 NADSA(전국성인주간서비스협회)의 Adult Day Services를 제공하는 시설의 공통 내용임	캐나다 VON(간호사 빅토리아 협회)의 Adult Day Programs을 제공하는 시설 중심 내용임	일본 전체 '생활개호사업소(生活介護事業所)'의 공통 내용임

출처: 영국 Achieve Together(https://www.achievetogether.co.uk/our-services/disability-day-centres/). 검색일 2025.5.8.
일본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content/12401000/000684672.pdf). 검색일 2025.5.9.
미국 NADSA(https://www.nadsa.org/about/about-adult-day-services/). 검색일 2025.5.7.
캐나다 VON(https://von.ca/en/von-care/adult-day-program/). 검색일 2025.5.12.

제3장

서울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3장

서울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본조사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주간돌봄서비스 품질 제고(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인적·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인력의 돌봄 기능 및 전문성 강화 등)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조사 방법 및 내용

- 본조사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관용 설문 및 종사자용 설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시설 세입·세출 현황만 2024년 결산 기준이며 이외 조사자료는 2025년 6월 기준임

표 3-1 조사 방법

구분	기관용 조사	종사자용 조사
조사 대상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시설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조사 방법	기관 대표 메일주소를 통한 웹/앱 조사	시설장이 종사자 대상으로 url 배포하여 웹/앱 조사
표본 수/유효표본 수	134개소/120개소	592명/495명
조사 참여율	89.5%	83.6%
조사 기간	2025.06.30.~2025.07.22.	

○ 조사 대상별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2▐ 기관용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분	조사 내용
1.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현황 및 이용 현황 실태	- 시설 기본 현황(개관연도 / 운영주체 / 운영 형태 / 건물소유 형태 등) - 시설 설비 현황(차량 보유 현황 / 시설 운영 현황) - 시설 운영 예산(세입 및 세출 현황 /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현황) - 시설 이용자 현황(3년간 시설 이용자 현황 / 이용자 개인별 특성)
2.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현황	- 시설 종사자 현황(종사자 현원 / 직무유형별 상세 현황) -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필요 종사자 유형 및 인원) - 최근 3년간 대체인력 활용 - 최근 3년간 퇴직자 현황 - 종사자(직원) 교육 현황(교육 시간)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실행하는 교육 수준 (교육 실행수준 / 교육 필요수준)
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업 현황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업 수행 현황(수행수준 / 수행 필요수준)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 및 개선사항 (운영 어려움 /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역할 적합성)

▌표 3-3▐ 기관용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분	조사 내용
1. 일반 현황	- 성별 / 연령 / 직종 및 직위 / 인건비 지원 주체 / 근로계약 형태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 향후 이직 의향 및 배경 - 실제 초과근무 시간 / 초과근무 시간보상 / 초과근무 시 주요 수행 업무
2.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 교육 내용별 현재 교육 이수 수준 - 교육 내용별 교육 필요수준
3. 종사자 개인별 업무투입 비중	- 업무별 현재 업무투입 비중 - 업무별 이상적 업무투입 비중

자료 처리 과정

○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검증, 입력, 정제 과정을 거쳐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 처리함

데이터 검증 (Editing)	⇨	데이터 입력 (Coding)	⇨	데이터 정제 (cleaning)	⇨	자료 처리 및 분석	⇨	결과표 도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 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 입력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SPSS 21.0 for Window		문항별 교차 집계 (Cross Table) 작성

분석 방법

- 복수응답의 경우, 카테고리의 사례 수를 전체 사례 수에 근거하여 백분율을 산출함
- 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분석되었음
- 평균값이 필요한 경우 교차분석(Cross Tabulation)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 5점 척도의 100점 환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5점 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100점 환산	0점	25.0점	50.0점	75.0점	100.0점

자료 해석 상 유의사항

-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 수의 관찰치에 따른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함
  - 사례 수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n<30)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값 또는 세부 집단 간 비교 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함
- 열에 따라 모든 백분율(%)을 산출하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전체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현황

1) 시설 기본 현황

(1) 시설 일반 현황

- 서울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총 134개소 중 120개 기관(89.6%)이 조사에 응답함. 운영주체는 '법인운영'(90.8%), 운영 형태는 '단독시설'(73.3%),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85.8%)이 다수를 차지함
  - 운영주체 : 법인 109개소(90.8%), 구립 9개소(7.5%), 개인 2개소(1.7%)

- 운영 형태 : 단독 88개소(73.3%), 병설 25개소(20.8%), 자치구 위탁 7개소(5.8%)
-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개소(85.8%), 뇌병변장애인시설 10개소(8.3%), 시각장애인시설 5개소(4.2%), 청각장애인시설 2개소(1.7%)

▌표 3-4▐ 시설 일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n)	비율(%)
전체		**(120)**	**100.0**
운영주체	구립운영	(9)	7.5
	법인운영	(109)	90.8
	개인운영	(2)	1.7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73.3
	병설시설	(25)	20.8
	자치구 위탁시설	(7)	5.8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85.8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8.3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4.2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7

(2) 건물 소유 형태

임대 유형

- 장애인주간이용시설(120개소)의 건물 소유 형태는 무상임대 73.3%, 유상임대 26.7%로 시설 자체 소유 건물은 없음. 무상임대(88개소)는 법인소유와 자치구 소유 비중이 높고, 유상임대(32개소)의 대부분은 월세로 나타남
  - 무상임대(73.3%) : 법인소유 36개소(30%), 자치구 소유 25개소(20.8%), 교회후원 15개소(12.5%)순
  - 유상임대(26.7%) : 월세 26개소(21.7%), 반전세 5개소(4.2%), 전세 1개소(0.8%)
- 운영주체별로 볼 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운영시설(109개소)은 무상임대 73.4%(법인소유 33%, 자치구 소유 17.4% 등), 유상임대 26.6%(월세 21.1%, 반전세 4.6% 등)로 나타남

- 법인운영(109개소) : 무상임대 80개소(73.4%), 유상임대 29개소(26.6%)
- 구립운영(9개소) : 무상임대 6개소는 모두 자치구 소유이며, 유상임대 3개소는 월세임
- 개인운영(2개소) : 개인운영시설 2개소 모두 교회후원 무상임대로 운영됨

○ 운영 형태별로 볼 때 병설시설(25개소)은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단독시설(88개소)은 유상임대가 31.8%로 비교적 높음

- 단독시설(88개소) : 무상임대 60개소(68.2%), 유상임대 28개소(31.8%)
  - 무상임대 : 법인소유 28개소(31.8%), 교회후원 15개소(17.0%), 자치구 소유 11개소(12.5%)순
  - 유상임대 : 월세 22개소(25.0%), 반전세 5개소(5.7%), 전세 1개소(1.1%)
- 병설시설(25개소) : 무상임대 24개소(96%), 유상임대 월세 1개소(4%)
  - 무상임대 : 자치구 소유 11개소(44%), 법인소유 8개소(32%), 기타 소유 5개소(20%)
- 자치구 위탁시설(7개소) : 무상임대 4개소(57.1%), 유상임대 3개소(42.9%)
  - 무상임대 4개소 중 3개소는 자치구 소유이며, 유상임대 3개소는 모두 월세임

▌표 3-5▐ 건물 소유 형태_운영주체별

(단위: 개소, %)

임대 유형		전체		운영주체별					
				구립운영		법인운영		개인운영	
		n	%	n	%	n	%	n	%
전체		**(120)**	**100.0**	**(9)**	**100.0**	**(109)**	**100.0**	**(2)**	**100.0**
유상임대		**(32)**	**26.7**	**(3)**	**33.3**	**(29)**	**26.6**	**(0)**	**0.0**
임대 유형	전세	(1)	0.8	(0)	0.0	(1)	0.9	(0)	0.0
	반전세	(5)	4.2	(0)	0.0	(5)	4.6	(0)	0.0
	월세	(26)	21.7	(3)	33.3	(23)	21.1	(0)	0.0
무상임대		**(88)**	**73.3**	**(6)**	**66.7**	**(80)**	**73.4**	**(2)**	**100.0**
무상 임대 지원 출처	법인소유	(36)	30.0	(0)	0.0	(36)	33.0	(0)	0.0
	자치구	(25)	20.8	(6)	66.7	(19)	17.4	(0)	0.0
	교회후원	(15)	12.5	(0)	0.0	(13)	11.9	(2)	100.0
	기타	(12)	10.0	(0)	0.0	(12)	11.0	(0)	0.0

▌표 3-6▐ 건물 소유 형태_운영 형태별

(단위: 개소, %)

임대 유형		전체		운영 형태별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n	%	n	%	n	%	n	%
전체		**(120)**	**100.0**	**(88)**	**100.0**	**(25)**	**100.0**	**(7)**	**100.0**
유상임대		**(32)**	**26.7**	**(28)**	**31.8**	**(1)**	**4.0**	**(3)**	**42.9**
임대 유형	전세	(1)	0.8	(1)	1.1	(0)	0.0	(0)	0.0
	반전세	(5)	4.2	(5)	5.7	(0)	0.0	(0)	0.0
	월세	(26)	21.7	(22)	25.0	(1)	4.0	(3)	42.9
무상임대		**(88)**	**73.3**	**(60)**	**68.2**	**(24)**	**96.0**	**(4)**	**57.1**
무상 임대 지원 출처	법인소유	(36)	30.0	(28)	31.8	(8)	32.0	(0)	0.0
	자치구	(25)	20.8	(11)	12.5	(11)	44.0	(3)	42.9
	교회후원	(15)	12.5	(15)	17.0	(0)	0.0	(0)	0.0
	기타	(12)	10.0	(6)	6.8	(5)	20.0	(1)	14.3

유상임대 임대료 지급액

- 임대 유형이 '월세'인 시설의 임대보증금은 평균 3,740만 원, 월세 약 186만 원이며, '반전세'인 시설(5개소)은 임대보증금 평균 1억 260만 원, 월세 약 219만 원으로 나타남. 임대 유형이 '전세'인 시설(1개소)의 임대보증금은 1억 원임

▌표 3-7▐ 유상임대 임대료 지급액

(단위: 개소, 원)

임대 유형	사례 수	임대료 지급액					
		임대보증금			월세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전세	(1)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	-	-
반전세	(5)	102,600,000	400,000,000	3,000,000	2,190,200	4,600,000	847,000
월세	(25*)	37,400,000	200,000,000	0	1,860,344	7,007,000	379,594

*임대 유형 '월세' 25개소 중 1개소는 유상임대이긴 하나, 실질적인 유상임대 지원은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임대료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월세 13,720,000원)은 제외 후 평균을 산출함
(※ 해당 시설을 포함한 월세 평균 금액은 2,299,177원임)

(3) 시설 이용제한 기준

- 장애인주간이용시설(120개소) 중 약 50%의 시설이 연령 상한(평균 50세 미만)을 두고 있으며, 총 이용기간 상한이 있는 시설은 25%임(평균 7년 미만). 기관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 거주할 경우 이용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 60%로 비교적 높음
  - 연령 상한 : 있음 48.3%(58개소), 없음 51.7%(62개소)
  - 이용기간 상한 : 있음 25%(30개소), 없음 75%(90개소)
  - 다른 시도 거주 : 제한 58.3%(70개소)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제한되는 시설은 39.2%(47개소)이며, 도전적 행동이 제한되는 시설은 35%(42개소)임
- 장애정도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대부분 시설에서 제한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제한시설 비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5.8%), 보행 능력(15.0%), 신변처리 능력(8.3%), 의사소통 능력(3.3%), 식사수행 능력(2.5%)

운영 형태별, 시설 이용제한 기준

- 운영 형태별로 볼 때 병설시설은 거주지 제한(84%), 연령 상한(68%), 도전적 행동 제한(64%) 비율이 높고, 자치구 위탁시설은 7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거주지 제한과 연령 상한(각 85.7%)을 두고 있지만 도전적 행동 제한은 타 유형에 비해 낮음. 단독시설은 연령 및 이용기간, 거주지 제한 비율이 병설시설이나 자치구 위탁시설에 비해 낮고, 도전적 행동 제한 비율도 28.4%로 상대적으로 낮음
  - 단독시설(총 88개소) : 거주지 제한 48.9%(43개소), 연령 상한 39.8%(35개소), 도전적 행동 제한 28.4%(25개소), 이용기간 상한 20.5%(18개소)
  - 병설시설(총 25개소) : 거주지 제한 84%(21개소), 연령 상한 68%(17개소), 도전적 행동 제한 64%(16개소), 이용기간 상한 36%(9개소)
  - 자치구 위탁시설(총 7개소) : 거주지 제한 85.7%(6개소), 연령 상한 85.7%(6개소), 이용기간 상한 42.9%(3개소), 도전적 행동 제한 1개소

▌표 3-8▐ 시설 이용제한 기준_운영 형태별

(단위: 개소, %)

시설 이용제한 사항		전체		운영 형태별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n	%	n	%	n	%	n	%
연령 상한	없음	**(62)**	**51.7**	(53)	60.2	(8)	32.0	(1)	14.3
	있음	**(58)**	**48.3**	(35)	39.8	(17)	68.0	(6)	85.7
총 시설 이용기간 상한	없음	**(90)**	**75.0**	(70)	79.5	(16)	64.0	(4)	57.1
	있음	**(30)**	**25.0**	(18)	20.5	(9)	36.0	(3)	42.9
기관 소재지와 다른 시도 거주	제한사항 아님	**(50)**	**41.7**	(45)	51.1	(4)	16.0	(1)	14.3
	제한사항 해당	**(70)**	**58.3**	(43)	48.9	(21)	84.0	(6)	85.7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제한사항 아님	**(113)**	**94.2**	(83)	94.3	(23)	92.0	(7)	100.0
	제한사항 해당	**(7)**	**5.8**	(5)	5.7	(2)	8.0	(0)	0.0
휠체어 장애인 이용제한	제한사항 아님	**(73)**	**60.8**	(51)	58.0	(18)	72.0	(4)	57.1
	제한사항 해당	**(47)**	**39.2**	(37)	42.0	(7)	28.0	(3)	42.9
자차 또는 자립 등·하원가능정도	제한사항 아님	**(112)**	**93.3**	(84)	95.5	(22)	88.0	(6)	85.7
	제한사항 해당	**(8)**	**6.7**	(4)	4.5	(3)	12.0	(1)	14.3
도전적 행동	제한사항 아님	**(78)**	**65.0**	(63)	71.6	(9)	36.0	(6)	85.7
	제한사항 해당	**(42)**	**35.0**	(25)	28.4	(16)	64.0	(1)	14.3
신변처리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0)**	**91.7**	(83)	94.3	(21)	84.0	(6)	85.7
	제한사항 해당	**(10)**	**8.3**	(5)	5.7	(4)	16.0	(1)	14.3
의사소통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6)**	**96.7**	(84)	95.5	(25)	100.0	(7)	100.0
	제한사항 해당	**(4)**	**3.3**	(4)	4.5	(0)	0.0	(0)	0.0
약물복용	제한사항 아님	**(118)**	**98.3**	(86)	97.7	(25)	100.0	(7)	100.0
	제한사항 해당	**(2)**	**1.7**	(2)	2.3	(0)	0.0	(0)	0.0
식사수행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7)**	**97.5**	(86)	97.7	(25)	100.0	(6)	85.7
	제한사항 해당	**(3)**	**2.5**	(2)	2.3	(0)	0.0	(1)	14.3
보행 능력	제한사항 아님	**(102)**	**85.0**	(74)	84.1	(24)	96.0	(4)	57.1
	제한사항 해당	**(18)**	**15.0**	(14)	15.9	(1)	4.0	(3)	42.9
기타	제한사항 아님	**(7)**	**41.2**	(7)	50.0	(0)	0.0	(0)	0.0
	제한사항 해당	**(10)**	**58.8**	(7)	50.0	(3)	100.0	(0)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 시설 이용제한 기준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절반 정도가 거주지 제한(57.3%)과 연령 상한(45.6%)이 있고, 이용기간 상한이 있는 시설은 26.2%임. 휠체어장애인 제한(39.8%)과 도전적 행동 제한(31.1%)도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음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총 103개소) : 거주지 제한 57.3%(59개소), 연령 상한 45.6%(47개소), 이용기간 상한 26.2%(27개소) / 휠체어장애인 제한 39.8%(41개소), 도전적 행동 제한 31.1%(32개소)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연령 상한(60%)과 거주지 제한(70%)이 있는 시설이 비교적 많고, 휠체어장애인 제한은 없으나 50%의 시설에서 도전적 행동에 제한을 둠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총 10개소) : 거주지 제한 70%(7개소), 연령 상한 60%(6개소), 이용기간 상한 30%(3개소) / 휠체어장애인 제한 없음, 도전적 행동 제한 50%(5개소)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개소 모두 이용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4개소는 거주지 제한, 3개소는 연령 상한이 있음

▌표 3-9▐ 시설 이용제한 기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단위: 개소, %)

시설 이용제한 사항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연령 상한	없음	(62)	51.7	(56)	54.4	(4)	40.0	(2)	40.0	(0)	0.0
	있음	(58)	48.3	(47)	45.6	(6)	60.0	(3)	60.0	(2)	100.0
총 시설 이용기간 상한	없음	(90)	75.0	(76)	73.8	(7)	70.0	(5)	100.0	(2)	100.0
	있음	(30)	25.0	(27)	26.2	(3)	30.0	(0)	0.0	(0)	0.0
기관 소재지와 다른 시도 거주	제한사항 아님	(50)	41.7	(44)	42.7	(3)	30.0	(1)	20.0	(2)	100.0
	제한사항 해당	(70)	58.3	(59)	57.3	(7)	70.0	(4)	80.0	(0)	0.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제한사항 아님	(113)	94.2	(99)	96.1	(8)	80.0	(4)	80.0	(2)	100.0
	제한사항 해당	(7)	5.8	(4)	3.9	(2)	20.0	(1)	20.0	(0)	0.0
휠체어 장애인 이용제한	제한사항 아님	(73)	60.8	(62)	60.2	(10)	100.0	(1)	20.0	(0)	0.0
	제한사항 해당	(47)	39.2	(41)	39.8	(0)	0.0	(4)	80.0	(2)	100.0
자차 또는 자립 등·하원가능정도	제한사항 아님	(112)	93.3	(98)	95.1	(10)	100.0	(3)	60.0	(1)	50.0
	제한사항 해당	(8)	6.7	(5)	4.9	(0)	0.0	(2)	40.0	(1)	50.0
도전적 행동	제한사항 아님	(78)	65.0	(71)	68.9	(5)	50.0	(1)	20.0	(1)	50.0
	제한사항 해당	(42)	35.0	(32)	31.1	(5)	50.0	(4)	80.0	(1)	50.0
신변처리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0)	91.7	(97)	94.2	(10)	100.0	(3)	60.0	(0)	0.0
	제한사항 해당	(10)	8.3	(6)	5.8	(0)	0.0	(2)	40.0	(2)	100.0
의사소통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6)	96.7	(103)	100.0	(9)	90.0	(3)	60.0	(1)	50.0
	제한사항 해당	(4)	3.3	(0)	0.0	(1)	10.0	(2)	40.0	(1)	50.0
약물복용	제한사항 아님	(118)	98.3	(103)	100.0	(10)	100.0	(3)	60.0	(2)	100.0
	제한사항 해당	(2)	1.7	(0)	0.0	(0)	0.0	(2)	40.0	(0)	0.0
식사수행 능력	제한사항 아님	(117)	97.5	(103)	100.0	(10)	100.0	(4)	80.0	(0)	0.0
	제한사항 해당	(3)	2.5	(0)	0.0	(0)	0.0	(1)	20.0	(2)	100.0
보행 능력	제한사항 아님	(102)	85.0	(89)	86.4	(10)	100.0	(3)	60.0	(0)	0.0
	제한사항 해당	(18)	15.0	(14)	13.6	(0)	0.0	(2)	40.0	(2)	100.0
기타	제한사항 아님	(7)	41.2	(7)	43.8	(0)	0.0	(0)	0.0	(0)	0.0
	제한사항 해당	(10)	58.8	(9)	56.3	(1)	100.0	(0)	0.0	(0)	0.0

(4) 시설 운영시간

시설 운영시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시간(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시간 포함)은 일 평균 8시간 37분으로 나타남
  - 단독시설(운영 형태)의 평균 운영시간이 다소 길고(8시간 43분), 차량 송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 위탁시설의 평균 운영시간이 다소 짧게 나타남(약 7시간 51분). 병설시설은 차량 송영 서비스 운영 비율이 낮음(24.0%)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시간은 평균 8시간 30분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평균 운영시간 8시간 36분으로 전체 평균과 비슷함. 차량 송영 서비스 평균 운행 시간이 가장 긴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시설 평균 운영시간도 9시간 6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반면,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차량 송영 서비스 운영 비율이 낮음(10%)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긴 8시간 48분으로 나타남. 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의 운영시간은 8시간으로 이용인 특성 시설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10 시설 운영시간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시설 수	평균 운영시간
전체		**(120)**	**8시간 37분**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8시간 43분
	병설시설	(25)	8시간 30분
	자치구 위탁시설	(7)	7시간 51분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8시간 36분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8시간 48분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9시간 6분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8시간 0분

*송영 서비스 차량운행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평균 운영시간이 9시간이 넘는 경우,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 / 오전 8시 30분~6시 운영 /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등의 사례가 있으며
주말은 포함되지 않음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시간

- 총 120개 시설 중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시설은 52.5%(63개소)이며, 평균 운행 시간은 2시간 25분(평균 : 오전 1시간 13분, 오후 1시간 18분)으로 나타남
  - 단독시설(88개소)은 61.4%(54개소)가 송영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비해 병설시설(25개소)은 24%(6개소)만 송영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103개소)은 55.3%(57개소)가 송영 차량을 운행함. 시각장애인 전담시설(5개소)은 80%(4개소)가 송영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시간도 평균 3시간 23분으로 길게 나타남

▌표 3-11▐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차량 운행		차량 미운행	
			n	%	n	%
전체		**(120)**	**(63)**	**52.5**	**(57)**	**47.5**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54)	61.4	(34)	38.6
	병설시설	(25)	(6)	24.0	(19)	76.0
	자치구 위탁시설	(7)	(3)	42.9	(4)	57.1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57)	55.3	(46)	44.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1)	10.0	(9)	9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4)	80.0	(1)	2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	50.0	(1)	50.0

▌표 3-12▐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시간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차량 운행		차량 운행 시간 전체(평균)		차량 운행 시간 오전(평균)		차량 운행 시간 오후(평균)	
		n	%	n	시간	n	시간	n	시간
전체		**(63)**	**52.5**	**(63)**	**2시간 25분**	**(61)**	**1시간 13분**	**(60)**	**1시간 18분**
운영 형태	단독시설	(54)	61.4	(54)	2시간 27분	(53)	1시간 13분	(51)	1시간 19분
	병설시설	(6)	24.0	(6)	2시간 10분	(5)	1시간 14분	(6)	1시간 8분
	자치구 위탁시설	(3)	42.9	(3)	2시간 23분	(3)	1시간 6분	(3)	1시간 16분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57)	55.3	(57)	2시간 20분	(55)	1시간 11분	(54)	1시간 15분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	10.0	(1)	2시간 30분	(1)	1시간 0분	(1)	1시간 30분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4)	80.0	(4)	3시간 23분	(4)	1시간 33분	(4)	1시간 50분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1)	50.0	(1)	2시간 50분	(1)	1시간 20분	(1)	1시간 30분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시설(63개소)의 평균 운행 시간임

시설 추가 이용 가능 시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총 120개소 중 시설 운영시간 외, 추가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10%(12개소 : 비정기 9개, 정기적 3개)로 나타남. 추가 이용 가능 시설(12개소)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11개소)이며, 운영 형태는 단독시설(9개소)이 많음
- 추가 이용 가능한 시설(12개소)의 추가 이용시간은 평균 2시간 43분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오후의 이용시간(평균 2시간 3분)이 평일 오전(평균 1시간 28분)에 비해 길게 나타남
  - 운영 형태별, 단독시설(9개소)의 추가 이용시간은 평균 3시간 21분으로 병설시설(3개소, 평균 50분)에 비해 약 4배 정도 길게 나타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11개소)의 추가 이용시간은 평균 2시간 55분으로 나타남

표 3-13 시설 추가 이용 가능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있음						없음	
					정기적		비정기적			
			n	%	n	%	n	%	n	%
전체		**(120)**	**(12)**	**10.0**	**(3)**	**2.5**	**(9)**	**7.5**	**(108)**	**90.0**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9)	10.2	(2)	2.3	(7)	8.0	(79)	89.8
	병설시설	(25)	(3)	12.0	(1)	4.0	(2)	8.0	(22)	88.0
	자치구 위탁시설	(7)	0	0.0	(0)	0.0	(0)	0.0	(7)	10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11)	10.7	(3)	2.9	(8)	7.8	(92)	89.3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1)	10.0	(0)	0.0	(1)	10.0	(9)	9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0	0.0	(0)	0.0	(0)	0.0	(5)	10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	0.0	(0)	0.0	(0)	0.0	(2)	100.0

표 3-14 시설 추가 이용 가능 시간

(단위: 개소, 시간)

구분		평일 전체(평균시간)		평일 오전(평균시간)		평일 오후(평균시간)	
		n	시간	n	시간	n	시간
전체		**(12)**	**2시간 43분**	**(11)**	**1시간 28분**	**(8)**	**2시간 3분**
운영 형태	단독시설	(9)	3시간 21분	(8)	1시간 50분	(7)	2시간 12분
	병설시설	(3)	50분	(3)	30분	(1)	1시간
	자치구 위탁시설	(0)	-	(0)	-	(0)	-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1)	2시간 55분	(10)	1시간 34분	(8)	2시간 3분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	30분	(1)	30분	(0)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0)	-	(0)	-	(0)	-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0)	-	(0)	-	(0)	-

*시설 운영시간 외 추가 이용이 가능한 시설(12개소)의 평균 추가 이용시간임

(5) 시설 이용료

1인당 월 이용료

- 1인당 월 이용료는 전체 시설 평균 241,200원(최대 380,000원)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 : 단독시설(평균 248,636원)이 가장 많고, 병설시설(221,360원), 자치구 위탁시설(218,571원)순으로 나타남
  - 이용인 특성별 시설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이용료(평균 253,922원)가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230,000원), 시각장애인 전담시설(86,000원), 청각장애인 전담시설(30,000원)순으로 나타남
  - 건물 소유 형태 : 반전세 시설의 이용료(평균 302,000원)가 가장 많고, 월세(256,154원), 무상임대(235,500원), 전세(50,000원)순으로 나타남

표 3-15 1인당 월 이용료

(단위: 개소, 원)

구분		시설 수	1인당 월 이용료		
			평균	최대	최소
전체		**(120)**	**241,200**	**380,000**	**0**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248,636	380,000	0
	병설시설	(25)	221,360	310,000	150,000
	자치구 위탁시설	(7)	218,571	300,000	10,0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253,922	380,000	150,000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230,000	310,000	150,0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86,000	200,000	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30,000	50,000	10,000
건물 소유형태	전세	(1)	50,000	50,000	50,000
	반전세	(5)	302,000	350,000	270,000
	월세	(26)	256,154	350,000	10,000
	무상임대	(88)	235,500	380,000	0

월 이용료 할인

- 시설 이용료 감면 인원은 시설 1개소당 평균 2.0명으로 나타났으며, 월 이용료 감면비율은 평균 36.0%임. 무료 이용 인원은 시설 1개소당 평균 0.4명으로 나타남
  - 월 이용료 감면비율이 비교적 높은 시설은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감면비율 평균 63.4%), 병설시설(감면비율 51.8%)임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5개소)의 무료인원이 평균 3.6명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건물 소유 형태 중 무상임대 시설의 평균 무료 인원, 감면인원, 감면비율이 전체 평균 및 전/월세 시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16▐ 월 이용료 할인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설수	이용료 할인								
			무료인원(명)			감면인원(명)			감면비율(%)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전체		**(120)**	**0.4**	**13**	**0**	**2.0**	**10**	**0**	**36.0**	**100**	**0**
운영형태	단독시설	(88)	0.4	13	0	2.0	10	0	33.2	100	0
	병설시설	(25)	0.5	4	0	2.6	7	0	51.8	100	0
	자치구 위탁시설	(7)	0.1	1	0	0.7	2	0	15.7	50.0	0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0.2	7	0	2.1	10	0	34.0	100	0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0.7	3	0	2.0	10	0	63.4	100	16.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3.6	13	0	1.8	6	0	38.0	100	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0	0	0	0.0	0	0	0.0	0	0
건물 소유 형태	전세	(1)	0.0	0	0	0.0	0	0	0.0	0	0
	반전세	(5)	0.4	1	0	1.2	3	0	31.2	100	0
	월세	(26)	0.1	2	0	1.8	9	0	28.5	83.0	0
	무상임대	(88)	0.5	13	0	2.2	10	0	38.9	100	0

정규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실비 부여 여부

○ 장애인주간이용시설(120개소) 중 정규 프로그램 이용에 실비를 부여하는 시설은 13.3%, 캠프 등 특별활동 이용 시 실비를 부여하는 시설은 69.2%로 나타남

- 단독시설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며, 병설시설은 정규 프로그램 이용 시 실비를 부여하는 시설 비율이 20%로 다소 높고, 특별활동 이용 시 실비를 부여하는 시설이 64%로 타 유형에 비해 다소 낮음. 자치구 위탁시설은 정규 프로그램 이용 시 실비를 부여하지 않지만 특별활동 이용 시 실비를 부여하는 비율이 85.7%로 높음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중 특별활동 이용 시 실비를 부여하는 시설 비율이 73.8%로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1개소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이 실비를 부여하지 않음(정규/특별활동 프로그램)

- 건물 소유 형태 : 무상임대 시설의 18.2%가 정규 프로그램에 실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설은 정규 프로그램에 실비를 부여하는 시설이 없음. 특별활동 이용 시 실비를 부여하는 시설 비율은 무상임대(71.6%), 월세(69.2%), 반전세(40%)순으로 나타남

▌표 3-17▐ 정규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실비 부여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정규 프로그램 실비 부여				특별활동 이용 실비 부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n	%	n	%	n	%	n	%
전체		**(120)**	**(16)**	**13.3**	**(104)**	**86.7**	**(83)**	**69.2**	**(37)**	**30.8**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11)	12.5	(77)	87.5	(61)	69.3	(27)	30.7
	병설시설	(25)	(5)	20.0	(20)	80.0	(16)	64.0	(9)	36.0
	자치구 위탁시설	(7)	(0)	0.0	(7)	100	(6)	85.7	(1)	14.3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13)	12.6	(90)	87.4	(76)	73.8	(27)	26.2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2)	20.0	(8)	80.0	(6)	60.0	(4)	4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1)	20.0	(4)	80.0	(1)	20.0	(4)	8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	0.0	(2)	100	(0)	0.0	(2)	100
건물 소유형태	전세	(1)	(0)	0.0	(1)	100	(0)	0.0	(1)	100
	반전세	(5)	(0)	0.0	(5)	100	(2)	40.0	(3)	60.0
	월세	(26)	(0)	0.0	(26)	100	(18)	69.2	(8)	30.8
	무상임대	(88)	(16)	18.2	(72)	81.8	(63)	71.6	(25)	28.4

1인당 월 송영 서비스 차량 이용료 및 중식비

- 1인당 송영 서비스 이용료는 월 평균 42,619원(이용시설 기준), 1인당 월 중식비는 전체 시설 평균 66,935원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 중식비는 병설시설(77,760원)이 가장 높고, 단독시설(64,866원), 자치구 위탁시설(54,286원)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송영 서비스 월 이용료는 평균 43,500원, 중식비는 평균 67,157원으로 전체 시설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의 중식비는 전체 평균보다 높고,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의 중식비는 저렴함
  - 건물 소유 형태에 따른 중식비는 유형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3-18▐ 1인당 월 송영 서비스 차량 이용료 및 중식비

(단위: 개소, 원)

구분		송영 서비스 이용료		중식비	
		n	평균	n	평균
전체		(42)	42,619	(120)	66,935
운영 형태	단독시설	(35)	42,571	(88)	64,866
	병설시설	(4)	25,000	(25)	77,760
	자치구 위탁시설	(3)	66,667	(7)	54,286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0)	43,500	(103)	67,15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	20,000	(10)	90,0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	30,000	(5)	35,0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0)	-	(2)	20,000
건물 소유형태	전세	(0)	-	(1)	82,000
	반전세	(3)	43,333	(5)	67,000
	월세	(10)	36,000	(26)	67,827
	무상임대	(29)	44,828	(88)	66,497

*송영 서비스 이용료는 송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63개소) 중 42개소의 평균 이용료임

중식 제공 방법

- 시설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방법은 '부설복지기관 구내식당 및 인근 일반식당 이용'이 40%(48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자체조리'(23.3%), '반찬배달'(14.2), '도시락배달'(14.2%)순으로 나타남
  - 병설시설의 약 90%는 부설복지기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단독시설의 67%는 자체조리(31.8%) 또는 반찬/도시락배달(35.2%)로 중식을 제공함
  - 다수의 시설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식당이용(구내/일반)' 비율이 높음

▌표 3-19▐ 중식 제공 방법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부설복지기관 구내식당 및 인근 일반식당		자체조리		반찬배달		도시락배달		기타	
			n	%	n	%	n	%	n	%	n	%
전체		**(120)**	**(48)**	**40.0**	**(28)**	**23.3**	**(17)**	**14.2**	**(17)**	**14.2**	**(10)**	**8.3**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22)	25.0	(28)	31.8	(16)	18.2	(15)	17.0	(7)	8.0
	병설시설	(25)	(23)	92.0	(0)	0.0	(0)	0.0	(0)	0.0	(2)	8.0
	자치구 위탁시설	(7)	(3)	42.9	(0)	0.0	(1)	14.3	(2)	28.6	(1)	14.3

구분		시설 수	부설복지기관 구내식당 및 인근 일반식당		자체조리		반찬배달		도시락배달		기타	
			n	%	n	%	n	%	n	%	n	%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41)	39.8	(25)	24.3	(14)	13.6	(14)	13.6	(9)	8.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6)	60.0	(1)	10.0	(1)	10.0	(1)	10.0	(1)	1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1)	20.0	(2)	40.0	(0)	0.0	(2)	40.0	(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시설 설비 현황

(1) 차량 보유 현황

차량 보유 수 및 보유 경로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시설 내 '승합차(6~15인)' 평균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78개소)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승합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시설 자부담'으로 보유한 비율은 7.5%(9개소)인데, 이 중 7개소가 단독시설임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평균 승합차 1대, 단독시설은 평균 승합차 1.1대를 보유함. 차량 송영 서비스 운영 비율이 낮은 병설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의 승합차 보유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표 3-20 | 차량 보유 현황

(단위: 개소, 대)

구분		승용차 (5인 이하)		승합차 (6-15인)		미니버스 (16-25인)		기타	
		n	평균(대)	n	평균(대)	n	평균(대)	n	평균(대)
전체		**(120)**	**0.1**	**(120)**	**1.0**	**(120)**	**0.0**	**(53)**	**0.1**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0.1	(88)	1.1	(88)	0.0	(39)	0.1
	병설시설	(25)	0.1	(25)	0.6	(25)	0.0	(11)	0.2
	자치구 위탁시설	(7)	0.0	(7)	1.0	(7)	0.0	(3)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0.1	(103)	1.0	(103)	0.0	(44)	0.0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0.1	(10)	0.4	(10)	0.0	(8)	0.3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0.2	(5)	0.8	(5)	0.0	(1)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0	(2)	1.0	(2)	0.0	(0)	-

▌표 3-21▐ 차량 보유 경로_운영 형태별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운영 형태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n	%	n	%	n	%	n	%
승용차	기능보강	**(5)**	**4.2**	(4)	4.5	(1)	4.0	(0)	0.0
	법인지원	**(0)**	**0.0**	(0)	0.0	(0)	0.0	(0)	0.0
	시설자부담	**(1)**	**0.8**	(1)	1.1	(0)	0.0	(0)	0.0
	외부공모	**(4)**	**3.3**	(3)	3.4	(1)	4.0	(0)	0.0
	시설장 개인부담	**(0)**	**0.0**	(0)	0.0	(0)	0.0	(0)	0.0
	이용자, 교회, 회사 등 일반 후원	**(0)**	**0.0**	(0)	0.0	(0)	0.0	(0)	0.0
	기타	**(1)**	**0.8**	(1)	1.1	(0)	0.0	(0)	0.0
	해당사항 없음	**(109)**	**90.8**	(79)	89.8	(23)	92.0	(7)	100.0
승합차	기능보강	**(78)**	**65.0**	(63)	71.6	(12)	48.0	(3)	42.9
	법인지원	**(3)**	**2.5**	(3)	3.4	(0)	0.0	(0)	0.0
	시설자부담	**(9)**	**7.5**	(7)	8.0	(1)	4.0	(1)	14.3
	외부공모	**(4)**	**3.3**	(3)	3.4	(1)	4.0	(0)	0.0
	시설장 개인부담	**(0)**	**0.0**	(0)	0.0	(0)	0.0	(0)	0.0
	이용자, 교회, 회사 등 일반 후원	**(6)**	**5.0**	(5)	5.7	(1)	4.0	(0)	0.0
	기타	**(9)**	**7.5**	(6)	6.8	(0)	0.0	(3)	42.9
	해당사항 없음	**(25)**	**20.8**	(12)	13.6	(11)	44.0	(2)	28.6
미니버스	기능보강	**(1)**	**0.8**	(0)	0.0	(1)	4.0	(0)	0.0
	법인지원	**(0)**	**0.0**	(0)	0.0	(0)	0.0	(0)	0.0
	시설자부담	**(2)**	**1.7**	(2)	2.3	(0)	0.0	(0)	0.0
	외부공모	**(0)**	**0.0**	(0)	0.0	(0)	0.0	(0)	0.0
	시설장 개인부담	**(0)**	**0.0**	(0)	0.0	(0)	0.0	(0)	0.0
	이용자, 교회, 회사 등 일반 후원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해당사항 없음	**(117)**	**97.5**	(86)	97.7	(24)	96.0	(7)	100.0
기타	기능보강	**(1)**	**1.9**	(1)	2.6	(0)	0.0	(0)	0.0
	법인지원	**(0)**	**0.0**	(0)	0.0	(0)	0.0	(0)	0.0
	시설자부담	**(0)**	**0.0**	(0)	0.0	(0)	0.0	(0)	0.0
	외부공모	**(1)**	**1.9**	(0)	0.0	(1)	9.1	(0)	0.0
	시설장 개인부담	**(0)**	**0.0**	(0)	0.0	(0)	0.0	(0)	0.0
	이용자, 교회, 회사 등 일반 후원	**(2)**	**3.8**	(1)	2.6	(1)	9.1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해당사항 없음	**(49)**	**92.5**	(37)	94.9	(9)	81.8	(3)	100.0

추가 필요 차량 수

- 시설 보유 차량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차량의 수는 승합차 평균 0.6대, 승용차 0.3대, 미니버스 0.1대로 나타남
  - 승합차(6~15인) : 추가 필요한 차량 수가 비교적 높은 시설은 자치구 위탁시설(0.7대), 단독시설(0.6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0.6대) 등임

표 3-22 추가 필요 차량 수

(단위: 개소, 대)

구분		승용차 (5인 이하)		승합차 (6-15인)		미니버스 (16-25인)		기타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전체		**(120)**	**0.3**	**(120)**	**0.6**	**(120)**	**0.1**	**(52)**	**0.1**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0.4	(88)	0.6	(88)	0.1	(38)	0.0
	병설시설	(25)	0.2	(25)	0.4	(25)	0.1	(11)	0.3
	자치구 위탁시설	(7)	0.4	(7)	0.7	(7)	0.1	(3)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0.3	(103)	0.6	(103)	0.1	(43)	0.0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0.2	(10)	0.4	(10)	0.2	(8)	0.4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0.6	(5)	0.2	(5)	0.0	(1)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0	(2)	0.0	(2)	0.0	(0)	-

(2) 시설 설치 공간 현황

전체 시설 설치 공간 현황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설치 신고면적은 전체(총 120개소) 평균 163.3㎡(이용자 1인당 평균 면적 : 정원기준 13.7㎡, 현원기준 14.6㎡)로 나타남
- 필수 설치 공간인 '사무실'은 전용 운영 비율이 65.8%(79개소)로 비교적 높음. '프로그램실'을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60.8%(평균 1.5개실), 다른 용도의 공간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52.5%(평균 1.5개실)임
- '이용자 개별활동실'과 '이용자 공용휴게실'을 전용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극히 적고, 다른 용도의 공간과 통합 운영(약 60%)하거나 없는 비율(약 30%)이 높음
- '심리안정실'이나 '상담실'이 없는 시설이 약 25%, '직원 공용휴게실'이 없는 시설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심리안정실(전용 운영 27.5%, 통합 운영 46.7%), 상담실(전용 운영 16.7%, 통합 운영 60.0%), 직원 공용휴게실(전용 운영 8.3%, 통합 운영 40%, 없음 51.7%)

○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시설은 21.7%(26개소),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이 없는 시설은 18.3%(22개소)로 나타남. '조리실'이 없는 시설은 30%(36개소)임

▌표 3-23▐ 주요 공간 운영 총괄 현황

(단위: 개소, %)

공간명	전용 운영	통합 운영	없음	주요 특징
사무실	65.8%(79개소)	34.2%(41개소)	-	전용 운영 비율이 높음
프로그램실	60.8%(73개소)	52.5%(63개소)	-	대다수가 전용/통합 운영
이용자 개별활동실	6.7%(8개소)	60.8%(73개소)	32.5%(39개소)	전용 운영은 극히 적고, 통합 운영 또는 없음 비율이 높음
이용자 휴게실	12.5%(15개소)	62.5%(75개소)	25.0%(30개소)	
직원 휴게실	8.3%(10개소)	40.0%(48개소)	51.7%(62개소)	시설의 절반 이상이 없음
심리안정실	27.5%(33개소)	46.7%(56개소)	25.8%(31개소)	-
상담실	16.7%(20개소)	60.0%(72개소)	23.3%(28개소)	통합 운영 비율이 높음
장애인 화장실	있음 78.3%(94개소)		21.7%(26개소)	-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있음 81.7%(98개소)		18.3%(22개소)	-
조리실	있음 70.0%(84개소)		30.0%(36개소)	-

*조사참여 120개소의 복수응답임

운영 형태별 설치 공간 현황

○ 설치 면적 : 운영 형태별로 볼 때 자치구 위탁시설(7개소) 면적이 평균 259.6㎡로 가장 크고, 단독시설(88개소) 평균 164.7㎡, 병설시설(25개소) 평균 131.2㎡로 나타남

- 이용자 1인당 평균 면적은 자치구 위탁시설(정원기준 20.8㎡, 현원기준 25.6㎡), 단독시설(정원기준 14.1㎡, 현원기준 14.7㎡), 병설시설(정원기준 10.5㎡, 현원기준 11.1㎡)로 나타남

○ 공간 구성 : 단독시설은 대부분의 활동공간을 다른 용도의 공간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병설시설은 '프로그램실', '심리안정실', '이용자 휴게실', '직원 휴게실' 등의 전용 운영 비율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높게 나타남. 자치구 위탁시설은 법적 필수 설치 공간인 '사무실', '장애인화장실', '성별구분 화장실' 등의 전용 공간은 갖추고 있으나 '이용자 개별활동실', '직원 공용휴게실' 등의 설치율은 낮게 나타남

- 필수 설치 공간인 '프로그램실'은 병설시설의 전용 운영 비율이 높고, '사무실'은 자치구 위탁시설의 전용 운영 비율이 높음
  - 프로그램실 전용 : 병설 76.0%(19개소), 단독 58.0%(51개소), 위탁 42.9%(3개소)
  - 사무실 전용 운영 : 위탁 71.4%(5개소), 단독 65.9%(58개소), 병설 64%(16개소)
- 단독시설의 경우, 기타 활동공간인 '상담실'(통합 67%, 전용 11.4%), '심리안정실'(통합 54.5%, 전용 21.6%), '이용자 개별활동실'(통합 65.9%, 전용 8%), '이용자 공용휴게실'(통합 67%, 전용 8%), '직원 공용휴게실'(통합 43.1%, 전용 5.7%) 등을 다른 용도의 공간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높음
- 반면, 병설시설과 자치구 위탁시설은 '심리안정실'을 전용 운영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단독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병설시설은 '이용자 공용휴게실', '직원 공용휴게실'의 전용 운영 비율이 20% 이상으로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상담실', '심리안정실', '이용자 개별활동실', '이용자 공용휴게실', '직원 공용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 수는 다음과 같음(※ 자치구 위탁시설(7개소)과 병설시설(25개소)의 수가 적으므로 비율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상담실 없음 : 위탁 28.6%(2개소), 병설 28%(7개소), 단독 21.6%(19개소)
  - 심리안정실 없음 : 병설 32%(8개소), 위탁 28.6%(2개소), 단독 23.9%(21개소)
  - 이용자 개별활동실 없음 : 위탁 57.1%(4개소), 병설 48%(12개소), 단독 26.1%(23개소)
  - 이용자 공용휴게실 없음 : 위탁 28.6%(2개소), 단독 25%(22개소), 병설 24.0%(6개소)
  - 직원 공용휴게실 없음 : 위탁 71.4%(5개소), 단독 51.1%(45개소), 병설 48%(12개소)
- '장애인화장실',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은 자치구 위탁시설의 설치비율이 높음. 단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다소 높음
  - 장애인화장실 없음 : 단독 26.1%(23개소), 병설 12%(3개소), 자치구 위탁시설 0%
- '조리실'은 단독시설의 설치비율(72.7%, 64개소)이 다른 유형보다 다소 높음
  - 조리실 없음 : 병설 40%(10개소), 위탁 28.6%(2개소), 단독 27.3%(24개소)

▌표 3-24▐ 현재 설치공간 현황_운영 형태별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운영 형태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n	%	n	%	n	%	n	%
프로그램실 (복수응답)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비율(%)	**(63)**	**52.5**	(49)	55.7	(10)	40.0	(4)	57.1
		평균(개)	**(63)**	**1.5**	(49)	1.6	(10)	1.3	(4)	1.5
	전용 운영	비율(%)	**(73)**	**60.8**	(51)	58.0	(19)	76.0	(3)	42.9
		평균(개)	**(73)**	**1.5**	(51)	1.5	(19)	1.2	(3)	2.3
심리안정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56)**	**46.7**	(48)	54.5	(6)	24.0	(2)	28.6
	전용 운영		**(33)**	**27.5**	(19)	21.6	(11)	44.0	(3)	42.9
	없음		**(31)**	**25.8**	(21)	23.9	(8)	32.0	(2)	28.6
이용자 개별 활동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73)**	**60.8**	(58)	65.9	(13)	52.0	(2)	28.6
	전용 운영	비율(%)	**(8)**	**6.7**	(7)	8.0	(0)	0.0	(1)	14.3
		평균(개)	**(8)**	**1.5**	(7)	1.4	(0)	-	(1)	2.0
	없음		**(39)**	**32.5**	(23)	26.1	(12)	48.0	(4)	57.1
상담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72)**	**60.0**	(59)	67.0	(10)	40.0	(3)	42.9
	전용 운영		**(20)**	**16.7**	(10)	11.4	(8)	32.0	(2)	28.6
	없음		**(28)**	**23.3**	(19)	21.6	(7)	28.0	(2)	28.6
이용자 공용 휴게실	이용자·직원용 통합 운영		**(28)**	**23.3**	(23)	26.1	(5)	20.0	(0)	0.0
	이용자 전용 운영		**(15)**	**12.5**	(7)	8.0	(6)	24.0	(2)	28.6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47)**	**39.2**	(36)	40.9	(8)	32.0	(3)	42.9
	없음		**(30)**	**25.0**	(22)	25.0	(6)	24.0	(2)	28.6
직원 공용 휴게실	이용자·직원용 통합 운영		**(28)**	**23.3**	(23)	26.1	(5)	20.0	(0)	0.0
	직원 전용 운영		**(10)**	**8.3**	(5)	5.7	(5)	20.0	(0)	0.0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20)**	**16.7**	(15)	17.0	(3)	12.0	(2)	28.6
	없음		**(62)**	**51.7**	(45)	51.1	(12)	48.0	(5)	71.4
사무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41)**	**34.2**	(30)	34.1	(9)	36.0	(2)	28.6
	전용 운영		**(79)**	**65.8**	(58)	65.9	(16)	64.0	(5)	71.4
장애인 화장실	있음		**(94)**	**78.3**	(65)	73.9	(22)	88.0	(7)	100.0
	없음		**(26)**	**21.7**	(23)	26.1	(3)	12.0	(0)	0.0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있음		**(98)**	**81.7**	(73)	83.0	(19)	76.0	(6)	85.7
	없음		**(22)**	**18.3**	(15)	17.0	(6)	24.0	(1)	14.3
조리실	있음		**(84)**	**70.0**	(64)	72.7	(15)	60.0	(5)	71.4
	없음		**(36)**	**30.0**	(24)	27.3	(10)	40.0	(2)	28.6
전체 시설 면적 평균(㎡)			**(120)**	**163.3**	(88)	164.7	(25)	131.2	(7)	259.6
이용자 1인당 평균 면적(㎡)		정원기준	**(120)**	**13.7**	(88)	14.1	(25)	10.5	(7)	20.8
		현원기준	**(120)**	**14.6**	(88)	14.7	(25)	11.1	(7)	25.6

이용인 특성 유형별 설치 공간 현황

- 설치 면적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103개소)의 평균 면적은 164.8㎡이며,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10개소)은 평균 180.1㎡, 시각장애인 전담시설(5개소)은 평균 132.2㎡, 청각장애인 전담시설(2개소)은 평균 81.5㎡로 나타남
  - 이용자 1인당 평균 면적은 청각장애인 전담시설(정원기준 24.1㎡, 현원기준 27.2㎡),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정원기준 15.9㎡, 현원기준 17.7㎡),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정원기준 13.5㎡, 현원기준 14.2㎡),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정원기준 10.0㎡, 현원기준 11.2㎡)로 나타남
- 공간 구성 : 이용인 특성 시설유형에 따라 공간 구성에 있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다만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장애인화장실(100%)'과 '조리실(90%)' 설치율이 높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103개소)의 63%는 '이용자 개별활동실', '이용자 공용휴게실'을 다른 용도의 공간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이용자용과 직원용 휴게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25%임. 시설의 약 30%는 심리안정실을 전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실(복수응답) : 전용 운영 60.2%(62개소), 통합 운영 53.4%(55개소)
  - 사무실 : 전용 운영 65.0%(67개소), 통합 운영 35.0%(36개소)
  - 심리안정실 : 통합 46.6%(48개소), 전용 29.1%(30개소), 없음 24.3%(25개소)
  - 상담실 : 통합 운영 62.1%(64개소), 없음 24.3%(25개소), 전용 13.6%(14개소)
  - 이용자 개별활동실 : 통합 63.1%(65개소), 없음 29.1%(30개소), 전용 7.8%(8개소)
  - 이용자 공용휴게실 : 통합 63.1%(65개소), 없음 27.2%(28개소), 전용 9.7%(10개소)
  - 직원 공용휴게실 : 통합 41.7%(43개소), 없음 49.5%(51개소), 전용 8.7%(9개소)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10개소) : 이용자 개별활동실(통합 운영 60%, 없음 40%), 심리안정실(통합 운영 60%, 전용 운영 30%, 없음 10%)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22.3%(23개소)는 '장애인화장실'이 없고, 16.5%(17개소)는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이 없음. '조리실'은 67.0%(6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33.0%(34개소)는 없음

▌표 3-25▐ 현재 설치공간 현황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프로그램실 (복수응답)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비율(%)	**(63)**	**52.5**	(55)	53.4	(5)	50.0	(1)	20.0	(2)	100.0
		평균(개)	**(63)**	**1.5**	(55)	1.5	(5)	1.2	(1)	2.0	(2)	1.0
	전용 운영	비율(%)	**(73)**	**60.8**	(62)	60.2	(6)	60.0	(5)	100.0	(0)	0.0
		평균(개)	**(73)**	**1.5**	(62)	1.5	(6)	1.2	(5)	1.0	(0)	-
심리안정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56)**	**46.7**	(48)	46.6	(6)	60.0	(2)	40.0	(0)	0.0
	전용 운영		**(33)**	**27.5**	(30)	29.1	(3)	30.0	(0)	0.0	(0)	0.0
	없음		**(31)**	**25.8**	(25)	24.3	(1)	10.0	(3)	60.0	(2)	100.0
이용자 개별 활동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73)**	**60.8**	(65)	63.1	(6)	60.0	(2)	40.0	(0)	0.0
	전용 운영	비율(%)	**(8)**	**6.7**	(8)	7.8	(0)	0.0	(0)	0.0	(0)	0.0
		평균(개)	**(8)**	**1.5**	(8)	1.5	(0)	-	(0)	-	(0)	-
	없음		**(39)**	**32.5**	(30)	29.1	(4)	40.0	(3)	60.0	(2)	100.0
상담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72)**	**60.0**	(64)	62.1	(5)	50.0	(3)	60.0	(0)	0.0
	전용 운영		**(20)**	**16.7**	(14)	13.6	(5)	50.0	(1)	20.0	(0)	0.0
	없음		**(28)**	**23.3**	(25)	24.3	(0)	0.0	(1)	20.0	(2)	100.0
이용자 공용 휴게실	이용자·직원용 통합 운영		**(28)**	**23.3**	(26)	25.2	(2)	20.0	(0)	0.0	(0)	0.0
	이용자 전용 운영		**(15)**	**12.5**	(10)	9.7	(2)	20.0	(3)	60.0	(0)	0.0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47)**	**39.2**	(39)	37.9	(5)	50.0	(2)	40.0	(1)	50.0
	없음		**(30)**	**25.0**	(28)	27.2	(1)	10.0	(0)	0.0	(1)	50.0
직원 공용 휴게실	이용자·직원용 통합 운영		**(28)**	**23.3**	(26)	25.2	(2)	20.0	(0)	0.0	(0)	0.0
	직원 전용 운영		**(10)**	**8.3**	(9)	8.7	(1)	10.0	(0)	0.0	(0)	0.0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20)**	**16.7**	(17)	16.5	(2)	20.0	(1)	20.0	(0)	0.0
	없음		**(62)**	**51.7**	(51)	49.5	(5)	50.0	(4)	80.0	(2)	100.0
사무실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 운영		**(41)**	**34.2**	(36)	35.0	(4)	40.0	(0)	0.0	(1)	50.0
	전용 운영		**(79)**	**65.8**	(67)	65.0	(6)	60.0	(5)	100.0	(1)	50.0
장애인 화장실	있음		**(94)**	**78.3**	(80)	77.7	(10)	100.0	(3)	60.0	(1)	50.0
	없음		**(26)**	**21.7**	(23)	22.3	(0)	0.0	(2)	40.0	(1)	50.0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있음		**(98)**	**81.7**	(86)	83.5	(7)	70.0	(3)	60.0	(2)	100.0
	없음		**(22)**	**18.3**	(17)	16.5	(3)	30.0	(2)	40.0	(0)	0.0
조리실	있음		**(84)**	**70.0**	(69)	67.0	(9)	90.0	(5)	100.0	(1)	50.0
	없음		**(36)**	**30.0**	(34)	33.0	(1)	10.0	(0)	0.0	(1)	50.0
전체 시설 면적 평균(㎡)			**(120)**	**163.3**	(103)	164.8	(10)	180.1	(5)	132.2	(2)	81.5
이용자 1인당 평균 면적(㎡)		정원기준	**(120)**	**13.7**	(103)	13.5	(10)	15.9	(5)	10.0	(2)	24.1
		현원기준	**(120)**	**14.6**	(103)	14.2	(10)	17.7	(5)	11.2	(2)	27.2

(3) 전용 공간 필요 여부

- 전용 공간 필요 여부에 대해 '직원 휴게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2% 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사무실 전용 공간 필요는 73.3%로 나타남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볼 때, '프로그램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이용자 개별활동실 79.2%, 심리안정실과 상담실 78.3%, 이용자 공용휴게실 77.5%,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70%, 장애인화장실 67.5%, 조리실 64.2%순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볼 때 단독시설은 상담실, 프로그램실, 이용자 개별활동실의 전용 공간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병설시설은 프로그램실, 심리안정실, 장애인화장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구 위탁시설은 심리안정실, 이용자 개별활동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프로그램실 전용 공간,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심리안정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과 프로그램실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표 3-26 | 전용 공간 필요 여부_운영 형태별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운영 형태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n	%	n	%	n	%	n	%
프로그램실 (복수응답)	필요	**(97)**	**80.8**	(70)	79.5	(21)	84.0	(6)	85.7
	불필요	**(23)**	**19.2**	(18)	20.5	(4)	16.0	(1)	14.3
심리안정실	필요	**(94)**	**78.3**	(67)	76.1	(20)	80.0	(7)	100.0
	불필요	**(26)**	**21.7**	(21)	23.9	(5)	20.0	(0)	0.0
이용자 개별활동실	필요	**(95)**	**79.2**	(70)	79.5	(18)	72.0	(7)	100.0
	불필요	**(25)**	**20.8**	(18)	20.5	(7)	28.0	(0)	0.0
상담실	필요	**(94)**	**78.3**	(71)	80.7	(17)	68.0	(6)	85.7
	불필요	**(26)**	**21.7**	(17)	19.3	(8)	32.0	(1)	14.3
이용자 공용휴게실	필요	**(93)**	**77.5**	(68)	77.3	(19)	76.0	(6)	85.7
	불필요	**(27)**	**22.5**	(20)	22.7	(6)	24.0	(1)	14.3
직원 공용휴게실	필요	**(101)**	**84.2**	(74)	84.1	(20)	80.0	(7)	100.0
	불필요	**(19)**	**15.8**	(14)	15.9	(5)	20.0	(0)	0.0

구분		전체		운영 형태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n	%	n	%	n	%	n	%
사무실	필요	**(88)**	**73.3**	(61)	69.3	(21)	84.0	(6)	85.7
	불필요	**(32)**	**26.7**	(27)	30.7	(4)	16.0	(1)	14.3
장애인화장실	필요	**(81)**	**67.5**	(55)	62.5	(20)	80.0	(6)	85.7
	불필요	**(39)**	**32.5**	(33)	37.5	(5)	20.0	(1)	14.3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필요	**(84)**	**70.0**	(60)	68.2	(18)	72.0	(6)	85.7
	불필요	**(36)**	**30.0**	(28)	31.8	(7)	28.0	(1)	14.3
조리실	필요	**(77)**	**64.2**	(54)	61.4	(18)	72.0	(5)	71.4
	불필요	**(43)**	**35.8**	(34)	38.6	(7)	28.0	(2)	28.6

▌표 3-27▐ 전용 공간 필요 여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프로그램실 (복수응답)	필요	**(97)**	**80.8**	(87)	84.5	(4)	40.0	(5)	100.0	(1)	50.0
	불필요	**(23)**	**19.2**	(16)	15.5	(6)	60.0	(0)	0.0	(1)	50.0
심리안정실	필요	**(94)**	**78.3**	(84)	81.6	(6)	60.0	(3)	60.0	(1)	50.0
	불필요	**(26)**	**21.7**	(19)	18.4	(4)	40.0	(2)	40.0	(1)	50.0
이용자 개별활동실	필요	**(95)**	**79.2**	(85)	82.5	(5)	50.0	(3)	60.0	(2)	100.0
	불필요	**(25)**	**20.8**	(18)	17.5	(5)	50.0	(2)	40.0	(0)	0.0
상담실	필요	**(94)**	**78.3**	(83)	80.6	(5)	50.0	(4)	80.0	(2)	100.0
	불필요	**(26)**	**21.7**	(20)	19.4	(5)	50.0	(1)	20.0	(0)	0.0
이용자 공용휴게실	필요	**(93)**	**77.5**	(83)	80.6	(6)	60.0	(2)	40.0	(2)	100.0
	불필요	**(27)**	**22.5**	(20)	19.4	(4)	40.0	(3)	60.0	(0)	0.0
직원 공용휴게실	필요	**(101)**	**84.2**	(89)	86.4	(7)	70.0	(3)	60.0	(2)	100.0
	불필요	**(19)**	**15.8**	(14)	13.6	(3)	30.0	(2)	40.0	(0)	0.0
사무실	필요	**(88)**	**73.3**	(78)	75.7	(5)	50.0	(4)	80.0	(1)	50.0
	불필요	**(32)**	**26.7**	(25)	24.3	(5)	50.0	(1)	20.0	(1)	50.0
장애인화장실	필요	**(81)**	**67.5**	(70)	68.0	(6)	60.0	(4)	80.0	(1)	50.0
	불필요	**(39)**	**32.5**	(33)	32.0	(4)	40.0	(1)	20.0	(1)	50.0
성별구분 일반 화장실	필요	**(84)**	**70.0**	(74)	71.8	(4)	40.0	(5)	100.0	(1)	50.0
	불필요	**(36)**	**30.0**	(29)	28.2	(6)	60.0	(0)	0.0	(1)	50.0
조리실	필요	**(77)**	**64.2**	(67)	65.0	(5)	50.0	(4)	80.0	(1)	50.0
	불필요	**(43)**	**35.8**	(36)	35.0	(5)	50.0	(1)	20.0	(1)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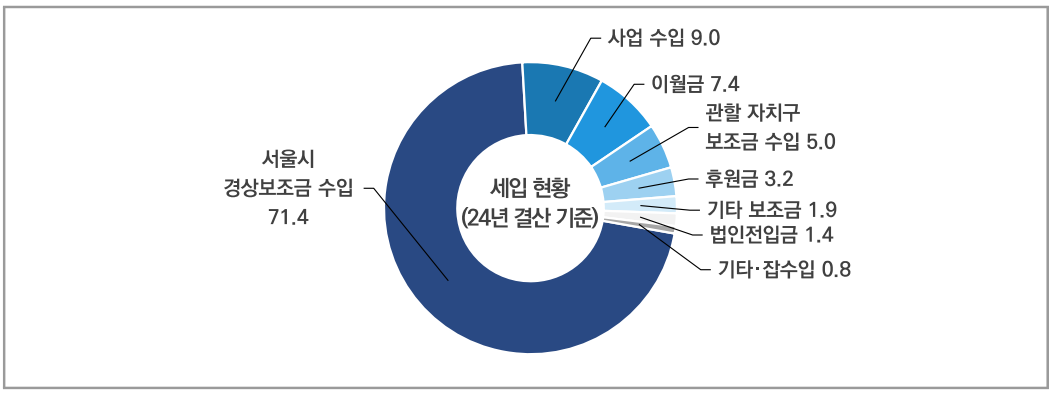
3) 시설 운영 예산

(1) 세입 및 세출 현황

전체 세입·세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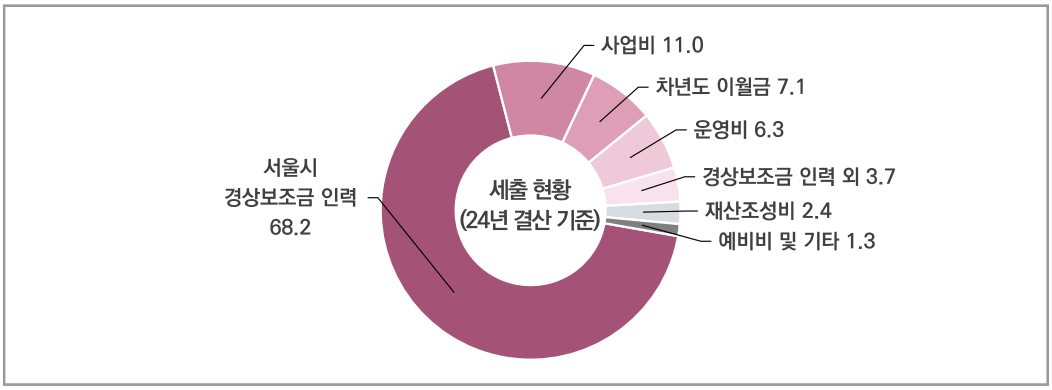
- 2024년 결산 기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세입 및 세출금액은 전체 평균 약 3억 3,380만 원으로 나타남. 세입의 78.2%가 보조금 수입이며, 세출의 71.9%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
- 세입 내역(평균) : 서울시 경상보조금 약 2억 3,830만 원(71.4%), 사업 수입 약 2,990만 원(9.0%), 자치구 보조금 약 1,660만 원(5.0%), 후원금 약 1,080만 원(3.2%), 기타 보조금 약 630만 원(1.9%)으로 나타남
  -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의 94.5%, 자치구 보조금 수입의 82.3%가 '인건비'임
  - 기타 보조금 수입의 43.1%는 '기능보강비'이며, 37.2%는 '외부프로포절 지원금'으로 나타남
- 세출 내역(평균) : 인건비 약 2억 4천만 원(71.9%), 사업비 약 3,660만 원(11.0%), 운영비 약 2,110만 원(6.3%)으로 나타남
  - 인건비는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건비가 68.2%(약 2억 2,770만 원)이며, 경상보조금 인력 외 인건비가 3.7%(약 1,230만 원)임

(단위: %)



▌그림 3-1 ▌ 세입 현황

(단위: %)



▌그림 3-2▐ 세출 현황

▌표 3-28▐ 세입 및 세출 현황_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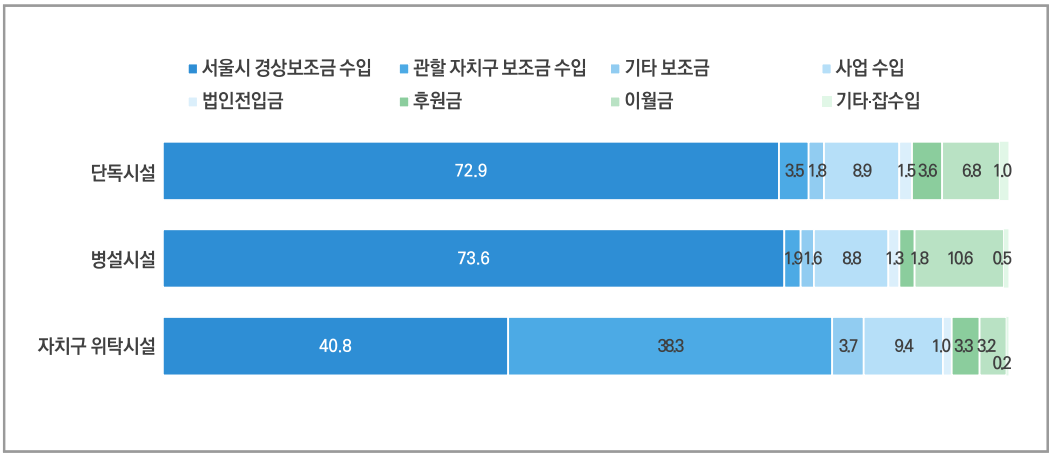
(단위: 원, %)

세입(24년 결산 기준)					세출(24년 결산 기준)				
구분			금액	%	구분			금액	%
보조금	서울시 경상 보조금 수입	인건비	225,032,671	67.4	인건비	서울시경상보조금인력		227,739,162	68.2
		운영비	13,220,972	4.0		경상 보조금 인력 외	자치구 지원 인력	10,015,016	3.0
		소계	**238,253,643**	**71.4**			시설 자부담 인력	1,513,167	0.5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인건비	13,702,723	4.1			법인 자부담 인력	480,474	0.1
		운영비	2,937,334	0.9			대체인력 인건비	310,135	0.1
		소계	**16,640,057**	**5.0**			**소계**	**12,318,791**	**3.7**
	기타 보조금	기능보강비	2,713,383	0.8	운영비			21,131,564	6.3
		냉난방비 지원금	861,822	0.3					
		대체인력 인건비	381,817	0.1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2,341,356	0.7					
		소계	**6,298,377**	**1.9**					
사업 수입			29,890,522	9.0	재산조성비			8,073,525	2.4
법인전입금			4,674,068	1.4	사업비			36,628,123	11.0
후원금			10,775,117	3.2	예비비 및 기타			4,295,273	1.3
이월금			24,565,746	7.4					
기타·잡수입			2,744,553	0.8	차년도 이월금			23,655,648	7.1
합계(A)			**333,842,085**	**100.0**	**합계(B)**			**333,842,085**	**100.0**

운영 형태별 세입·세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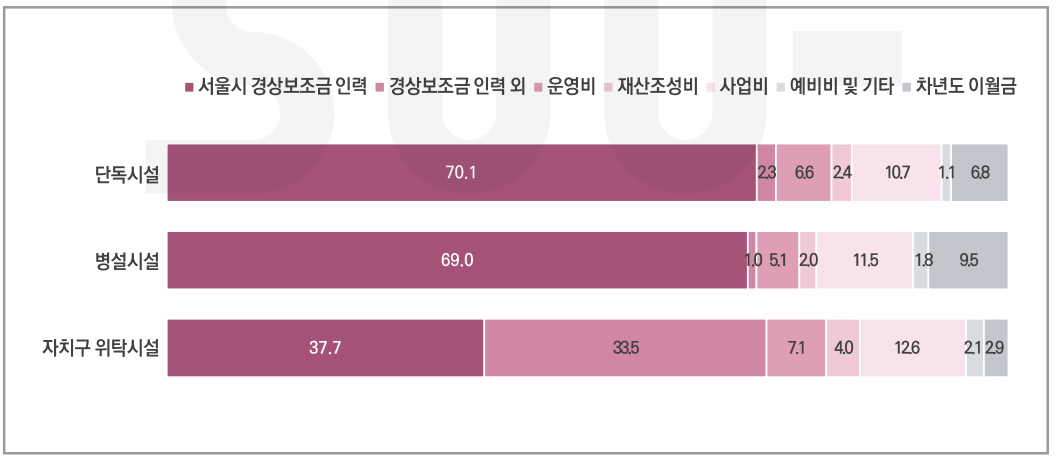
- 운영 형태별 평균 세입·세출 금액은 단독시설(약 3억 4,200만 원), 병설시설 (약 3억 1,420만 원), 자치구 위탁시설(약 3억 140만 원)순으로 나타남
- 주요 세입 내역 비중을 살펴보면 병설시설(73.6%, 약 2억 3,130만 원)과 단독시설(72.9%, 약 2억 4,940만 원)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치구 위탁시설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40.8%, 약 1억 2,300만 원)과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38.3%, 약 1억 1,540만 원)의 비중이 비슷함
  - 자치구 위탁시설의 기타 보조금 비율은 3.7%로 단독시설(1.8%)과 병설시설(1.6%)보다 다소 높음. 세부 구성 내역을 보면 자치구 위탁시설은 '기능보강비' 비중이 높고, 병설시설은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비중이 높음. 단독시설은 '기능보강비'와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비중이 비슷함
  - '사업 수입'은 자치구 위탁시설(9.4%), 단독시설(8.9%), 병설시설(8.8%)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후원금'은 단독시설(3.6%)과 자치구 위탁시설(3.3%)이 병설시설(1.8%)보다 다소 높음
- 주요 세출 내역 비중을 살펴보면 단독시설과 병설시설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인건비(단독 70.1%, 약 2억 3,990만 원 / 병설 69.0%, 약 2억 1,690만 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치구 위탁시설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인건비 37.7%(약 1억 1,370만 원)와 경상보조금 인력 외 인건비 33.5%(약 1억 110만 원)로 구성됨
  - '운영비'는 자치구 위탁시설 7.1%(약 2,150만 원), 단독시설 6.6%(약 2,250만 원), 병설시설 5.1%(약 1,610만 원)로 나타남
  - '사업비'는 자치구 위탁시설 12.6%(약 3,790만 원), 병설시설 11.5%(약 3,620만 원), 단독시설 10.7%(약 3,670만 원)임

(단위: %)



▌그림 3-3▐ 세입 현황_운영 형태별

(단위: %)



▌그림 3-4▐ 세출 현황_운영 형태별

▌표 3-29 ▌ 세입 및 세출 현황_운영 형태별

(단위: 원, %)

세입(24년 결산 기준)

구분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금액	%	금액	%	금액	%
보조금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인건비	236,011,429	69.0	217,275,910	69.2	114,716,719	38.1
		운영비	13,382,151	3.9	14,019,990	4.5	8,341,087	2.8
		소계	**249,393,580**	**72.9**	**231,295,900**	**73.6**	**123,057,806**	**40.8**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인건비	9,441,997	2.8	4,346,238	1.4	100,682,146	33.4
		운영비	2,385,300	0.7	1,583,590	0.5	14,711,997	4.9
		소계	**11,827,297**	**3.5**	**5,929,828**	**1.9**	**115,394,143**	**38.3**
	기타 보조금	기능보강비	2,530,330	0.7	1,397,920	0.4	9,712,714	3.2
		냉난방비 지원금	911,535	0.3	716,995	0.2	754,094	0.3
		대체인력 인건비	442,686	0.1	256,167	0.1	65,349	0.0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2,416,883	0.7	2,595,103	0.8	485,633	0.2
		소계	**6,301,433**	**1.8**	**4,966,185**	**1.6**	**11,017,790**	**3.7**
사업 수입			30,607,041	8.9	27,806,044	8.8	28,327,429	9.4
법인전입금			5,004,234	1.5	3,960,624	1.3	3,071,429	1.0
후원금			12,294,087	3.6	5,650,456	1.8	9,981,857	3.3
이월금			23,296,472	6.8	33,170,588	10.6	9,790,759	3.2
기타·잡수입			3,277,313	1.0	1,427,067	0.5	752,319	0.2
합계(A)			**342,001,457**	**100.0**	**314,206,693**	**100.0**	**301,393,530**	**100.0**

세출(24년 결산 기준)

구분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금액	%	금액	%	금액	%
인건비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239,882,545	70.1	216,922,311	69.0	113,711,100	37.7
	경상보조금 인력 외	자치구 지원 인력	5,166,852	1.5	1,890,004	0.6	99,981,250	33.2
		시설 자부담 인력	1,779,477	0.5	784,272	0.2	768,461	0.3
		법인 자부담 인력	525,543	0.2	379,054	0.1	276,104	0.1
		대체인력 인건비	376,030	0.1	146,723	0.0	65,349	0.0
		소계	**7,847,903**	**2.3**	**3,200,052**	**1.0**	**101,091,164**	**33.5**
운영비			22,517,503	6.6	16,148,914	5.1	21,503,511	7.1
재산조성비			8,296,917	2.4	6,194,177	2.0	11,977,123	4.0
사업비			36,654,857	10.7	36,181,860	11.5	37,885,820	12.6
예비비 및 기타			3,697,334	1.1	5,797,247	1.8	6,448,023	2.1
차년도 이월금			23,104,397	6.8	29,762,131	9.5	8,776,790	2.9
합계(B)			**342,001,457**	**100.0**	**314,206,693**	**100.0**	**301,393,530**	**100.0**

이용인 특성 시설유형별 세입·세출 현황

- 이용자 특성시설별 평균 세입·세출 금액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약 3억 4,400만 원),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약 2억 9,500만 원),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약 2억 4,830만 원), 청각장애인 전담시설(약 2억 1,750만 원)순으로 나타남
- 주요 세입 내역 비중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71.0%(약 2억 4,430만 원)와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5.1%(약 1,740만 원)로 구성됨.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70.3%(약 2억 740만 원),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6.8%(약 1,990만 원)로 구성됨. 청각장애인 전담시설(88.9%, 약 1억 9,330만 원)과 시각장애인 전담시설(77.7%, 약 1억 9,280만 원)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기타 보조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시설유형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세부 구성 내역 중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기능보강비'와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사업 수입'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9.3%)과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8.1%)이 시각장애인 전담시설(2.9%)과 청각장애인 전담시설(0.9%) 보다 높게 나타남. '후원금'은 시설유형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시설별 2.6~3.4% 비중)
- 주요 세출 내역 비중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다수시설과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인건비(발달 68.0%, 약 2억 3,390만 원 / 뇌병변 67.0%, 약 1억 9,770만 원)와 약간의 경상보조금 인력 외 인건비(발달 3.9%, 약 1,350만 원 / 뇌병변 2.8%, 약 840만 원)로 구성됨. 청각장애인 전담시설과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인건비(청각 83.7%, 약 1억 8,200만 원 / 시각 72.4%, 약 1억 7,970만 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운영비'는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6.5%(약 1,930만 원),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6.4%(약 2,190만 원),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5%(약 1,360만 원),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5.1%(약 1,150만 원)로 나타남
  - '사업비'는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1.1%(약 3,830만 원),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6%(약 3,140만 원),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9%(약 2,240만 원),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5.9%(약 1,290만 원)로 나타남

▌표 3-30 ▌ 세입 및 세출 현황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단위: 원, %)

세입(24년 결산 기준)

구분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보조금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인건비	231,045,415	67.2	194,593,606	66.0	179,436,238	72.3	181,562,795	83.5
		운영비	13,279,005	3.9	12,828,374	4.3	13,405,760	5.4	11,733,300	5.4
		소계	**244,324,420**	**71.0**	**207,421,979**	**70.3**	**192,841,998**	**77.7**	**193,296,095**	**88.9**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인건비	14,434,937	4.2	15,560,821	5.3	184,000	0.1	500,000	0.2
		운영비	2,995,981	0.9	4,359,405	1.5	60,000	0.0	0	0.0
		소계	17,430,918	5.1	19,920,226	6.8	244,000	0.1	500,000	0.2
	기타 보조금	기능보강비	3,016,757	0.9	1,200,000	0.4	576,000	0.2	0	0.0
		냉난방비 지원금	913,471	0.3	390,000	0.1	646,218	0.3	1,100,000	0.5
		대체인력 인건비	409,306	0.1	182,976	0.1	182,976	0.1	457,440	0.2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2,533,900	0.7	755,000	0.3	1,884,200	0.8	1,500,000	0.7
		소계	6,873,434	2.0	2,527,976	0.9	3,289,394	1.3	3,057,440	1.4
사업 수입			32,116,371	9.3	23,931,948	8.1	7,163,000	2.9	1,871,000	0.9
법인전입금			4,585,675	1.3	3,417,500	1.2	10,377,719	4.2	1,250,000	0.6
후원금			11,280,077	3.3	7,613,262	2.6	8,467,774	3.4	6,347,340	2.9
이월금			24,399,479	7.1	28,793,121	9.8	25,152,078	10.1	10,525,819	4.8
기타·잡수입			3,010,978	0.9	1,400,566	0.5	783,678	0.3	645,828	0.3
합계(A)			344,021,351	100	295,026,579	100	248,319,641	100	217,493,522	100

세출(24년 결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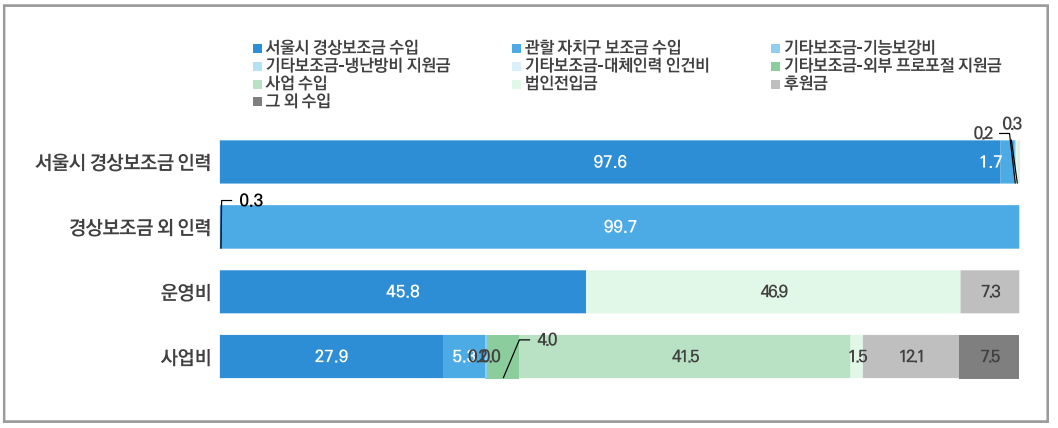
구분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인건비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233,875,388	68.0	197,727,014	67.0	179,670,208	72.4	181,956,680	83.7
	경상보조금 인력 외	자치구 지원 인력	11,189,174	3.3	4,839,690	1.6	184,000	0.1	0	0.0
		시설 자부담 인력	1,660,178	0.5	747,875	0.3	566,196	0.2	135,960	0.1
		법인 자부담 인력	303,312	0.1	2,641,567	0.9	0	0.0	0	0.0
		대체인력 인건비	339,033	0.1	138,086	0.0	91,488	0.0	228,720	0.1
		소계	13,491,698	3.9	8,367,218	2.8	841,684	0.3	364,680	0.2
운영비			21,873,235	6.4	19,254,747	6.5	13,599,930	5.5	11,148,696	5.1
재산조성비			8,766,038	2.5	4,618,092	1.6	3,194,822	1.3	1,883,010	0.9
사업비			38,287,861	11.1	31,379,275	10.6	22,418,478	9.0	12,919,954	5.9
예비비 및 기타			4,012,799	1.2	8,890,374	3.0	2,228,767	0.9	1,033,451	0.5
차년도 이월금			23,714,333	6.9	24,789,860	8.4	26,365,752	10.6	8,187,051	3.8
합계(B)			344,021,351	100	295,026,579	100	248,319,641	100	217,493,522	100

(2)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

○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 항목 중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인건비(약 2억 2,770만 원)'의 주요 세입 재원은 97.6%(약 2억 2,220만 원)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으로 충당함

- '경상보조금 인력 외 인건비(약 1,230만 원)'의 주요 세입 재원은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81.8%(약 1,000만 원) 외에 후원금 5.5%, 사업 수입 4.2%,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3.3%, 법인 전입금 2.8% 등으로 충당됨
  - 경상보조금 인력 외 인건비 : 자치구 지원 인력은 99.7%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으로 충당되며, 시설 자부담 인력은 75% 이상 후원금(42.6%) 또는 사업 수입(33.9%)으로 충당됨
- '운영비(약 2,110만 원)'의 주요 세입 재원은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37.6%(약 790만 원)과 사업 수입 34.5%(약 730만 원) 외에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7.6%, 후원금 7.4%, 법인전입금 4.4% 등으로 충당됨
- '사업비(약 3,660만 원)'의 주요 세입 재원은 사업 수입 41.5%(약 1,520만 원)과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27.9%(약 1,020만 원) 외에 후원금 12.1%(약 440만 원),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5.3%, 외부프로포절 지원금 4.0% 등으로 충당됨

(단위: %)



▌그림 3-5▐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

*경상보조금 외 인력 : 경상보조금 인력 외 인건비(자치구 지원 인력)의 세입 재원 비율임

▌표 3-31 ▌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 1

(단위: 원, %)

구분			세출 합계	주요 세입 재원							
				서울시 경상보조금 수입		관할 자치구 보조금 수입		기타 보조금			
								기능보강비		냉난방비 지원금	
			평균(원)	평균(원)	%	평균(원)	%	평균(원)	%	평균(원)	%
인건비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227,739,162**	222,282,935	97.6	3,974,642	1.7	0	0.0	22,438	0.0
	경상보조금 인력 외	자치구 지원 인력	**10,015,016**	25,723	0.3	9,989,292	99.7	0	0.0	0	0.0
		시설 자부담 인력	**1,513,167**	25,281	1.7	72,356	4.8	0	0.0	0	0.0
		법인 자부담 인력	**480,474**	220,131	45.8	0	0.0	0	0.0	0	0.0
		대체인력 인건비	**310,135**	139,541	45.0	9,911	3.2	0	0.0	0	0.0
운영비			**21,131,564**	7,937,470	37.6	1,613,721	7.6	223,180	1.1	450,318	2.1
재산조성비			**8,073,525**	1,803,772	22.3	891,030	11.0	1,560,899	19.3	0	0.0
사업비			**36,628,123**	10,231,489	27.9	1,955,447	5.3	63,490	0.2	6,219	0.0

▌표 3-32 ▌ 세입 재원별 주요 세출 현황 2

(단위: 원, %)

구분			주요 세입 재원											
			기타 보조금				사업 수입		법인 전입금		후원금		그 외 수입	
			대체인력비		외부프로포절									
			평균(원)	%	평균(원)	%	평균(원)	%	평균(원)	%	평균(원)	%	평균(원)	%
인건비	서울시 경상보조금 인력		87,334	0.0	0	0.0	396,518	0.2	753,920	0.3	134,319	0.1	87,056	0.0
	경상보조금 인력 외	자치구 지원 인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시설 자부담 인력	0	0.0	0	0.0	513,156	33.9	125,603	8.3	644,535	42.6	132,236	8.7
		법인 자부담 인력	0	0.0	0	0.0	0	0.0	225,135	46.9	35,208	7.3	0	0.0
		대체인력 인건비	150,862	48.6	0	0.0	8,468	2.7	71	0.0	0	0.0	1,281	0.4
운영비			0	0.0	61,117	0.3	7,283,392	34.5	923,091	4.4	1,573,915	7.4	1,065,360	5.0
재산조성비			0	0.0	116,467	1.4	1,103,857	13.7	433,776	5.4	1,737,392	21.5	426,332	5.3
사업비			0	0.0	1,453,477	4.0	15,187,221	41.5	564,876	1.5	4,427,324	12.1	2,738,580	7.5

(3) 서울시 지원 외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현황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120개소 중 절반은 서울시 지원 외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서울시 지원 외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시설은 50%(60개소)이며, 2025년은 1개소 증가한 50.8%(61개소)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의 인건비 추가지원 비율(7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 ▌ 서울시 지원 외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24년				2025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n	%	n	%	n	%	n	%
전체		**(60)**	**50.0**	**(60)**	**50.0**	**(61)**	**50.8**	**(59)**	**49.2**
운영 형태	단독시설	(44)	50.0	(44)	50.0	(44)	50.0	(44)	50.0
	병설시설	(13)	52.0	(12)	48.0	(13)	52.0	(12)	48.0
	자치구 위탁시설	(3)	42.9	(4)	57.1	(4)	57.1	(3)	42.9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50)	48.5	(53)	51.5	(51)	49.5	(52)	50.5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7)	70.0	(3)	30.0	(7)	70.0	(3)	3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2)	40.0	(3)	60.0	(2)	40.0	(3)	6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1)	50.0	(1)	50.0	(1)	50.0	(1)	50.0

4) 시설 이용자 현황

(1) 최근 3년간 시설 이용자 현황

- 2025년 기준 서울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120개소 전체 이용자는 정원 1,478명(현원 1,389명)으로 나타남(2023년 대비 2025년에 정원 15명, 현원 22명 증가)
  - 시설당 평균 정원은 12.3명, 평균 현원은 11.6명임
  -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은 95.6%임(2023년 대비 2025년에 0.3%p 증가)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103개소) 총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정원 1,290명(현원 1,220명)으로 나타남(2023년 대비 2025년에 정원 19명 증가, 현원 28명 증가)
  - 시설당 평균 정원은 12.5명, 평균 현원은 11.8명임
  -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은 96.3%임(2023년 대비 2025년에 0.7%p 증가)

    ※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증가 추세임(2020년 33,499명 → 2023년 36,330명)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10개소) 총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정원 115명(현원 103명)으로 나타남(2023년 대비 2025년에 정원 4명 감소, 현원 1명 감소)
  - 시설당 평균 정원은 11.5명, 평균 현원은 10.3명임
  -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은 91.2%임

    ※ 서울시 등록 뇌병변장애인은 감소 추세임(2020년 40,905명 → 2023년 38,940명)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5개소) 총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정원 66명(현원 60명)으로 나타남(2023년 대비 2025년 정원 변동 없음, 현원 4명 감소)
  - 시설당 평균 정원은 13.2명, 평균 현원은 12.0명임
  -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은 92.0%임(2023년 대비 2025년에 5.3%p 감소)
    ※ 서울시 등록 시각장애인은 감소 추세임(2020년 41,624명 → 2023년 40,706명)
- 청각장애인 전담시설(2개소) 총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정원 7명(현원 6명)으로 나타남(2023년 대비 2025년 정원 변동 없음, 현원 1명 감소)
  - 시설당 평균 정원은 3.5명, 평균 현원은 3.0명임(정원충족률 87.5%)
    ※ 서울시 등록 청각장애인은 증가 추세(2020년 57,430명 → 2023년 63,858명)이지만 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영향이며, 60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은 감소 추세임

▌표 3-34▐ 최근 3년간 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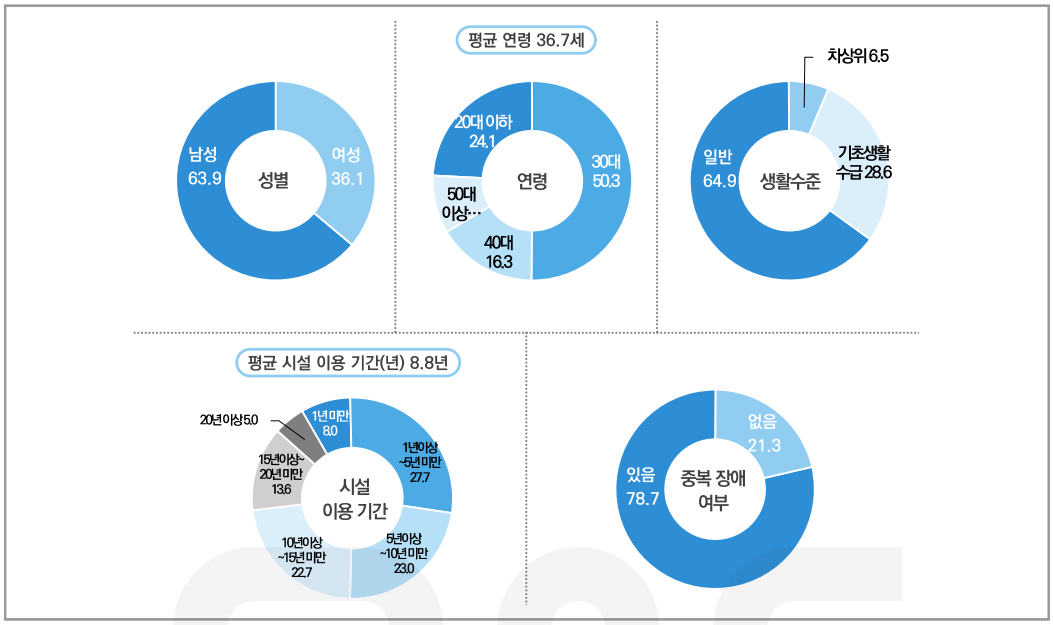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총 정원 합계(명)	**1,463**	**1,474**	**1,478**
		총 현원 합계(명)	**1,367**	**1,382**	**1,389**
		시설당 평균 정원(명)	**12.2**	**12.3**	**12.3**
		시설당 평균 현원(명)	**11.4**	**11.5**	**11.6**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95.3**	**95.5**	**95.6**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n=103)	총 정원 합계(명)	1,271	1,288	1,290
		총 현원 합계(명)	1,192	1,213	1,220
		시설당 평균 정원(명)	12.3	12.5	12.5
		시설당 평균 현원(명)	11.6	11.8	11.8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95.6	95.9	96.3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n=10)	총 정원 합계(명)	119	113	115
		총 현원 합계(명)	104	103	103
		시설당 평균 정원(명)	11.9	11.3	11.5
		시설당 평균 현원(명)	10.4	10.3	10.3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90.1	93.2	91.2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n=5)	총 정원 합계(명)	66	66	66
		총 현원 합계(명)	64	59	60
		시설당 평균 정원(명)	13.2	13.2	13.2
		시설당 평균 현원(명)	12.8	11.8	12.0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97.3	90.7	92.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2)	총 정원 합계(명)	7	7	7
		총 현원 합계(명)	7	7	6
		시설당 평균 정원(명)	3.5	3.5	3.5
		시설당 평균 현원(명)	3.5	3.5	3.0
		시설당 평균 정원충족률(%)	100.0	100.0	87.5

(2) 이용자 개인별 특성

이용자 기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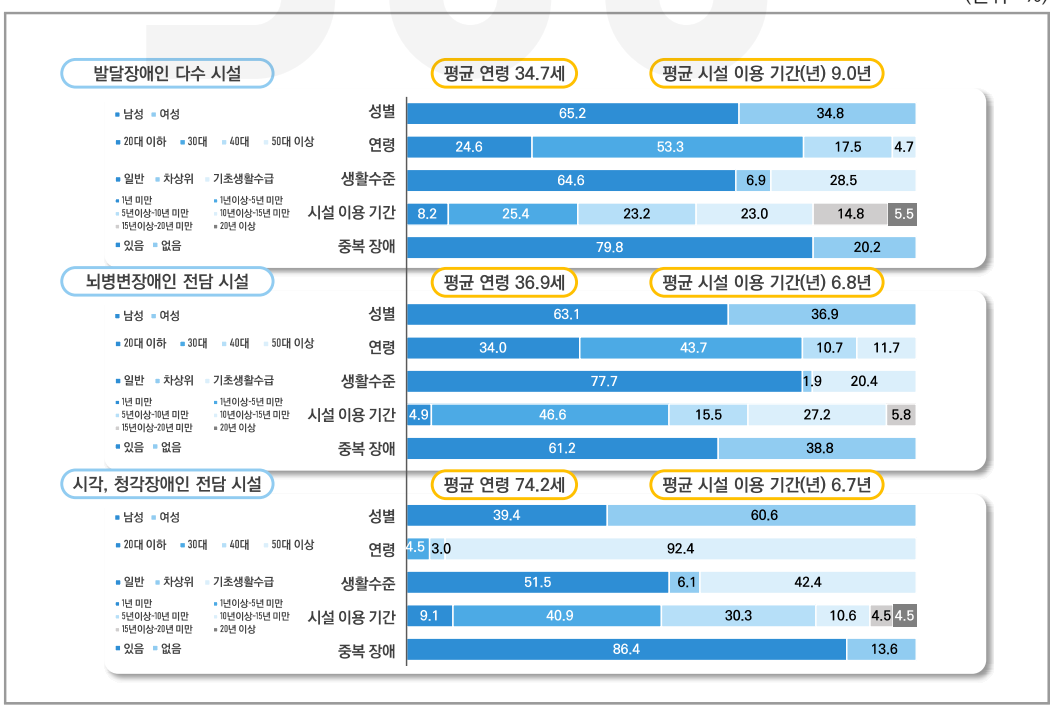
- 2025년 기준 서울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120개소 전체 이용자(현원 1,389명) 중 남성 63.9%(887명), 여성 36.1%(502명)로 남성이 많음
  - 발달장애인시설과 뇌병변장애인시설은 성별 비중 차이가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남성이 많고(남6.5:여3.5), 고령 이용자가 많은 시각/청각장애인시설은 여성 이용자 비율이 남성보다 많음
- 이용자 평균연령은 36.7세로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50.3%(698명)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 25.7%(356명), 20대 이하 24.1%(335명)임
  - 뇌병변장애인시설과 발달장애인시설은 30대 이하가 약 78%로 젊은 이용자 비율이 높고, 시각/청각장애인시설은 50대 이상 비율이 92%로 고령 이용자가 많음
  - 발달장애인시설(평균연령 34.7세) : 20대 이하 24.6%, 30대 53.3%, 40대 이상 22.1%
  - 뇌병변장애인시설(평균연령 36.9세) : 20대 이하 34.0%, 30대 43.7%, 40대 이상 22.3%
  - 시각/청각장애인시설(평균연령 74.2세) : 30·40대 7.6%, 50대 이상 92.4%
- 생활수준은 일반(64.9%), 기초생활수급(28.6%), 차상위(6.5%)순으로 분포함
  - 발달장애인시설은 전체 분포와 비슷하고, 뇌병변장애인시설은 일반 이용자 비율이 높고, 시각/청각장애인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 시설유형보다 높은 특성을 보임
- 이용자 평균 시설 이용기간은 105.1개월(8.8년)이며, 1년 이상~5년 미만(27.7%)이 가장 많고, 5~10년(23%), 10~15년(22.7%), 15년~20년(13.6%), 1년 미만(8%), 20년 이상(5%)순으로 분포함.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평균이용기간이 9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뇌병변장애인 시설은 6.8년, 시각/청각장애인 시설은 6.7년임
  - 발달장애인시설(평균이용기간 108.4개월) : 전체 분포와 비슷. 15년 이상 장기이용자가 약 20%를 차지함
  - 뇌병변장애인시설(평균이용기간 81.2개월) : 1~5년 이용자(46.6%) 비율 높고, 15년 이상 장기이용자는 5.8%임

(단위: %)



❙그림 3-6❙ 이용자 기본 특성_전체

(단위: %)



❙그림 3-7❙ 이용자 기본 특성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표 3-35 ▌ 이용자 기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887)**	**63.9**	(796)	65.2	(65)	63.1	(24)	40.0	(2)	33.3
	여성	**(502)**	**36.1**	(424)	34.8	(38)	36.9	(36)	60.0	(4)	66.7
연령	20대 이하	**(335)**	**24.1**	(300)	24.6	(35)	34.0	(0)	0.0	(0)	0.0
	30대	**(698)**	**50.3**	(650)	53.3	(45)	43.7	(3)	5.0	(0)	0.0
	40대	**(226)**	**16.3**	(213)	17.5	(11)	10.7	(2)	3.3	(0)	0.0
	50대 이상	**(130)**	**9.4**	(57)	4.7	(12)	11.7	(55)	91.7	(6)	100.0
	평균연령(세)	**(1,389)**	**36.7**	(1,220)	34.7	(103)	36.9	(60)	74.0	(6)	76.3
생활 수준	일반	**(902)**	**64.9**	(788)	64.6	(80)	77.7	(31)	51.7	(3)	50.0
	차상위	**(90)**	**6.5**	(84)	6.9	(2)	1.9	(4)	6.7	(0)	0.0
	기초생활수급	**(397)**	**28.6**	(348)	28.5	(21)	20.4	(25)	41.7	(3)	50.0
시설 이용 기간	1년 미만	**(111)**	**8.0**	(100)	8.2	(5)	4.9	(6)	10.0	(0)	0.0
	1년 이상~5년 미만	**(385)**	**27.7**	(310)	25.4	(48)	46.6	(25)	41.7	(2)	33.3
	5년 이상~10년 미만	**(319)**	**23.0**	(283)	23.2	(16)	15.5	(18)	30.0	(2)	33.3
	10년 이상~15년 미만	**(315)**	**22.7**	(280)	23.0	(28)	27.2	(5)	8.3	(2)	33.3
	15년 이상~20년 미만	**(189)**	**13.6**	(180)	14.8	(6)	5.8	(3)	5.0	(0)	0.0
	20년 이상	**(70)**	**5.0**	(67)	5.5	(0)	0.0	(3)	5.0	(0)	0.0
	평균 시설 이용 기간 (개월)	**(1,389)**	**105.1**	(1,220)	108.4	(103)	81.2	(60)	80.2	(6)	88.0
	평균 시설 이용 기간 (년)	**(1,389)**	**8.8**	(1,220)	9.0	(103)	6.8	(60)	6.7	(6)	7.3

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

- 전체 시설 이용자의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98.2%)가 대부분이며, 중복장애가 있는 이용자는 21.3%임. 주 장애유형은 발달장애 84.4%(지적 60.4%, 자폐성 24.0%), 뇌병변 8.6%, 시각 4.3%, 지체 0.9%, 청각 0.4%순으로 분포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타 유형 시설보다 심한 장애, 중복장애 이용자 비율이 높음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심한 장애 98.4%, 중복장애 20.2%) : 장애유형 발달장애인 95.6%, 뇌병변장애인 2.7%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심한 장애 100%, 중복장애 38.8%) : 장애유형 뇌병변장애인 84.5%, 지체장애인 5.8%, 발달장애인 5.8%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심한 장애 95%, 중복장애 8.3%) : 시각장애인 95%
- 청각장애인 전담시설(심한 장애 66.7%, 중복장애 66.7%) : 청각장애인 100%

▌표 3-36▐ 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장애정도	심한 장애	**(1,364)**	**98.2**	(1,200)	98.4	(103)	100.0	(57)	95.0	(4)	66.7
	심하지 않은 장애	**(25)**	**1.8**	(20)	1.6	(0)	0.0	(3)	5.0	(2)	33.3
장애유형 (주 장애 기준)	지적	**(839)**	**60.4**	(833)	68.3	(6)	5.8	(0)	0.0	(0)	0.0
	자폐성	**(333)**	**24.0**	(333)	27.3	(0)	0.0	(0)	0.0	(0)	0.0
	지체	**(12)**	**0.9**	(6)	0.5	(6)	5.8	(0)	0.0	(0)	0.0
	뇌병변	**(120)**	**8.6**	(33)	2.7	(87)	84.5	(0)	0.0	(0)	0.0
	시각	**(60)**	**4.3**	(2)	0.2	(1)	1.0	(57)	95.0	(0)	0.0
	청각	**(6)**	**0.4**	(0)	0.0	(0)	0.0	(0)	0.0	(6)	100.0
	언어	**(0)**	**0.0**	(0)	0.0	(0)	0.0	(0)	0.0	(0)	0.0
	정신	**(4)**	**0.3**	(4)	0.3	(0)	0.0	(0)	0.0	(0)	0.0
	기타	**(15)**	**1.1**	(9)	0.7	(3)	2.9	(3)	5.0	(0)	0.0
중복장애	없음	**(1,093)**	**78.7**	(973)	79.8	(63)	61.2	(55)	91.7	(2)	33.3
	있음	**(296)**	**21.3**	(247)	20.2	(40)	38.8	(5)	8.3	(4)	66.7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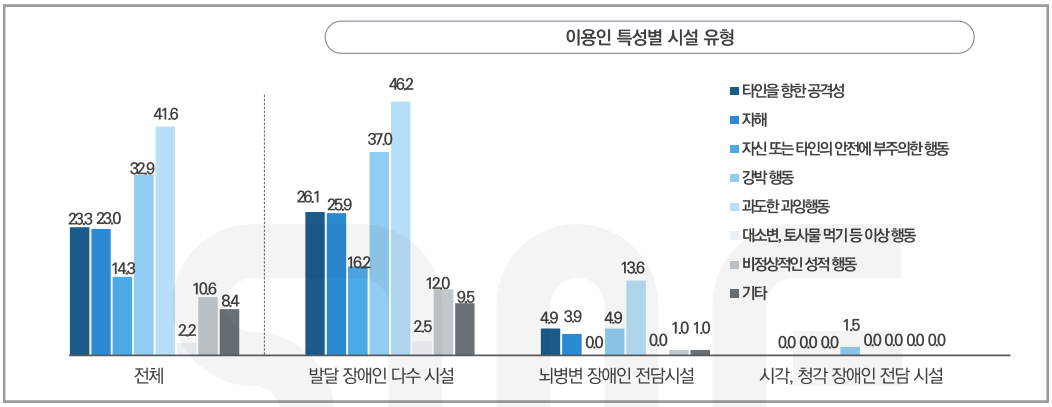
- 전체 시설에서 도전적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용자는 65.4%(908명)임
  - 이용자 1인당 평균 1.6개의 도전적 행동을 보임
  - 도전적 행동 유형(중복응답)은 '과도한 과잉행동'이 4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박 행동'(32.9%), '타인을 향한 공격성'(23.3%), '자해'(23.0%),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부주의한 행동'(14.3%), '비정상적인 성적행동'(10.6%)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도전적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용자가 72.6%(886명)로 전체 평균보다 높음
  - 이용자 1인당 평균 1.8개의 도전적 행동을 보임
  - 도전적 행동 유형(중복응답)은 '과도한 과잉행동'이 4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박 행동'(37.0%), '타인을 향한 공격성'(26.1%), '자해'(25.9%),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부주의한 행동'(16.2%), '비정상적인 성적행동'(12.0%)순으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도전적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20.4%)이 상대적으로 낮음

- 도전적 행동 유형(중복응답)은 '과도한 과잉행동'(13.6%), '타인을 향한 공격성'(4.9%), '강박 행동'(4.9%), '자해'(3.9%)순으로 나타남

○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도전적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용자(1.5%)가 거의 없음

(단위: %)



❙그림 3-8❙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표 3-37❙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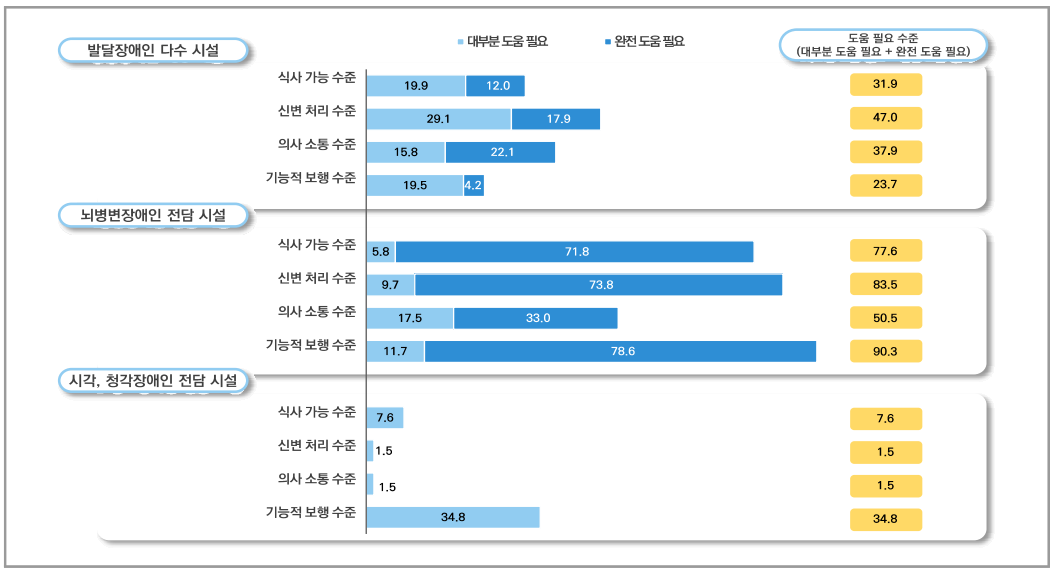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도전적 행동	타인을 향한 공격성	**(323)**	**23.3**	(318)	26.1	(5)	4.9	(0)	0.0	(0)	0.0
	자해	**(320)**	**23.0**	(316)	25.9	(4)	3.9	(0)	0.0	(0)	0.0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부주의한 행동	**(198)**	**14.3**	(198)	16.2	(0)	0.0	(0)	0.0	(0)	0.0
	강박 행동	**(457)**	**32.9**	(451)	37.0	(5)	4.9	(1)	1.7	(0)	0.0
	과도한 과잉행동	**(578)**	**41.6**	(564)	46.2	(14)	13.6	(0)	0.0	(0)	0.0
	대소변, 토사물 먹기 등 이상 행동	**(30)**	**2.2**	(30)	2.5	(0)	0.0	(0)	0.0	(0)	0.0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147)**	**10.6**	(146)	12.0	(1)	1.0	(0)	0.0	(0)	0.0
	기타	**(117)**	**8.4**	(116)	9.5	(1)	1.0	(0)	0.0	(0)	0.0
	없음	**(481)**	**34.6**	(334)	27.4	(82)	79.6	(59)	98.3	(6)	100.0
도전적 행동 평균 개수(개)		**(1,389)**	1.6	(1,220)	1.8	(103)	0.3	(60)	0.0	(6)	0.0

이용자 일상생활 수행수준

- 일상생활 수행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시설 이용자의 47.5%는 신변처리에 도움이 필요하고, 34.1%는 식사 도움, 29.2%는 보행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완전+대부분 도움 필요).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37.2%(의사소통 전혀 불가 21.9%, 도구 활용 보완적 소통 15.3%)로 나타남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거나(17.4%) 언어적 어려움은 있지만 어느 정도 소통 가능(45.4%)한 이용자는 62.8%임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이용자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완전+대부분 도움 필요)는 신변처리 47.0%, 식사 도움 31.9%, 보행 도움 23.7%임.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37.9%(의사소통 전혀 불가 22.1%, 도구 활용 보완적 소통 15.8%)로 나타남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거나(13.9%) 언어적 어려움은 있지만 어느 정도 소통 가능(48.1%)한 이용자는 62.0%임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보행에 도움이 필요(완전+대부분 도움 필요)한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신변처리 83.5%, 식사 도움 필요는 77.6%,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 비율도 50.5%(의사소통 전혀 불가 33.0%, 도구 활용 보완적 소통 17.5%)로 높음
-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보행에 도움이 필요(대부분 도움 필요)한 비율이 34.8%임

(단위: %)



▌그림 3-9▐ 이용자 일상생활 수행수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표 3-38 ▌ 이용자 일상생활 수행수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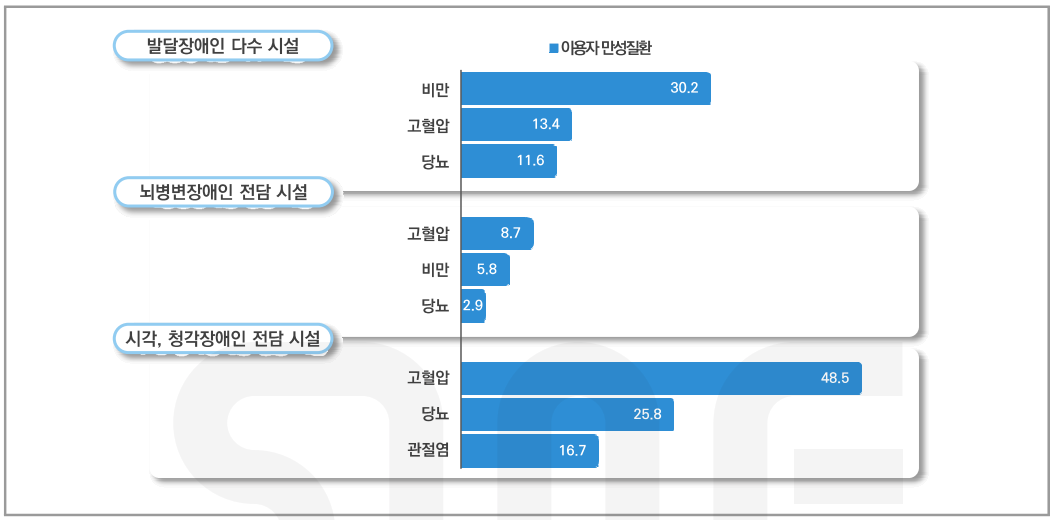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식사 가능 수준	완전 독립적으로 가능	(362)	26.1	(327)	26.8	(7)	6.8	(22)	36.7	(6)	100.0
	대부분 혼자 가능	(553)	39.8	(504)	41.3	(16)	15.5	(33)	55.0	(0)	0.0
	대부분 도움 필요	(254)	18.3	(243)	19.9	(6)	5.8	(5)	8.3	(0)	0.0
	완전 도움 필요	(220)	15.8	(146)	12.0	(74)	71.8	(0)	0.0	(0)	0.0
신변 처리 수준	완전 독립적으로 가능	(235)	16.9	(189)	15.5	(2)	1.9	(38)	63.3	(6)	100.0
	대부분 혼자 가능	(494)	35.6	(458)	37.5	(15)	14.6	(21)	35.0	(0)	0.0
	대부분 도움 필요	(366)	26.3	(355)	29.1	(10)	9.7	(1)	1.7	(0)	0.0
	완전 도움 필요	(294)	21.2	(218)	17.9	(76)	73.8	(0)	0.0	(0)	0.0
의사 소통 수준	의사소통 문제 없음	(242)	17.4	(170)	13.9	(17)	16.5	(50)	83.3	(5)	83.3
	언어적 어려움 있으나 어느 정도 소통 가능	(631)	45.4	(587)	48.1	(34)	33.0	(9)	15.0	(1)	16.7
	보완적 의사소통 도구 활용으로 가능	(212)	15.3	(193)	15.8	(18)	17.5	(1)	1.7	(0)	0.0
	의사소통 전혀 불가능	(304)	21.9	(270)	22.1	(34)	33.0	(0)	0.0	(0)	0.0
기능적 보행 수준	완전 독립적으로 가능	(526)	37.9	(503)	41.2	(2)	1.9	(17)	28.3	(4)	66.7
	대부분 혼자 가능	(458)	33.0	(428)	35.1	(8)	7.8	(20)	33.3	(2)	33.3
	대부분 도움 필요	(273)	19.7	(238)	19.5	(12)	11.7	(23)	38.3	(0)	0.0
	완전 도움 필요	(132)	9.5	(51)	4.2	(81)	78.6	(0)	0.0	(0)	0.0

이용자의 만성질환

- 전체 시설 이용자 중 1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53.3%(740명)임
  - 만성질환(중복응답)은 비만(27.2%)이 가장 많고, 고혈압(14.8%), 당뇨(11.6%), 이상지질혈증(7.5%), 관절염(4.3%)순으로 나타남
  - 이용자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0.9개임
- 발달장애인시설 이용자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54.8%(668명)임
  - 만성질환(중복응답)은 비만(30.2%)이 가장 많고, 고혈압(13.4%), 당뇨(11.6%), 이상지질혈증(7.6%), 관절염(3.8%)순으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시설 이용자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6.2%로 타 유형 시설에 비해 비교적 낮음

○ 고령 장애인이 많은 시각장애인시설 이용자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73.3%로 높고, 주요 질환유형도 고혈압(53.3%), 당뇨(28.3%), 관절염(18.3%) 등 고령자 질환 비율이 높음. 반면 청각장애인시설 이용자는 만성질환 비율 낮음

(단위: %)



▌그림 3-10▐ 이용자 만성질환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3순위)

▌표 3-39▐ 이용자의 만성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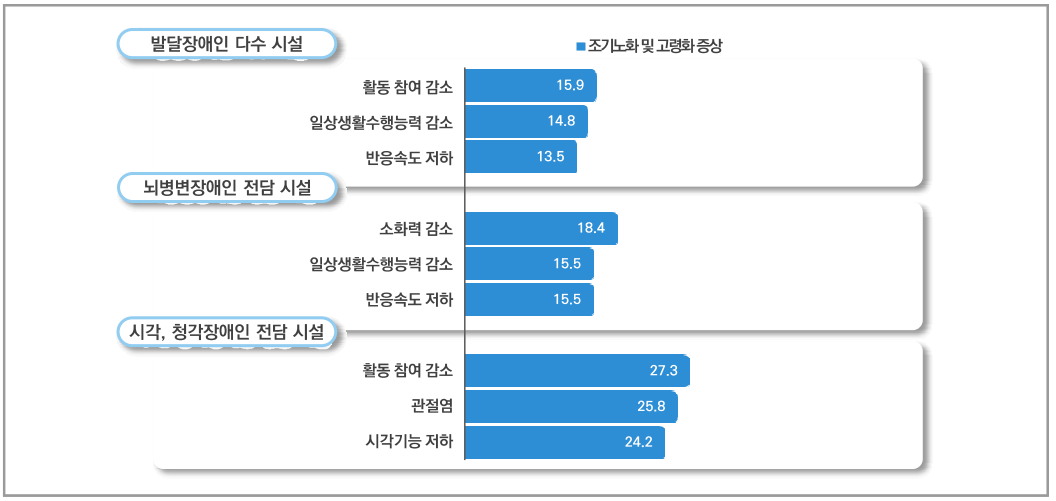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만성질환	당뇨	**(161)**	**11.6**	(141)	11.6	(3)	2.9	(17)	28.3	(0)	0.0
	고혈압	**(205)**	**14.8**	(164)	13.4	(9)	8.7	(32)	53.3	(0)	0.0
	이상지질혈증	**(104)**	**7.5**	(93)	7.6	(2)	1.9	(9)	15.0	(0)	0.0
	암	**(4)**	**0.3**	(2)	0.2	(0)	0.0	(1)	1.7	(1)	16.7
	비만	**(378)**	**27.2**	(369)	30.2	(6)	5.8	(3)	5.0	(0)	0.0
	관절염	**(60)**	**4.3**	(46)	3.8	(3)	2.9	(11)	18.3	(0)	0.0
	뇌졸중	**(9)**	**0.6**	(6)	0.5	(3)	2.9	(0)	0.0	(0)	0.0
	심장병	**(20)**	**1.4**	(15)	1.2	(0)	0.0	(5)	8.3	(0)	0.0
	만성호흡기병	**(21)**	**1.5**	(17)	1.4	(2)	1.9	(2)	3.3	(0)	0.0
	기타	**(257)**	**18.5**	(233)	19.1	(14)	13.6	(10)	16.7	(0)	0.0
	없음	**(649)**	**46.7**	(552)	45.2	(76)	73.8	(16)	26.7	(5)	83.3
만성질환 평균 개수(개)		**(1,389)**	**0.9**	(1,220)	0.9	(103)	0.4	(60)	1.5	(6)	0.2

이용자의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

- 전체 시설 이용자 중 38%(528명)가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을 살펴보면, 활동 참여 감소(16.3%),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15%), 반응속도 저하(14%), 무기력(12%), 상황이해력 저하(11%), 반복행동(10.7%) 등이 나타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에서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을 보이는 이용자는 36.9%임
  - 주요 증상은 활동 참여 감소(15.9%),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14.8%), 반응속도 저하(13.5%), 상황이해력 저하(11.8%), 무기력(11.8%), 반복행동(11.5%) 등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에서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을 보이는 이용자는 36.9%임
  - 주요 증상은 소화력 감소(18.4%),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15.5%), 반응속도 저하(15.5%), 무기력(14.6%), 활동 참여 감소(13.6%), 표현·의사소통 감소(13.6%), 보행장애(11.7%) 등
- 고령 장애인이 많은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에서 고령화 증상을 보이는 이용자는 65%이며, 1인당 증상 개수도 1.5개로 타 유형시설 이용자에 비해 많음
  - 주요 증상은 활동 참여 감소(28.3%), 반응속도 저하(21.7%), 우울감(20%),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16.7%), 무기력(13.3%) 등
  - 고령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하 증상도 많이 나타남 : 관절염(28.3%), 시각기능 저하(26.7%), 청각기능 저하(25%), 소화력 감소(20%), 골다공증(20%), 보행장애(18.3%) 등

(단위: %)



▌그림 3-11 ▌ 이용자의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3순위)

▌표 3-40 ▌ 이용자의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

(단위: 명, %)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n	%	n	%	n	%	n	%	n	%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	치매	**(37)**	**2.7**	(28)	2.3	(4)	3.9	(5)	8.3	(0)	0.0
	관절염	**(76)**	**5.5**	(54)	4.4	(5)	4.9	(17)	28.3	(0)	0.0
	골다공증	**(36)**	**2.6**	(21)	1.7	(3)	2.9	(12)	20.0	(0)	0.0
	요실금	**(40)**	**2.9**	(36)	3.0	(2)	1.9	(2)	3.3	(0)	0.0
	청각기능 저하	**(47)**	**3.4**	(30)	2.5	(2)	1.9	(15)	25.0	(0)	0.0
	시각기능 저하	**(65)**	**4.7**	(49)	4.0	(0)	0.0	(16)	26.7	(0)	0.0
	보행장애	**(111)**	**8.0**	(88)	7.2	(12)	11.7	(11)	18.3	(0)	0.0
	소화력 감소	**(138)**	**9.9**	(107)	8.8	(19)	18.4	(12)	20.0	(0)	0.0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	**(208)**	**15.0**	(181)	14.8	(16)	15.5	(10)	16.7	(1)	16.7
	상황이해력 저하	**(153)**	**11.0**	(144)	11.8	(8)	7.8	(1)	1.7	(0)	0.0
	반응속도 저하	**(195)**	**14.0**	(165)	13.5	(16)	15.5	(13)	21.7	(1)	16.7
	표현·의사소통 감소	**(132)**	**9.5**	(113)	9.3	(14)	13.6	(5)	8.3	(0)	0.0
	반복 행동	**(148)**	**10.7**	(140)	11.5	(7)	6.8	(1)	1.7	(0)	0.0
	무기력	**(167)**	**12.0**	(144)	11.8	(15)	14.6	(8)	13.3	(0)	0.0
	우울감	**(106)**	**7.6**	(90)	7.4	(4)	3.9	(12)	20.0	(0)	0.0
	작업능력 감소	**(107)**	**7.7**	(101)	8.3	(5)	4.9	(1)	1.7	(0)	0.0
	활동 참여 감소	**(226)**	**16.3**	(194)	15.9	(14)	13.6	(17)	28.3	(1)	16.7
	기타	**(33)**	**2.4**	(31)	2.5	(1)	1.0	(1)	1.7	(0)	0.0
	없음	**(861)**	**62.0**	(770)	63.1	(65)	63.1	(21)	35.0	(5)	83.3
고령화 증상 평균 개수(개)		**(1,389)**	0.9	(1,220)	0.9	(103)	0.4	(60)	1.5	(6)	0.2

5) 시설 종사자 현황

(1) 현 종사자 현황

종사자 규모 및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 2025년 6월 기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수는 평균 5.2명(현원)으로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장/팀원)는 평균 4.0명이며,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자 수는 현원기준 3.0명(정원기준 3.2명)임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종사자 수는 평균 5.3명(현원)으로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장/팀원)는 평균 4.1명이며,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자 수는 현원기준 3.1명(정원기준 3.2명)임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종사자 수는 평균 5.0명(현원)으로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장/팀원)는 평균 3.9명이며,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자 수는 현원기준 2.7명(정원기준 3.0명)임

▌표 3-41▐ 종사자 규모 및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단위: 개소, 명)

구분			전체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시설 수			**(120)**	(103)	(10)	(5)	(2)
종사자 유형별 규모	상근시설장	평균 (명)	**0.7**	0.8	0.3	0.6	0.5
	겸임시설장		**0.2**	0.2	0.6	0.4	0.5
	사회재활교사(팀장)		**0.8**	0.8	0.9	0.6	0.0
	사회재활교사(팀원)		**3.3**	3.4	3.0	2.6	2.5
	사무원, 기능직 등		**0.2**	0.2	0.2	0.0	0.0
총원			**5.2**	5.3	5.0	4.2	3.5
이용자 정원		평균 (명)	**12.3**	12.5	11.5	13.2	3.5
이용자 현원			**11.6**	11.8	10.3	12.0	3.0
사회재활교사(팀장/팀원)			**4.0**	4.1	3.9	3.2	2.5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정원기준)			**3.2**	3.2	3.0	4.5	1.5
사회재활교사 배치 수준 (현원기준)			**3.0**	3.1	2.7	4.1	1.3

*이용자 정원 및 현원은 2025년 6월 기준임

종사자 보유 자격증

○ 시설 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중복응답)은 사회복지사 2급이 56.4%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사 1급(42.2%), 요양보호사(10.2%), 보육교사(7.1%), 재활상담사(2.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2.1%) 등임

- 상근시설장 : 63.2%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39.1%는 사회복지사 2급을 보유함. 요양보호사(21.8%), 보육교사(20.7%), 재활상담사(5.7%)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상근시설장도 비교적 많음
- 겸임시설장 : 사회복지사 1급(81.5%), 2급(14.8%) 등
- 사회재활교사(팀장) : 사회복지사 1급(50.5%), 2급(51.6%), 요양보호사(20.7%), 보육교사(9.9%) 등
- 사회재활교사(팀원) : 사회복지사 1급(35.0%), 2급(65.5%) 등

○ 종사자 보유 자격증 비율은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3-42▐ 종사자 보유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증

(단위: 명, %)

구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61)**	**42.2**	**(349)**	**56.4**	**(2)**	**0.3**	**(1)**	**0.2**	**(1)**	**0.2**	**(3)**	**0.5**	**(4)**	**0.6**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229)	42.3	(306)	56.6	(2)	0.4	(1)	0.2	(1)	0.2	(3)	0.6	(4)	0.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20)	40.0	(29)	58.0	(0)	0.0	(0)	0.0	(0)	0.0	(0)	0.0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2)	57.1	(8)	38.1	(0)	0.0	(0)	0.0	(0)	0.0	(0)	0.0	(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0)	0.0	(6)	85.7	(0)	0.0	(0)	0.0	(0)	0.0	(0)	0.0	(0)	0.0
종사자 유형별	상근시설장	(55)	63.2	(34)	39.1	(2)	2.3	(0)	0.0	(1)	1.1	(1)	1.1	(1)	1.1
	겸임시설장	(22)	81.5	(4)	14.8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재활교사 (팀장)	(46)	50.5	(47)	51.6	(0)	0.0	(0)	0.0	(0)	0.0	(2)	2.2	(1)	1.1
	사회재활교사 (팀원)	(138)	35.0	(258)	65.5	(0)	0.0	(1)	0.3	(0)	0.0	(0)	0.0	(2)	0.5
	사무원, 기능직 등	(0)	0.0	(6)	3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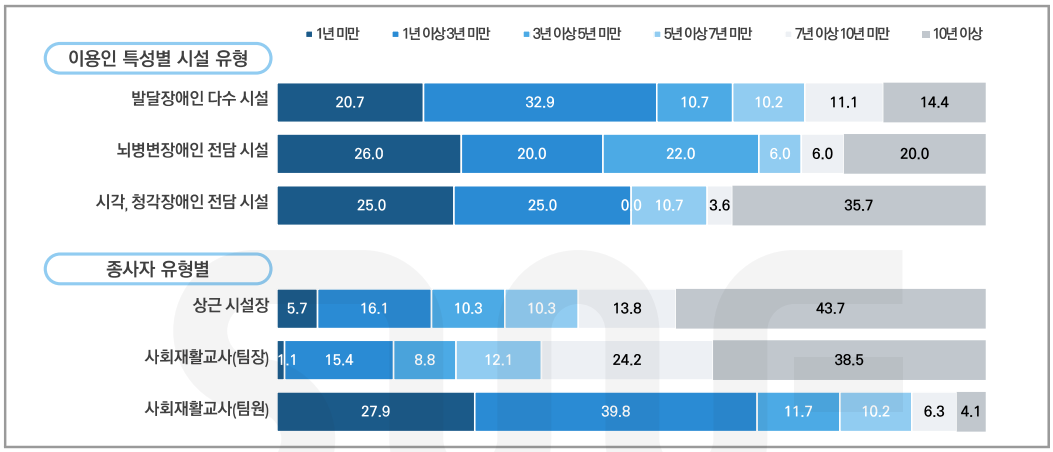
종사자 근속기간 및 근무 경력

- 2025년 6월 기준, 전체 시설 종사자의 현 기관 근속기간은 평균 4년 9개월임(상근시설장 평균 9년 3개월, 사회재활교사 팀장 평균 9년 1개월, 팀원 평균 2년 9개월). 1년 이상~3년 미만(31.5%)이 가장 많고, 이어서 1년 미만(21.3%) 또는 10년 이상(15.8%)으로 근속기간이 짧거나 긴 경우가 많음
  - 전체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복지 관련 근무 경력은 평균 8년 2개월, 사회복지시설 총 근무 경력은 평균 9년 1개월임
- 상근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팀장)는 현 기관 근속기간 10년 이상 비율이 약 40% 전후로 높고, 사회재활교사(팀원)는 3년 미만 비율이 약 70%에 가까움
  - 상근시설장 : 3년 미만 21.8%, 5년~10년 미만 24.1%, 10년 이상 43.7%
  - 사회재활교사(팀장) : 3년 미만 16.5%, 5년~10년 미만 36.3%, 10년 이상 38.5%
  - 사회재활교사(팀원) : 3년 미만 67.7%(1년 미만 27.9%), 5년 이상 20.6%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현 기관 근속기간 평균 4년 8개월로 근속기간 3년 미만이 약 50%를 넘음

- 1년~3년 미만(32.9%), 1년 미만(20.7%), 10년 이상(14.4%), 7년~10년 미만(11.1%), 3년~5년 미만(10.7%), 5년~7년 미만(10.2%)순

○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근속기간 10년 이상이 35.7%로 높음.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이 26%이며, 5년~10년 구간을 제외한 각 구간별 분포가 약 20% 정도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함

(단위: %)



▌그림 3-12▐ 종사자 현 기관 근무 경력

▌표 3-43▐ 종사자 현 기관 근무 경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n	%	n	%	n	%	n	%	n	%	n	%
전체		(619)	**(132)**	**21.3**	**(195)**	**31.5**	**(69)**	**11.1**	**(61)**	**9.9**	**(64)**	**10.3**	**(98)**	**15.8**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541)	(112)	20.7	(178)	32.9	(58)	10.7	(55)	10.2	(60)	11.1	(78)	14.4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50)	(13)	26.0	(10)	20.0	(11)	22.0	(3)	6.0	(3)	6.0	(10)	2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21)	(5)	23.8	(4)	19.0	(0)	0.0	(3)	14.3	(1)	4.8	(8)	38.1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7)	(2)	28.6	(3)	42.9	(0)	0.0	(0)	0.0	(0)	0.0	(2)	28.6
종사자 유형별	상근시설장	(87)	(5)	5.7	(14)	16.1	(9)	10.3	(9)	10.3	(12)	13.8	(38)	43.7
	겸임시설장	(27)	(6)	22.2	(6)	22.2	(4)	14.8	(0)	0.0	(5)	18.5	(6)	22.2
	사회재활교사 (팀장)	(91)	(1)	1.1	(14)	15.4	(8)	8.8	(11)	12.1	(22)	24.2	(35)	38.5
	사회재활교사 (팀원)	(394)	(110)	27.9	(157)	39.8	(46)	11.7	(40)	10.2	(25)	6.3	(16)	4.1
	사무원, 기능직 등	(619)	(10)	50.0	(4)	20.0	(2)	10.0	(1)	5.0	(0)	0.0	(3)	15.0

▌표 3-44▐ 복지시설 근무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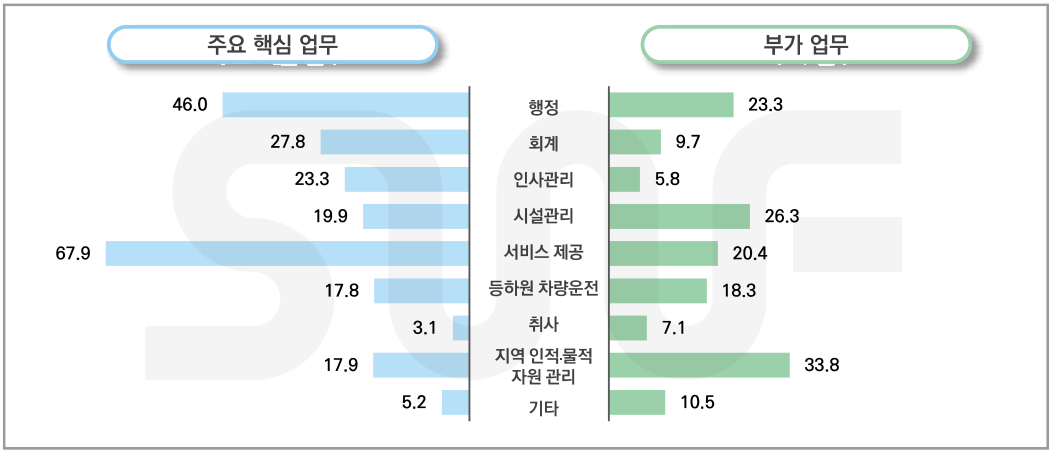
(단위: 명, 년, 개월)

구분			사례 수 (명)	현 기관 근속기간(개월)	장애인복지관련 총 근무경력(개월)	사회복지시설 총 근무경력(개월)
				평균(년, 개월)	평균(년, 개월)	평균(년, 개월)
전체			**(619)**	**4.9**	**8.2**	**9.1**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전체**	**(541)**	**4.8**	**8.0**	**8.9**
		상근시설장	(80)	9.3	17.1	18.9
		겸임시설장	(18)	6.0	14.3	17.3
		사회재활교사(팀장)	(79)	9.0	13.4	14.4
		사회재활교사(팀원)	(346)	2.8	4.6	5.2
		사무원, 기능직 등	(18)	3.1	4.7	3.9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전체**	**(50)**	**4.9**	**8.3**	**10.3**
		상근시설장	(3)	9.7	15.9	15.9
		겸임시설장	(6)	5.2	18.8	25.2
		사회재활교사(팀장)	(9)	9.5	12.6	14.9
		사회재활교사(팀원)	(30)	2.8	4.2	5.6
		사무원, 기능직 등	(2)	6.8	6.8	6.8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전체**	**(21)**	**7.3**	**10.1**	**10.6**
		상근시설장	(3)	9.3	15.5	16.6
		겸임시설장	(2)	16.0	18.5	17.5
		사회재활교사(팀장)	(3)	10.3	13.5	14.8
		사회재활교사(팀원)	(13)	4.9	6.7	7.1
		사무원, 기능직 등	(0)	-	-	-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전체**	**(7)**	**3.7**	**9.9**	**8.3**
		상근시설장	(1)	0.3	19.7	19.7
		겸임시설장	(1)	0.6	4.6	2.3
		사회재활교사(팀장)	(0)	-	-	-
		사회재활교사(팀원)	(5)	5.0	9.0	7.2
		사무원, 기능직 등	(0)	-	-	-
종사자 유형별	상근시설장		(87)	9.3	17.0	18.7
	겸임시설장		(27)	6.4	15.3	18.5
	사회재활교사(팀장)		(91)	9.1	13.4	14.5
	사회재활교사(팀원)		(394)	2.9	4.7	5.3
	사무원, 기능직 등		(20)	3.4	4.9	4.2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및 부가 업무

- 전체 시설 종사자의 주요 핵심 업무(중복응답)는 서비스 제공(67.9%), 행정(46.0%), 회계(27.8%), 인사관리(23.3%)순으로 나타남
  - 시설관리(19.9%), 지역 인적·물적 자원관리(17.9%), 등하원 차량운전(17.8%)
- 전체 시설 종사자의 부가 업무(중복응답)는 지역 인적·물적 자원관리(33.8%), 시설관리(26.3%), 행정(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제공(20.4%), 등하원 차량운전(18.3%), 회계(9.7%), 취사(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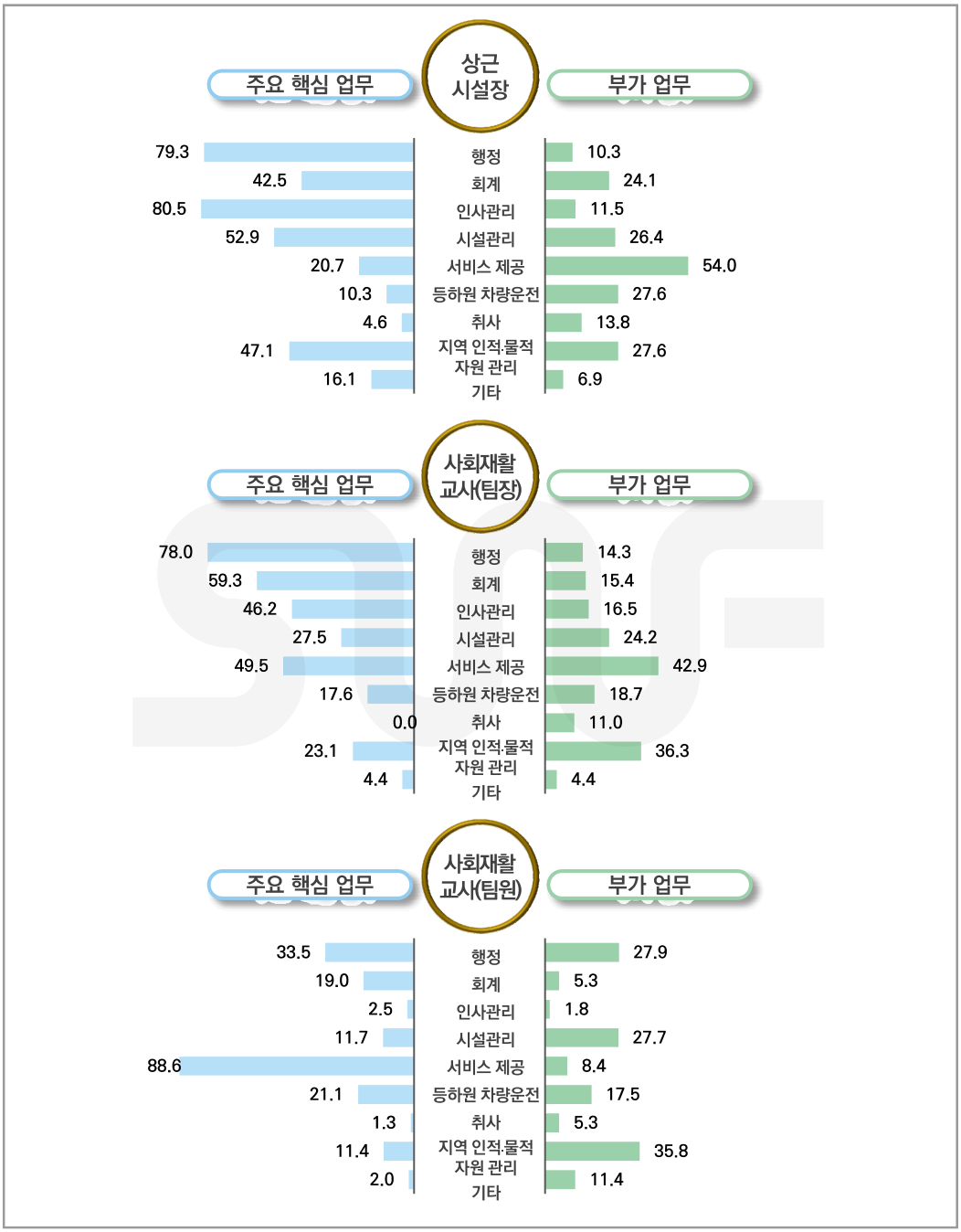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3 ▎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_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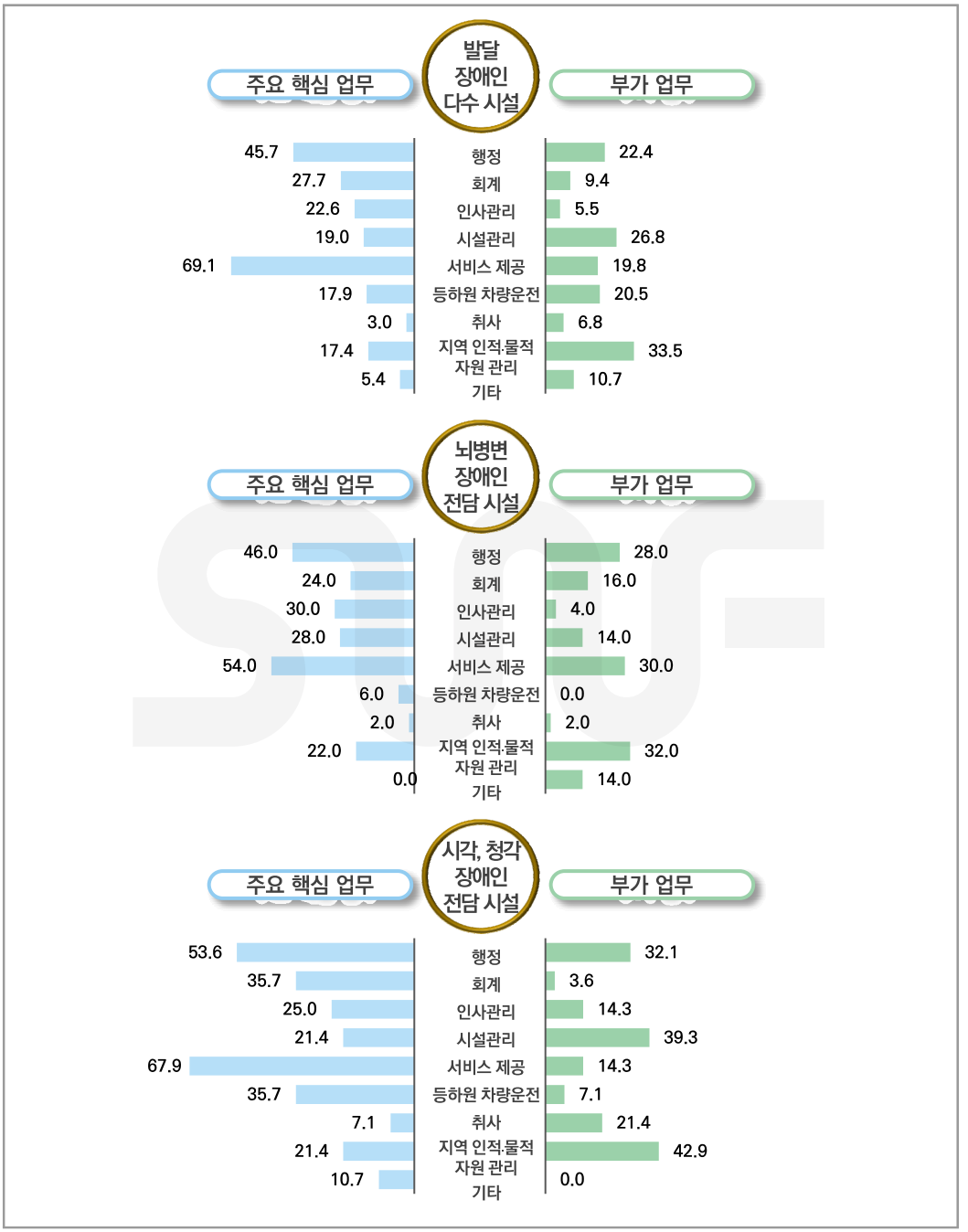
- 시설장의 주요 핵심 업무는 인사관리와 행정 비중이 높고, 사회재활교사 팀장은 행정과 회계, 사회재활교사 팀원은 서비스 제공과 행정, 등하원 차량운전 비중이 높음
  - 상근시설장 : 인사관리(80.5%), 행정(79.3%), 시설관리(52.9%), 지역인적·물적 자원관리(47.1%)순
  - 사회재활교사(팀장) : 행정(78.0%), 회계(59.3%), 서비스 제공(49.5%), 인사관리(46.2%)
  - 사회재활교사(팀원) : 서비스 제공(88.6%), 행정(33.5%), 등하원 차량운전(21.1%)

(단위: %)



▌그림 3-14▐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_종사자 직위별

(단위: %)



▌그림 3-15 ▌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_이용인 특성 시설별 종사자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종사자의 주요 핵심 업무(중복응답)는 '서비스 제공'이 69.1%로 가장 높고, 부가 업무는 등하원 차량운전이 타 유형 시설보다 높음. 시각/청각장애인시설은 부가 업무 중 지역 인적·물적 자원관리와 시설관리 비중이 높고, 뇌병변장애인시설은 서비스 제공 부가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 업무_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시설 69.1%, 시각/청각장애인시설 67.9%, 뇌병변장애인시설 54%
- 부가 업무_지역 인적·물적 자원관리 : 시각/청각장애인시설 42.9%, 발달장애인시설 33.5%, 뇌병변장애인시설 32.0%
- 부가 업무_시설관리 : 시각/청각장애인시설 39.3%, 발달장애인시설 26.8%, 뇌병변장애인시설 14.0%
- 부가 업무_등하원 차량운전 : 발달장애인시설 20.5%, 시각/청각장애인시설 7.1%, 뇌병변장애인시설 0%

▌표 3-45▐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행정		회계		인사관리		행정		회계		인사관리	
			n	%	n	%	n	%	n	%	n	%	n	%
전체		(619)	**(285)**	**46.0**	**(172)**	**27.8**	**(144)**	**23.3**	**(144)**	**23.3**	**(60)**	**9.7**	**(36)**	**5.8**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541)	(247)	45.7	(150)	27.7	(122)	22.6	(121)	22.4	(51)	9.4	(30)	5.5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50)	(23)	46.0	(12)	24.0	(15)	30.0	(14)	28.0	(8)	16.0	(2)	4.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21)	(11)	52.4	(7)	33.3	(5)	23.8	(7)	33.3	(1)	4.8	(3)	14.3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7)	(4)	57.1	(3)	42.9	(2)	28.6	(2)	28.6	(0)	0.0	(1)	14.3
종사자 유형별	상근시설장	(87)	(69)	79.3	(37)	42.5	(70)	80.5	(9)	10.3	(21)	24.1	(10)	11.5
	겸임시설장	(27)	(11)	40.7	(3)	11.1	(20)	74.1	(9)	33.3	(4)	14.8	(4)	14.8
	사회재활교사 (팀장)	(91)	(71)	78.0	(54)	59.3	(42)	46.2	(13)	14.3	(14)	15.4	(15)	16.5
	사회재활교사 (팀원)	(394)	(132)	33.5	(75)	19.0	(10)	2.5	(110)	27.9	(21)	5.3	(7)	1.8
	사무원, 기능직 등	(20)	(2)	10.0	(3)	15.0	(2)	10.0	(3)	15.0	(0)	0.0	(0)	0.0

*복수응답

▌표 3-46▐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2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		등하원 차량운전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		등하원 차량운전	
			n	%	n	%	n	%	n	%	n	%	n	%
전체		**(619)**	**(123)**	**19.9**	**(420)**	**67.9**	**(110)**	**17.8**	**(163)**	**26.3**	**(126)**	**20.4**	**(113)**	**18.3**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541)	(103)	19.0	(374)	69.1	(97)	17.9	(145)	26.8	(107)	19.8	(111)	20.5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50)	(14)	28.0	(27)	54.0	(3)	6.0	(7)	14.0	(15)	30.0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21)	(3)	14.3	(16)	76.2	(8)	38.1	(10)	47.6	(3)	14.3	(2)	9.5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7)	(3)	42.9	(3)	42.9	(2)	28.6	(1)	14.3	(1)	14.3	(0)	0.0
종사자 유형별	상근시설장	(87)	(46)	52.9	(18)	20.7	(9)	10.3	(23)	26.4	(47)	54.0	(24)	27.6
	겸임시설장	(27)	(6)	22.2	(0)	0.0	(0)	0.0	(4)	14.8	(5)	18.5	(0)	0.0
	사회재활교사 (팀장)	(91)	(25)	27.5	(45)	49.5	(16)	17.6	(22)	24.2	(39)	42.9	(17)	18.7
	사회재활교사 (팀원)	(394)	(46)	11.7	(349)	88.6	(83)	21.1	(109)	27.7	(33)	8.4	(69)	17.5
	사무원, 기능직 등	(20)	(0)	0.0	(8)	40.0	(2)	10.0	(5)	25.0	(2)	10.0	(3)	15.0

▌표 3-47▐ 종사자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3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주요 핵심 업무						부가 업무					
			취사		지역 인적·물적 자원관리		기타*		취사		지역 인적·물적 자원관리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619)	**(19)**	**3.1**	**(111)**	**17.9**	**(32)**	**5.2**	**(44)**	**7.1**	**(209)**	**33.8**	**(65)**	**10.5**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541)	(16)	3.0	(94)	17.4	(29)	5.4	(37)	6.8	(181)	33.5	(58)	10.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50)	(1)	2.0	(11)	22.0	(0)	0.0	(1)	2.0	(16)	32.0	(7)	14.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21)	(2)	9.5	(4)	19.0	(3)	14.3	(4)	19.0	(9)	42.9	(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7)	(0)	0.0	(2)	28.6	(0)	0.0	(2)	28.6	(3)	42.9	(0)	0.0
종사자 유형별	상근시설장	(87)	(4)	4.6	(41)	47.1	(14)	16.1	(12)	13.8	(24)	27.6	(6)	6.9
	겸임시설장	(27)	(1)	3.7	(4)	14.8	(6)	22.2	(0)	0.0	(9)	33.3	(4)	14.8
	사회재활교사 (팀장)	(91)	(0)	0.0	(21)	23.1	(4)	4.4	(10)	11.0	(33)	36.3	(4)	4.4
	사회재활교사 (팀원)	(394)	(5)	1.3	(45)	11.4	(8)	2.0	(21)	5.3	(141)	35.8	(45)	11.4
	사무원, 기능직 등	(20)	(9)	45.0	(0)	0.0	(0)	0.0	(1)	5.0	(2)	10.0	(6)	30.0

*주요 핵심 업무 '기타' : 상담, 시설 운영 총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부가 업무 '기타' : 등하원 차량 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홍보 등

(2) 필요한 추가 인력

시설 운영 시 추가 인력 필요 여부

○ 시설 운영을 위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84.2%(101개소)임

- 운영 형태별로 자치구 위탁시설 전체, 병설시설의 88.0%, 단독시설 81.8%가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82.5%가 추가인력 필요,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모든 시설(100%)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표 3-48 | 시설 운영 시 추가 인력 필요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추가 인력 필요함		현재 인원으로 충분함	
			n	%	n	%
전체		**(120)**	**(101)**	**84.2**	**(19)**	**15.8**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72)	81.8	(16)	18.2
	병설시설	(25)	(22)	88.0	(3)	12.0
	자치구 위탁시설	(7)	(7)	100.0	(0)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85)	82.5	(18)	17.5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10)	100.0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4)	80.0	(1)	2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2)	100.0	(0)	0.0

추가 필요한 종사자 유형 및 필요인원

○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1순위)는 사회복지사가 7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행정사무원(10.9%), 조리사(7.9%), 운전원(5.9%)순으로 나타남

- 필요인원(평균) : 사회복지사 1.5명, 운전원 1.2명, 행정사무원 1.1명, 조리사 1명

▌표 3-49▐ 시설 운영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 유형 1(1순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사회복지사			행정사무원			조리사			운전원		
		n	%	평균(명)	n	%	평균(명)	n	%	평균(명)	n	%	평균(명)
전체		**(73)**	**72.3**	**1.5**	**(11)**	**10.9**	**1.1**	**(8)**	**7.9**	**1.0**	**(6)**	**5.9**	**1.2**
운영 형태	단독시설	(49)	68.1	1.5	(8)	11.1	1.1	(8)	11.1	1.0	(5)	6.9	1.2
	병설시설	(18)	81.8	1.3	(2)	9.1	1.0	(0)	0.0	-	(1)	4.5	1.0
	자치구 위탁시설	(6)	85.7	1.7	(1)	14.3	1.0	(0)	0.0	-	(0)	0.0	-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62)	72.9	1.5	(10)	11.8	1.1	(5)	5.9	1.0	(5)	5.9	1.2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8)	80.0	1.5	(1)	10.0	1.0	(1)	10.0	1.0	(0)	0.0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	25.0	1.0	(0)	0.0	-	(2)	50.0	1.0	(1)	25.0	1.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00.0	1.0	(0)	0.0	-	(0)	0.0	-	(0)	0.0	-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101개소)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 유형임

▌표 3-50▐ 시설 운영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 유형 2(1순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간호사/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기타		
		n	%	평균(명)	n	%	평균(명)	n	%	평균(명)
전체		**(1)**	**1.0**	**1.0**	**(1)**	**1.0**	**1.0**	**(1)**	**1.0**	**3.0**
운영 형태	단독시설	(0)	0.0	-	(1)	1.4	1.0	(1)	1.4	3.0
	병설시설	(1)	4.5	1.0	(0)	0.0	-	(0)	0.0	-
	자치구 위탁시설	(0)	0.0	-	(0)	0.0	-	(0)	0.0	-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	1.2	1.0	(1)	1.2	1.0	(1)	1.2	3.0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0)	0.0	-	(0)	0.0	-	(0)	0.0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0)	0.0	-	(0)	0.0	-	(0)	0.0	-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0)	0.0	-	(0)	0.0	-	(0)	0.0	-

(3) 대체인력 활용 현황

대체인력 활용 경험 및 활용 일수/필요 일수

- 최근 3년간 대체인력을 활용한 경험이 있고 향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 있는 시설은 69.2%로 나타남(전체 시설의 30%는 활용 경험 없음). 단독시설과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대체인력 활용 경험 및 계획 있는 비율이 높음
  - 운영 형태별(활용 경험+계획 있음) : 단독시설 76.1%, 병설시설 60.0%
  - 이용자 특성(활용 경험+계획 있음) : 발달장애인시설 72.8%, 뇌병변장애인시설 50%

○ 대체인력 필요 일수는 연 평균 16.3일인데 비해, 실제 대체인력 활용 일수는 연 평균 5.5일에 불과함. 대체인력 필요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유형은 단독시설과 발달장애인 다수시설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연평균 대체인력 필요 일수) : 단독시설 19.3일, 병설시설 8.7일
- 이용자 특성별(연평균 대체인력 필요 일수) : 발달장애인시설 17.8일, 뇌병변장애인시설 10.2일

▌표 3-51▐ 대체인력 활용 경험 및 활용 일수/필요 일수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대체인력 활용 경험						대체인력 활용 일수	대체인력 필요 일수
			활용 경험 없음		활용 경험 있고 향후에도 계속 활용 계획		활용 경험 있으나 향후에 활용 의사 없음			
			n	%	n	%	n	%	평균(일)	평균(일)
전체		**(120)**	**(36)**	**30.0**	**(83)**	**69.2**	**(1)**	**0.8**	**5.5**	**16.3**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20)	22.7	(67)	76.1	(1)	1.1	6.3	19.3
	병설시설	(25)	(10)	40.0	(15)	60.0	(0)	0.0	3.7	8.7
	자치구 위탁시설	(7)	(6)	85.7	(1)	14.3	(0)	0.0	1.4	5.7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27)	26.2	(75)	72.8	(1)	1.0	5.7	17.8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5)	50.0	(5)	50.0	(0)	0.0	5.3	10.2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3)	60.0	(2)	40.0	(0)	0.0	2.0	4.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	50.0	(1)	50.0	(0)	0.0	2.5	2.5

▌표 3-52▐ 대체인력 활용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구분	대체인력 활용 개선사항
대체인력 이용 일수의 확대 필요	- 시설당 연간 5일 지원에서 10일 지원으로 상향 요청 - 직원 정원 당 5일씩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 함 - 일수가 너무 적음. 직원이 교육 및 연가로 부재 시 대체인력이 필요함 - 개인 휴가일정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활용 일수가 더욱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대체인력 제공 기회의 확대 필요	- 서울시 미지원 시설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함 - 직원 부재 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데, 행사 등에서도 활용가능하면 좋겠음 - 사회복지시설로 인허가 받은 곳은 서울시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이 필요함
대체인력 활용 시 채용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	- 대체인력 활용 시 채용기준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음 (예시: 대체인력 연령제한 사항 및 자격유무에 대한 사항 등) - 명확한 대체인력 활용 서류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음

구분	대체인력 활용 개선사항
대체인력 채용 자격요건 완화	- 사회복지사 채용 예외 적용 했으면 좋겠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 대체인력을 한정하면 초단기근로자를 구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 인력 기준을 완화해 주시면 좋겠음 - 소규모시설 특성상 단기간 인력 충원이 어려움. 지원자의 자격 완화 필요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 청각언어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수어통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수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회복지사를 찾기가 어려움 - 인력 구하기 힘들어 인력풀이 있거나 서울시에서 파견해 주었으면 좋겠음 - 장애인이용시설 업무의 계속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센터 운영 필요
예산 확대	- 예산 확대 필요 - 대체인력비 보조금 확대 - 대체인력비용이 너무 적음
행정절차의 간소화	- 행정(서류), 신청방법, 채용절차 간소화 - 대체인력 사용을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면 좋을 것임

*대체인력 활용 개선사항 의견 제시자의 내용을 분류함

(4) 퇴직자 현황

최근 3년간 종사자 퇴직 인원

- 2024년도 시설 전체(120개소) 퇴직 인원은 115명(시설당 평균 0.9명)으로 나타남. 이 중 정년퇴직 외 인원이 87%(100명)이며, 정년퇴직 인원은 13%(15명)임
- 최근 3년간(2022~2024년) 시설 전체 퇴직 인원은 310명(시설당 연간 평균 0.9명)으로 사회재활교사(정규직)가 83.2%, 시설장 8.1%, 사회재활교사(계약직 전일제) 5.5% 비중을 차지함. 시설장은 정년퇴직 비율이 높고, 사회재활교사는 정년퇴직 외 퇴직률이 높음
  - 시설장 퇴사자(3년간 25명) : 정년퇴직 32%, 정년퇴직 외 68%
  - 사회재활교사(정규직) 퇴사자(3년간 258명) : 정년퇴직 8.9%, 정년퇴직 외 91.1%
  - 사회재활교사(계약직전일제) 퇴사자(3년간 17명) : 정년퇴직 5.9%, 정년퇴직 외 94.1%

▌표 3-53 ▌ 최근 3년 종사자 퇴직 인원

(단위: 명)

구분		2022년 정년퇴직		2022년 정년퇴직 외		2023년 정년퇴직		2023년 정년퇴직 외		2024년 정년퇴직		2024년 정년퇴직 외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시설장		0.0	1	0.0	2	0.0	2	0.1	9	0.0	5	0.1	6
사회재활교사	정규직	0.1	11	0.5	56	0.0	4	0.8	98	0.1	8	0.7	81
	계약직 전일제	0.0	0	0.1	7	0.0	0	0.0	1	0.0	1	0.1	8
	계약직 시간제	0.0	0	0.0	0	0.0	0	0.0	0	0.0	1	0.0	0
사무원	정규직	0.0	0	0.0	1	0.0	0	0.0	0	0.0	0	0.0	1
	계약직 전일제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계약직 시간제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기능직	정규직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계약직 전일제	0.0	0	0.0	0	0.0	1	0.0	0	0.0	0	0.0	0
	계약직 시간제	0.0	0	0.0	0	0.0	0	0.0	2	0.0	0	0.0	3
소계		**0.1**	**12**	**0.6**	**66**	**0.1**	**7**	**0.9**	**110**	**0.1**	**15**	**0.8**	**100**

종사자 퇴직 주요 영향 요인

- 시설 종사자 퇴직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은 '개인사유'가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희박한 승진 기회'(26.7%), '저임금'(25.0%), '높은 업무강도'(24.2%), '번아웃'(23.3%)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과중한 업무량(18.3%), 조직 내 갈등(10.8%), 유사장애인 돌봄기관의 처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9.2%) 등
- 운영 형태별로 볼 때 '개인사유'를 제외한 퇴직 원인으로, 병설시설은 '희박한 승진 기회'(32.0%)가 가장 높고, 단독시설은 '저임금'(30.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단독시설은 '저임금' 외에도 '희박한 승진 기회'(27.3%), '번아웃'(26.1%), '높은 업무강도'(25.0%)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치구 위탁시설은 사례 수는 적지만 '높은 업무강도'와 '조직 내 갈등'으로 퇴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개인사유'를 제외한 퇴직 원인으로, '희박한 승진 기회'(27.2%), '저임금'(26.2%), '번아웃'(26.2%), '높은 업무강도'(24.3%), '과중한 업무량'(20.4%)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사례 수는 적지만 '희박한 승진 기회', '저임금', '높은 업무강도'로 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54▐ 종사자 퇴직 주요 영향 1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개인사유		희박한 승진 기회		저임금		높은 업무강도		번아웃		과중한 업무량	
			n	%	n	%	n	%	n	%	n	%	n	%
전체		**(120)**	**(46)**	**38.3**	**(32)**	**26.7**	**(30)**	**25.0**	**(29)**	**24.2**	**(28)**	**23.3**	**(22)**	**18.3**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32)	36.4	(24)	27.3	(27)	30.7	(22)	25.0	(23)	26.1	(17)	19.3
	병설시설	(25)	(12)	48.0	(8)	32.0	(2)	8.0	(4)	16.0	(4)	16.0	(4)	16.0
	자치구 위탁시설	(7)	(2)	28.6	(0)	0.0	(1)	14.3	(3)	42.9	(1)	14.3	(1)	14.3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39)	37.9	(28)	27.2	(27)	26.2	(25)	24.3	(27)	26.2	(21)	20.4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5)	50.0	(3)	30.0	(3)	30.0	(3)	30.0	(1)	10.0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2)	40.0	(0)	0.0	(0)	0.0	(1)	20.0	(0)	0.0	(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0)	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복수응답

▌표 3-55▐ 종사자 퇴직 주요 영향 2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조직 내 갈등		유사 장애인 돌봄기관의 처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정년퇴직		자기계발 기회 부족		자유로운 연차, 교육시간 사용 어려움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120)**	**(13)**	**10.8**	**(11)**	**9.2**	**(10)**	**8.3**	**(1)**	**0.8**	**(1)**	**0.8**	**(29)**	**24.2**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8)	9.1	(7)	8.0	(10)	11.4	(1)	1.1	(1)	1.1	(19)	21.6
	병설시설	(25)	(2)	8.0	(3)	12.0	(0)	0.0	(0)	0.0	(0)	0.0	(8)	32.0
	자치구 위탁시설	(7)	(3)	42.9	(1)	14.3	(0)	0.0	(0)	0.0	(0)	0.0	(2)	28.6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10)	9.7	(9)	8.7	(9)	8.7	(1)	1.0	(1)	1.0	(25)	24.3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0)	0.0	(1)	10.0	(0)	0.0	(0)	0.0	(0)	0.0	(4)	4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2)	40.0	(0)	0.0	(1)	20.0	(0)	0.0	(0)	0.0	(0)	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응답 : 계약 기간 종료,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으로 인한 퇴사, 타 기관 이직 등

(5) 교육 현황

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 이수 시간

- 직원 1인당(시설장 포함) 연간 평균 '의무 교육' 이수 시간은 평균 24.5시간, '의무교육 외 교육' 이수 시간은 평균 20.8시간으로 나타남
- 타 유형 시설보다 단독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교육(의무+의무 외)' 이수 시간이 상대적으로 낮고,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의 '교육(의무+의무 외)' 이수 시간이 높게 나타남. '의무교육 외 교육' 이수시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운영 형태별(의무 외) : 병설시설(23.9시간), 단독시설(20.0시간), 자치구 위탁(19.9시간)
  - 이용자 특성별(의무 외)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29.7시간), 발달장애인 다수시설(20.1시간)
- 직원(시설장 포함) 연간 총 교육비는 전체 평균 약 91만 원(908,315원)으로 나타남. 발달장애인 다수시설과 단독시설의 교육 이수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해 직원 교육비는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운영 형태별 : 단독시설(953,007원), 병설시설(848,927원), 자치구 위탁시설(558,571원)
  - 이용자 특성별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964,740원),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767,920원)

표 3-56 종사자(시설장 포함) 교육비 및 교육 이수 시간

(단위: 개소, 원, 시간)

구분		시설 수	전체 직원 연간 총 교육비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의무교육 이수 시간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의무교육 외 교육 이수 시간
			평균(원)	평균(시간)	평균(시간)
전체		**(120)**	**908,315**	**24.5**	**20.8**
운영 형태	단독시설	(88)	953,007	24.0	20.0
	병설시설	(25)	848,927	25.9	23.9
	자치구 위탁시설	(7)	558,571	25.9	19.9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103)	964,740	24.0	20.1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767,920	27.9	29.7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258,000	28.4	17.4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2)	330,200	26.0	18.0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행수준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행수준(현재)을 살펴보면, 장애인 건강관리 및 노화 이해 관련 교육, 정부/지자체 장애인정책 및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스트레스 관리 방법 교육 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분, 보통 : 장애인 이해 관련 교육(장애인 인권, 장애유형 이해,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등), 안전 관련 교육, 행정/인사 관련 교육은 충분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족, 미실행 : 장애인 건강 및 노화 관련 교육(이용자 건강상태 평가방법, 발달장애인 노화 이해, 중고령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등),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정책 관련 교육, 종사자/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교육은 부족하거나 미실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의 '부족+미실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55%)

▌표 3-57▐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현재 실행수준

(단위: 개소, %, 점)

교육내용	현재 교육 실행수준								100점 평균
	미실행		부족		보통		충분		
	n	%	n	%	n	%	n	%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7)	5.8	(10)	8.3	(66)	55.0	(37)	30.8	70.3
장애인 인권교육	(0)	0.0	(4)	3.3	(33)	27.5	(83)	69.2	88.6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0)	0.0	(16)	13.3	(66)	55.0	(38)	31.7	72.8
장애인 성교육	(6)	5.0	(23)	19.2	(57)	47.5	(34)	28.3	66.4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9)	7.5	(27)	22.5	(54)	45.0	(30)	25.0	62.5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25)	20.8	(38)	31.7	(46)	38.3	(11)	9.2	45.3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17)	14.2	(45)	37.5	(44)	36.7	(14)	11.7	48.6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19)	15.8	(47)	39.2	(41)	34.2	(13)	10.8	46.7
약물복용 관리 교육	(14)	11.7	(37)	30.8	(57)	47.5	(12)	10.0	51.9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9)	7.5	(29)	24.2	(63)	52.5	(19)	15.8	58.9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25)	20.8	(31)	25.8	(55)	45.8	(9)	7.5	46.7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13)	10.8	(24)	20.0	(61)	50.8	(22)	18.3	58.9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6)	5.0	(21)	17.5	(63)	52.5	(30)	25.0	65.8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10)	8.3	(20)	16.7	(67)	55.8	(23)	19.2	61.9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3)	2.5	(17)	14.2	(64)	53.3	(36)	30.0	70.3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9)	7.5	(28)	23.3	(69)	57.5	(14)	11.7	57.8

교육내용	현재 교육 실행수준								100점 평균
	미실행		부족		보통		충분		
	n	%	n	%	n	%	n	%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18)	15.0	(40)	33.3	(50)	41.7	(12)	10.0	48.9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14)	11.7	(44)	36.7	(50)	41.7	(12)	10.0	50.0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20)	16.7	(37)	30.8	(49)	40.8	(14)	11.7	49.2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17)	14.2	(41)	34.2	(48)	40.0	(14)	11.7	49.7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13)	10.8	(36)	30.0	(60)	50.0	(11)	9.2	52.5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10)	8.3	(39)	32.5	(55)	45.8	(16)	13.3	54.7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1)	0.8	(12)	10.0	(57)	47.5	(50)	41.7	76.7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2)	1.7	(17)	14.2	(66)	55.0	(35)	29.2	70.6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14)	11.7	(32)	26.7	(59)	49.2	(15)	12.5	54.2
슈퍼비전 제공 방법	(6)	5.0	(31)	25.8	(59)	49.2	(24)	20.0	61.4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1)	0.8	(19)	15.8	(53)	44.2	(47)	39.2	73.9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1)	0.8	(21)	17.5	(70)	58.3	(28)	23.3	68.1
영양관리 교육	(11)	9.2	(38)	31.7	(57)	47.5	(14)	11.7	53.9
기타(n=19)	(4)	21.1	(3)	15.8	(9)	47.4	(3)	15.8	52.6

*기타 교육 : 부모교육, 인성교육, 업무관련교육 등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필요수준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수준(100점 환산)을 살펴보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84.7점),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교육(83.9점),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교육(80.8점), 도전적 행동 이해와 대응 교육(80.3점)이 8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우필요, 필요 :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교육, 도전적 행동 이해와 대응 교육과, 현재 실행수준에서 부족하다고 응답했던 장애인 건강 및 노화 관련 교육(발달장애인 노화 이해, 중고령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이용자 건강상태 평가방법 등) 등이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현재 실행수준에서 충분하다고 응답했던 행정/인사 관련 교육은 필요하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불필요, 약간 불필요 : 영양관리, 보건요양 기초케어, 장애유형 이해, 장애인 자립 관련 교육(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보완대체 의사소통 교육 등) 등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실행수준에서 부족하다고 응답했던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8 ▌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필요수준

(단위: 개소, %, 점)

교육내용	교육 필요수준								
	불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		100점 평균
	n	%	n	%	n	%	n	%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5)	4.2	(14)	11.7	(63)	52.5	(38)	31.7	70.6
장애인 인권교육	(8)	6.7	(4)	3.3	(65)	54.2	(43)	35.8	73.1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3)	2.5	(5)	4.2	(59)	49.2	(53)	44.2	78.3
장애인 성교육	(5)	4.2	(8)	6.7	(64)	53.3	(43)	35.8	73.6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7)	5.8	(6)	5.0	(38)	31.7	(69)	57.5	80.3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12)	10.0	(2)	1.7	(40)	33.3	(66)	55.0	77.8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1)	0.8	(11)	9.2	(44)	36.7	(64)	53.3	80.8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4)	3.3	(5)	4.2	(57)	47.5	(54)	45.0	78.1
약물복용 관리 교육	(1)	0.8	(14)	11.7	(66)	55.0	(39)	32.5	73.1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3)	2.5	(10)	8.3	(60)	50.0	(47)	39.2	75.3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7)	5.8	(25)	20.8	(60)	50.0	(28)	23.3	63.6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8)	6.7	(16)	13.3	(53)	44.2	(43)	35.8	69.7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6)	5.0	(13)	10.8	(59)	49.2	(42)	35.0	71.4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8)	6.7	(16)	13.3	(46)	38.3	(50)	41.7	71.7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4)	3.3	(1)	0.8	(41)	34.2	(74)	61.7	84.7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4)	3.3	(9)	7.5	(60)	50.0	(47)	39.2	75.0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6)	5.0	(15)	12.5	(61)	50.8	(38)	31.7	69.7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1)	0.8	(8)	6.7	(64)	53.3	(47)	39.2	76.9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2)	1.7	(7)	5.8	(67)	55.8	(44)	36.7	75.8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2)	1.7	(3)	2.5	(46)	38.3	(69)	57.5	83.9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1)	0.8	(6)	5.0	(68)	56.7	(45)	37.5	76.9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2)	1.7	(8)	6.7	(57)	47.5	(53)	44.2	78.1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4)	3.3	(9)	7.5	(57)	47.5	(50)	41.7	75.8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4)	3.3	(8)	6.7	(65)	54.2	(43)	35.8	74.2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4)	3.3	(8)	6.7	(55)	45.8	(53)	44.2	76.9
슈퍼비전 제공 방법	(3)	2.5	(4)	3.3	(65)	54.2	(48)	40.0	77.2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3)	2.5	(5)	4.2	(60)	50.0	(52)	43.3	78.1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2)	1.7	(6)	5.0	(61)	50.8	(51)	42.5	78.1
영양관리 교육	(7)	5.8	(27)	22.5	(61)	50.8	(25)	20.8	62.2
기타(n=19)	(2)	10.5	(1)	5.3	(9)	47.4	(7)	36.8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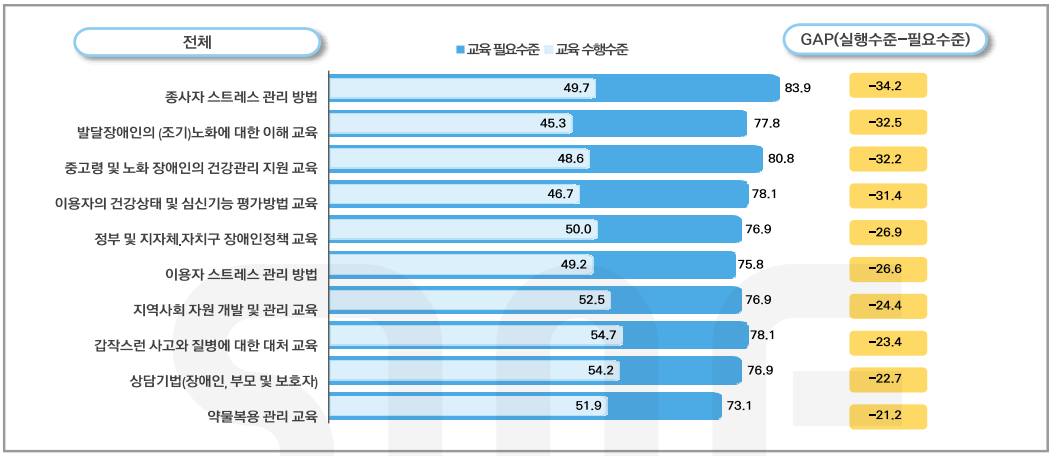
*기타 교육 : 부모교육, 인성교육, 업무관련교육 등

교육 실행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 교육 필요수준 대비 현재 실행수준이 낮은 항목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34.2점 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장애인 노화 및 건강 관련 교육에서 필요수준 대비 실행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이해 교육(32.5점 차),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교육(32.2점 차),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31.4점 차). 정부 및 지자체 장애인정책 교육(26.9점 차),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6.6점 차)순
- 장애인 이해 관련 교육(장애인 인권, 장애유형 이해,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등)은 이용자 특성별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현재 실행수준이 높게 나타남. 그 외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감염예방/안전사고 관련 교육, 회계/인사 관련 교육도 전반적으로 실행수준이 높음
- 반면, 교육 필요수준이 높은 항목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등이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높게 나타남. 그 외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도전적 행동 이해 및 대응 교육, 장애인 노화 관련 교육 등의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회계/인사 관련교육, 감염예방/안전사고 관련 교육, 상담/슈퍼비전 방법,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교육 등에 대한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이용자 특성별 시설유형에 따라 교육 필요수준과 실행수준 격차가 큰 항목에 차이가 나타남.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에서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이해 교육이며,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에서 교육 필요수준 대비 현재 실행수준이 낮은 항목은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이해 교육'(36.9점 차)이 가장 크고, 이어서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34.6점 차),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교육'(34.3점 차),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32.0점 차), '정부 및 지자체 장애인정책 교육'(28.8점 차),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7.8점 차)순으로 필요수준 대비 실행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에서 교육 필요수준 대비 현재 실행수준이 낮은 항목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33.3점 차)이 가장 크고, 이어서 '슈퍼비전 제공 방법(23.3점 차)',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20.0점 차),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20.0점 차),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교육'(16.7점 차)순으로 필요수준 대비 실행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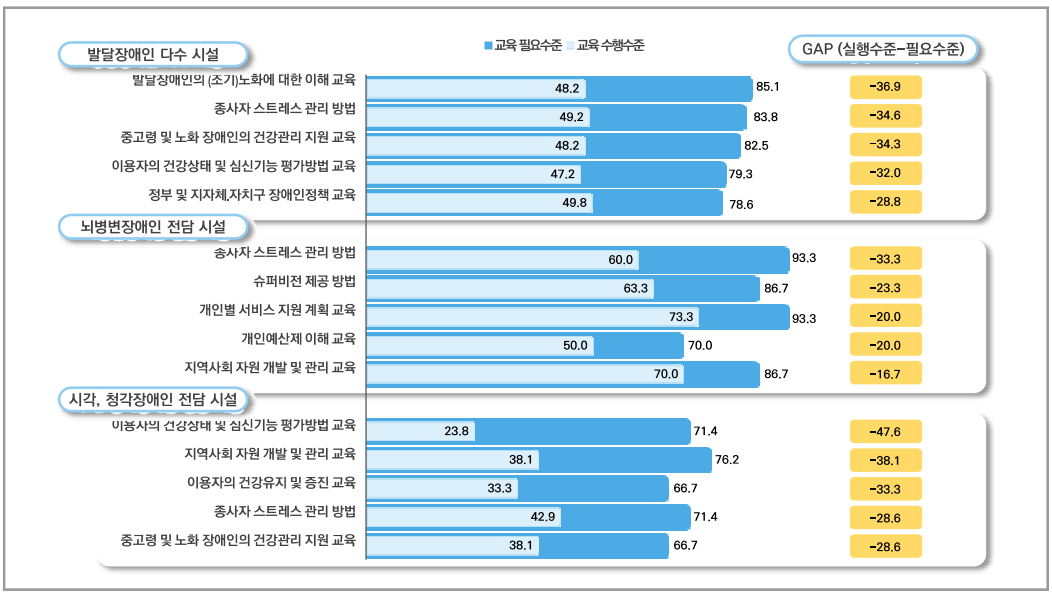
-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에서 교육 필요수준 대비 현재 실행수준이 낮은 항목은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47.6점 차)이 가장 크고, 이어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교육'(38.1점 차),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33.3점 차)',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8.6점 차),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교육'(28.6점 차)순으로 필요수준 대비 실행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점)



▎그림 3-16 ▎ 강화가 필요한 교육_전체(상위 10순위)

(단위: 점)



▎그림 3-17 ▎ 강화가 필요한 교육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표 3-59 ▌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행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단위: 점)

교육내용	교육 수행수준 (100점 평균)	교육 필요수준 (100점 평균)	(실행수준-필요수준) 차이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70.3	70.6	-0.3
장애인 인권교육	88.6	73.1	15.5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72.8	78.3	-5.5
장애인 성교육	66.4	73.6	-7.2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62.5	80.3	-17.8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45.3	77.8	-32.5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48.6	80.8	-32.2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46.7	78.1	-31.4
약물복용 관리 교육	51.9	73.1	-21.2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58.9	75.3	-16.4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46.7	63.6	-16.9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58.9	69.7	-10.8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65.8	71.4	-5.6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61.9	71.7	-9.8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70.3	84.7	-14.4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57.8	75.0	-17.2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48.9	69.7	-20.8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50.0	76.9	-26.9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49.2	75.8	-26.6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49.7	83.9	-34.2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52.5	76.9	-24.4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54.7	78.1	-23.4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76.7	75.8	0.9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70.6	74.2	-3.6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54.2	76.9	-22.7
슈퍼비전 제공 방법	61.4	77.2	-15.8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73.9	78.1	-4.2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68.1	78.1	-10
영양관리 교육	53.9	62.2	-8.3
기타(n=19)	52.6	70.2	-17.6

*기타 교육 : 부모교육, 인성교육, 업무관련교육 등

▌표 3-60 ▌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행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단위: 점)

교육내용	교육 실행수준 (100점 평균)				교육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실행수준-필요수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70.9	66.7	60.0	83.3	72.2	66.7	53.3	50.0	-1.3	0.0	6.7	33.3
장애인 인권교육	88.7	86.7	93.3	83.3	74.1	80.0	46.7	50.0	14.6	6.7	46.7	33.3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72.8	73.3	73.3	66.7	79.0	86.7	60.0	50.0	-6.1	-13.3	13.3	16.7
장애인 성교육	67.3	73.3	33.3	66.7	75.7	63.3	53.3	66.7	-8.4	10.0	-20.0	0.0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64.1	56.7	53.3	33.3	86.1	63.3	20.0	16.7	-22.0	-6.7	33.3	16.7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48.2	40.0	13.3	0.0	85.1	56.7	0.0	0.0	-36.9	-16.7	13.3	0.0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48.2	60.0	40.0	33.3	82.5	73.3	73.3	50.0	-34.3	-13.3	-33.3	-16.7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47.2	56.7	20.0	33.3	79.3	70.0	73.3	66.7	-32.0	-13.3	-53.3	-33.3
약물복용 관리 교육	52.8	56.7	26.7	50.0	74.8	66.7	60.0	50.0	-22.0	-10.0	-33.3	0.0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59.5	70.0	26.7	50.0	76.1	73.3	73.3	50.0	-16.5	-3.3	-46.7	0.0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46.3	56.7	33.3	50.0	63.8	70.0	60.0	33.3	-17.5	-13.3	-26.7	16.7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60.8	56.7	33.3	33.3	72.2	63.3	53.3	16.7	-11.3	-6.7	-20.0	16.7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66.3	63.3	66.7	50.0	73.5	70.0	53.3	16.7	-7.1	-6.7	13.3	33.3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66.3	60.0	0.0	0.0	76.4	66.7	6.7	16.7	-10.0	-6.7	-6.7	-16.7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71.2	73.3	60.0	33.3	84.5	93.3	80.0	66.7	-13.3	-20.0	-20.0	-33.3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57.9	63.3	46.7	50.0	77.0	73.3	66.7	0.0	-19.1	-10.0	-20.0	50.0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50.2	50.0	26.7	33.3	71.8	70.0	40.0	33.3	-21.7	-20.0	-13.3	0.0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49.8	60.0	40.0	33.3	78.6	73.3	53.3	66.7	-28.8	-13.3	-13.3	-33.3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49.5	60.0	20.0	50.0	77.3	73.3	60.0	50.0	-27.8	-13.3	-40.0	0.0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49.2	60.0	46.7	33.3	83.8	93.3	66.7	83.3	-34.6	-33.3	-20.0	-50.0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51.8	70.0	40.0	33.3	76.1	86.7	73.3	83.3	-24.3	-16.7	-33.3	-50.0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53.1	73.3	53.3	50.0	78.3	83.3	66.7	66.7	-25.2	-10.0	-13.3	-16.7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77.3	76.7	66.7	66.7	75.1	86.7	73.3	66.7	2.3	-10.0	-6.7	0.0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70.6	73.3	66.7	66.7	73.5	83.3	73.3	66.7	-2.9	-10.0	-6.7	0.0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54.0	70.0	33.3	33.3	78.3	83.3	53.3	33.3	-24.3	-13.3	-20.0	0.0
슈퍼비전 제공 방법	61.5	63.3	60.0	50.0	76.4	86.7	73.3	83.3	-14.9	-23.3	-13.3	-33.3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75.1	66.7	53.3	100.0	78.0	83.3	86.7	33.3	-2.9	-16.7	-33.3	66.7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68.3	73.3	60.0	50.0	77.3	83.3	80.0	83.3	-9.1	-10.0	-20.0	-33.3
영양관리 교육	55.0	53.3	40.0	33.3	63.1	60.0	60.0	33.3	-8.1	-6.7	-20.0	0.0
기타(n=19)	58.8	0.0	0.0	-	72.5	0.0	100.0	-	-13.7	0.0	-100.0	-

6) 사업 현황

(1) 사업 수행 현황

사업 수행수준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현재 사업 수행수준을 살펴보면, 식사제공, 이용자 초기 상담 및 사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활동서비스 부문에서는 여가활동 및 특별활동(집단 활동)의 '충분'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항목별 현재 수행수준 점수(100점 환산)를 보면 식사제공(91.1점),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85.3점), intake 및 사정(83.9점),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 1:1개별지원(82.5점), 특별활동(집단 활동)지원(81.7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81.4점), 여가활동(집단 활동)지원(80.6점)순으로 나타남
  - 개별/소그룹/집단 활동으로 구분해 볼 때, 일상생활 지원,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영역은 전반적으로 '1:1개별지원' 수행수준이 높고,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적응활동, 특별활동 지원 서비스 영역은 '집단 활동'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남.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서비스는 '소그룹지원' 수행수준이 다소 높음
- 반면, 보건의료지원 영역의 기초적 의료케어,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의료기관 연계진료 등은 미실행 또는 불충분하게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기초적 의료케어는 약 74%,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는 약 63%, 의료기관 연계진료는 약 49%의 시설에서 미실행 또는 불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직업훈련과 작업훈련을 미실행 또는 불충분하게 수행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직업훈련은 약 60%, 작업훈련은 약 50%의 시설에서 미실행 또는 불충분하게 수행함. '차량 송영 서비스'는 충분히 수행(40%) 또는 미실행(47.5%)하는 시설로 나뉨

▌표 3-61▐ 현재 사업 수행수준

(단위: 개소, %, 점)

내용			현재 수행수준								100점 평균
			미실행		부족		보통		충분		
			n	%	n	%	n	%	n	%	
intake 및 사정			(1)	0.8	(7)	5.8	(41)	34.2	(71)	59.2	83.9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1)	0.8	(8)	6.7	(48)	40.0	(63)	52.5	81.4
사례회의			(1)	0.8	(11)	9.2	(51)	42.5	(57)	47.5	78.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0)	0.0	(3)	2.5	(47)	39.2	(70)	58.3	85.3
일상생활 지원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관리	1:1 개별지원	(1)	0.8	(5)	4.2	(50)	41.7	(64)	53.3	82.5
		소그룹지원	(9)	7.5	(7)	5.8	(51)	42.5	(53)	44.2	74.4
		집단 활동	(14)	11.7	(4)	3.3	(49)	40.8	(53)	44.2	72.5
	건강유지 관리 및 증진 지원	1:1 개별지원	(1)	0.8	(9)	7.5	(58)	48.3	(52)	43.3	78.1
		소그룹지원	(7)	5.8	(8)	6.7	(58)	48.3	(47)	39.2	73.6
		집단 활동	(7)	5.8	(2)	1.7	(58)	48.3	(53)	44.2	76.9
	일상생활 훈련	1:1 개별지원	(4)	3.3	(6)	5.0	(52)	43.3	(58)	48.3	78.9
		소그룹지원	(9)	7.5	(6)	5.0	(62)	51.7	(43)	35.8	71.9
		집단 활동	(10)	8.3	(6)	5.0	(61)	50.8	(43)	35.8	71.4
	자립생활 훈련	1:1 개별지원	(7)	5.8	(14)	11.7	(60)	50.0	(39)	32.5	69.7
		소그룹지원	(12)	10.0	(11)	9.2	(62)	51.7	(35)	29.2	66.7
		집단 활동	(12)	10.0	(7)	5.8	(67)	55.8	(34)	28.3	67.5
여가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1)	0.8	(8)	6.7	(57)	47.5	(54)	45.0	78.9
		소그룹지원	(5)	4.2	(6)	5.0	(50)	41.7	(59)	49.2	78.6
		집단 활동	(4)	3.3	(3)	2.5	(52)	43.3	(61)	50.8	80.6
보건의료 지원	약물복용 지도	1:1 개별지원	(13)	10.8	(12)	10.0	(56)	46.7	(39)	32.5	66.9
		소그룹지원	(35)	29.2	(11)	9.2	(59)	49.2	(15)	12.5	48.3
		집단 활동	(39)	32.5	(9)	7.5	(56)	46.7	(16)	13.3	46.9
	주치의·의료기관 연계진료	1:1 개별지원	(38)	31.7	(22)	18.3	(37)	30.8	(23)	19.2	45.8
		소그룹지원	(46)	38.3	(18)	15.0	(36)	30.0	(20)	16.7	41.7
		집단 활동	(36)	30.0	(17)	14.2	(45)	37.5	(22)	18.3	48.1
	기초적 의료적 케어	1:1 개별지원	(70)	58.3	(18)	15.0	(22)	18.3	(10)	8.3	25.6
		소그룹지원	(73)	60.8	(17)	14.2	(24)	20.0	(6)	5.0	23.1
		집단 활동	(72)	60.0	(17)	14.2	(24)	20.0	(7)	5.8	23.9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1:1 개별지원	(50)	41.7	(26)	21.7	(38)	31.7	(6)	5.0	33.3
		소그룹지원	(53)	44.2	(26)	21.7	(35)	29.2	(6)	5.0	31.7
		집단 활동	(52)	43.3	(23)	19.2	(37)	30.8	(8)	6.7	33.6
교육훈련 지원	작업훈련	1:1 개별지원	(47)	39.2	(14)	11.7	(42)	35.0	(17)	14.2	41.4
		소그룹지원	(45)	37.5	(14)	11.7	(46)	38.3	(15)	12.5	41.9
		집단 활동	(45)	37.5	(14)	11.7	(47)	39.2	(14)	11.7	41.7
	직업훈련	1:1 개별지원	(56)	46.7	(17)	14.2	(35)	29.2	(12)	10.0	34.2
		소그룹지원	(53)	44.2	(18)	15.0	(38)	31.7	(11)	9.2	35.3
		집단 활동	(54)	45.0	(18)	15.0	(36)	30.0	(12)	10.0	35.0

내용			현재 수행수준								100점 평균
			미실행		부족		보통		충분		
			n	%	n	%	n	%	n	%	
	안전/교양/인지 관련 훈련	1:1 개별지원	(10)	8.3	(13)	10.8	(70)	58.3	(27)	22.5	65.0
		소그룹지원	(11)	9.2	(10)	8.3	(70)	58.3	(29)	24.2	65.8
		집단 활동	(6)	5.0	(9)	7.5	(70)	58.3	(35)	29.2	70.6
	성교육	1:1 개별지원	(17)	14.2	(21)	17.5	(58)	48.3	(24)	20.0	58.1
		소그룹지원	(23)	19.2	(18)	15.0	(59)	49.2	(20)	16.7	54.4
		집단 활동	(8)	6.7	(16)	13.3	(61)	50.8	(35)	29.2	67.5
	인권교육	1:1 개별지원	(21)	17.5	(11)	9.2	(61)	50.8	(27)	22.5	59.4
		소그룹지원	(20)	16.7	(5)	4.2	(65)	54.2	(30)	25.0	62.5
		집단 활동	(3)	2.5	(5)	4.2	(60)	50.0	(52)	43.3	78.1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8)	6.7	(7)	5.8	(55)	45.8	(50)	41.7	74.2
		소그룹지원	(14)	11.7	(7)	5.8	(42)	35.0	(57)	47.5	72.8
		집단 활동	(11)	9.2	(6)	5.0	(45)	37.5	(58)	48.3	75.0
특별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17)	14.2	(13)	10.8	(44)	36.7	(46)	38.3	66.4
		소그룹지원	(13)	10.8	(9)	7.5	(47)	39.2	(51)	42.5	71.1
		집단 활동	(5)	4.2	(5)	4.2	(41)	34.2	(69)	57.5	81.7
가족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1.7	(5)	4.2	(59)	49.2	(54)	45.0	79.2
	가족/보호자 자조모임		(17)	14.2	(11)	9.2	(47)	39.2	(45)	37.5	66.7
	가족캠프 및 보호자 나들이 교육		(26)	21.7	(11)	9.2	(41)	34.2	(42)	35.0	60.8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등	1:1 개별지원	(20)	16.7	(15)	12.5	(46)	38.3	(39)	32.5	62.2
		소그룹지원	(16)	13.3	(9)	7.5	(49)	40.8	(46)	38.3	68.1
		집단 활동	(9)	7.5	(9)	7.5	(50)	41.7	(52)	43.3	73.6
	권익증진	1:1 개별지원	(34)	28.3	(15)	12.5	(45)	37.5	(26)	21.7	50.8
		소그룹지원	(26)	21.7	(11)	9.2	(53)	44.2	(30)	25.0	57.5
		집단 활동	(28)	23.3	(11)	9.2	(55)	45.8	(26)	21.7	55.3
	자기결정 강화 훈련	1:1 개별지원	(8)	6.7	(11)	9.2	(61)	50.8	(40)	33.3	70.3
		소그룹지원	(17)	14.2	(7)	5.8	(60)	50.0	(36)	30.0	65.3
		집단 활동	(23)	19.2	(7)	5.8	(50)	41.7	(40)	33.3	63.1
	의사소통증진	1:1 개별지원	(14)	11.7	(14)	11.7	(58)	48.3	(34)	28.3	64.4
		소그룹지원	(16)	13.3	(12)	10.0	(54)	45.0	(38)	31.7	65.0
		집단 활동	(18)	15.0	(10)	8.3	(52)	43.3	(40)	33.3	65.0
	스트레스 완화 훈련	1:1 개별지원	(30)	25.0	(20)	16.7	(52)	43.3	(18)	15.0	49.4
		소그룹지원	(30)	25.0	(18)	15.0	(55)	45.8	(17)	14.2	49.7
		집단 활동	(33)	27.5	(17)	14.2	(53)	44.2	(17)	14.2	48.3
식사제공			(1)	0.8	(1)	0.8	(27)	22.5	(91)	75.8	91.1
차량 송영 서비스			(57)	47.5	(0)	0.0	(15)	12.5	(48)	40.0	48.3
시설환경 관리			(1)	0.8	(15)	12.5	(56)	46.7	(48)	40.0	75.3
자원봉사자 관리			(4)	3.3	(27)	22.5	(54)	45.0	(35)	29.2	66.7
실습생 관리			(35)	29.2	(11)	9.2	(46)	38.3	(28)	23.3	51.9
지역사회관계 관리			(0)	0.0	(25)	20.8	(59)	49.2	(36)	30.0	69.7
후원관리			(0)	0.0	(31)	25.8	(59)	49.2	(30)	25.0	66.4

수행 필요수준

- 사업 수행수준이 높은 식사제공, 이용자 초기 상담 및 사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은 수행 필요수준도 높게 나타남. 그 외 시설환경 관리, 후원관리, 지역사회관계 관리, 사례회의 등의 수행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항목별 수행 필요수준 점수(100점 환산)를 보면 시설환경 관리(87.5점), 식사제공(85.6점), 후원관리(85.6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84.7점), 지역사회관계 관리(84.4점),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82.5점), 사례회의(81.9점)순으로 나타남
- 직접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가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신변처리 등 개인위생관리, 건강유지 관리·증진, 일상생활 훈련 등)의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항목별 수행 필요수준 점수(100점 환산) : 여가활동 지원(82.5점),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 관리(81.7점), 건강유지 관리 및 증진 지원(81.7점), 일상생활 훈련(81.1점)순으로 모두 1:1개별지원 필요수준 높음
    ※ 각 서비스 영역 특성에 따라 개별/소그룹/집단 활동의 현재 수행수준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데 비해, 필요수준은 특별활동 지원 서비스만 '집단 활동' 필요수준이 높고, 그 외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1:1개별지원' 필요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음

표 3-62 사업 수행 필요수준

(단위: 개소, %, 점)

내용			수행 필요수준								
			불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		100점 평균
			n	%	n	%	n	%	n	%	
intake 및 사정			(6)	5.0	(7)	5.8	(50)	41.7	(57)	47.5	77.2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4)	3.3	(3)	2.5	(37)	30.8	(76)	63.3	84.7
사례회의			(4)	3.3	(4)	3.3	(45)	37.5	(67)	55.8	81.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4)	3.3	(3)	2.5	(45)	37.5	(68)	56.7	82.5
일상생활 지원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관리	1:1 개별지원	(5)	4.2	(4)	3.3	(43)	35.8	(68)	56.7	81.7
		소그룹지원	(11)	9.2	(7)	5.8	(48)	40.0	(54)	45.0	73.6
		집단 활동	(16)	13.3	(15)	12.5	(41)	34.2	(48)	40.0	66.9
	건강유지 관리 및 증진 지원	1:1 개별지원	(4)	3.3	(3)	2.5	(48)	40.0	(65)	54.2	81.7
		소그룹지원	(9)	7.5	(5)	4.2	(55)	45.8	(51)	42.5	74.4
		집단 활동	(12)	10.0	(6)	5.0	(53)	44.2	(49)	40.8	71.9
	일상생활 훈련	1:1 개별지원	(7)	5.8	(2)	1.7	(43)	35.8	(68)	56.7	81.1
		소그룹지원	(9)	7.5	(7)	5.8	(51)	42.5	(53)	44.2	74.4
		집단 활동	(12)	10.0	(10)	8.3	(51)	42.5	(47)	39.2	70.3

내용			수행 필요수준								
			불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		100점 평균
			n	%	n	%	n	%	n	%	
	자립생활 훈련	1:1 개별지원	(7)	5.8	(7)	5.8	(44)	36.7	(62)	51.7	78.1
		소그룹지원	(9)	7.5	(8)	6.7	(51)	42.5	(52)	43.3	73.9
		집단 활동	(12)	10.0	(10)	8.3	(53)	44.2	(45)	37.5	69.7
여가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3)	2.5	(4)	3.3	(46)	38.3	(67)	55.8	82.5
		소그룹지원	(5)	4.2	(4)	3.3	(52)	43.3	(59)	49.2	79.2
		집단 활동	(8)	6.7	(6)	5.0	(55)	45.8	(51)	42.5	74.7
보건 의료 지원	약물복용 지도	1:1 개별지원	(10)	8.3	(16)	13.3	(45)	37.5	(49)	40.8	70.3
		소그룹지원	(26)	21.7	(20)	16.7	(44)	36.7	(30)	25.0	55.0
		집단 활동	(29)	24.2	(21)	17.5	(42)	35.0	(28)	23.3	52.5
	주치의·의료기관 연계진료	1:1 개별지원	(15)	12.5	(10)	8.3	(49)	40.8	(46)	38.3	68.3
		소그룹지원	(20)	16.7	(10)	8.3	(57)	47.5	(33)	27.5	61.9
		집단 활동	(20)	16.7	(10)	8.3	(56)	46.7	(34)	28.3	62.2
	기초적 의료적 케어	1:1 개별지원	(48)	40.0	(23)	19.2	(30)	25.0	(19)	15.8	38.9
		소그룹지원	(49)	40.8	(25)	20.8	(29)	24.2	(17)	14.2	37.2
		집단 활동	(50)	41.7	(24)	20.0	(30)	25.0	(16)	13.3	36.7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1:1 개별지원	(17)	14.2	(21)	17.5	(44)	36.7	(38)	31.7	61.9
		소그룹지원	(23)	19.2	(23)	19.2	(42)	35.0	(32)	26.7	56.4
		집단 활동	(25)	20.8	(20)	16.7	(45)	37.5	(30)	25.0	55.6
교육 훈련 지원	작업훈련	1:1 개별지원	(22)	18.3	(25)	20.8	(48)	40.0	(25)	20.8	54.4
		소그룹지원	(26)	21.7	(24)	20.0	(48)	40.0	(22)	18.3	51.7
		집단 활동	(28)	23.3	(26)	21.7	(45)	37.5	(21)	17.5	49.7
	직업훈련	1:1 개별지원	(32)	26.7	(32)	26.7	(36)	30.0	(20)	16.7	45.6
		소그룹지원	(32)	26.7	(32)	26.7	(37)	30.8	(19)	15.8	45.3
		집단 활동	(34)	28.3	(33)	27.5	(35)	29.2	(18)	15.0	43.6
	안전/교양/인지 관련 훈련	1:1 개별지원	(9)	7.5	(7)	5.8	(63)	52.5	(41)	34.2	71.1
		소그룹지원	(11)	9.2	(7)	5.8	(62)	51.7	(40)	33.3	69.7
		집단 활동	(11)	9.2	(7)	5.8	(59)	49.2	(43)	35.8	70.6
	성교육	1:1 개별지원	(13)	10.8	(10)	8.3	(55)	45.8	(42)	35.0	68.3
		소그룹지원	(18)	15.0	(12)	10.0	(54)	45.0	(36)	30.0	63.3
		집단 활동	(11)	9.2	(17)	14.2	(51)	42.5	(41)	34.2	67.2
	인권교육	1:1 개별지원	(16)	13.3	(14)	11.7	(45)	37.5	(45)	37.5	66.4
		소그룹지원	(15)	12.5	(10)	8.3	(51)	42.5	(44)	36.7	67.8
		집단 활동	(8)	6.7	(7)	5.8	(52)	43.3	(53)	44.2	75.0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4)	3.3	(7)	5.8	(46)	38.3	(63)	52.5	80.0
		소그룹지원	(9)	7.5	(9)	7.5	(44)	36.7	(58)	48.3	75.3
		집단 활동	(11)	9.2	(9)	7.5	(47)	39.2	(53)	44.2	72.8

내용		수행 필요수준								
		불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		100점 평균
		n	%	n	%	n	%	n	%	
특별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6)	5.0	(10)	8.3	(48)	40.0	(56)	46.7	76.1
	소그룹지원	(8)	6.7	(5)	4.2	(48)	40.0	(59)	49.2	77.2
	집단 활동	(5)	4.2	(6)	5.0	(52)	43.3	(57)	47.5	78.1
가족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4)	3.3	(3)	2.5	(54)	45.0	(59)	49.2	80.0
	가족/보호자 자조모임	(8)	6.7	(12)	10.0	(58)	48.3	(42)	35.0	70.6
	가족캠프 및 보호자 나들이 교육	(16)	13.3	(14)	11.7	(48)	40.0	(42)	35.0	65.6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등 1:1 개별지원	(7)	5.8	(16)	13.3	(53)	44.2	(44)	36.7	70.6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등 소그룹지원	(8)	6.7	(9)	7.5	(59)	49.2	(44)	36.7	71.9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등 집단 활동	(8)	6.7	(11)	9.2	(57)	47.5	(44)	36.7	71.4
	권익증진 1:1 개별지원	(12)	10.0	(17)	14.2	(59)	49.2	(32)	26.7	64.2
	권익증진 소그룹지원	(9)	7.5	(11)	9.2	(62)	51.7	(38)	31.7	69.2
	권익증진 집단 활동	(14)	11.7	(13)	10.8	(63)	52.5	(30)	25.0	63.6
	자기결정 강화 훈련 1:1 개별지원	(5)	4.2	(5)	4.2	(57)	47.5	(53)	44.2	77.2
	자기결정 강화 훈련 소그룹지원	(9)	7.5	(7)	5.8	(56)	46.7	(48)	40.0	73.1
	자기결정 강화 훈련 집단 활동	(15)	12.5	(10)	8.3	(51)	42.5	(44)	36.7	67.8
	의사소통증진 1:1 개별지원	(9)	7.5	(6)	5.0	(48)	40.0	(57)	47.5	75.8
	의사소통증진 소그룹지원	(11)	9.2	(7)	5.8	(49)	40.8	(53)	44.2	73.3
	의사소통증진 집단 활동	(14)	11.7	(11)	9.2	(45)	37.5	(50)	41.7	69.7
	스트레스 완화 훈련 1:1 개별지원	(11)	9.2	(5)	4.2	(63)	52.5	(41)	34.2	70.6
	스트레스 완화 훈련 소그룹지원	(12)	10.0	(11)	9.2	(59)	49.2	(38)	31.7	67.5
	스트레스 완화 훈련 집단 활동	(16)	13.3	(10)	8.3	(57)	47.5	(37)	30.8	65.3
식사제공		(4)	3.3	(3)	2.5	(34)	28.3	(79)	65.8	85.6
차량 송영 서비스		(42)	35.0	(12)	10.0	(25)	20.8	(41)	34.2	51.4
시설환경 관리		(3)	2.5	(2)	1.7	(32)	26.7	(83)	69.2	87.5
자원봉사자 관리		(3)	2.5	(10)	8.3	(56)	46.7	(51)	42.5	76.4
실습생 관리		(19)	15.8	(22)	18.3	(44)	36.7	(35)	29.2	59.7
지역사회관계 관리		(2)	1.7	(1)	0.8	(48)	40.0	(69)	57.5	84.4
후원관리		(1)	0.8	(3)	2.5	(43)	35.8	(73)	60.8	85.6

사업 수행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 대부분 사업에서 현재 사업 수행수준 대비 필요수준이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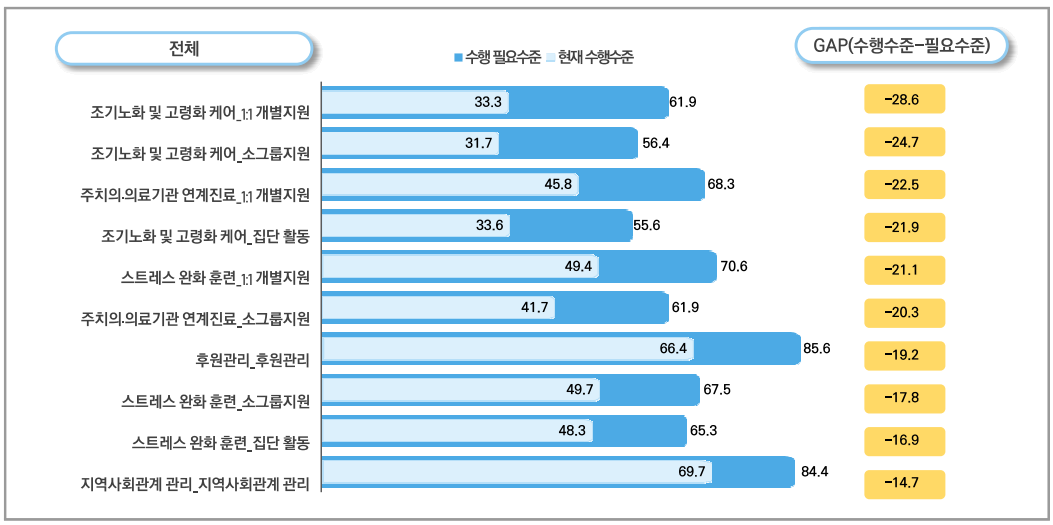
○ 현재 사업 수행수준 대비 수행 필요수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영역(고령화 케어, 의료기관 연계 등)이며, 이어서 스트레스 완화 훈련, 후원관리, 지역사회관계 관리 등으로 사업 수행 확대 검토가 필요함

-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 1:1개별(28.6점 차), 소그룹(24.7점 차), 집단 활동(21.9점 차)
- 주치의·의료기관 연계진료: 1:1개별(22.5점 차), 소그룹(20.3점 차), 집단 활동(14.2점 차)
- 기초적 의료케어 : 소그룹(14.2점 차), 1:1개별지원(13.3점 차), 집단 활동(12.8점 차)
- 스트레스 완화 훈련 : 1:1개별지원(21.1점 차), 소그룹(17.8점 차), 집단 활동(16.9점 차)
- 후원관리(19.2점 차), 지역사회관계 관리(14.7점 차), 1:1권익증진(13.3점 차), 1:1작업훈련(13.1점 차) 등

○ 반면, 필요수준이 비교적 높은 항목 중 현재 수행수준이 그 이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도 일부 존재함. 식사제공, intake 및 사정,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 필수사업이 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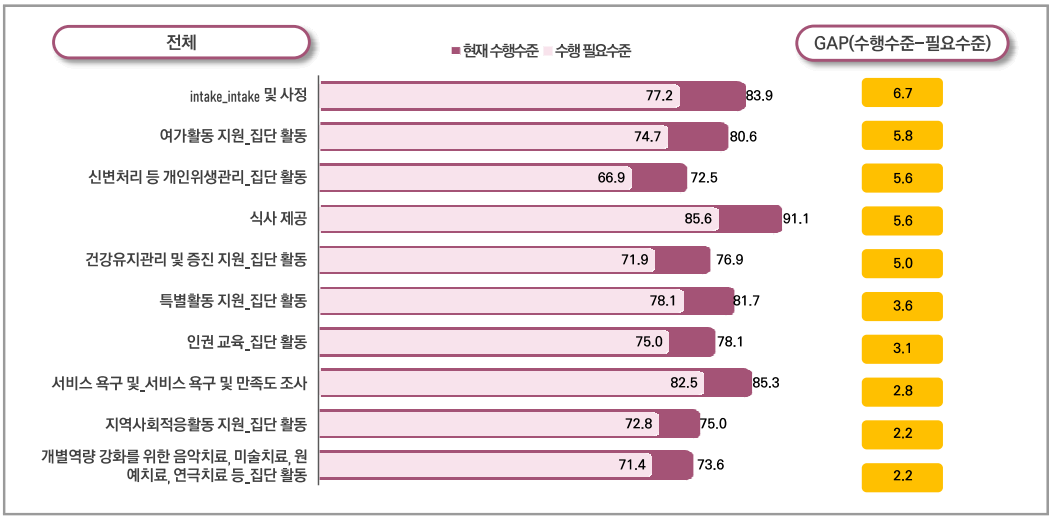
- 직접 서비스 항목 중 필요수준보다 현재 수행수준이 높은 항목(여가활동, 특별활동, 건강유지 관리 지원 등)은 대부분 '집단 활동'에 해당되며, 동일 지원 서비스여도 '1:1 개별지원' 및 '소그룹 활동'은 대부분 필요수준 대비 현재 수행수준이 낮아서 추가지원이 필요함. 특히 1:1개별지원의 필요수준이 높음

(단위: 점)



▌그림 3-18▐ 수행 확대가 필요한 사업_전체(상위 10순위)

(단위: 점)



▌그림 3-19▐ 수행 축소가 필요한 사업_전체(상위 10순위)

*직접 서비스 중 필요수준에 비해 현재 수행수준이 높은 항목은 대부분 '집단 활동'에 해당됨. 동일 유형의 서비스여도 '1:1개별지원'과 '소그룹 활동'은 필요수준에 비해 현재 수행수준이 낮아 수행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다수임

▌표 3-63▐ 현재 사업 수행수준 및 수행 필요수준 차이

(단위: 점)

내용			현재 수행수준 (100점 평균)	수행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 (현재 수준-필요수준)
intake 및 사정			83.9	77.2	6.7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81.4	84.7	-3.3
사례회의			78.9	81.9	-3.1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85.3	82.5	2.8
일상생활 지원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관리	1:1 개별지원	82.5	81.7	0.8
		소그룹지원	74.4	73.6	0.8
		집단 활동	72.5	66.9	5.6
	건강유지 관리 및 증진 지원	1:1 개별지원	78.1	81.7	-3.6
		소그룹지원	73.6	74.4	-0.8
		집단 활동	76.9	71.9	5.0
	일상생활 훈련	1:1 개별지원	78.9	81.1	-2.2
		소그룹지원	71.9	74.4	-2.5
		집단 활동	71.4	70.3	1.1
	자립생활 훈련	1:1 개별지원	69.7	78.1	-8.3
		소그룹지원	66.7	73.9	-7.2
		집단 활동	67.5	69.7	-2.2

내용			현재 수행수준 (100점 평균)	수행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 (현재 수준-필요수준)
여가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78.9	82.5	-3.6
		소그룹지원	78.6	79.2	-0.6
		집단 활동	80.6	74.7	5.8
보건 의료 지원	약물복용 지도	1:1 개별지원	66.9	70.3	-3.3
		소그룹지원	48.3	55.0	-6.7
		집단 활동	46.9	52.5	-5.6
	주치의·의료기관 연계진료	1:1 개별지원	45.8	68.3	-22.5
		소그룹지원	41.7	61.9	-20.3
		집단 활동	48.1	62.2	-14.2
	기초적 의료적 케어	1:1 개별지원	25.6	38.9	-13.3
		소그룹지원	23.1	37.2	-14.2
		집단 활동	23.9	36.7	-12.8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1:1 개별지원	33.3	61.9	-28.6
		소그룹지원	31.7	56.4	-24.7
		집단 활동	33.6	55.6	-21.9
교육 훈련 지원	작업훈련	1:1 개별지원	41.4	54.4	-13.1
		소그룹지원	41.9	51.7	-9.7
		집단 활동	41.7	49.7	-8.1
	직업훈련	1:1 개별지원	34.2	45.6	-11.4
		소그룹지원	35.3	45.3	-10.0
		집단 활동	35.0	43.6	-8.6
	안전/교양/인지 관련 훈련	1:1 개별지원	65.0	71.1	-6.1
		소그룹지원	65.8	69.7	-3.9
		집단 활동	70.6	70.6	0.0
	성교육	1:1 개별지원	58.1	68.3	-10.3
		소그룹지원	54.4	63.3	-8.9
		집단 활동	67.5	67.2	0.3
	인권교육	1:1 개별지원	59.4	66.4	-6.9
		소그룹지원	62.5	67.8	-5.3
		집단 활동	78.1	75.0	3.1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74.2	80.0	-5.8
		소그룹지원	72.8	75.3	-2.5
		집단 활동	75.0	72.8	2.2
특별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66.4	76.1	-9.7
		소그룹지원	71.1	77.2	-6.1
		집단 활동	81.7	78.1	3.6

내용			현재 수행수준 (100점 평균)	수행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 (현재 수준-필요수준)
가족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79.2	80.0	-0.8
	가족/보호자 자조모임		66.7	70.6	-3.9
	가족캠프 및 보호자 나들이 교육		60.8	65.6	-4.7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등	1:1 개별지원	62.2	70.6	-8.3
		소그룹지원	68.1	71.9	-3.9
		집단 활동	73.6	71.4	2.2
	권익증진	1:1 개별지원	50.8	64.2	-13.3
		소그룹지원	57.5	69.2	-11.7
		집단 활동	55.3	63.6	-8.3
	자기결정 강화 훈련	1:1 개별지원	70.3	77.2	-6.9
		소그룹지원	65.3	73.1	-7.8
		집단 활동	63.1	67.8	-4.7
	의사소통증진	1:1 개별지원	64.4	75.8	-11.4
		소그룹지원	65.0	73.3	-8.3
		집단 활동	65.0	69.7	-4.7
	스트레스 완화 훈련	1:1 개별지원	49.4	70.6	-21.1
		소그룹지원	49.7	67.5	-17.8
		집단 활동	48.3	65.3	-16.9
식사제공			91.1	85.6	5.6
차량 송영 서비스			48.3	51.4	-3.1
시설환경 관리			75.3	87.5	-12.2
자원봉사자 관리			66.7	76.4	-9.7
실습생 관리			51.9	59.7	-7.8
지역사회관계 관리			69.7	84.4	-14.7
후원관리			66.4	85.6	-19.2

- 이용자 특성 시설유형별, 현재 사업 수행수준 및 수행 필요수준과 격차 모두 전체 시설의 경향과 비슷함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에서 현재 수행수준이 높은 항목은 식사제공(91.9점),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85.4점), intake 및 사정(84.1점),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 1:1개별지원(82.5점), 특별활동(집단 활동)지원(82.5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80.9점), 여가활동(집단 활동)지원(80.3점), 가족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80.3점) 등이며, 수행 필요수준 점수가 높은 항목은 시설환경 관리(87.4점), 식사제공(84.8점), 후원관리(85.8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84.5점), 지역사회관계 관리(84.5점),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82.5점), 사례회의(81.6점), 가족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80.6점) 등으로 나타남

- 직접 서비스 영역 필요수준(모두 1:1개별지원) : 여가활동 지원(83.2점),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관리(83.2점), 건강유지 관리 및 증진 지원(82.5점), 일상생활 훈련(82.5점),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81.9점), 자립생활 훈련(80.9점), 의사소통증진(80.3점)순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에서 현재 사업 수행수준 대비 수행 필요수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영역(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의료기관 연계 등)이며, 이어서 스트레스 완화 훈련, 후원관리, 권익증진 지원, 성교육 등으로 사업 수행 확대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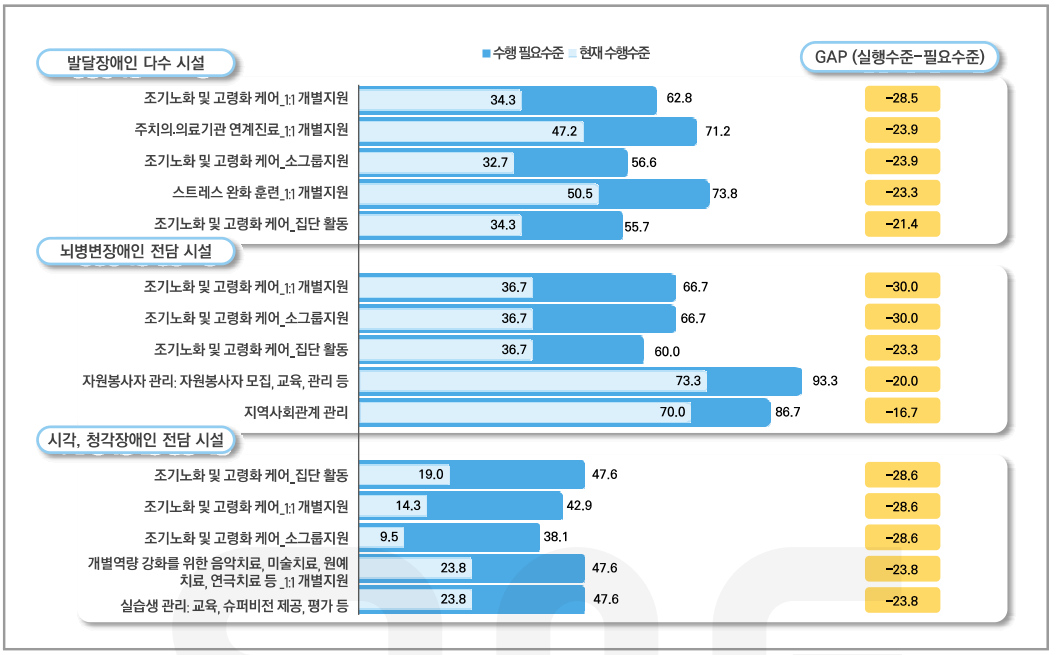
-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 1:1개별(28.5점 차), 소그룹(23.9점 차), 집단 활동(21.4점 차)
- 주치의·의료기관 연계진료: 1:1개별(23.9점 차), 소그룹(20.7점 차), 집단 활동(13.9점 차)
- 스트레스 완화 훈련 : 1:1개별지원(23.3점 차), 소그룹(19.7점 차), 집단 활동(18.1점 차)
- 기초적 의료케어 : 소그룹(14.6점 차), 1:1개별지원(13.9점 차), 집단 활동(12.9점 차)
- 후원관리(19.7점 차), 지역사회관계관리(14.2점 차), 1:1개별 권익증진(14.2점 차), 1:1개별 성교육(12.3점 차) 등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에서 현재 수행수준이 높은 항목은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관리 1:1개별지원(90.0점), 식사제공(90.0점), 건강유지 관리 및 증진 1:1개별지원(86.7점), 여가활동 소그룹지원(86.7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행 필요수준이 높은 항목은 자원봉사자 관리(93.3점), 일상생활 훈련 1:1개별지원(90.0점), 지역사회관계관리(86.7점) 등으로 나타남

- 현재 사업 수행수준 대비 필요수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1:1개별지원, 소그룹지원 각 30점 차 / 집단 활동 23.3점 차), 자원봉사자 관리(20점 차), 지역사회관계 관리(16.7점 차) 등으로 수행 확대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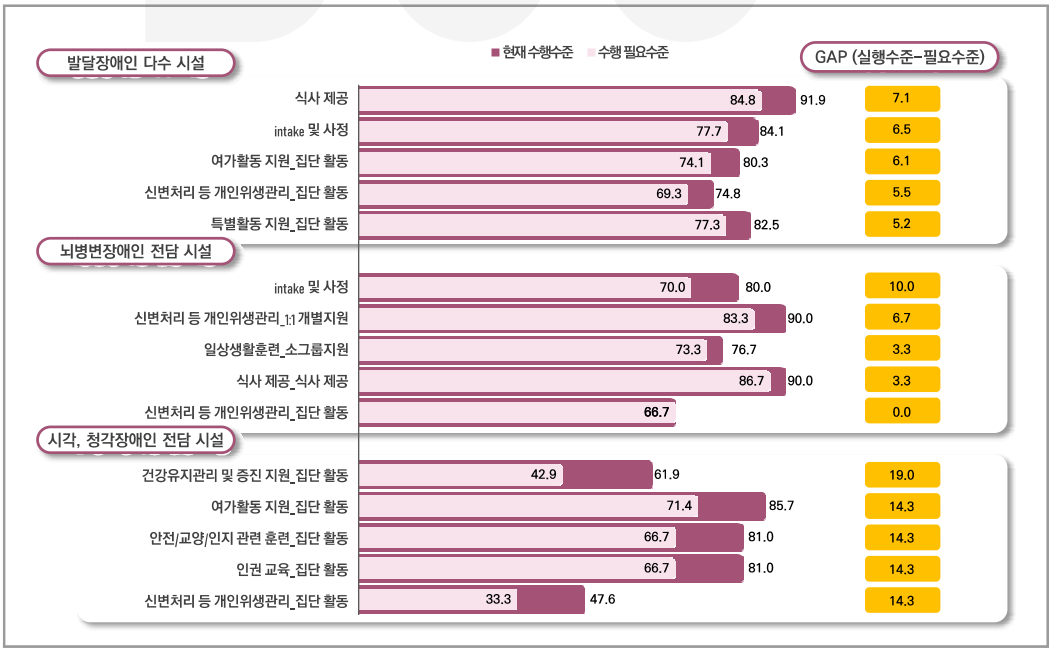
○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에서 현재 사업 수행수준 대비 필요수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1:1개별지원, 소그룹지원, 집단 활동 각 28.6점 차),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한 음악/미술/원예치료(23.8점 차), 실습생 관리(23.8점 차) 등으로 나타남

(단위: 점)



▌그림 3-20 ▌ 수행 확대가 필요한 사업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단위: 점)



▌그림 3-21 ▌ 수행 축소가 필요한 사업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표 3-64 현재 사업 수행수준 및 수행 필요수준 차이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단위: 점)

내용			현재 수행수준 (100점 평균)				수행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수행수준-필요수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intake 및 사정			84.1	80.0	93.3	66.7	77.7	70.0	86.7	66.7	6.5	10.0	6.7	0.0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80.9	83.3	93.3	66.7	84.5	86.7	93.3	66.7	-3.6	-3.3	0.0	0.0
사례회의			78.6	76.7	93.3	66.7	81.6	86.7	86.7	66.7	-2.9	-10.0	6.7	0.0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85.4	83.3	93.3	66.7	82.5	83.3	86.7	66.7	2.9	0.0	6.7	0.0
일상생활 지원	신변처리 등 개인위생관리	1:1 개별지원	82.5	90.0	80.0	50.0	83.2	83.3	73.3	16.7	-0.6	6.7	6.7	33.3
		소그룹지원	76.7	73.3	40.0	50.0	76.1	73.3	46.7	16.7	0.6	0.0	-6.7	33.3
		집단 활동	74.8	66.7	46.7	50.0	69.3	66.7	40.0	16.7	5.5	0.0	6.7	33.3
	건강유지 관리 및 증진 지원	1:1 개별지원	77.7	86.7	80.0	50.0	82.5	86.7	80.0	16.7	-4.9	0.0	0.0	33.3
		소그룹지원	74.4	83.3	46.7	50.0	76.1	83.3	46.7	16.7	-1.6	0.0	0.0	33.3
		집단 활동	77.3	83.3	66.7	50.0	72.8	83.3	53.3	16.7	4.5	0.0	13.3	33.3
	일상생활 훈련	1:1 개별지원	80.6	83.3	66.7	0.0	82.5	90.0	60.0	16.7	-1.9	-6.7	6.7	-16.7
		소그룹지원	73.8	76.7	53.3	0.0	76.4	73.3	60.0	16.7	-2.6	3.3	-6.7	-16.7
		집단 활동	73.5	60.0	80.0	0.0	71.5	66.7	73.3	16.7	1.9	-6.7	6.7	-16.7
	자립생활 훈련	1:1 개별지원	73.5	70.0	20.0	0.0	80.9	80.0	40.0	16.7	-7.4	-10.0	-20.0	-16.7
		소그룹지원	70.2	63.3	26.7	0.0	77.0	70.0	40.0	16.7	-6.8	-6.7	-13.3	-16.7
		집단 활동	70.2	63.3	46.7	0.0	71.5	70.0	53.3	16.7	-1.3	-6.7	-6.7	-16.7
여가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78.6	80.0	80.0	83.3	83.2	86.7	73.3	50.0	-4.5	-6.7	6.7	33.3
		소그룹지원	79.3	86.7	46.7	83.3	80.3	86.7	53.3	50.0	-1.0	0.0	-6.7	33.3
		집단 활동	80.3	80.0	86.7	83.3	74.1	83.3	80.0	50.0	6.1	-3.3	6.7	33.3
보건의료 지원	약물복용 지도	1:1 개별지원	68.0	76.7	33.3	50.0	71.8	80.0	40.0	16.7	-3.9	-3.3	-6.7	33.3
		소그룹지원	50.5	43.3	13.3	50.0	58.3	46.7	20.0	16.7	-7.8	-3.3	-6.7	33.3
		집단 활동	48.5	40.0	26.7	50.0	55.3	43.3	26.7	16.7	-6.8	-3.3	0.0	33.3
	주치의·의료기관 연계진료	1:1 개별지원	47.2	50.0	13.3	33.3	71.2	66.7	26.7	33.3	-23.9	-16.7	-13.3	0.0
		소그룹지원	44.3	40.0	0.0	16.7	65.0	56.7	20.0	33.3	-20.7	-16.7	-20.0	-16.7
		집단 활동	51.1	40.0	13.3	16.7	65.0	50.0	40.0	33.3	-13.9	-10.0	-26.7	-16.7
	기초적 의료적 케어	1:1 개별지원	26.2	36.7	0.0	0.0	40.1	46.7	6.7	16.7	-13.9	-10.0	-6.7	-16.7
		소그룹지원	24.3	26.7	0.0	0.0	38.8	40.0	6.7	16.7	-14.6	-13.3	-6.7	-16.7
		집단 활동	24.9	23.3	13.3	0.0	37.9	40.0	13.3	16.7	-12.9	-16.7	0.0	-16.7

내용			현재 수행수준 (100점 평균)				수행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수행수준-필요수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1:1 개별지원	34.3	36.7	20.0	0.0	62.8	66.7	53.3	16.7	-28.5	-30.0	-33.3	-16.7
		소그룹지원	32.7	36.7	13.3	0.0	56.6	66.7	46.7	16.7	-23.9	-30.0	-33.3	-16.7
		집단 활동	34.3	36.7	26.7	0.0	55.7	60.0	60.0	16.7	-21.4	-23.3	-33.3	-16.7
교육훈련지원	작업훈련	1:1 개별지원	43.7	36.7	20.0	0.0	56.0	53.3	46.7	0.0	-12.3	-16.7	-26.7	0.0
		소그룹지원	45.0	40.0	0.0	0.0	53.7	53.3	26.7	0.0	-8.7	-13.3	-26.7	0.0
		집단 활동	44.7	30.0	20.0	0.0	51.5	43.3	46.7	0.0	-6.8	-13.3	-26.7	0.0
	직업훈련	1:1 개별지원	37.2	26.7	0.0	0.0	48.2	36.7	26.7	0.0	-11.0	-10.0	-26.7	0.0
		소그룹지원	38.2	30.0	0.0	0.0	47.9	36.7	26.7	0.0	-9.7	-6.7	-26.7	0.0
		집단 활동	37.9	30.0	0.0	0.0	46.0	36.7	26.7	0.0	-8.1	-6.7	-26.7	0.0
	안전/교양/인지 관련 훈련	1:1 개별지원	65.4	66.7	60.0	50.0	72.5	73.3	66.7	0.0	-7.1	-6.7	-6.7	50.0
		소그룹지원	66.3	66.7	60.0	50.0	71.5	70.0	60.0	0.0	-5.2	-3.3	0.0	50.0
		집단 활동	69.6	73.3	86.7	66.7	70.2	76.7	80.0	33.3	-0.6	-3.3	6.7	33.3
	성교육	1:1 개별지원	59.5	53.3	40.0	50.0	71.8	56.7	46.7	0.0	-12.3	-3.3	-6.7	50.0
		소그룹지원	56.3	50.0	26.7	50.0	66.7	53.3	40.0	0.0	-10.4	-3.3	-13.3	50.0
		집단 활동	67.0	76.7	60.0	66.7	67.3	76.7	60.0	33.3	-0.3	0.0	0.0	33.3
	인권교육	1:1 개별지원	61.5	53.3	33.3	50.0	69.9	56.7	40.0	0.0	-8.4	-3.3	-6.7	50.0
		소그룹지원	64.1	60.0	40.0	50.0	70.6	63.3	46.7	0.0	-6.5	-3.3	-6.7	50.0
		집단 활동	78.0	76.7	86.7	66.7	75.1	80.0	80.0	33.3	2.9	-3.3	6.7	33.3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77.0	70.0	53.3	0.0	81.9	80.0	73.3	0.0	-4.9	-10.0	-20.0	0.0
		소그룹지원	77.3	63.3	26.7	0.0	78.3	73.3	46.7	0.0	-1.0	-10.0	-20.0	0.0
		집단 활동	79.3	53.3	53.3	16.7	75.4	63.3	53.3	33.3	3.9	-10.0	0.0	-16.7
특별활동 지원		1:1 개별지원	70.2	56.7	20.0	33.3	79.3	66.7	46.7	33.3	-9.1	-10.0	-26.7	0.0
		소그룹지원	73.5	73.3	33.3	33.3	79.6	76.7	46.7	33.3	-6.1	-3.3	-13.3	0.0
		집단 활동	82.5	80.0	80.0	50.0	77.3	83.3	86.7	66.7	5.2	-3.3	-6.7	-16.7
가족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80.3	76.7	73.3	50.0	80.6	86.7	73.3	33.3	-0.3	-10.0	0.0	16.7
	가족/보호자 자조모임		68.9	76.7	26.7	0.0	72.2	80.0	46.7	0.0	-3.2	-3.3	-20.0	0.0
	가족캠프 및 보호자 나들이 교육		64.7	50.0	26.7	0.0	69.3	53.3	40.0	0.0	-4.5	-3.3	-13.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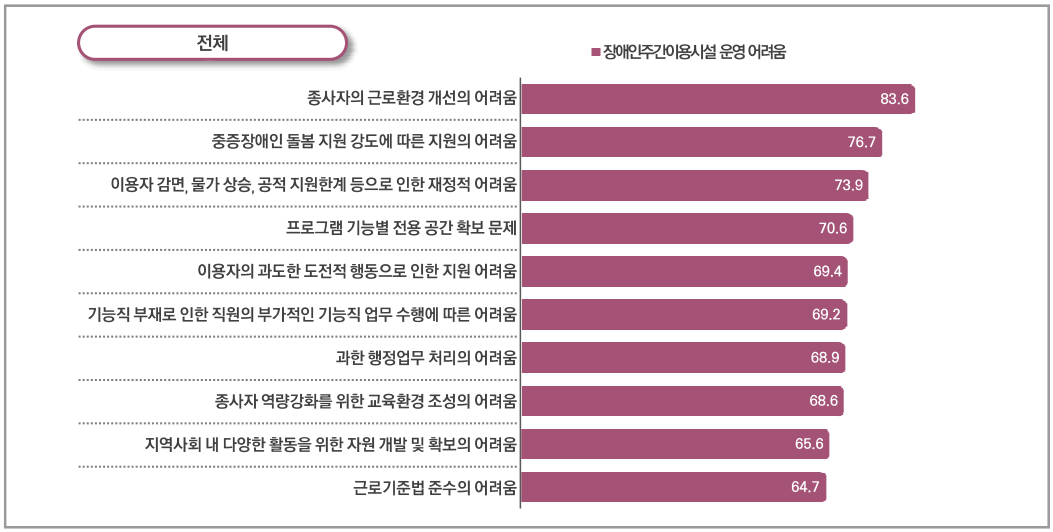
내용			현재 수행수준 (100점 평균)				수행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수행수준-필요수준)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등	1:1 개별지원	64.1	70.0	33.3	0.0	71.5	76.7	53.3	33.3	-7.4	-6.7	-20.0	-33.3
		소그룹지원	70.2	66.7	40.0	33.3	73.5	76.7	46.7	33.3	-3.2	-10.0	-6.7	0.0
		집단 활동	73.5	73.3	80.0	66.7	70.6	80.0	80.0	50.0	2.9	-6.7	0.0	16.7
	권익증진	1:1 개별지원	53.1	50.0	13.3	33.3	67.3	53.3	33.3	33.3	-14.2	-3.3	-20.0	0.0
		소그룹지원	59.2	60.0	26.7	33.3	71.8	63.3	40.0	33.3	-12.6	-3.3	-13.3	0.0
		집단 활동	57.0	50.0	40.0	33.3	65.7	53.3	53.3	33.3	-8.7	-3.3	-13.3	0.0
	자기결정 강화 훈련	1:1 개별지원	71.5	80.0	53.3	0.0	79.0	83.3	60.0	0.0	-7.4	-3.3	-6.7	0.0
		소그룹지원	67.6	63.3	46.7	0.0	76.4	66.7	46.7	0.0	-8.7	-3.3	0.0	0.0
		집단 활동	66.0	53.3	46.7	0.0	71.2	56.7	46.7	0.0	-5.2	-3.3	0.0	0.0
	의사소통증진	1:1 개별지원	67.6	60.0	33.3	0.0	80.3	63.3	40.0	0.0	-12.6	-3.3	-6.7	0.0
		소그룹지원	68.6	63.3	20.0	0.0	77.7	66.7	26.7	0.0	-9.1	-3.3	-6.7	0.0
		집단 활동	66.3	70.0	53.3	0.0	71.5	73.3	53.3	0.0	-5.2	-3.3	0.0	0.0
	스트레스 완화 훈련	1:1 개별지원	50.5	53.3	26.7	33.3	73.8	63.3	33.3	33.3	-23.3	-10.0	-6.7	0.0
		소그룹지원	50.2	60.0	26.7	33.3	69.9	66.7	33.3	33.3	-19.7	-6.7	-6.7	0.0
		집단 활동	48.5	60.0	26.7	33.3	66.7	66.7	46.7	33.3	-18.1	-6.7	-20.0	0.0
식사제공			91.9	90.0	93.3	50.0	84.8	86.7	93.3	100.0	7.1	3.3	0.0	-50.0
차량 송영 서비스			51.1	10.0	73.3	33.3	51.8	26.7	80.0	83.3	-0.6	-16.7	-6.7	-50.0
시설환경 관리			75.4	76.7	86.7	33.3	87.4	86.7	93.3	83.3	-12.0	-10.0	-6.7	-50.0
자원봉사자 관리			66.3	73.3	73.3	33.3	75.1	93.3	66.7	83.3	-8.7	-20.0	6.7	-50.0
실습생 관리			53.4	56.7	20.0	33.3	60.2	63.3	33.3	83.3	-6.8	-6.7	-13.3	-50.0
지역사회관계 관리			70.2	70.0	73.3	33.3	84.5	86.7	80.0	83.3	-14.2	-16.7	-6.7	-50.0
후원관리			66.0	73.3	73.3	33.3	85.8	86.7	80.0	83.3	-19.7	-13.3	-6.7	-50.0

(2) 시설 운영 어려움 및 개선사항

시설 운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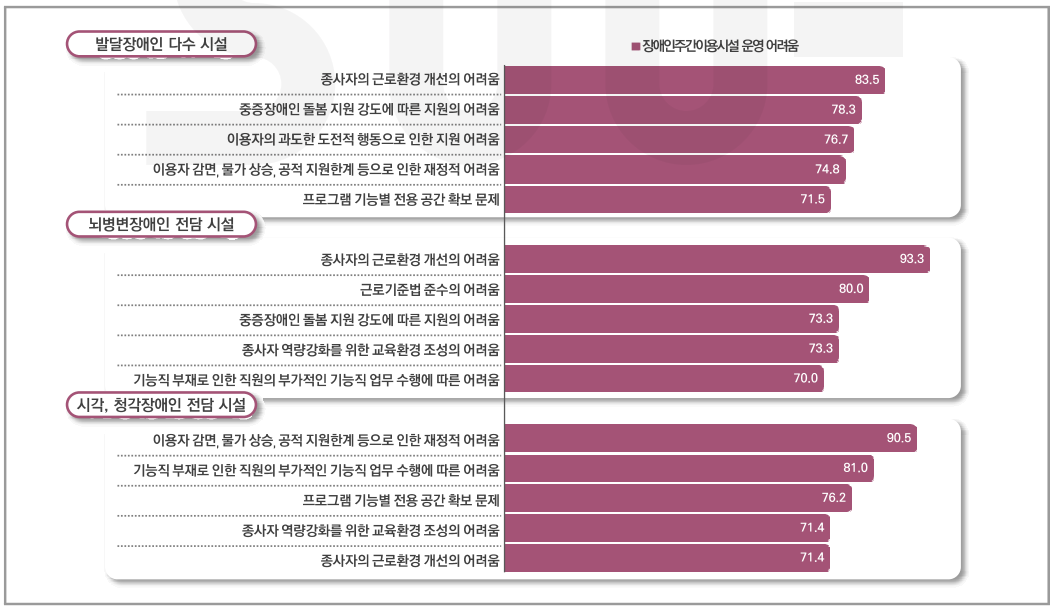
-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어려움’이 평균 83.6점(100점 환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도에 따른 지원 어려움’(76.7점), ‘이용자 감면, 물가상승, 공적 지원한계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73.9점), ‘프로그램 기능별 전용 공간 확보 문제’(70.6점) 등이 높게 나타남
  - 그 외 ‘이용자의 과도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69.4점), ‘기능직 부재로 인한 직원의 부가적 업무 수행에 따른 어려움’(69.2점), ‘과한 행정업무 처리의 어려움’(68.9점),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의 어려움’(68.6점) 등도 어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볼 때, 단독시설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도, 재정적 어려움, 부가적인 기능직 업무 수행, 프로그램 전용 공간 확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병설시설은 종사자 근로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도에 따른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시설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자치구 위탁시설은 타 유형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 과한 행정업무 처리, 근로기준법 준수, 종사자의 잦은 이직 및 구인 어려움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용자 특성별,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도, 이용자 도전적 행동 등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이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 부가적인 기능직 업무 수행, 과한 행정업무, 프로그램 전용 공간 확보 문제 등도 높게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종사자 환경(근로환경 개선, 교육환경 조성, 근로기준법 준수)과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도 어려움 등이 높게 나타남
  -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개발 확보,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 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점)



❙그림 3-22❙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_전체(상위 10순위)

(단위: 점)



❙그림 3-2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표 3-65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_전체

(단위: 개소, %, 점)

구분	운영 정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100점 평균
	n	%	n	%	n	%	n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설비 보강	(15)	12.5	(38)	31.7	(43)	35.8	(24)	20.0	54.4
프로그램 기능별 전용 공간 확보 문제	(6)	5.0	(18)	15.0	(52)	43.3	(44)	36.7	70.6
이용자 감면, 물가 상승, 공적 지원한계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3)	2.5	(15)	12.5	(55)	45.8	(47)	39.2	73.9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	(14)	11.7	(46)	38.3	(46)	38.3	(14)	11.7	50.0
자치구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	(5)	4.2	(44)	36.7	(48)	40.0	(23)	19.2	58.1
종사자의 잦은 이직 및 구인 어려움	(9)	7.5	(30)	25.0	(41)	34.2	(40)	33.3	64.4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도에 따른 지원의 어려움	(3)	2.5	(14)	11.7	(47)	39.2	(56)	46.7	76.7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의 어려움	(2)	1.7	(24)	20.0	(59)	49.2	(35)	29.2	68.6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의 어려움	(0)	0.0	(8)	6.7	(43)	35.8	(69)	57.5	83.6
근로기준법 준수의 어려움	(7)	5.8	(31)	25.8	(44)	36.7	(38)	31.7	64.7
과한 행정업무 처리의 어려움	(5)	4.2	(22)	18.3	(53)	44.2	(40)	33.3	68.9
이용자의 과도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	(8)	6.7	(17)	14.2	(52)	43.3	(43)	35.8	69.4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	(12)	10.0	(32)	26.7	(58)	48.3	(18)	15.0	56.1
이용자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따른 보건전문영역 서비스 지원과 관리 한계	(6)	5.0	(32)	26.7	(52)	43.3	(30)	25.0	62.8
이용자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대한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	(6)	5.0	(38)	31.7	(51)	42.5	(25)	20.8	59.7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의 어려움	(2)	1.7	(32)	26.7	(63)	52.5	(23)	19.2	63.1
확대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의 바우처 제공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6)	5.0	(33)	27.5	(55)	45.8	(26)	21.7	61.4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어려움	(3)	2.5	(40)	33.3	(59)	49.2	(18)	15.0	58.9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을 위한 자원 개발 및 확보의 어려움	(3)	2.5	(28)	23.3	(59)	49.2	(30)	25.0	65.6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	(8)	6.7	(34)	28.3	(52)	43.3	(26)	21.7	60.0
기능직 부재로 인한 직원의 부가적인 기능직 업무 수행에 따른 어려움	(5)	4.2	(26)	21.7	(44)	36.7	(45)	37.5	69.2
기타(n=11)	(2)	18.2	(2)	18.2	(0)	0.0	(7)	63.6	69.7

*기타 어려움 : 종사자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 등

▌표 3-66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어려움_시설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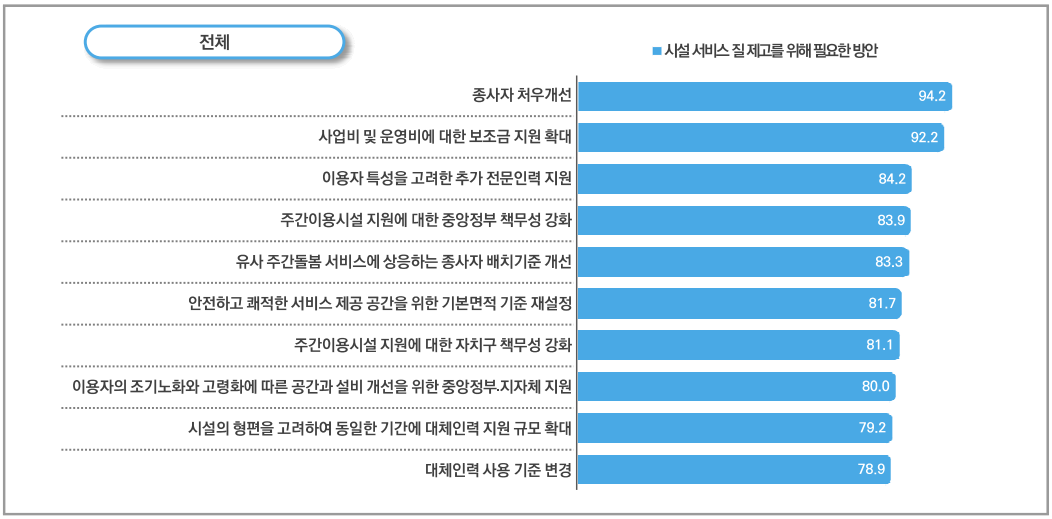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운영 형태별(100점 평균)			이용자 특성별 시설유형(100점 평균)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발달 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시각 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설비 보강	58.0	42.7	52.4	56.3	26.7	66.7	66.7
프로그램 기능별 전용 공간 확보 문제	71.6	68.0	66.7	71.5	56.7	66.7	100.0
이용자 감면, 물가 상승, 공적 지원한계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76.1	61.3	90.5	74.8	53.3	86.7	100.0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	52.3	37.3	66.7	51.1	36.7	53.3	50.0
자치구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	61.7	45.3	57.1	58.3	50.0	53.3	100.0
종사자의 잦은 이직 및 구인 어려움	65.9	54.7	81.0	66.0	56.7	40.0	83.3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도에 따른 지원의 어려움	78.4	69.3	81.0	78.3	73.3	46.7	83.3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의 어려움	67.4	70.7	76.2	68.0	73.3	73.3	66.7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의 어려움	82.6	85.3	90.5	83.5	93.3	66.7	83.3
근로기준법 준수의 어려움	65.5	57.3	81.0	64.1	80.0	46.7	66.7
과한 행정업무 처리의 어려움	69.3	62.7	85.7	70.2	63.3	60.0	50.0
이용자의 과도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	70.8	62.7	76.2	76.7	36.7	13.3	0.0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	57.2	52.0	57.1	61.5	33.3	13.3	0.0
이용자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따른 보건전문영역 서비스 지원과 관리 한계	65.5	54.7	57.1	65.4	46.7	53.3	33.3
이용자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대한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	63.6	50.7	42.9	62.1	53.3	40.0	16.7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의 어려움	64.4	60.0	57.1	63.1	63.3	60.0	66.7
확대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의 바우처 제공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64.8	52.0	52.4	63.8	53.3	26.7	66.7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어려움	62.1	52.0	42.9	58.9	60.0	53.3	66.7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을 위한 자원 개발 및 확보의 어려움	67.8	58.7	61.9	65.4	63.3	66.7	83.3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	60.6	58.7	57.1	59.2	63.3	60.0	83.3
기능직 부재로 인한 직원의 부가적인 기능직 업무 수행에 따른 어려움	74.6	52.0	61.9	68.3	70.0	86.7	66.7
기타(n=11)	74.1	0.0	100.0	76.7	0.0	-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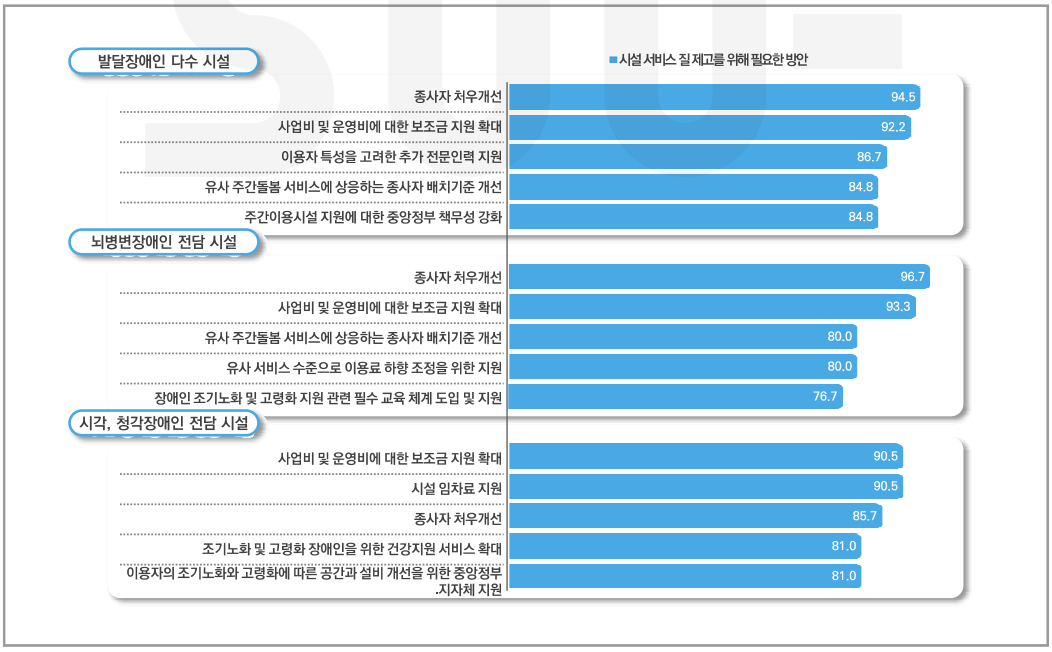
-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종사자 처우개선'(94.2점)과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92.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추가 전문인력 지원'(84.2점), '유사 주간돌봄서비스에 상응하는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83.3점),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책무성 강화'(83.9점)와 '자치구 책무성 강화'(81.1점),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 공간을 위한 기본면적 기준 재설정'(81.7점) 등이 높게 나타남
- 이상 전체 평균이 높은 항목은 대부분의 시설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를 제외하고, 시설유형별로 차이 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운영 형태별로 단독시설은 이용자 조기노화 및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조기노화 및 고령화 대응 : 공간과 설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84.1점, 보건영역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82.6점,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79.9점 등)
  - 병설시설은 시설 전체 공통사항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자치구 위탁시설은 '대체인력' 지원규모 확대(90.5점) 및 사용 기준 변경(85.7점), '도전적 행동관련 필수 교육 체계 도입 및 지원'(81.0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지원'(81.0점) 등이 높게 나타남
- 이용자 특성별,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도전적 행동관련 필수 교육 체계 도입 및 지원'(81.2점)과 '이용자 조기노화 및 고령화에 따른 공간과 설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80.6점), 대체인력 지원규모 확대(80.3점) 및 사용 기준 변경(79.6점) 등이 높게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유사 서비스 수준으로 이용료 하향 조정을 위한 지원'(80.0점)이 높게 나타남
  -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이용자 조기노화 및 고령화에 따른 '공간과 설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 '보건영역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높게 나타남

(단위: 점)



❙그림 3-24❙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_전체(상위 10순위)

(단위: 점)



❙그림 3-25❙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표 3-67▐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_전체

(단위: 개소, %, 점)

구분	필요 정도								100점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n	%	n	%	n	%	n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 및 역할 재정립	(2)	1.7	(13)	10.8	(71)	59.2	(34)	28.3	71.4
집단 프로그램 진행 시 최대 이용자 규모 제한 설정	(5)	4.2	(33)	27.5	(61)	50.8	(21)	17.5	60.6
시설 내 서비스 제공 보다는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활성화	(3)	2.5	(18)	15.0	(66)	55.0	(33)	27.5	69.2
이용자 욕구를 이용한 유연한 서비스 제공시간	(25)	20.8	(46)	38.3	(40)	33.3	(9)	7.5	42.5
조기노화 및 고령화 장애인을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1)	0.8	(5)	4.2	(68)	56.7	(46)	38.3	77.5
이용자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따른 공간과 설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1)	0.8	(5)	4.2	(59)	49.2	(55)	45.8	80.0
이용자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따른 보건영역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1)	0.8	(6)	5.0	(62)	51.7	(51)	42.5	78.6
도전적 행동 관련 필수 교육 체계 도입 및 지원	(8)	6.7	(11)	9.2	(44)	36.7	(57)	47.5	75.0
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령화 지원 관련 필수 교육 체계 도입 및 지원	(1)	0.8	(9)	7.5	(60)	50.0	(50)	41.7	77.5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지원	(3)	2.5	(4)	3.3	(60)	50.0	(53)	44.2	78.6
유사 주간돌봄서비스에 상응하는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1)	0.8	(7)	5.8	(43)	35.8	(69)	57.5	83.3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추가 전문인력 지원	(2)	1.7	(7)	5.8	(37)	30.8	(74)	61.7	84.2
종사자 처우개선	(1)	0.8	(0)	0.0	(18)	15.0	(101)	84.2	94.2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 공간을 위한 기본면적 기준 재설정	(3)	2.5	(7)	5.8	(43)	35.8	(67)	55.8	81.7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1)	0.8	(0)	0.0	(25)	20.8	(94)	78.3	92.2
시설 임차료 지원	(14)	11.7	(7)	5.8	(27)	22.5	(72)	60.0	76.9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자치구 책무성 강화	(1)	0.8	(8)	6.7	(49)	40.8	(62)	51.7	81.1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책무성 강화	(1)	0.8	(5)	4.2	(45)	37.5	(69)	57.5	83.9
유사 서비스 수준으로 이용료 하향 조정을 위한 지원	(4)	3.3	(15)	12.5	(42)	35.0	(59)	49.2	76.7
대체인력 사용 기준 변경	(1)	0.8	(14)	11.7	(45)	37.5	(60)	50.0	78.9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간에 대체인력 지원 규모 확대	(1)	0.8	(11)	9.2	(50)	41.7	(58)	48.3	79.2
기타(n=10)	(2)	20.0	(0)	0.0	(2)	20.0	(6)	60.0	73.3

*서비스 질 제고방안 기타 의견 : 종사자 근로 조건 개선, 장기근속 직원 승급 및 수당 체계 마련 등

표 3-68 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_시설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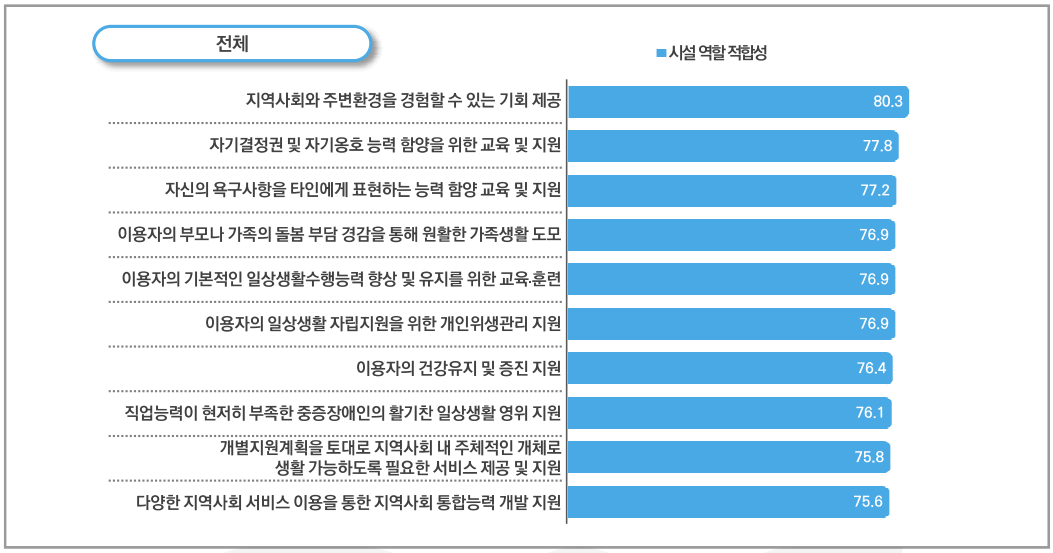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운영 형태별(100점 평균)			이용자 특성별 시설유형(100점 평균)			
	단독 시설	병설 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발달 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시각 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 및 역할 재정립	71.2	72.0	71.4	72.2	70.0	60.0	66.7
집단 프로그램 진행 시 최대 이용자 규모 제한 설정	60.2	62.7	57.1	62.1	50.0	46.7	66.7
시설 내 서비스 제공 보다는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활성화	69.3	68.0	71.4	71.5	60.0	40.0	66.7
이용자 욕구를 이용한 유연한 서비스 제공시간	43.2	42.7	33.3	44.3	36.7	20.0	33.3
조기노화 및 고령화 장애인을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79.9	70.7	71.4	78.0	70.0	80.0	83.3
이용자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따른 공간과 설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84.1	69.3	66.7	80.6	73.3	80.0	83.3
이용자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따른 보건영역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82.6	68.0	66.7	79.0	73.3	80.0	83.3
도전적 행동 관련 필수 교육 체계 도입 및 지원	73.9	77.3	81.0	81.2	56.7	13.3	0.0
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령화 지원 관련 필수 교육 체계 도입 및 지원	78.8	74.7	71.4	79.0	76.7	53.3	66.7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지원	78.4	78.7	81.0	79.6	70.0	73.3	83.3
유사 주간돌봄서비스에 상응하는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83.7	81.3	85.7	84.8	80.0	60.0	83.3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추가 전문인력 지원	83.7	82.7	95.2	86.7	76.7	46.7	83.3
종사자 처우개선	93.6	94.7	100.0	94.5	96.7	80.0	100.0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 공간을 위한 기본면적 기준 재설정	80.3	84.0	90.5	83.8	63.3	66.7	100.0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91.7	92.0	100.0	92.2	93.3	86.7	100.0
시설 임차료 지원	79.9	68.0	71.4	78.3	53.3	86.7	100.0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자치구 책무성 강화	81.8	80.0	76.2	81.9	73.3	73.3	100.0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책무성 강화	84.1	84.0	81.0	84.8	76.7	73.3	100.0
유사 서비스 수준으로 이용료 하향 조정을 위한 지원	77.7	74.7	71.4	76.7	80.0	60.0	100.0
대체인력 사용 기준 변경	79.2	76.0	85.7	79.6	73.3	66.7	100.0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간에 대체인력 지원 규모 확대	78.8	77.3	90.5	80.3	76.7	60.0	83.3
기타(n=10)	76.2	50.0	100.0	81.5	0.0	-	-

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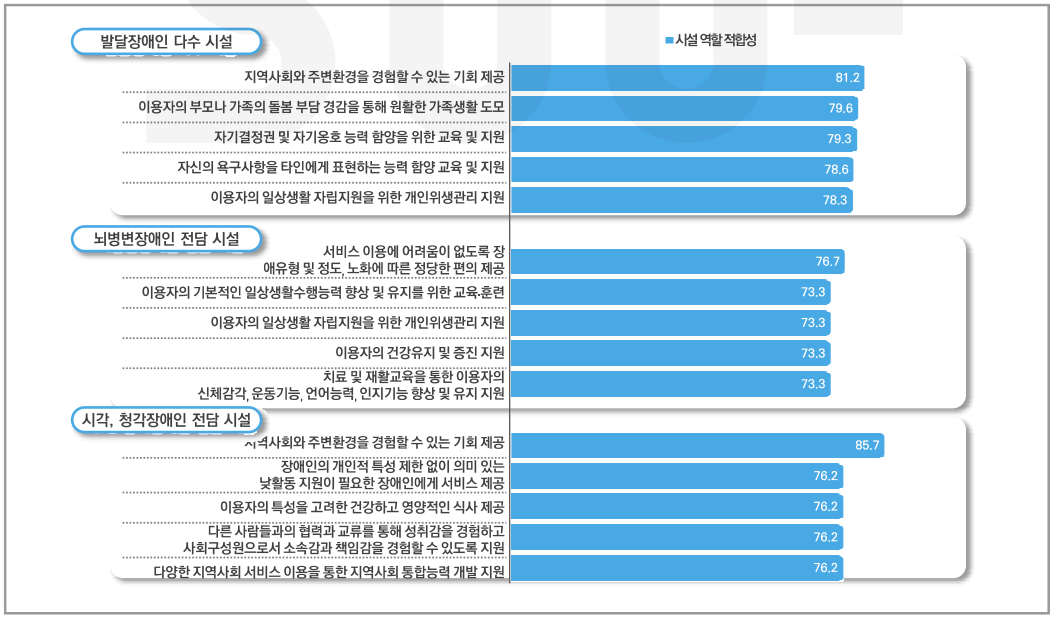
- 현재 및 향후 중앙정부·서울시 주간돌봄서비스 정책 방향을 고려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적합성은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80.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77.8점), '자신의 욕구사항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능력 함양 교육 및 지원'(77.2점), '이용자의 부모나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원활한 가족생활 도모'(76.9점), '이용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76.9점), '이용자의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76.9점) 등이 높게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단독시설은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병설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지원'이 높게 나타남
  - 단독시설은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81.1점), '이용자의 부모나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원활한 가족생활 도모'(77.7점),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77.3점) 등이 높게 나타남
  - 병설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지원'(81.3점), '이용자의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80.0점),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능력 함양 교육 및 지원'(80.0점),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80.0점) 등이 높게 나타남
- 이용자 특성별, 발달장애인다수시설은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81.2점)이 가장 높고, '이용자의 부모나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원활한 가족생활 도모'(79.6점),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79.3점) 등이 높게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노화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76.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86.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점)



❙그림 3-26❙ 시설 역할 적합성_전체(상위 10순위)

(단위: 점)



❙그림 3-27❙ 시설 역할 적합성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표 3-69 ▌ 시설 역할 적합성_전체

(단위: 개소, %, 점)

구분	적합성 정도								
	전혀 적합하지 않음		별로 적합하지 않음		적합한 편임		매우 적합함		100점 평균
	n	%	n	%	n	%	n	%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제한 없이 의미 있는 낮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4)	3.3	(11)	9.2	(58)	48.3	(47)	39.2	74.4
직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중증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생활 영위 지원	(3)	2.5	(9)	7.5	(59)	49.2	(49)	40.8	76.1
이용자의 부모나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원활한 가족생활 도모	(3)	2.5	(9)	7.5	(56)	46.7	(52)	43.3	76.9
개별지원계획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 주체적인 개체로 생활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지원	(4)	3.3	(7)	5.8	(61)	50.8	(48)	40.0	75.8
이용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2)	1.7	(6)	5.0	(65)	54.2	(47)	39.2	76.9
이용자의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3)	2.5	(5)	4.2	(64)	53.3	(48)	40.0	76.9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지원	(3)	2.5	(6)	5.0	(64)	53.3	(47)	39.2	76.4
조기노화 및 고령화 이용인을 위한 기초 보건요양 서비스 제공	(8)	6.7	(23)	19.2	(61)	50.8	(28)	23.3	63.6
조기노화 및 고령화 이용인을 위한 직접·연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10)	8.3	(28)	23.3	(54)	45.0	(28)	23.3	61.1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하고 영양적인 식사제공	(4)	3.3	(10)	8.3	(68)	56.7	(38)	31.7	72.2
치료 및 재활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신체감각, 운동기능, 언어능력,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 지원	(4)	3.3	(15)	12.5	(68)	56.7	(33)	27.5	69.4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5)	4.2	(7)	5.8	(67)	55.8	(41)	34.2	73.3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4)	3.3	(6)	5.0	(66)	55.0	(44)	36.7	75.0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능력 개발 지원	(4)	3.3	(8)	6.7	(60)	50.0	(48)	40.0	75.6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1.7	(6)	5.0	(53)	44.2	(59)	49.2	80.3
자신의 욕구사항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능력 함양 교육 및 지원	(1)	0.8	(8)	6.7	(63)	52.5	(48)	40.0	77.2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1)	0.8	(9)	7.5	(59)	49.2	(51)	42.5	77.8
직업생활과 관계있는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일상, 자기 효능감, 소속감, 책임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0)	8.3	(21)	17.5	(52)	43.3	(37)	30.8	65.6
장애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25)	20.8	(35)	29.2	(44)	36.7	(16)	13.3	47.5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노화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1)	0.8	(19)	15.8	(70)	58.3	(30)	25.0	69.2
쾌적한 시설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확보 및 구성	(3)	2.5	(16)	13.3	(57)	47.5	(44)	36.7	72.8
기타(n=7)	(2)	28.6	(0)	0.0	(2)	28.6	(3)	42.9	61.9

*시설 역할 적합성 기타 의견 : 개인별 서비스 지원,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위주 지원 등

▌표 3-70▐ 시설 역할 적합성_시설유형별

(단위: 점)

운영 어려움	운영 형태별 (100점 평균)			이용자 특성별 시설유형 (100점 평균)			
	단독시설	병설시설	자치구 위탁시설	발달 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시각 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제한 없이 의미 있는 낮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74.2	73.3	81.0	74.4	73.3	80.0	66.7
직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중증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생활 영위 지원	75.4	78.7	76.2	77.0	73.3	80.0	33.3
이용자의 부모나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원활한 가족생활 도모	77.7	74.7	76.2	79.6	56.7	80.0	33.3
개별지원계획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 주체적인 개체로 생활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지원	76.1	74.7	76.2	76.7	70.0	80.0	50.0
이용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76.9	78.7	71.4	78.0	73.3	80.0	33.3
이용자의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76.5	80.0	71.4	78.3	73.3	73.3	33.3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지원	75.0	81.3	76.2	77.0	73.3	80.0	50.0
조기노화 및 고령화 이용인을 위한 기초 보건요양 서비스 제공	62.9	69.3	52.4	63.8	56.7	80.0	50.0
조기노화 및 고령화 이용인을 위한 직접·연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1.4	65.3	42.9	61.2	60.0	66.7	50.0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하고 영양적인 식사제공	71.6	73.3	76.2	72.2	70.0	80.0	66.7
치료 및 재활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신체감각, 운동기능, 언어능력,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 지원	68.6	73.3	66.7	69.3	73.3	80.0	33.3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71.6	80.0	71.4	74.8	66.7	73.3	33.3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73.9	77.3	81.0	76.1	63.3	73.3	83.3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능력 개발 지원	74.6	76.0	85.7	76.4	66.7	73.3	83.3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81.1	77.3	81.0	81.2	66.7	86.7	83.3
자신의 욕구사항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능력 함양 교육 및 지원	76.5	80.0	76.2	78.6	70.0	66.7	66.7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77.3	80.0	76.2	79.3	70.0	66.7	66.7
직업생활과 관계있는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일상, 자기 효능감, 소속감, 책임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63.6	70.7	71.4	68.3	36.7	73.3	50.0
장애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44.7	57.3	47.6	49.8	30.0	40.0	33.3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노화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67.8	74.7	66.7	68.0	76.7	80.0	66.7
쾌적한 시설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확보 및 구성	73.5	73.3	61.9	73.1	73.3	80.0	33.3
기타(n=7)	72.2	0.0	-	72.2	0.0	-	-

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근로 현황

1) 종사자 일반 현황 및 기본 근로환경

(1) 종사자 일반 현황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2024년 기준 592명)의 약 84%(495명)가 설문에 참여·응답함
- 종사자(설문 참여자) 성별 분포는 여성(54.7%)이 남성(45.3%)보다 9.4% 많고, 연령대는 30대(40.4%), 40대(24.4%), 20대(19.2%), 50대(14.9%)순으로 30대가 가장 많음
  - 직종·직위별 : 응답자의 약 85%는 사회재활교사임. 사회재활교사(팀원 67.7%, 팀장급 16.8%), 사무원·기능직(8.1%), 시설장(7.5%)순으로 분포함
  - 이용자 특성 시설별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종사자가 87.9%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7.9%),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4.2%)순으로 분포함

▌표 3-71 ▌ 종사자 일반 현황

(단위: 명, %)

구분		시설 종사자 수(n)	비율(%)
전체		**(495)**	**100.0**
성별	남성	(224)	45.3
	여성	(271)	54.7
연령	20대	(95)	19.2
	30대	(200)	40.4
	40대	(121)	24.4
	50대	(74)	14.9
	60대	(5)	1.0
현 소속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37)	7.5
	사회재활교사(팀장급)	(83)	16.8
	사회재활교사(팀원)	(335)	67.7
	사무원, 기능직 등	(40)	8.1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35)	87.9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39)	7.9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5)	3.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6)	1.2

(2) 이직 계획

향후 이직 의향 여부

- 시설 종사자(응답자)의 약 20%는 향후 이직 의향이 있으며, 약 40%는 향후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이직 의향 : 있음 20.8%, 없음 42.4%, 모르겠음 36.8%
- 여성, 30·40대, 사회재활교사(팀원)의 이직 의향 '있음' 비율이 약 23~24%로 각 비교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성별 : 여성(23.6%), 남성(17.4%)
  - 연령대별 : 40대(24.0%), 30대(23.5%), 50대(16.2%), 20대(15.8%)순
  - 직종·직위별 : 사회재활교사(팀원 23.3%, 팀장 18.1%), 사무원·기능직(15.0%), 시설장(10.8%)순
  - 이용자 특성 시설별 : 시각장애인 전담시설(33.3%),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25.6%), 발달장애인 다수시설(20.0%)순

표 3-72 향후 이직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n	%	n	%	n	%
전체		**(495)**	**(103)**	**20.8**	**(210)**	**42.4**	**(182)**	**36.8**
성별	남성	(224)	(39)	17.4	(92)	41.1	(93)	41.5
	여성	(271)	(64)	23.6	(118)	43.5	(89)	32.8
연령	20대	(95)	(15)	15.8	(32)	33.7	(48)	50.5
	30대	(200)	(47)	23.5	(81)	40.5	(72)	36.0
	40대	(121)	(29)	24.0	(48)	39.7	(44)	36.4
	50대	(74)	(12)	16.2	(45)	60.8	(17)	23.0
	60대	(5)	(0)	0.0	(4)	80.0	(1)	20.0
현 소속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37)	(4)	10.8	(25)	67.6	(8)	21.6
	팀장급 사회재활교사	(83)	(15)	18.1	(43)	51.8	(25)	30.1
	사회재활교사	(335)	(78)	23.3	(128)	38.2	(129)	38.5
	사무원, 기능직 등	(40)	(6)	15.0	(14)	35.0	(20)	50.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35)	(87)	20.0	(191)	43.9	(157)	36.1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39)	(10)	25.6	(15)	38.5	(14)	35.9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5)	(5)	33.3	(3)	20.0	(7)	46.7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6)	(1)	16.7	(1)	16.7	(4)	66.7

향후 이직 의향 주요 배경

- 향후 이직 의향이 있는 종사자의 이직 이유(중복응답)를 살펴보면 '번아웃'이 46.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열악한 처우'(39.8%), '과중한 업무'(22.3%), '높은 노동 강도'(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행 업무와 본인 전문성과 괴리'(12.6%), '유사기관의 근무조건 우월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2.6%), 발달장애인 지원 어려움(10.7%) 등도 10% 이상임
- '번아웃'(남녀 비슷)을 제외하고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은 열악한 처우,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이직 의향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높은 노동 강도, 과중한 업무, 발달장애인 지원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이직 의향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남성 : 번아웃(46.2%), 열악한 처우(46.2%), 과중한 업무(17.9%), 상대적 박탈감(15.4%), 높은 노동 강도(12.8%), 업무와 전문성 괴리(12.8%)순
  - 여성 : 번아웃(46.9%), 열악한 처우(35.9%), 높은 노동 강도(26.6%), 과중한 업무(25.0%), 업무와 전문성 괴리(12.5%), 발달장애인 지원 어려움(12.5%)순
- 연령대별로 30·40대의 절반 이상이 '번아웃'으로 인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과중한 업무, 20대는 번아웃과 열악한 처우가 높게 나타남
  - 20대 : 번아웃(33.3%), 열악한 처우(33.3%), 높은 노동 강도(20%), 발달장애인 지원 어려움(20%)순
  - 30대 : 번아웃(51.1%), 열악한 처우(42.6%), 높은 노동 강도(25.5%)순
  - 40대 : 번아웃(51.7%), 열악한 처우(41.4%), 과중한 업무(27.6%)순
  - 50대 : 과중한 업무(41.7%), 번아웃(33.3%), 열악한 처우(33.3%)순
- 직종·직위별로 시설장은 '과중한 업무', 사회재활교사(팀장, 팀원)는 '번아웃', 사무원·기능직 등은 '열악한 처우'로 향후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팀장급 사회재활교사의 '번아웃'은 매우 높게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장) : 번아웃(66.7%), 열악한 처우(46.7%), 높은 노동 강도(40%), 과중한 업무(33.3%), 상대적 박탈감(26.7%)순
  - 사회재활교사(팀원) : 번아웃(43.6%), 열악한 처우(37.2%), 높은 노동 강도(17.9%), 과중한 업무(17.9%)순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번아웃(46.0%), 열악한 처우(37.9%), 높은 노동 강도(20.7%), 과중한 업무(18.4%), 상대적 박탈감(13.8%)순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 시설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이직 고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3▐ 향후 이직 의향 주요 배경_1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번아웃		열악한 처우		과중한 업무		높은 노동 강도		수행 업무와 본인 전문성 과의 괴리	
			n	%	n	%	n	%	n	%	n	%
전체		**(103)**	**(48)**	**46.6**	**(41)**	**39.8**	**(23)**	**22.3**	**(22)**	**21.4**	**(13)**	**12.6**
성별	남성	(39)	(18)	46.2	(18)	46.2	(7)	17.9	(5)	12.8	(5)	12.8
	여성	(64)	(30)	46.9	(23)	35.9	(16)	25.0	(17)	26.6	(8)	12.5
연령	20대	(15)	(5)	33.3	(5)	33.3	(2)	13.3	(3)	20.0	(2)	13.3
	30대	(47)	(24)	51.1	(20)	42.6	(8)	17.0	(12)	25.5	(3)	6.4
	40대	(29)	(15)	51.7	(12)	41.4	(8)	27.6	(5)	17.2	(6)	20.7
	50대	(12)	(4)	33.3	(4)	33.3	(5)	41.7	(2)	16.7	(2)	16.7
	60대	(0)	(0)	0.0	(0)	0.0	(0)	0.0	(0)	0.0	(0)	0.0
현 소속 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4)	(2)	50.0	(2)	50.0	(3)	75.0	(1)	25.0	(1)	25.0
	사회재활교사(팀장급)	(15)	(10)	66.7	(7)	46.7	(5)	33.3	(6)	40.0	(2)	13.3
	사회재활교사(팀원)	(78)	(34)	43.6	(29)	37.2	(14)	17.9	(14)	17.9	(10)	12.8
	사무원, 기능직 등	(6)	(2)	33.3	(3)	50.0	(1)	16.7	(1)	16.7	(0)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87)	(40)	46.0	(33)	37.9	(16)	18.4	(18)	20.7	(11)	12.6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5)	50.0	(6)	60.0	(4)	40.0	(3)	30.0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3)	60.0	(1)	20.0	(3)	60.0	(1)	20.0	(1)	2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1)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향후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103명)의 이직 의향 배경임(복수응답)

▌표 3-74 ▌ 향후 이직 의향 주요 배경_2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유사기관의 근무조건 우월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발달 장애인 지원 어려움		자기계발 기회 부족		자유로운 연차, 교육시간 사용 어려움		조기노화 및 고령 이용인 지원 어려움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103)**	**(13)**	**12.6**	**(11)**	**10.7**	**(7)**	**6.8**	**(5)**	**4.9**	**(2)**	**1.9**	**(27)**	**26.2**
성별	남성	(39)	(6)	15.4	(3)	7.7	(4)	10.3	(1)	2.6	(0)	0.0	(13)	33.3
	여성	(64)	(7)	10.9	(8)	12.5	(3)	4.7	(4)	6.3	(2)	3.1	(14)	21.9
연령	20대	(15)	(2)	13.3	(3)	20.0	(1)	6.7	(1)	6.7	(0)	0.0	(4)	26.7
	30대	(47)	(6)	12.8	(4)	8.5	(3)	6.4	(1)	2.1	(0)	0.0	(12)	25.5
	40대	(29)	(4)	13.8	(2)	6.9	(2)	6.9	(1)	3.4	(1)	3.4	(7)	24.1
	50대	(12)	(1)	8.3	(2)	16.7	(1)	8.3	(2)	16.7	(1)	8.3	(4)	33.3
	60대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현 소속 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4)	(0)	0.0	(2)	50.0	(0)	0.0	(0)	0.0	(0)	0.0	(1)	25.0
	사회재활교사(팀장급)	(15)	(4)	26.7	(1)	6.7	(0)	0.0	(1)	6.7	(1)	6.7	(2)	13.3
	사회재활교사(팀원)	(78)	(8)	10.3	(6)	7.7	(7)	9.0	(4)	5.1	(1)	1.3	(24)	30.8
	사무원, 기능직 등	(6)	(1)	16.7	(2)	33.3	(0)	0.0	(0)	0.0	(0)	0.0	(0)	0.0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87)	(12)	13.8	(11)	12.6	(6)	6.9	(4)	4.6	(2)	2.3	(22)	25.3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10)	(1)	10.0	(0)	0.0	(0)	0.0	(1)	10.0	(0)	0.0	(2)	2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5)	(0)	0.0	(0)	0.0	(1)	20.0	(0)	0.0	(0)	0.0	(2)	40.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기타 응답 : 계약 종료, 다양한 경험을 위한 이직, 갑질, 이사 등

(3) 시간 외 근무

실제 초과근무 시간

- 2025년 6월 기준, 시설 종사자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은 월 평균 15.6시간으로 나타남. 직종·직위별로 팀장급 사회재활교사의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 : 사회재활교사(팀장 18.7시간, 팀원 15.2시간), 시설장 14.9시간, 사무원·기능직 등 12.6시간순
- 시설유형별로 볼 때 단독시설,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종사자의 초과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운영 형태 : 단독시설(16.9시간), 자치구 위탁시설(14.6시간), 병설시설(11시간)순
  - 이용자 특성 : 시각장애인시설(27.9시간), 청각장애인시설(27.2시간), 뇌병변장애인시설(18.9시간), 발달장애인 다수시설(14.7시간)순

▌표 3-75 ▌ 실제 초과근무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 수	평균 초과근무 시간
전체		**(495)**	**15.6**
현 소속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37)	14.9
	사회재활교사(팀장급)	(83)	18.7
	사회재활교사(팀원)	(335)	15.2
	사무원, 기능직 등	(40)	12.6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35)	14.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39)	18.9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5)	27.9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6)	27.2
운영 형태	단독시설	(370)	16.9
	병설시설	(105)	11.0
	자치구 위탁시설	(20)	14.6

인정시간 외 초과근무 보상

- 시설 종사자의 인정 시간(월 15시간) 외 초과근무 시 '별다른 보상이 없다'는 응답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장의 81%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 : 자치구 위탁시설(65.0%), 단독시설(63.8%), 병설시설(56.2%)
  - 이용자 특성 : 청각장애인 전담시설(83.3%), 발달장애인 다수시설(63.4%),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53.8%), 시각장애인 전담시설(40.0%)
  - 건물 소유 형태 : 반전세(81.8%), 무상임대(61.7%), 월세(59.6%)
- 인정시간 외 초과근무 시 보상이 있는 경우(중복응답) '대체휴무 제공'(21.0%), '자치구 일정부분 초과수당 지원'(6.5%), '근무 시간 조정'(6.1%), '시설에서 일정부분 초과수당 지원'(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간보상(대체휴무, 근무 시간 조정)과 수당지급(자치구, 시설, 법인)으로 구분 시
  - 팀장급 사회재활교사는 수당지급(3.6%)은 거의 없이 시간보상(32.5%)으로 초과근무 보상이 이루어짐
  - 사회재활교사 팀원은 시간보상(28.7%), 수당지급(15.6%)으로 나타남
  - 사무원·기능직 등은 수당지급(25.0%), 시간보상(15.0%)으로 수당지급 보상 비율이 사회재활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6 ▌ 인정 시간 외 초과근무 시간보상 1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없음		대체휴무 제공		자치구 일정 부분 초과수당 지원		근무 시간 조정	
			n	%	n	%	n	%	n	%
전체		**(495)**	**(308)**	**62.2**	**(104)**	**21.0**	**(32)**	**6.5**	**(30)**	**6.1**
현 소속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37)	(30)	81.1	(3)	8.1	(2)	5.4	(2)	5.4
	사회재활교사(팀장급)	(83)	(52)	62.7	(24)	28.9	(0)	0.0	(3)	3.6
	사회재활교사(팀원)	(335)	(202)	60.3	(72)	21.5	(24)	7.2	(24)	7.2
	사무원, 기능직 등	(40)	(24)	60.0	(5)	12.5	(6)	15.0	(1)	2.5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35)	(276)	63.4	(93)	21.4	(25)	5.7	(28)	6.4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39)	(21)	53.8	(8)	20.5	(4)	10.3	(0)	0.0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5)	(6)	40.0	(3)	20.0	(2)	13.3	(2)	13.3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6)	(5)	83.3	(0)	0.0	(1)	16.7	(0)	0.0
운영 형태	단독시설	(370)	(236)	63.8	(74)	20.0	(20)	5.4	(22)	5.9
	병설시설	(105)	(59)	56.2	(25)	23.8	(11)	10.5	(8)	7.6
	자치구 위탁시설	(20)	(13)	65.0	(5)	25.0	(1)	5.0	(0)	0.0
건물 소유 형태	전세	(3)	(2)	66.7	(0)	0.0	(0)	0.0	(0)	0.0
	반전세	(22)	(18)	81.8	(3)	13.6	(0)	0.0	(1)	4.5
	월세	(104)	(62)	59.6	(19)	18.3	(8)	7.7	(8)	7.7
	무상임대	(366)	(226)	61.7	(82)	22.4	(24)	6.6	(21)	5.7

*복수응답

▌표 3-77 ▌ 인정 시간 외 초과근무 시간보상 2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시설에서 일정 부분 초과수당 지원		법인에서 일정 부분 초과수당 지원		기타	
			n	%	n	%	n	%
전체		**(495)**	**(27)**	**5.5**	**(8)**	**1.6**	**(21)**	**4.2**
현소속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37)	(0)	0.0	(0)	0.0	(2)	5.4
	사회재활교사(팀장급)	(83)	(2)	2.4	(1)	1.2	(4)	4.8
	사회재활교사(팀원)	(335)	(21)	6.3	(7)	2.1	(13)	3.9
	사무원, 기능직 등	(40)	(4)	10.0	(0)	0.0	(2)	5.0
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35)	(22)	5.1	(7)	1.6	(19)	4.4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39)	(4)	10.3	(1)	2.6	(1)	2.6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5)	(1)	6.7	(0)	0.0	(1)	6.7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6)	(0)	0.0	(0)	0.0	(0)	0.0
운영 형태	단독시설	(370)	(16)	4.3	(5)	1.4	(18)	4.9
	병설시설	(105)	(8)	7.6	(3)	2.9	(3)	2.9
	자치구 위탁시설	(20)	(3)	15.0	(0)	0.0	(0)	0.0
건물 소유 형태	전세	(3)	(0)	0.0	(0)	0.0	(1)	33.3
	반전세	(22)	(0)	0.0	(0)	0.0	(0)	0.0
	월세	(104)	(6)	5.8	(1)	1.0	(6)	5.8
	무상임대	(366)	(21)	5.7	(7)	1.9	(14)	3.8

*기타응답 :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모름, 인정 시간 외 초과근무 없음, 직원 인건비 관련 지정후원금 집행 등

초과근무 시 주요 수행 업무

○ 초과근무 시 주요 수행 업무(중복응답)는 '서비스 제공 관련 문서 작성'(71.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계획서 기획 및 평가 보고서 작성'(59.4%), '재정회계 관리'(26.3%), '행정기관, 법인, 각종 위원회 제출자료 작성'(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제공 관련문서 작성(㉮)'과 '사업계획서 기획 및 평가 보고서 작성(㉯)'은 직종·직위에 상관없이 초과근무 시 수행 업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시설장 : ㉮, ㉯, 각종 위원회 제출자료 작성, 재정회계 관리, 시설관리순
- 사회재활교사(팀장) : ㉮, ㉯, 재정회계 관리, 각종 위원회 제출자료 작성, 기관 및 사업 홍보 관리순
- 사회재활교사(팀원) : ㉮, ㉯, 기관 및 사업 홍보 관리, 시설관리순
- 사무원·기능직 등 : ㉮, ㉯, 재정회계 관리, 각종 위원회 제출자료 작성순

▌표 3-78▐ 초과근무 시 주요 수행 업무 1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서비스 제공 관련 문서 작성		사업계획서 기획 및 평가 보고서 작성		재정회계 관리		행정기관, 법인, 각종 위원회 제출자료 작성		시설관리	
			n	%	n	%	n	%	n	%	n	%
전체		**(495)**	**(355)**	**71.7**	**(294)**	**59.4**	**(130)**	**26.3**	**(125)**	**25.3**	**(55)**	**11.1**
현 소속 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37)	(11)	29.7	(18)	48.6	(19)	51.4	(21)	56.8	(2)	5.4
	사회재활교사(팀장급)	(83)	(57)	68.7	(49)	59.0	(45)	54.2	(42)	50.6	(3)	3.6
	사회재활교사(팀원)	(335)	(259)	77.3	(203)	60.6	(61)	18.2	(55)	16.4	(38)	11.3
	사무원, 기능직 등	(40)	(28)	70.0	(24)	60.0	(5)	12.5	(7)	17.5	(12)	30.0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35)	(317)	72.9	(260)	59.8	(112)	25.7	(110)	25.3	(51)	11.7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39)	(25)	64.1	(22)	56.4	(11)	28.2	(10)	25.6	(2)	5.1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5)	(10)	66.7	(8)	53.3	(5)	33.3	(4)	26.7	(1)	6.7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6)	(3)	50.0	(4)	66.7	(2)	33.3	(1)	16.7	(1)	16.7

*복수응답

▌표 3-79▐ 초과근무 시 주요 수행 업무 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기관 및 사업홍보 관리		지식관리		인사관리		이용자 만족도 관리		외부 자원관리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495)**	**(44)**	**8.9**	**(31)**	**6.3**	**(28)**	**5.7**	**(27)**	**5.5**	**(19)**	**3.8**	**(43)**	**8.7**
현 소속 시설 직종 및 직위	시설장	(37)	(3)	8.1	(4)	10.8	(12)	32.4	(1)	2.7	(2)	5.4	(5)	13.5
	사회재활교사(팀장급)	(83)	(2)	2.4	(5)	6.0	(14)	16.9	(1)	1.2	(5)	6.0	(5)	6.0
	사회재활교사(팀원)	(335)	(38)	11.3	(20)	6.0	(2)	0.6	(21)	6.3	(11)	3.3	(27)	8.1
	사무원, 기능직 등	(40)	(1)	2.5	(2)	5.0	(0)	0.0	(4)	10.0	(1)	2.5	(6)	15.0
이용인 특성별 시설 유형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435)	(40)	9.2	(30)	6.9	(25)	5.7	(20)	4.6	(17)	3.9	(36)	8.3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39)	(2)	5.1	(1)	2.6	(2)	5.1	(4)	10.3	(2)	5.1	(4)	10.3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15)	(1)	6.7	(0)	0.0	(0)	0.0	(2)	13.3	(0)	0.0	(2)	13.3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6)	(1)	16.7	(0)	0.0	(1)	16.7	(1)	16.7	(0)	0.0	(1)	16.7

*기타응답 : '1박 2일 여행 등 행사 진행', '사회복무요원 관리', '서류검토' 등

2)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교육 이수 수준

- 시설 종사자의 현재 교육 이수 수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이해 관련(장애인 인권, 유형 이해, 자기결정권 지원)교육과 재난/질병 대처 교육이 높게 나타남
  - 항목별 점수(100점 환산)는 '장애인 인권교육'(84.8점)이 가장 높고,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75.9점),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75.0점),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74.2점),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 대처 교육'(71.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53.7점),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54.6점),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55.4점) 등의 교육 이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장애인 이해 관련(장애인 인권, 유형 이해,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은 시설유형 및 직종·직위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 시설장은 '업무관련 회계·행정 교육' 이수 수준이 높고, 팀장급 사회재활교사와 사무원·기능직 등은 '화재·재난 대처 교육'과 '감염질병 확산예방 대처 교육' 이수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3-80 ▌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현재 이수 수준

(단위: 명, %, 점)

교육내용	현재 교육 이수 수준								100점 평균
	미실행		부족		보통		충분		
	n	%	n	%	n	%	n	%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14)	2.8	(26)	5.3	(264)	53.3	(191)	38.6	75.9
장애인 인권교육	(5)	1.0	(11)	2.2	(188)	38.0	(291)	58.8	84.8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18)	3.6	(39)	7.9	(251)	50.7	(187)	37.8	74.2
장애인 성교육	(32)	6.5	(70)	14.1	(233)	47.1	(160)	32.3	68.4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19)	3.8	(90)	18.2	(250)	50.5	(136)	27.5	67.2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67)	13.5	(138)	27.9	(197)	39.8	(93)	18.8	54.6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60)	12.1	(133)	26.9	(210)	42.4	(92)	18.6	55.8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53)	10.7	(111)	22.4	(238)	48.1	(93)	18.8	58.3
약물복용 관리 교육	(48)	9.7	(110)	22.2	(238)	48.1	(99)	20.0	59.5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32)	6.5	(83)	16.8	(259)	52.3	(121)	24.4	64.9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68)	13.7	(104)	21.0	(235)	47.5	(88)	17.8	56.4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48)	9.7	(75)	15.2	(266)	53.7	(106)	21.4	62.3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36)	7.3	(61)	12.3	(260)	52.5	(138)	27.9	67.0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29)	5.9	(70)	14.1	(264)	53.3	(132)	26.7	66.9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19)	3.8	(65)	13.1	(260)	52.5	(151)	30.5	69.9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41)	8.3	(95)	19.2	(254)	51.3	(105)	21.2	61.8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73)	14.7	(133)	26.9	(203)	41.0	(86)	17.4	53.7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58)	11.7	(133)	26.9	(222)	44.8	(82)	16.6	55.4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63)	12.7	(115)	23.2	(225)	45.5	(92)	18.6	56.6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61)	12.3	(134)	27.1	(206)	41.6	(94)	19.0	55.8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52)	10.5	(115)	23.2	(242)	48.9	(86)	17.4	57.7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57)	11.5	(110)	22.2	(229)	46.3	(99)	20.0	58.2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10)	2.0	(47)	9.5	(247)	49.9	(191)	38.6	75.0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19)	3.8	(54)	10.9	(257)	51.9	(165)	33.3	71.6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43)	8.7	(109)	22.0	(236)	47.7	(107)	21.6	60.7
슈퍼비전 제공 방법	(53)	10.7	(105)	21.2	(236)	47.7	(101)	20.4	59.3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34)	6.9	(91)	18.4	(257)	51.9	(113)	22.8	63.6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52)	10.5	(101)	20.4	(243)	49.1	(99)	20.0	59.5
영양관리 교육	(64)	12.9	(109)	22.0	(235)	47.5	(87)	17.6	56.6
기타(n=39)	(15)	38.5	(11)	28.2	(8)	20.5	(5)	12.8	35.9

*기타 응답 : 보호자 교육, 직장생활 예절 및 소통,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 필요수준

- 종사자 개인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도전적 행동 이해 및 대응,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등이 높게 나타남
  - 항목별 교육 필요수준 점수(100점 환산)는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79.6점)이 가장 높고,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78.0점),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77.3점),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76.2점),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수준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직종·직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교육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그 외, 시설장은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슈퍼비전 제공 방법,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등의 교육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장)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슈퍼비전 제공 방법 등의 교육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원)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상담기법 등의 교육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사무원·기능직 등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ACC) 교육,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의 교육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3-81 ▌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필요수준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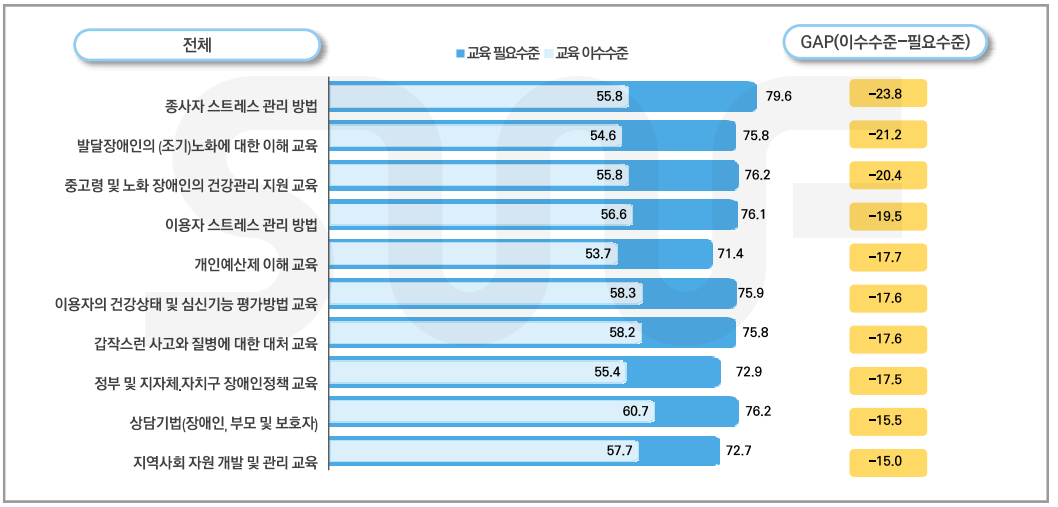
교육내용	교육 필요수준								
	불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		100점 평균
	n	%	n	%	n	%	n	%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21)	4.2	(83)	16.8	(281)	56.8	(110)	22.2	65.7
장애인 인권교육	(24)	4.8	(82)	16.6	(270)	54.5	(119)	24.0	65.9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18)	3.6	(62)	12.5	(280)	56.6	(135)	27.3	69.2
장애인 성교육	(19)	3.8	(65)	13.1	(259)	52.3	(152)	30.7	70.0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15)	3.0	(34)	6.9	(213)	43.0	(233)	47.1	78.0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18)	3.6	(35)	7.1	(236)	47.7	(206)	41.6	75.8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7)	1.4	(39)	7.9	(254)	51.3	(195)	39.4	76.2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6)	1.2	(38)	7.7	(264)	53.3	(187)	37.8	75.9
약물복용 관리 교육	(11)	2.2	(63)	12.7	(272)	54.9	(149)	30.1	71.0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8)	1.6	(49)	9.9	(274)	55.4	(164)	33.1	73.3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25)	5.1	(81)	16.4	(270)	54.5	(119)	24.0	65.9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19)	3.8	(55)	11.1	(266)	53.7	(155)	31.3	70.8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20)	4.0	(66)	13.3	(260)	52.5	(149)	30.1	69.6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11)	2.2	(63)	12.7	(255)	51.5	(166)	33.5	72.1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6)	1.2	(36)	7.3	(247)	49.9	(206)	41.6	77.3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12)	2.4	(53)	10.7	(269)	54.3	(161)	32.5	72.3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16)	3.2	(62)	12.5	(252)	50.9	(165)	33.3	71.4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10)	2.0	(45)	9.1	(283)	57.2	(157)	31.7	72.9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7)	1.4	(46)	9.3	(242)	48.9	(200)	40.4	76.1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9)	1.8	(36)	7.3	(204)	41.2	(246)	49.7	79.6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8)	1.6	(53)	10.7	(275)	55.6	(159)	32.1	72.7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5)	1.0	(41)	8.3	(262)	52.9	(187)	37.8	75.8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9)	1.8	(60)	12.1	(250)	50.5	(176)	35.6	73.3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12)	2.4	(59)	11.9	(264)	53.3	(160)	32.3	71.9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9)	1.8	(41)	8.3	(245)	49.5	(200)	40.4	76.2
슈퍼비전 제공 방법	(11)	2.2	(46)	9.3	(259)	52.3	(179)	36.2	74.1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12)	2.4	(37)	7.5	(260)	52.5	(186)	37.6	75.1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14)	2.8	(42)	8.5	(273)	55.2	(166)	33.5	73.1
영양관리 교육	(25)	5.1	(110)	22.2	(253)	51.1	(107)	21.6	63.1
기타(n=39)	(13)	33.3	(3)	7.7	(7)	17.9	(16)	41.0	55.6

*기타 응답 : 보호자 교육, 직장생활 예절 및 소통,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 이수 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 종사자 교육 이수 수준 대비 필요수준이 높은 항목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3.8점 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21.2점 차),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20.4점 차) 등 장애인의 노화에 관련된 교육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19.5점 차),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17.7점 차),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17.6점 차),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17.6점 차)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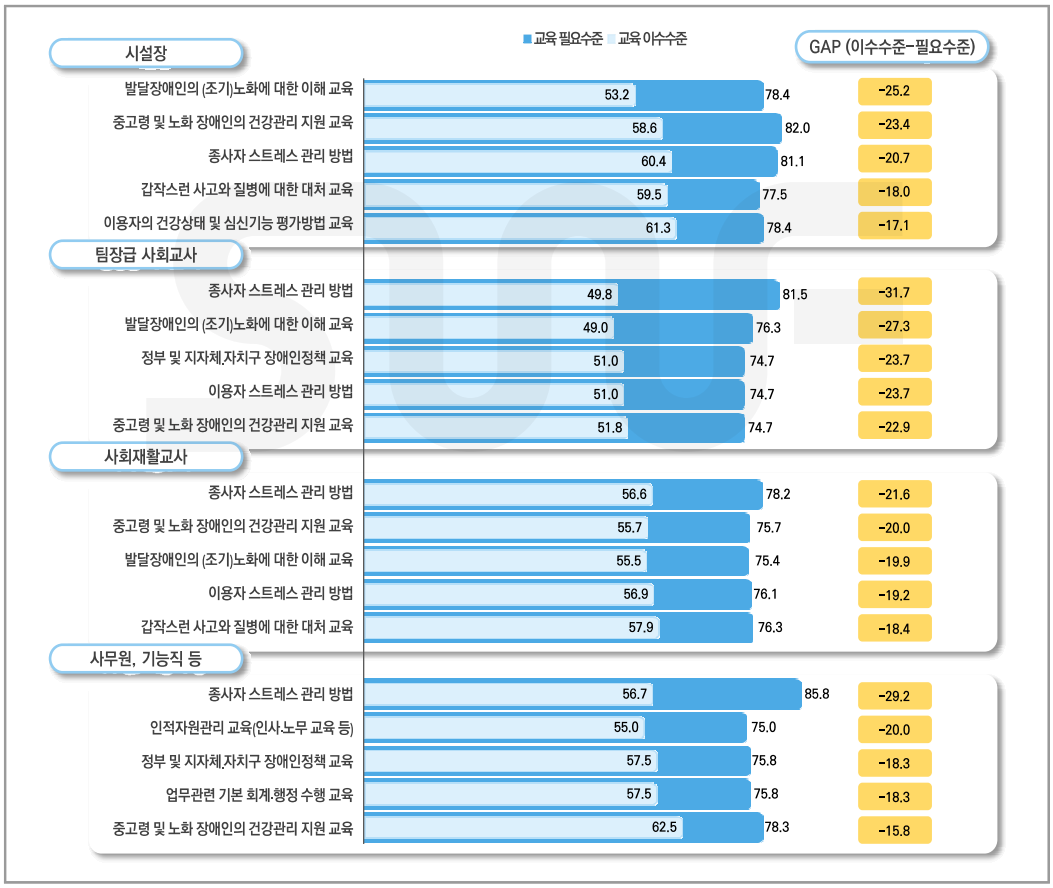


▎그림 3-28 ▎ 강화가 필요한 교육_전체(상위 10순위)

-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직종·직위와 상관없이 교육 이수 수준 대비 필요수준이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팀장급 사회재활교사와 사무원·기능직 등의 이수 수준 대비 필요수준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시설장 :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이해 교육(25.2점 차),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23.4점 차)순
  - 사회재활교사(팀장) :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31.7점 차),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이해 교육(27.3점 차),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3.7점 차), 정부·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23.7점 차)순

- 사회재활교사(팀원) :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1.6점 차), 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20점 차),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이해 교육(19.9점 차),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19.2점 차)순
- 사무원·기능직 등 :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9.2점 차), 인적자원관리 교육(20점 차), 정부 및 지자체 장애인정책 교육(18.3점 차),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18.3점 차)순

(단위: 점)



▎그림 3-29 ▎ 강화가 필요한 교육_직종·직위별(상위 5순위)

○ 이용자 특성 시설유형별,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등의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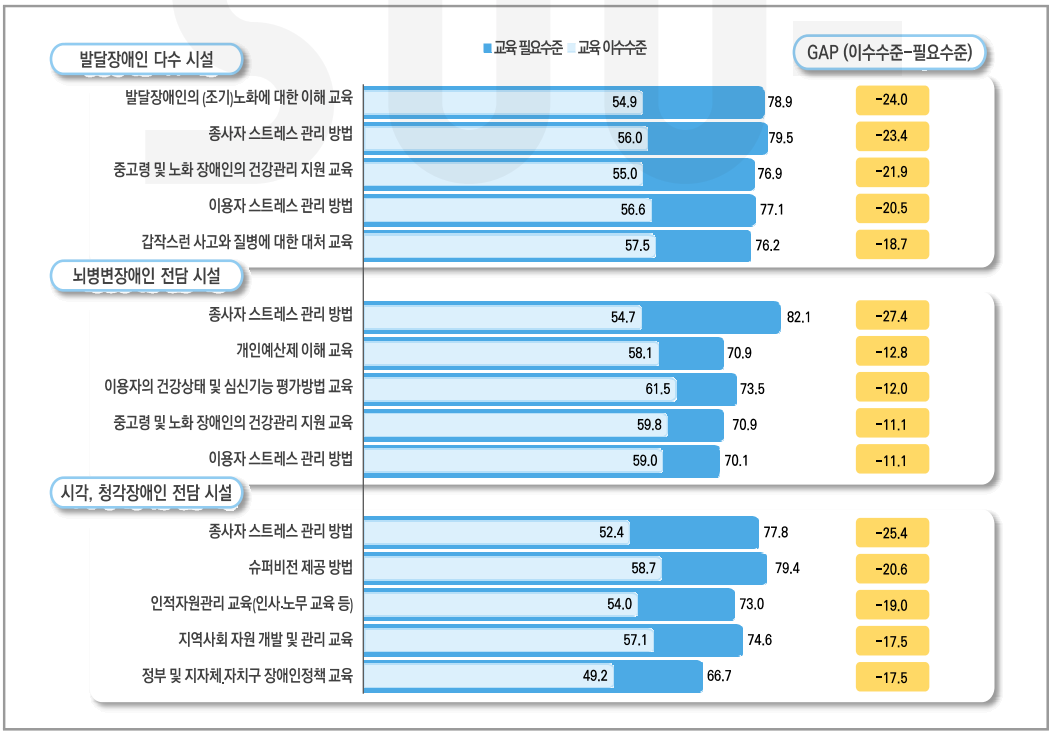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과 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특히 종사자스트레스 관리 방법 교육에 대한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남

○ 이용자 특성 시설유형별,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종사자의 교육 이수 수준 대비 필요수준이 높은 항목은 장애인 노화 관련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이해 교육(24.0점 차),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3.4점 차),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21.9점 차),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0.5점 차)순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종사자의 교육 이수 수준 대비 필요수준이 높은 항목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7.4점 차)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시각/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25.4점 차)과 슈퍼비전 제공 방법(20.6점 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단위: 점)



▌그림 3-30 ▌ 강화가 필요한 교육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5순위)

▌표 3-82 ▌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이수 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

(단위: 점)

교육내용	교육 이수 수준 (100점 평균)	교육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 (이수 수준-필요수준)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75.9	65.7	10.2
장애인 인권교육	84.8	65.9	18.9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74.2	69.2	5.0
장애인 성교육	68.4	70.0	-1.6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67.2	78.0	-10.8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54.6	75.8	-21.2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55.8	76.2	-20.4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58.3	75.9	-17.6
약물복용 관리 교육	59.5	71.0	-11.5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64.9	73.3	-8.4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56.4	65.9	-9.5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62.3	70.8	-8.5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67.0	69.6	-2.6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66.9	72.1	-5.2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69.9	77.3	-7.4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61.8	72.3	-10.5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53.7	71.4	-17.7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55.4	72.9	-17.5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56.6	76.1	-19.5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55.8	79.6	-23.8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57.7	72.7	-15.0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58.2	75.8	-17.6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75.0	73.3	1.7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71.6	71.9	-0.3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60.7	76.2	-15.5
슈퍼비전 제공 방법	59.3	74.1	-14.8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63.6	75.1	-11.5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59.5	73.1	-13.6
영양관리 교육	56.6	63.1	-6.5
기타(n=39)	35.9	55.6	-19.7

*기타 응답 : 보호자 교육, 직장생활 예절 및 소통, 직장 내 괴롭힘 등

표 3-83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이수 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_직종 및 직위별

(단위: 점)

교육내용	교육 이수 수준 (100점 평균)				교육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이수 수준-필요수준)			
	시설장	팀장급 사회 재활교사	사회 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 등	시설장	팀장급 사회 재활교사	사회 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 등	시설장	팀장급 사회 재활교사	사회 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 등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80.2	78.7	74.1	80.8	67.6	62.7	66.3	65.0	12.6	16.1	7.9	15.8
장애인 인권교육	90.1	90.0	82.8	86.7	73.0	67.5	64.6	67.5	17.1	22.5	18.2	19.2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79.3	73.5	72.7	83.3	73.9	69.1	68.8	68.3	5.4	4.4	4.0	15.0
장애인 성교육	70.3	61.8	69.1	75.0	73.9	70.7	69.1	72.5	-3.6	-8.8	0.0	2.5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69.4	67.5	66.3	72.5	77.5	79.1	77.8	78.3	-8.1	-11.6	-11.5	-5.8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53.2	49.0	55.5	60.0	78.4	76.3	75.4	75.0	-25.2	-27.3	-19.9	-15.0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58.6	51.8	55.7	62.5	82.0	74.7	75.7	78.3	-23.4	-22.9	-20.0	-15.8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61.3	53.4	58.4	65.0	78.4	75.5	75.5	77.5	-17.1	-22.1	-17.1	-12.5
약물복용 관리 교육	61.3	55.0	60.3	60.0	73.0	68.7	70.7	75.8	-11.7	-13.7	-10.4	-15.8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66.7	60.2	65.3	70.0	74.8	70.3	73.4	77.5	-8.1	-10.0	-8.2	-7.5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61.3	49.4	56.3	67.5	70.3	57.8	66.9	70.0	-9.0	-8.4	-10.5	-2.5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66.7	60.2	62.0	65.0	75.7	67.5	70.9	72.5	-9.0	-7.2	-9.0	-7.5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74.8	65.9	66.1	70.0	73.0	69.1	69.4	69.2	1.8	-3.2	-3.3	0.8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68.5	67.5	65.9	73.3	73.9	71.9	71.2	78.3	-5.4	-4.4	-5.4	-5.0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73.9	70.7	68.3	78.3	82.9	78.7	76.5	75.8	-9.0	-8.0	-8.3	2.5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68.5	58.2	60.8	71.7	74.8	71.9	72.2	71.7	-6.3	-13.7	-11.4	0.0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60.4	50.2	53.1	59.2	73.9	71.1	71.2	71.7	-13.5	-20.9	-18.1	-12.5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64.9	51.0	55.2	57.5	80.2	74.7	71.2	75.8	-15.3	-23.7	-16.0	-18.3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59.5	51.0	56.9	63.3	76.6	74.7	76.1	78.3	-17.1	-23.7	-19.2	-15.0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60.4	49.8	56.6	56.7	81.1	81.5	78.2	85.8	-20.7	-31.7	-21.6	-29.2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64.0	57.8	56.5	61.7	74.8	72.3	72.5	73.3	-10.8	-14.5	-16.0	-11.7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59.5	57.0	57.9	62.5	77.5	73.9	76.3	74.2	-18.0	-16.9	-18.4	-11.7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74.8	80.3	73.4	77.5	77.5	77.1	71.9	72.5	-2.7	3.2	1.5	5.0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72.1	75.1	70.0	77.5	77.5	73.9	70.9	70.0	-5.4	1.2	-1.0	7.5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70.3	58.6	60.0	62.5	75.7	74.3	76.7	75.8	-5.4	-15.7	-16.7	-13.3
슈퍼비전 제공 방법	69.4	57.8	58.2	61.7	80.2	78.7	73.0	68.3	-10.8	-20.9	-14.8	-6.7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75.7	70.7	61.2	57.5	78.4	75.9	74.4	75.8	-2.7	-5.2	-13.2	-18.3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71.2	69.5	56.3	55.0	79.3	76.7	71.3	75.0	-8.1	-7.2	-15.0	-20.0
영양관리 교육	64.0	54.2	55.6	62.5	68.5	59.0	62.9	68.3	-4.5	-4.8	-7.3	-5.8
기타(n=39)	50.0	50.0	29.2	40.0	75.0	44.4	51.4	73.3	-25.0	5.6	-22.2	-33.3

▌표 3-84 ▌ 종사자 개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이수 수준 및 필요수준 차이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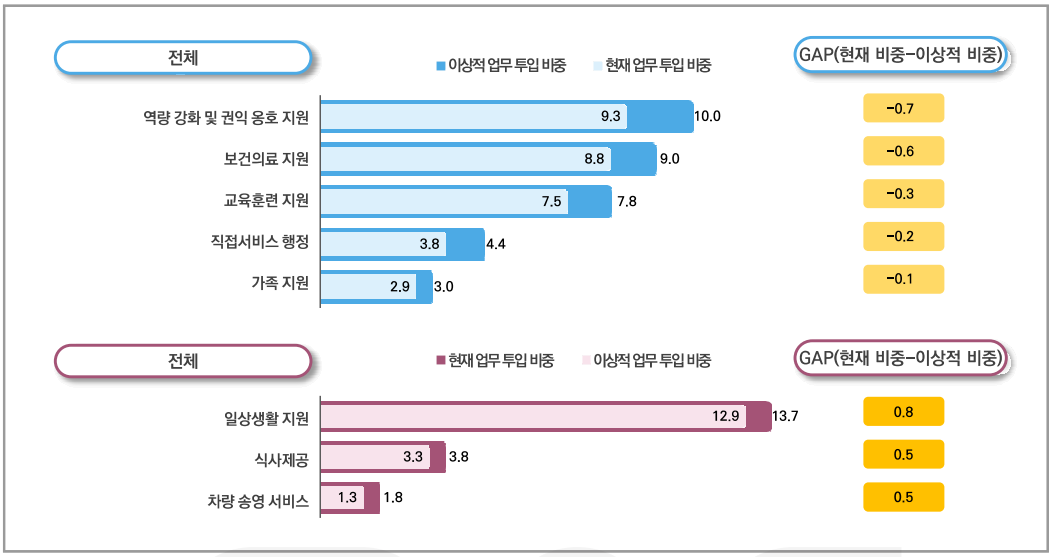
(단위: 점)

교육내용	교육 실행수준 (100점 평균)				교육 필요수준 (100점 평균)				차이(실행수준-필요수준)			
	발달 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시각 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 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시각 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 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 장애인 전담시설	시각 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장애인 유형 이해 교육	76.5	72.6	71.1	66.7	66.4	60.7	60.0	61.1	10.1	11.9	11.1	5.6
장애인 인권교육	85.1	81.2	86.7	83.3	66.5	61.5	57.8	72.2	18.6	19.7	28.9	11.1
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교육	74.5	75.2	66.7	66.7	70.4	62.4	53.3	61.1	4.1	12.8	13.4	5.6
장애인 성교육	68.4	74.4	55.6	66.7	71.4	59.0	55.6	72.2	-3.0	15.4	0.0	-5.5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	68.4	63.2	55.6	38.9	80.5	70.1	35.6	61.1	-12.1	-6.9	20.0	-22.2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54.9	59.0	42.2	33.3	78.9	63.2	28.9	44.4	-24.0	-4.2	13.3	-11.1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55.0	59.8	71.1	50.0	76.9	70.9	68.9	77.8	-21.9	-11.1	2.2	-27.8
이용자 건강상태 및 심신기능 평가방법 교육	58.2	61.5	55.6	55.6	76.3	73.5	66.7	83.3	-18.1	-12.0	-11.1	-27.7
약물복용 관리 교육	59.0	63.2	64.4	55.6	71.5	69.2	55.6	83.3	-12.5	-6.0	8.8	-27.7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교육	64.1	71.8	71.1	61.1	73.8	69.2	68.9	77.8	-9.7	2.6	2.2	-16.7
보건요양에 대한 기초케어 교육	56.1	60.7	57.8	50.0	66.4	61.5	64.4	61.1	-10.3	-0.8	-6.6	-11.1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62.4	64.1	60.0	50.0	73.2	55.6	46.7	61.1	-10.8	8.5	13.3	-11.1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교육	67.2	63.2	75.6	55.6	71.6	58.1	46.7	55.6	-4.4	5.1	28.9	0.0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교육	68.6	61.5	42.2	44.4	74.5	64.1	33.3	50.0	-5.9	-2.6	8.9	-5.6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교육	69.8	73.5	66.7	61.1	78.2	70.1	66.7	83.3	-8.4	3.4	0.0	-22.2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교육	61.5	66.7	60.0	55.6	73.4	65.0	60.0	72.2	-11.9	1.7	0.0	-16.6
개인예산제 이해 교육	53.6	58.1	46.7	44.4	71.9	70.9	57.8	77.8	-18.3	-12.8	-11.1	-33.4
정부 및 지자체·자치구 장애인정책 교육	55.2	60.7	53.3	38.9	73.6	68.4	62.2	77.8	-18.4	-7.7	-8.9	-38.9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56.6	59.0	53.3	50.0	77.1	70.1	62.2	77.8	-20.5	-11.1	-8.9	-27.8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56.0	54.7	53.3	50.0	79.5	82.1	73.3	88.9	-23.5	-27.4	-20.0	-38.9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교육	56.9	66.7	55.6	61.1	73.2	66.7	75.6	72.2	-16.3	0.0	-20.0	-11.1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교육	57.5	65.8	60.0	61.1	76.2	74.4	75.6	61.1	-18.7	-8.6	-15.6	0.0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처 교육	74.4	77.8	80.0	88.9	73.5	73.5	71.1	61.1	0.9	4.3	8.9	27.8
감염 질병의 확산 예방에 대한 대처 교육	71.3	72.6	77.8	72.2	72.3	68.4	68.9	66.7	-1.0	4.2	8.9	5.5
상담기법(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60.7	62.4	55.6	66.7	76.6	72.6	68.9	83.3	-15.9	-10.2	-13.3	-16.6
슈퍼비전 제공 방법	58.5	68.4	55.6	66.7	74.6	65.8	77.8	83.3	-16.1	2.6	-22.2	-16.6
업무관련 기본 회계·행정 수행 교육	63.1	67.5	60.0	77.8	75.4	72.6	75.6	66.7	-12.3	-5.1	-15.6	11.1
인적자원관리 교육(인사·노무 교육 등)	59.2	66.7	53.3	55.6	73.2	72.6	75.6	66.7	-14.0	-5.9	-22.3	-11.1
영양관리 교육	56.3	59.8	57.8	50.0	63.7	59.0	57.8	61.1	-7.4	0.8	0.0	-11.1
기타(n=39)	36.8	0.0	-	-	57.0	0.0	-	-	-20.2	0.0	-	-

3) 종사자 개인별 업무투입 비중

- 종사자 개인별 현재 업무투입 비중은 일반행정(회계/인사/행정, 시설관리, 지역사회관계 및 후원관리, 만족도 관리 포함) 업무가 37.4%, 서비스 지원(직접 서비스 지원, 식사제공, 송영 서비스 포함) 업무가 62.6%로 나타남
  - 일반행정 영역(현재 업무투입 37.4%) : 서비스 내용 문서 관리(5.8%), 사업계획 및 평가(4.5%), 재정회계 관리(4.0%) 등
  - 서비스지원 영역(현재 업무투입 62.6%) : 일상생활 지원(13.7%),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9.3%), 직접 서비스 행정(8.8%), 교육훈련 지원(7.5%), 여가활동 지원(4.2%), 보건의료 지원(3.8%), 식사제공(3.8%), 특별활동 지원(3.4%),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3.3%), 가족 지원(2.9%), 차량 송영 서비스(1.8%)
- 종사자가 판단할 때 이상적 업무투입 비중은 일반행정 37.4%, 서비스지원 62.6%로 실제 업무투입 비중과 비슷하게 나타남. 일반행정 영역은 지역사회관계 및 후원관리, 위기대응 등의 투입비중을 늘리고, 직접 서비스 영역은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보건의료 지원, 가족 지원 등의 투입비중을 늘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행정 영역(이상적 투입 37.4%) : 서비스 내용 문서 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 행정보고문서 관리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지역사회관계 및 후원관리, 위기대응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지원 영역(이상적 투입 62.6%) :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상생활 지원(13.7%→12.9%), 차량 송영 서비스(1.8%→1.3%), 식사제공(3.8%→3.3%)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9.3%→10.0%), 보건의료 지원(3.8%→4.4%), 교육훈련 지원(7.5%→7.8%), 직접 서비스 행정(8.8%→9.0%), 가족 지원(2.9%→3.0%)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3-31▐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확대 및 축소가 필요한 사업_전체

▌표 3-85▐ 종사자 개인별 업무투입 비중_전체

(단위: %)

내용	현재 업무 투입 비중 평균	이상적 업무 투입 비중 평균	차이 (현재-이상적)
일반행정	37.4	37.4	0.0
직접 서비스 행정	8.8	9.0	-0.2
일상생활 지원	13.7	12.9	0.8
여가활동 지원	4.2	4.2	0.0
보건의료 지원	3.8	4.4	-0.6
교육훈련 지원	7.5	7.8	-0.3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3.3	3.3	0.0
특별활동 지원	3.4	3.4	0.0
가족 지원	2.9	3.0	-0.1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9.3	10.0	-0.7
식사제공	3.8	3.3	0.5
차량 송영 서비스	1.8	1.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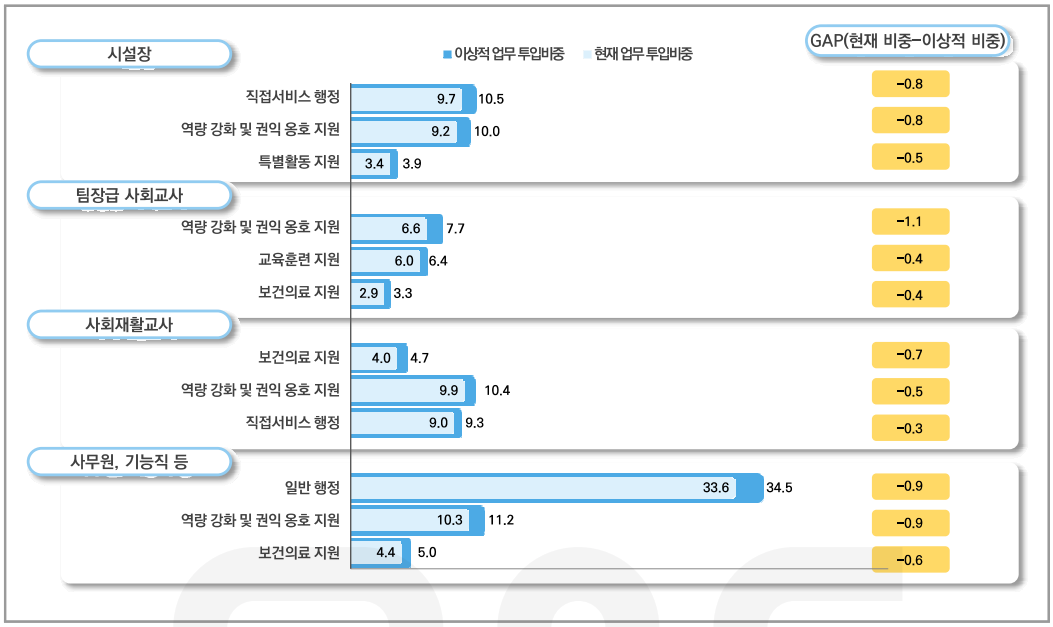
○ 직종·직위별로 팀장급 사회재활교사의 일반행정업무 투입 비중(현재 5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장 : 일반행정 39.8%, 서비스지원 60.2%
- 사회재활교사(팀장) : 일반행정 50.0%, 서비스지원 50.0%
- 사회재활교사(팀원) : 일반행정 34.5%, 서비스지원 65.5%
- 사무원·기능직 등 : 일반행정 33.6%, 서비스지원 66.4%

○ 이상적 업무투입 비중은 시설장과 팀장급 사회재활교사는 일반행정업무를 다소 줄이고, 서비스지원 업무를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무원·기능직 등은 일반행정업무를 다소 늘리고, 서비스지원 업무를 다소 줄이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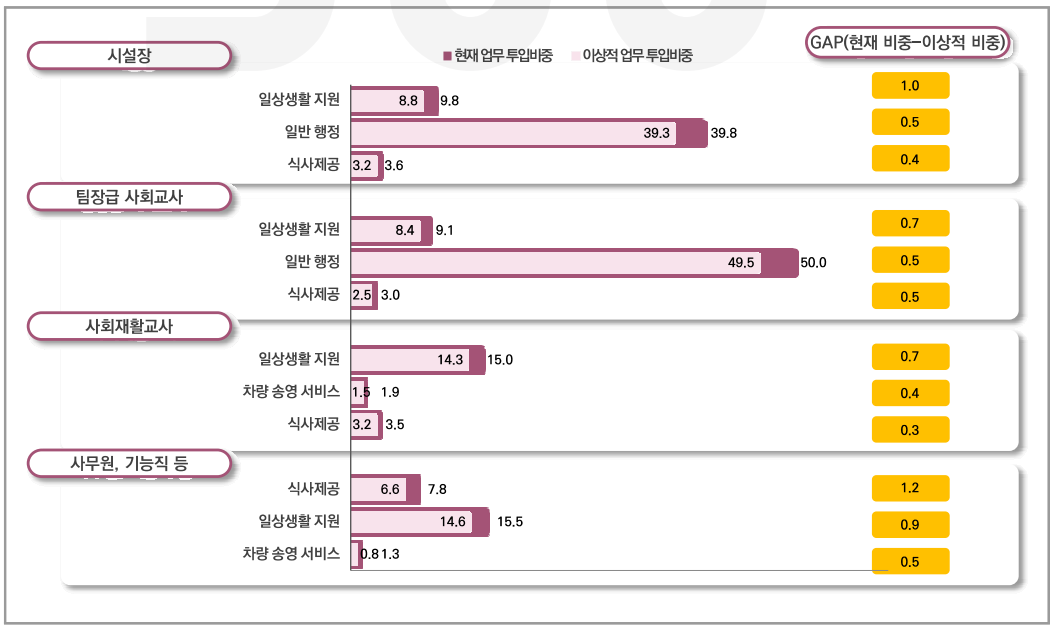
- 시설장 :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반행정(39.8%→39.3%), 일상생활 지원(9.8%→8.8%), 식사제공(3.6%→3.2%), 차량 송영 서비스(1.2%→0.8%)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9.2%→10.0%), 직접 서비스 행정(9.7%→10.5%), 특별활동 지원(3.4%→3.9%),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3.2%→3.3%)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장) :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반행정(50.0%→49.5%), 일상생활 지원(9.1%→8.4%), 식사제공(3.0%→2.5%), 차량 송영 서비스(1.6%→1.2%)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6.6%→7.7%), 교육훈련 지원(6.0%→6.4%), 보건의료 지원(2.9%→3.3%)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재활교사(팀원) :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상생활 지원(15.0%→14.3%), 식사제공(3.5%→3.2%), 차량 송영 서비스(1.9%→1.5%)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9.9%→10.4%), 보건의료 지원(4.0%→4.7%)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사무원·기능직 등 :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상생활 지원(15.5%→14.6%), 식사제공(7.8%→6.6%), 차량 송영 서비스(1.3%→0.8%)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일반행정(33.6%→34.5%),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10.3%→11.2%), 보건의료 지원(4.4%→5.0%)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3-32 ▌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확대가 필요한 사업_직종·직위별(상위 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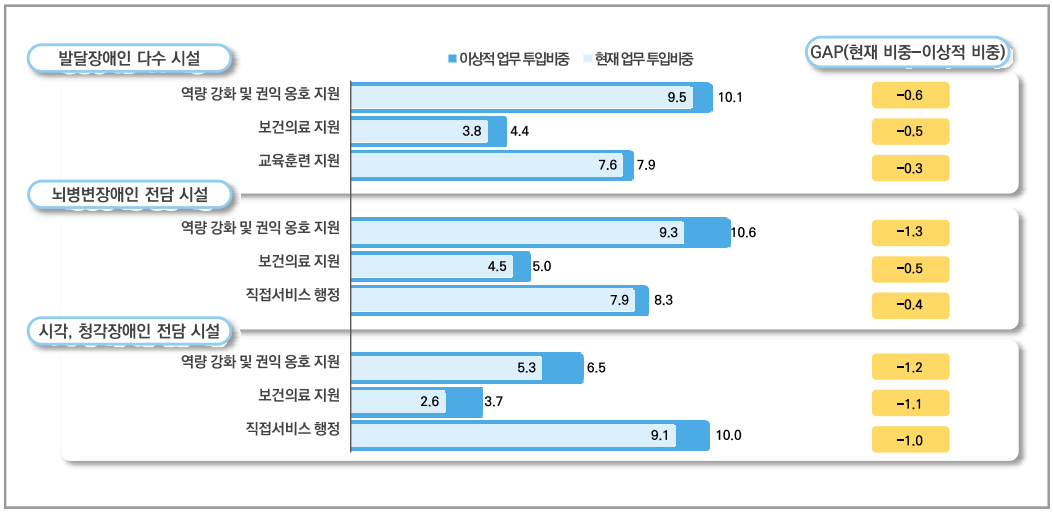


▌그림 3-33 ▌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축소가 필요한 사업_직종·직위별(상위 3순위)

○ 이용자 특성 시설유형별로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은 보건의료 지원,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과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직접 서비스 행정 투입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타 업무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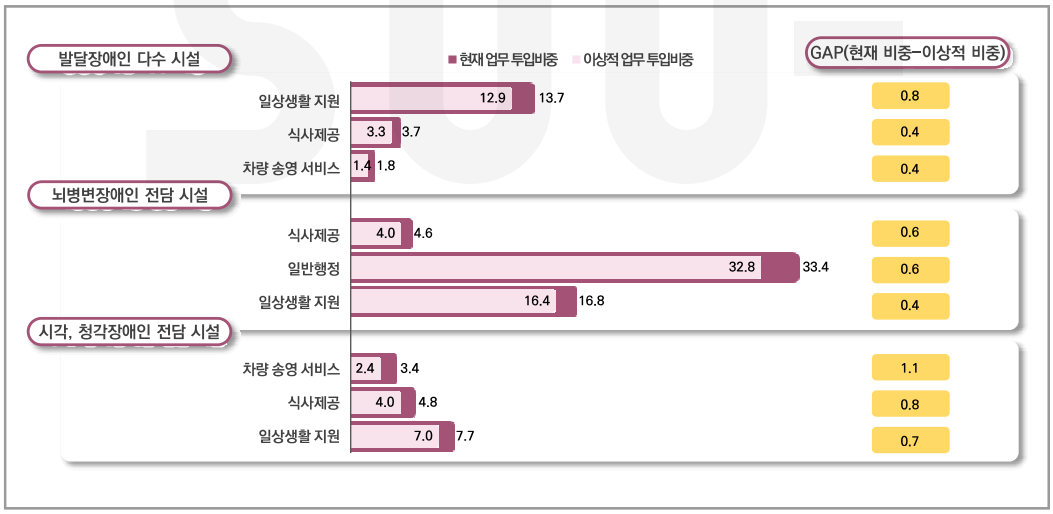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다수시설 :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상생활 지원(13.7%→12.9%), 식사제공(3.7%→3.3%), 차량 송영 서비스(1.8%→1.4%)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9.5%→10.1%), 보건의료 지원(3.6%→4.4%), 교육훈련 지원(7.6%→7.9%)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반행정(33.4%→32.8%), 일상생활 지원(16.8%→16.4%), 식사제공(4.6%→4.0%)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9.3%→10.6%), 보건의료 지원(4.5%→5.0%), 직접 서비스 행정(7.9%→8.3%), 여가활동 지원(4.8%→4.9%)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각/청각장애인전담시설 : 현재 투입 비중에서 일상생활 지원(7.7%→7.0%), 식사제공(4.8%→4.0%), 차량 송영 서비스(3.4%→2.4%) 등의 투입 비중을 다소 줄이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5.3%→6.5%), 보건의료 지원(2.6%→3.7%), 직접 서비스 행정(9.1%→10.0%) 등의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소 늘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3-34▐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확대가 필요한 사업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3순위)

(단위: %)



▌그림 3-35▐ 종사자 업무투입 비중 축소가 필요한 사업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상위 3순위)

표 3-86 종사자 개인별 업무투입 비중_직종 및 직위별

(단위: %)

내용	현재 업무 투입 비중 평균				이상적 업무 투입 비중 평균				차이(현재-이상적)			
	시설장	팀장급 사회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 등	시설장	팀장급 사회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 등	시설장	팀장급 사회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 등
일반행정	39.8	50.0	34.5	33.6	39.3	49.5	34.6	34.5	0.5	0.5	-0.1	-0.9
직접 서비스 행정	9.7	8.5	9.0	6.1	10.5	8.7	9.3	6.0	-0.8	-0.2	-0.3	0.1
일상생활 지원	9.8	9.1	15.0	15.5	8.8	8.4	14.3	14.6	1.0	0.7	0.7	0.9
여가활동 지원	3.6	3.1	4.7	3.6	3.3	3.2	4.5	3.7	0.3	-0.1	0.2	-0.1
보건의료 지원	3.5	2.9	4.0	4.4	3.6	3.3	4.7	5.0	-0.1	-0.4	-0.7	-0.6
교육훈련 지원	8.0	6.0	7.7	8.6	8.3	6.4	8.0	8.8	-0.3	-0.4	-0.3	-0.2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3.2	2.8	3.5	3.0	3.3	2.8	3.4	3.0	-0.1	0.0	0.1	0.0
특별활동 지원	3.4	3.0	3.6	2.7	3.9	3.0	3.5	2.7	-0.5	0.0	0.1	0.0
가족 지원	4.9	3.4	2.5	3.1	5.0	3.4	2.7	3.1	-0.1	0.0	-0.2	0.0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9.2	6.6	9.9	10.3	10.0	7.7	10.4	11.2	-0.8	-1.1	-0.5	-0.9
식사제공	3.6	3.0	3.5	7.8	3.2	2.5	3.2	6.6	0.4	0.5	0.3	1.2
차량 송영 서비스	1.2	1.6	1.9	1.3	0.8	1.2	1.5	0.8	0.4	0.4	0.4	0.5

표 3-87 종사자 개인별 업무투입 비중_이용인 특성별 시설유형

(단위: %)

내용	현재 업무 투입 비중 평균				이상적 업무 투입 비중 평균				차이(현재-이상적)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일반행정	37.2	33.4	50.4	47.2	37.3	32.8	49.7	48.3	-0.1	0.6	0.7	-1.1
직접 서비스 행정	8.8	7.9	10.1	6.5	9.0	8.3	10.7	8.3	-0.2	-0.4	-0.6	-1.8
일상생활 지원	13.7	16.8	8.3	6.1	12.9	16.4	7.6	5.6	0.8	0.4	0.7	0.5
여가활동 지원	4.2	4.8	4.4	4.3	4.1	4.9	4.0	4.0	0.1	-0.1	0.4	0.3
보건의료 지원	3.8	4.5	2.8	2.1	4.4	5.0	3.8	3.4	-0.6	-0.5	-1.0	-1.3
교육훈련 지원	7.6	7.9	5.3	7.3	7.9	7.8	6.2	5.9	-0.3	0.1	-0.9	1.4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3.4	3.2	1.6	2.8	3.4	3.0	1.6	2.6	0.0	0.2	0.0	0.2
특별활동 지원	3.5	3.2	3.3	3.1	3.4	3.0	3.2	2.9	0.1	0.2	0.1	0.2
가족 지원	2.8	4.0	2.0	2.3	3.0	3.8	2.1	2.0	-0.2	0.2	-0.1	0.3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9.5	9.3	3.1	10.9	10.1	10.6	5.5	8.9	-0.6	-1.3	-2.4	2.0
식사제공	3.7	4.6	4.6	5.3	3.3	4.0	3.2	5.8	0.4	0.6	1.4	-0.5
차량 송영 서비스	1.8	0.4	4.0	2.1	1.4	0.3	2.4	2.3	0.4	0.1	1.6	-0.2

4 소결

중증장애인의 주간돌봄서비스의 주요 시설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용제한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의 30% 정도는 식사, 신변처리, 의사소통, 기능적 보행을 위해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해당됨
- 시설 이용 현원은 복지부 운영지침 최소 10인을 상회하는 약 12명이며 연령 상한, 휠체어 이용, 도전적 행동은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접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공식적으로 이용기간 상한을 두지는 않는 시설 비중이 크나 연령 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의문임
- 주간이용시설 대부분이 시설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제한 없이 의미 있는 낮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현 시설 운영체계의 한계로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봄
- 실질적인 장애인의 주간돌봄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제한에 대한 배경을 고려한 주간이용시설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단독 운영 주간이용시설의 열악한 서비스 제공 환경

- 복지관 병설 주간이용시설은 거의 무상임대이고 월평균 이용료가 단독시설에 비해 3만원 정도 낮으며, 이용료 감면율도 50% 이상으로 단독시설에 비해 20% 정도 높음
- 특히 단독시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직원 휴게실, 프로그램실, 이용자 개별활동실, 심리안정실, 이용자 휴게실인데 이러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복지관 병설 주간이용시설이 단독시설보다 월등이 많음
- 단독시설 가운데 전용 프로그램실이 없는 경우도 약 40% 이고 다른 용도 공간과 통합하여 2개 미만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독시설이 많음. 이용자 휴게실은 대부분 없거나 다른 공간과 통합되며 있어도 직원과 함께 운영됨. 직원 휴게실도 비슷한 형편이고 심지어 전용 사무실이 없는 시설도 30% 이상임. 장애인화장실과 성별구분 없는 화장실, 조리실 없는 시설도 20% 정도 차지함
- 복지관 병설 주간이용시설은 복지관 구내식당을 통해 중식을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식사서비스 관련 업무가 없으나 단독시설은 대부분 자체조리, 반찬 배달, 도시락배달 등으

로 중식서비스가 제공되어 부가 업무가 발생함

- 다양한 돌봄서비스 등장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시설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별지원에 대한 이용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필요함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

- 30대가 50% 이상이고 30~40대가 약 70%, 50대 이상도 10%에 육박하고 있어 주간이용시설 이용자는 이미 중고령화에 진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30대 이용자의 평균 시설 이용기간도 약 9년으로써 계속 장기이용자로 남을 가능성이 짙어 향후 주간이용시설의 중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주간이용시설도 이미 이용자의 중고령화 현상을 체감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등 장애인의 노화에 관련된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 있다고 인지함
- 또한 조기노화 및 고령화 케어, 주치의·의료기관 연계진료 등과 같은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이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에 중고령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기준 재설계,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공간과 설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이 요구됨

도전적 행동 이용자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대두

- 발달장애인 다수시설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가 약 73%이며 평균 2개 정도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며 과도한 과잉행동, 강박 행동, 타인을 향한 공격성, 자해가 두드러짐
- 이용자는 평균 1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비만이 압도적임. 40% 정도는 조기노화 및 고령화 증상을 보이고 있어 활동 참여 감소,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남
- 주간이용시설은 도전적 행동 이해, 조기노화 및 중고령 장애인 건강 지원,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시함

장애인의 지역돌봄서비스 제공에 중추적 역할 도모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설은 이용자에서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나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도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음
- 주간이용시설은 집단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지양하고 개별지원이나 소그룹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냄
- 이를 위해 활발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가 요구됨

종사자의 장기근속과 소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절실

- 현 기관 근속기간은 평균 4년 9개월이나 시설장과 팀장 근속기간은 9년 이상, 사회재활교사는 2.9년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 핵심종사자가 전문성을 축적하기에는 짧은 기간임.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 5년 미만이 58.8%,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경우는 68.7%로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려움
- 2023년 상반기 엔데믹 선언 이후 정년퇴직 외 사직이 2022년 대비 2배로 뛰었고 2023년부터 1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종사자의 약 20%가 매년 퇴직하고 신규 인력이 유입된다는 의미임. 개인사유를 제외하고 희박한 승진 기회, 저임금, 높은 업무강도, 번아웃이 주요 퇴사 사유임. 이직 의향이 가장 높은 30~40대 종사자의 주요 원인도 번아웃과 열악한 처우임
- 상근시설장부터 사회재활교사까지 행정, 회계, 서비스 제공, 차량운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있어 1:3 정도의 인력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종사자의 교육이나 경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채우는 대체인력이 주간이용시설에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고 활용 욕구도 높음. 시설이 서울시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산정한 대체인력 필요기간은 시설당 연평균 16.3일인데 실제로 5.5일 활용되어 시설 형편과 매우 동떨어짐
-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시설의 당면한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고 기능직 부재로 인한 직원의 부가적인 기능직 업무 수행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고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측면의 종사자 처우개선이 요구됨

제4장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 결과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4장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유사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부모)를 대상으로 이용 경험, 인식 및 평가, 주간이용시설의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함

조사 방법 및 내용

- 서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부모) 16명을 대상으로 섭외(시설 협조 및 추천)하여 현재 이용 중인 주 서비스 중심으로 총 6그룹을 구성함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3그룹,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1그룹,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1그룹,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 1그룹
- 총 6개 그룹, 각 그룹별 1회씩 FGI(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진행함.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개방형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일정 조율이 어려운 일부 참여자는 타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여 진행함
  - 인터뷰에 앞서 연구진 소개와 인터뷰 목적,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
  - 전체 인터뷰 내용의 녹음과 전사가 진행됨을 알리고 인터뷰 참여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내함

❙표 4-1❙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방법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총 16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유사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부모)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3그룹) : 8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1그룹) : 2명 -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1그룹) : 4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1그룹) : 2명
조사 방법	- 총 6개 그룹, 각 그룹별 1회씩 FGI 진행(그룹당 2~4명 참석)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개방형 인터뷰 진행
조사 기간	2025.08.12.~2025.08.20.

○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질문 내용 :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유형 인지 수준, 주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이용 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서비스 경쟁력, 향후 주간이용시설 이용 욕구 등

❙표 4-2❙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주요 내용

구분	면접조사 내용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유형 인지 수준	-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유형별 특성 인지 정도 - 주간보호시설 서비스와 유사 돌봄서비스와의 유사성 및 차별성 인지 정도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간돌봄서비스 이용 계기, 자녀 적합성 등 - 과거 이용하고 있는 주간돌봄서비스 이용 계기, 자녀 적합성 등
현재 이용 돌봄서비스 만족도 (만족, 불만족 및 개선사항)	- 서비스 제공 환경적 측면 만족도 - 돌봄 지원방식 및 돌봄 인력의 서비스 전문성 만족도 - 활동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기타 부가서비스 만족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서비스 경쟁력	- 유사 주간돌봄서비스 비교 시 주간이용시설의 강점 - 유사 주간돌봄서비스 비교 시 주간이용시설 경쟁력 강화 사항
향후 주간이용시설 이용 욕구	- 향후 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있을 경우, 그 배경 및 이유 - 향후 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없는 경우, 그 배경 및 이유

3) 참여자 특성

○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용자(부모)는 총 16명으로 자녀의 주 장애유형은 모두 발달장애, 장애정도는 모두 심한 장애임

- 자녀 성별 : 남성 10명, 여성 6명 / 연령 : 20대 3명, 30대 12명, 40대 1명

○ 인터뷰 사전설문을 통해 파악된 자녀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완전+대부분 도움 필요)는 신변처리 56%(9명), 식사 50%(8명), 의사소통 44%(7명), 보행 38%(6명)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는 75%(12명)임

-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중복응답)은 과도한 과잉행동(8명), 강박 행동(7명), 자·타해(4명) 등이며, 도전적 행동이 없는 응답자는 25%(4명)임

○ 참여자의 62%(10명)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간돌봄서비스 외 타 유형(또는 타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38%(6명)는 없음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그룹(8명)의 절반 정도는 타 유형(또는 타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현 시설 이용기간이 10년 이상 긴 경우가 많음

- 최근 도입된 주간활동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그룹은 현 서비스 이용기간이 짧고, 모두 이전에 타 유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음

▌표 4-3▐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참여자 주요정보

이용자 그룹	참여자 (부모)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주 장애 및 (중복장애)유형	현 서비스 이용 개월	타 서비스 이용 경험
주간 이용시설 이용자 (3그룹)	A1-1	남성	28	지적(뇌병변)	60	없음
	A1-2	여성	27	지적(언어,정신)	12	있음
	A1-3	여성	30	지적(뇌병변)	90	있음
	A1-4	남성	30	자폐(지적)	132	없음
	A2-1	남성	37	지적(뇌병변)	252	없음
	A2-2	남성	36	지적장애	135	있음
	A3-1	남성	36	지적(자폐)	176	없음
	A3-2	여성	31	지적(청각)	173	없음
최중증 통합돌봄 (1그룹)	B-1	남성	30	자폐(언어,지적)	12	있음
	B-2	여성	38	자폐성장애	10	있음
주간활동서비스 (1그룹)	C-1	여성	38	지적장애	60	있음
	C-2	남성	26	자폐성장애	8	있음
	C-3	남성	31	지적(뇌병변)	7	있음
	C-4	남성	46	지적장애	48	있음
평생교육센터 (1그룹)	D-1	남성	34	지적장애	20	있음
	D-2	남성	30	지적장애	43	없음

2 주요 분석 결과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조사 결과 요약

표 4-4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면접조사(FGI) 조사 결과 요약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돔봄 서비스 이용 경험	돌봄 서비스 정보 수집 경로	• 같은 처지 부모들 간의 교류를 통한 돌봄서비스 정보 수집 • 복지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정보 습득 • 졸업 전 학교 선생님의 정보제공
	돌봄 서비스 선택 기준	• 최초로 접하는 서비스 정보, 돌봄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학교 선생님의 추천 등으로 돌봄서비스 선택 • 희망 돌봄서비스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성, 거주지와의 거리 등 불가피한 선택 • 장애 자녀의 특성에 대한 부모의 자가 판단으로 선택
	돌봄 서비스 이용 접근성	• 다양한 돌봄서비스 유형의 증가로 서비스 선택권 확대 체감 •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상담 부재로 이용접근성 제한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여전히 부족 • 현재 이용 돌봄서비스 기한 만료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부족 • 긴급돌봄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 기준으로 부모 욕구 대응 미흡하며, 보호자의 온전한 돌봄휴식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부재 • 고령화 장애인 자녀 지역돌봄서비스 부재
주간 이용 시설 인식 및 평가	긍정적 인식	• 장기이용자에게 제2의 집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인식 • 전문적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어 이용 선호도가 높은 돌봄기관 • 과거 단순 돌봄 중심에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변화 노력 • 부모에게 돌봄휴식 제공,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규칙적인 보통의 삶 제공
	부정적 인식	• 장기이용자 부모의 텃세 형성으로 신규 진입 및 신규 이용자 교류 어려움 •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 욕구를 볼모로 이용자와 시설 간 힘의 불균형 존재 •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한 열악한 서비스 제공 환경 •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장 미약 • 단순 돌봄 및 보호 중심 서비스 •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도전적 행동 등) 기피 등 이용제한 • 시설이 정원 미충족 상태로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
	이용 의향 주요 요인	• 다른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기간 제한 및 적응 불확실성으로 계속 이용 • 다양한 수준의 이용 장애인 구성으로 인한 긍정적 상호 작용 • 유사 돌봄서비스 수준 정도의 이용자 개인별 지원 • 이용자 제한, 단순 돌봄 등 부정적 인식 개선되면 이용 고려 • 장애 자녀의 중·고령 연령 진입 시 이용 고려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서비스 이용 중단 사유	• 서비스 이용기한 만료 •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상대적 기능(신체적·정신적) 저하 등으로 계속 이용에 대한 심적 부담감, 자발적 서비스 중단 • 종사자의 이용자 도전적 행동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 보호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종사자 대응 태도
	신규 이용자 모집 영향 요인	• 주간이용시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유사 돌봄서비스의 다양한 장점(직업생활과 연계 가능, 무료 이용료, 1:1 또는 1:2 개인별 지원, 활발한 외부활동 등) • 신규 돌봄서비스 이용 진입자는 주간이용시설 외 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 •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으로 애초 서비스 선택지에서 제외 •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 확보된 시설 서비스 선호
주간 이용 시설 발전 방향	지역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중추적 역할	•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서비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노후생활 영위 지원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 지원기관 역할 • 이용자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자의 돌봄 공백 대응 • 이용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기본적인 일상생활 훈련 교육 강화를 통한 자립역량 향상 • 보호자의 돌봄휴식과 이용자의 자립생활 훈련 욕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숙박 체험 •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이용자 고령화 대응 프로그램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 학령기 이후 적절한 돌봄서비스 선택을 위해 학교 대상 홍보 활동 • 돌봄서비스 이용 진입자 대상으로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홍보
주간 이용 시설 운영 개선 정책 제언	시설 인프라 개선	• 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선호도 대응을 위한 공급 확대 • 주간돌봄과 함께 응급 및 일시 돌봄 시스템 병행 운영 •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 시설 운영 • 최중증 돌봄 시설 정원 규모 하향 조정 • 서비스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충
	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 돌봄서비스 통합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비교가 가능한 보호자(장애인 부모) 정보 플랫폼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	• 지원 인력의 발달장애인 이해 등 교육 필요 • 추가급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종사자 장기근속 유도

1)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돌봄서비스 정보 수집 경로

○ 같은 처지 부모들 간의 교류를 통해 돌봄서비스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음

- 주변 타 서비스 이용자(부모)를 통해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보 습득 및 인지

"주위에 골고루 뭐 거기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간활동서비스센터, 그 다음에 통합돌봄, 평생교육센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알고 있는 거는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그런 정도요." (참여자 A2-2)

- 부모연대조직을 통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정보 습득

"OO구 주민은 아닌데 OO구 부모회가 있어요. 졸업하고도 회비를 내는 거죠. 회비를 내고. 왜냐하면 제가 정보를 들을 통로가 없기 때문에… 회비를 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얻기도 하고…." (참여자 B-1)

○ 주간이용시설 등 복지시설 종사자를 통해 돌봄서비스 정보를 습득함

- 현 서비스 이용 기관 종사자를 통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보 습득

"저희 센터 원장선생님이 지금은 바쁘셔서 그렇기는 한데 1년에 2번, 3번 정도 엄마들 모여서 얘기하시거든요. 밥도 사 주시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정보라든지 기관별로 가 보면 다른 기관들도 가 보시고 그런 얘기들 좀 해 주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기로에 서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통로죠." (참여자 C-1)

- 주간이용시설 관계자를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정보 인지

"주간보호센터를 원장님이 매일 전화해서 애하고 매일 타협을 해서 데려가고 그랬는데 그때 알게 된 게 24시간 돌봄이었어요. 그때 이 주간보호센터 말고 다른 주간보호센터 선생님이, 야, 긴급돌봄 있잖아요. 긴급돌봄 선생님이 긴급돌봄은 긴급할 때만 가는 건데 24시간 돌봄이라는 게 생겼는데 한번 신청을 해 보라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참여자 A1-3)

○ 졸업 전 학교 선생님의 안내로 돌봄서비스 정보를 알게 됨

- 과거 주간이용시설이 유일한 주간돌봄서비스일 때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이용

"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그 주간활동 뭐 주간보호 이런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해 보라고 해서. 다 해도 자리가 없는데 한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갔어요." (참여자 C-1)

- 특수학교 정보제공을 통해 주간이용시설에 대해 인지

"우리 애도 할 것 같았는데 못하는 게 있으니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전공과를 지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때 학교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있다. 그때 저는 이런 거를 알지도 못 했고 들어 보지도 못 했고." (참여자 D-1)

돌봄서비스 선택 기준

○ 최초로 접하는 정보, 돌봄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학교 선생님의 추천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선택함

- 과거 간접적 경험(주간이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으로 서비스 선택 시 제외

"저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본 적은 없고, 우리 아이도 1급 지적장애인이면서도 저한테 박힌 이미지는…. 옛날, 제 아이 낳기 전부터 주간보호센터 그러면 정말 중증에,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 안에 종일 있고… 가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해 주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저희 아이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낸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참여자 D-2)

- 여러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처음 접하는 정보로 선택

"최근에 조금 들어 봤거든요.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거를.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방과후 주간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거기만, 그 주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저기가 있다는, 기관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또 옮긴 게 주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적응을 잘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를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참여자 C-4)

- 장애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의 조언이 적합한 돌봄서비스 선택에 중요

"졸업할 때 특수학교 교사들이 엄마들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12년 동안 애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제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의 조언도 중요해요." (참여자 A3-2)

○ 거주지 근처, 시설의 잔여석, 장애 자녀의 수준 등에 맞춰서 돌봄서비스를 선택함

- 거주지 근처의 돌봄서비스 선택

"일단은 집에서 가까운 데서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평교가 됐든 주간보호가 됐든 주간활동이 됐든 일단 위치상으로 해서 내가 사는 반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여자 D-1)

-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중중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선택권 약함

"저는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듣고 만나고, 솔직히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좀 도전적인 행동이 있다 보니까 제가 꺼리는 거죠. 제가 그냥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또 나가라고 할까 봐 저는 그게 무서워서." (참여자 B-1)

-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도 자녀가 적응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

"저도 이번에 저기 하면서 애가 조마조마했어요. 실은 들어올 때, 물론 합격을 해서 여기 다니는 거지만 처음에는 2주를 두잖아요. 기간을 2주 두고 적응이 안 되면 못 하는 건데 조마조마해서 맨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적응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입장에서 갈 곳이 없고 뭐 할 곳 없는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마음 아프더라고요…." (참여자 A1-2)

○ 장애 자녀의 특성에 대한 부모의 자가 판단으로 돌봄서비스를 선택함

- 이용자 부모 나름대로 주간돌봄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서비스 이용

"저희 아이는 이제 잘 걷지 못하니까 이런 긴급돌봄이나 낮주간활동은 이용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렇게 되면 1대 1로 붙어 있어야 되고, 뭔가가 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간보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A2-1)

- 자녀 특성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돌봄서비스 선정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의 특성상으로는 주간보호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A2-2)

돌봄서비스 이용접근성

○ 이용자(부모)들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질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함

- 다양한 돌봄서비스 공급으로 부모의 선택권 강화

"예전에는 대기를 해야 됐어요. 이용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게 목표였거든요. 우리 아이에 맞는, 내가 원하는 데. 왜냐하면 대기를 한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골라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온 거예요, 지금 현재는." (참여자 A2-2)

- 유사돌봄서비스 확대로 질적 서비스에 대한 부모 욕구 증가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갈 데만 있다면…. 이런 걸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수준은 아니고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환경을 바라는 거지." (참여자 A1-1)

○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 존재

"낮주간활동 뭐 이런 데. 이런 것도 보면 다른 주위의 엄마들한테 물어봐도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도만 얘기해도 '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참여자 A2-1)

- 정보의 부재로 돌봄서비스 이용을 못함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보를 알려 주지 않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도 잘 모르고, 아예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참여자 A1-1)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은 낮은 상황임

- 다양한 돌봄서비스 운영에도 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접근성 낮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그거는 일단 감사드리고. 그런데 생긴다고 해서 중증 애들은 거기서부터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간활동서비스도 많이 생겼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복지관 낮활동 프로그램도 있는데, 물론 자리는 없겠죠…" (참여자 B-1)

○ 현재 이용 돌봄서비스 기한 만료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현 돌봄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걱정

"우린 여기 2년도 아직 못 다녔으니까 여기 만족하고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슬슬 오죠. 여기도 5년이니까 엄마들이 지금 당장 내년 4월 되면 나가야 되는 엄마들이니까. 5년 차서. 그래서 주간활동으로 여기를 남겨 놓고 가는 엄마도 있어요." (참여자 D-1)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이용제한으로 서비스 이용 장벽 존재

"여기는(장애인복지관)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는 더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으니까…" (참여자 D-2)

○ 현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까다로운 이용 기준으로 부모 욕구에 대응이 미흡하며, 보호자의 온전한 돌봄휴식이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부재함

- 현 긴급돌봄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조건으로 유명무실

"제가 알기로 1년에 20일인가 그렇게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제한이 있는 데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이 심리적인 어떤 휴식이 필요할 때 이용해요. 그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신과적인 어떤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엄마가 심한 우울증이라든가 진짜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게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상황…." (참여자 A2-2)

- 돌봄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 긴급돌봄서비스

"저는 입원을 해야 되면 보통 한 3주, 뭐 그런데, 2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저하고는 한 번도 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이를 떼어 놓으려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수술 날짜 잡아 놓고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아파서 그래서 못 했는데. 그때도 거기 긴급돌봄에 저기를 했는데 처음 그거 하면서 되게 복잡했어요. 서류를 내는 것도 와서 받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으로 해서 그렇게만 받고 막 그래 가지고…." (참여자 A2-1)

- 긴급돌봄에 대한 이용제한 사항 완화 필요

"그냥 희망사항인데 사실 거기에 그런 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희가 네 식구인데 넷이 해외여행을 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장애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긴급돌봄 사안이 아니잖아요." (참여자 A1-1)

○ 중고령 장애인 대상 지역돌봄서비스가 없어 부모의 불안감이 큼

-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서비스가 부재하여 부모 심적 부담 큼

"여기도 사십 대가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부모님들이 70대 중반 넘으셨더라고요. 뭐 많이 가셨나 봐요. 어디 갔다가 며칠 만에 또 퇴소당하고. 그래서 그 예전 날에 주간보호에 제 또래의 이용자가 엄마가 벌써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분이 70대 중반쯤이 되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시설에 보내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D-1)

- 현재 주간돌봄서비스 이용하지만 부모 사후에 장애 자녀 돌봄서비스 부재로 불안

"이제 제가 70이 가까워서… 70이 넘으니까 그 옆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친구 같은 애 키우는 아이가 또 하늘나라를 가고 하니까 진짜 당면한 거야. 내가 죽고 나서 그 아이의 케어, 이런 거 눈으로 보니까 아, 나 진짜 이게 생각만이 아니라 이게 내가 당면한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C-1)

2) 주간이용시설 인식 및 평가

긍정적 인식

○ 이용자(보호자)들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부모에게 돌봄휴식 제공, 이용자에게 지역사회 내 보통의 삶을 제공하고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로 인식함

- 주간이용시설은 부모 돌봄휴식에 기여

"우리 아이가 타인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 주간이용센터를 이용하게 되고 시간이 평균보다는 더 많은 저기(휴식)를 갖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A1-2)

- 주간이용시설은 부모휴식 제공 외 이용자에게 규칙적인 보통의 삶 제공

"9시에 출발해 가지고 집에 한 4시 반쯤 오는데 일정하게 다니는 데가 있다는 것이. 저도 물론 이제 휴식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한테도 되게 가장 그게 유익한 점이 아닌가." (참여자 A1-1)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과거에 비해 이용 장애인의 자립역량 향상에 도모하고자 노력

"상태가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딱 담당이 있어서, 우리 애는 찬송가 담당하고, 한 아이는 쓰레기통 다 갖다 버리고, 한 아이는 화장실에 가서 수건 갖다 다시 체인지하고, 화장실 휴지 다 있나 보고. 그렇게 분담해서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니까 선생님이 굳이 동동거리면서 다닐 필요는 없더라고요. 단 손이 가는 애들 몇 명은 선생님 손이 가지만 나름대로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A3-1)

○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간이용시설 종사자를 신뢰하며 전문성 있다고 인식함

- 다양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이용시설 장기이용자의 만족도 높음

"주간보호센터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선두주자 같아요. 아니,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외부로 많이 캠프도 가고, 애들 데리고 나가고 나름대로 안에서 치료도 다 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또 그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참여자 A3-1)

- 주간이용시설은 서비스 전문성, 체계성, 다양성 갖추고 있음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늘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다방면에 지금 영역에 걸쳐서 아이들을 충족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특수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공부를 한 분들이 책임을 지고 교사라는 입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참여자 A3-2)

-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선생님들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좋은 인식, 그런 장애인 인식이 제대로 잘 돼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은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성 있게 하니까. 아무리 뭐 선생님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런 밑바탕에 그러한 진정성이 없으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그거를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A2-2)

○ 주간이용시설 장기이용자는 시설을 제2의 집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종사자의 책임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다른 돌봄서비스보다 이용을 선호함

- 주간이용시설 장기이용자는 가정처럼 편안한 곳으로 인식

"처음 시작할 때처럼 부모와 가정을 대신해서 와 있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주간보호센터가.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집처럼 애가 거기서 편안하게 있다 오는 거. 그거를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엄마가 옆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고 오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생겼을 때요. 과연 이 주간보호센터처럼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 줄까? 집처럼 애가 편안하게 생각해 주는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A2-2)

- 인력 전문성과 안정성이 있어 다른 돌봄서비스 보다 이용 선호

"주간보호센터는 일단 교사 책임하에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교사도 그렇게 잦은 이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아이들을 가장, 잘 파악하시고. 얘가 이러면, 이렇구나." (참여자 A3-2)

○ 다수의 이용자가 과거 단순 돌봄 중심에서 최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체감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함. 특히 시설 관리자 마인드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를 체감함

- 과거 서비스 이용 전 단순보호 기능만 하는 기관으로 인지하였으나 지금은 예전에 비해 프로그램 다양성, 개별지원 강화 체감하며 만족

"그때는 주간보호센터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아무 프로그램 없이 그냥 쉬고, 그냥 보호 차원에서 있다가 오는 저도 그때 그렇게만 했거든요." (참여자 A3-1)

"지금은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개인별로 개인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C-4)

- 주간이용시설 관리자 마인드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 체감, 예전 대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시설장이나 팀장님들의, 그 책임자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환경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게 많이 바뀌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계속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거기서 그냥 돌봄 그런 수준이었고….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냥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뭐 하고, 아니면 외부 프로그램 나가서 그냥 동네 한 바퀴, 아니면 그런 데 한 번씩 돌고 오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이 시간 시간별로, 요일 요일별로 아주 다 있어요." (참여자 A2-1)

부정적 인식

○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미약한 시설, 과거의 단순 돌봄 및 보호 중심 서비스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함

- 간접 경험으로 이용자 인권 보장 문제, 종사자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짐

"인격적인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다음에 거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엄청." (참여자 C-3)

- 간접 경험으로 주간이용시설을 보호중심 서비스 제공 시설로 인식

"이용은 못 했는데 저는 엄마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보호 개념. 교육이 아니라 보호 개념으로…." (참여자 B-1)

○ 주간이용시설이 정원 미충족 상태인데도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

- 시설 입장에서 정원충족 의지 없고, 기존 이용자는 안정적 서비스 이용 욕구 존재

"주간보호센터가 예전에는 15명씩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11명, 12명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그만큼 센터에서는 이미 그거로 자리를 잡고 그냥 그대로 쭉 가겠다는 거거든요. 더 늘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를 아니까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참여자 A2-2)

○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을 제한하는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

-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도전적 행동 등) 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분들은 우리 기관이나 우리 센터에 이용하기 적당한 장애인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어머님들도 적당한 협조 좀 할 수 있고, 기관을 이용하는 데 관심 좀 적당히 있고. 이용자들도 너무 힘든 장애인 말고 그저 우리

센터에 준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결국은 요구하더라고요." (참여자 D-2)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룹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타해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룹에서 제외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참여자 B-2)

"도전적 행동, 돌발행동 이런 거는 지금 보면 그렇게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다니다가도 애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거를 거기 센터 내에서 걔를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참여자 A2-1)

○ 장기이용자 부모의 텃세가 형성된 주간이용시설은 신규 진입 및 신규 이용자 교류의 어려움이 있어 부정적 이미지가 생김

- 주간이용시설은 대부분 장기이용자가 많아서 부모 텃세가 형성되어 다른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진입이 어려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간보호센터 다녔던 사람은 다니겠지만 거기 다녔던 사람은 적응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주간보호센터마다 부모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만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거기를 엄마가 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엄마들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잘 할 수 있을까?" (참여자 A2-2)

"한 20년, 30년 다녔던 엄마들은 친하고…. 저는 또 중간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정보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참여자 D-1)

○ 타 돌봄서비스(최중증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확장되었으나 아직도 이용자는 심적으로 약자(을) 입장에서 서비스 중단이 염려되어 정당한 요구를 하기 어려워하며, 일부 시설 종사자의 권위적 태도에 상처 받고 갑질로 인식함

- 주간이용시설 장기이용을 위해 부모들 간 갈등 회피, 권익주장 어려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일단 주간보호센터 자체가 권위적이에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다니잖아요. 어머니들끼리도 그 안에서 똘똘똘 같이 뭉쳐야 돼요. 센터 운영들이랑. 거기서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들은 을의 자세예요." (참여자 B-2)

- 이용자는 심적으로 약자(을) 입장으로 서비스 중단이 염려되어 정당한 요구가 어려움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상처들이 자꾸 나요. 엄청나게 진짜 심하게. 그래도 엄마가 말을 않고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속이 상해도 그냥 말았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는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무작정 그냥 거기 그 지시대로만 해야 되고, 그 방식대로만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말은 못 하고." (참여자 C-2)

-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권위적 태도로 인한 심리적 상처 및 시설 갑질로 인식

"새삼스럽게 신변훈련을 시키라고 하니까 저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기관에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외부활동 못해요. 배제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친구들은 안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거에 이미지 탈피를 못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갑질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는 거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기도 해요." (참여자 A2-2)

○ 소규모 시설의 공간 제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존재하고 있으며,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다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

- 주간이용시설의 협소한 공간으로 실내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환경적인 방면에서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렇게 일단 공간이 넓으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원활하게 내지는 다양하게 될 것 같고." (참여자 A2-2)

"단독주택 조그만 데서 체육 한다고 마루에 그냥 탁 붙어서, 이렇게 붙어 가지고 체육 한다고.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그것도 안 좋고. 그리고 또 한 군데도 거기도 애들이 거의 앉아 있으니까. 좁으니까 프로그램 한다고 낮에는 방에 들어가서 쉬는 것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A1-3)

- 주간이용시설 주방, 화장실 등 기본적인 설비 열악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악하죠. 안에 만들어 가지고 쓰고. 뭐 주방이 같이 안에 있다 보니 음식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참여자 D-1)

"화장실을 가 보니, 우리 애가 화장실을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한번 화장실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화장실이 엄청나게 좁은 거예요. 거기에 좁은 공간에 시커먼 세탁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게 무서워서 화장실을 안 들어간대. 그래서 그냥 바닥에 오줌을 싸고 그런 습관들도 나왔었어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환경 이런 것도." (참여자 C-2)

주간이용시설의 이용 의향 주요 요인

○ 다른 돌봄서비스의 이용기간 제한 및 적응 불확실에 비해, 주간이용시설에 익숙함과 안정성을 느끼는 이용자와 부모는 주간이용시설 계속 이용을 희망함

- 다른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녀의 적응 불확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선호도 떨어짐

"만약에 낮주간활동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서 못 보내겠대요. 애가 거기 가서 적응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여기서 나가면 일단 여기는 자리가 없는 건데 주간보호에서. 다시 못 들어올 것 같고 여기를 낮주간을 한다고 해서 애가 두 달, 세 달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 하면 다시 여기로 오고 싶은데 여기는 또 자리가 없고. 그러면 애가 갈 데가 없을까 봐 벌써 그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참여자 A2-1)

- 장기이용한 주간이용시설은 이용자에게 안정감 제공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같이 쭉 왔던 친구들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프로그램에 엄마라든지 아이가 쭉 이렇게 저희는 한 1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과 엄마와, 이렇게 가정과 기관이 쭉 오다 보면 체계가 잡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정성이 있어요." (참여자 A1-4)

"주간보호센터 원장님은 선생님들이 얘들을 거의 24시간 잘 때 빼고는 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회의하면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오래 다니면서." (참여자 A1-3)

- 유사 서비스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욕구 존재하나 이용기간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

"평교 같은 경우는 가고 싶지만 5년이라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5년 다니고 그다음에 갈 데가 있다고 하면 혹시 옮겨 볼 마음도 있지만 기약이 없잖아요. 대기를 해 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 (참여자 A1-1)

○ 다양한 수준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시설의 이용자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선호함

- 다양한 지적 수준의 이용자로 인한 시너지가 있어 주간이용시설 계속 이용 선호

"여기에는 자폐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은 그 여자 친구들. 말 잘하고 대부분 얌전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여기 오면서 학교 때보다 더 많이 좋아졌어요. 같이 어디 가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에 큰 방해 없이 이렇게 있고, 같이 어딘가를 가고 이런 게 여기 주간보호 다니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자폐 친구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수준이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 A1-4)

"우리 아이만 조금 언어가 떨어지고 안 되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상호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만족감이 매우 좋아요." (참여자 B-1)

○ 유사 돌봄서비스 수준의 이용자 개인별 지원 서비스 제공 시 주간이용시설 이용할 의향이 존재함

- 주간활동과 같은 서비스 제공 시 주간이용시설 이용 의향 존재

"만약에 주간보호센터가 그렇게 인력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거의 주간활동서비스처럼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가 없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D-2)

○ 이용자 제한, 단순 돌봄 등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면 주간이용시설 이용을 고려함

- 이용자 제한 없으면 주간이용시설 이용 희망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죠. 그들이 문을 조금 더 폭을 넓히고 이용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면서, 예를 들어 내 아이의 단점과 그런 거를 충분히 좀 더 반영해서 그거를 커버해 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다면 충분히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참여자 B-2)

- 과거와 다른 주간이용시설 운영체계면 이용 의사 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용 거부 염려

"이제 전하고는 좀 달라진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저는 한 번쯤은 또 부딪혀 보고 싶어요. 가서 우리 아이도 또 이렇게 사회생활, 커뮤니티 이렇게 여럿이 공동생활도 또 좀 할 수 있게 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해 보고 싶은데 받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여자 D-2)

○ 고령자용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장애 자녀가 중·고령 연령 진입 시 이용을 고려함

-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제된다면 중고령 시기에 주간이용시설 이용 고려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를 저희 아이가 다닌다면 지금은 안 다닐 것 같아요. 좀 더 나이가 더 많아졌을 때는 생각해 볼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노인요양원에 갔었거든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모습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 가 봤는데 거기도 뭔가 이렇게 시간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저는 우리 아이가 좀 더 나이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갔을 때 그냥 아이가 가서 즐겁게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즐거우려면 뭔가 자극을 줘야 하잖아요. 뭔가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선생님들의 좀 보호를 받으면서 즐겁게 생활하다 오면서 생활하는…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 기능도 배우면서 문화 여가도 좀 하면서 그렇게 있다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D-2)

서비스 이용 중단 사유

○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이용자는 계속 이용 의향과 상관없이 기간 만료 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게 됨

- 복지관 내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이용기한 만료로 이용을 중단함

"대기자로 1년을 기다렸다가 됐다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복지관에 있는 거기를 5년을, 이용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다가 종료를 하고 여기 왔어요." (참여자 A2-2)

○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노화에 따른 상대적 기능(신체적·정신적) 저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중단함

- 최중증 도전적 행동 장애인 자발적 서비스 중도 포기

"어느 한 군데는 갔는데 타해가 발생해서 그 어머니가 너무 강력하게 그만두지 않으면 기관을 서울시청에 올리겠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스스로 그만뒀고. 다른 곳들은 제가 너무 미안하고 계속 내 욕심만 저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제 스스로 그만뒀거든요." (참여자 B-2)

- 현행 주간이용시설 운영체계로 신체적 노화 중고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어려움

"여기에서 나이가 들었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만둬야…. 엄마가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원장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11명, 12명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아파 버려 가지고 신체가 막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한 친구 때문에 선생님 두 명이 붙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진해서 그만둬야 되는 거에요…." (참여자 A1-4)

- 신체적 정신적 수준 저하로 계속 이용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등 심적 부담감 형성

"저희 아이가 여기를 몇 십 년째 이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최고 중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음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뭔가가 센터에서 뭘 할 때도 우리 아이 때문에 이게 좀 일을 하면서 좀 막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들이를 가더라도. 저 아이 하나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고, 식당을 가도 그렇고 이런 게 있잖아요." (참여자 A2-1)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함

- 도전적 행동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으로 서비스 중단

"우리 아이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도전적인 행동이 나왔어요. 아이가 여기서 계속 도전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거 이해를 못하고…. 계속 도전적인 행동이 나오면 선생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이 본인도 힘들지 않겠냐. 내가 이 나이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그 젊은, 자식뻘이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항상 상처받고 살았는데 또 가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속 편하게 집에 있겠다는 분이 사실은 주변에 많아요." (참여자 B-1)

-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로 서비스 중단

"아이들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어머니가 그럼 여기서 케어를 하세요. 딱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챌린지를 가게 된 거예요." (참여자 C-2)

신규 이용자 모집 영향 요인

○ 주간이용시설과 유사한 돌봄서비스의 다양한 장점이 신규 이용자 모집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

- 직업생활과 연계 가능, 무료 이용료, 1:1 또는 1:2 개인별 지원, 활발한 외부활동 등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1:1지원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높음

"최중증 돌봄이니까 완전 1대1로 선생님들이 한두 분이 같이 우리 아이를 해 주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거기 낮활동에서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여기서도 수행능력이 좋고, 타해가, 이용자 갈등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참여자 B-2)

- 주간활동서비스는 개인 의사 반영, 직업생활 연계, 활발한 활동 위주 등으로 만족도 높음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의사 반영을 해서 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참여자 C-3)

"제가 낮활동을 이용을 해 보니까 거기도 거의 활동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어요." (참여자 B-2)

"주간보호센터에서 많이 이탈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간활동서비스가 생기는 바람에 주간활동서비스에 딱 들어가면 직업을 갖더라고요. 거기서도 직업을 갖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도 직업이 있는 거예요. [중략] 그 직업으로 가져서 그 식비를 내고 하니까 모든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청 선호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B-1)

- 평생교육센터는 보호와 교육을 병행하여 만족도 높음

"여기는(평교) 너무 만족스러운데 사실 다 어디나 보호 개념이죠. 우리 아이들을 집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안정되고 보호되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D-2)

○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주간이용시설 간 시설환경 및 서비스 차이로 이용자 모집에 차이 발생

"주간보호센터가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 아주 열악한 데도 있어요. 아마 그 티오가 비는 데는 제 생각인데 막 좋다고 널리 알려진 데는 없을 것, 꽉 찼을 것 같고. 좋다고 하는 데는 좀 심한 애는 안 받으려고 해요. 아까처럼 잔잔한 호수인 데는 괜히 돌 던지기 싫어서 거기는 또 센터장님이 가려 받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아유, 누구나 오세요.' 이런 데는 시설이 진짜 열악하거든요." (참여자 A1-3)

○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또는 입소문으로 애초에 돌봄서비스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함

-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또는 입소문으로 선택하지 않음

"저에게 주간보호센터 이미지는 너무 정적이고, 무료하고, 뭔가 정체되고 한 공간에 모아 놓는다. 이런 이미지로 저한테는 있어요." (참여자 D-2)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주간보호센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어떤 사람도 '거길 왜 가?'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거기 주간보호센터인데 거기를 갈 거야?'라고 저한테 오히려 제가 이상한 엄마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그 이미지마저. 그러면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아예 그냥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었죠." (참여자 C-3)

3) 주간이용시설 발전 방향

지역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중추적 역할

○ 이용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써 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을 기대함

- 주간이용시설 이용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변경

"학교는 제한이 없잖아요. 다 들어가고 구만 가까우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제한은 두는 게 맞는데, 보통 대기하고 인터뷰하러 가면 본인들의 상황에 맞는 아이들을 원하잖아요." (참여자 A1-1)

- 주간이용시설의 이용자 제한 개선 필요

"신변처리를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바랐으면 좋겠어요. 신변처리가 정확하게 뭐 어디까지 되느냐?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느 저기 한 곳에 신변처리 하고 혼자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집에서 데리고 있지 뭐 하러 거기를 보내겠어요." (참여자 A1-2)

○ 이용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를 맞이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 지역사회 익숙한 곳에서 자연스런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의 역할 필요

"주간보호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 바뀔 때마다 엄마도 같이 그런 불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나이가 노화 되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과연 여기서 [중략] 여기에서 우리 아이 생애주기에

맞는 거를 여기서 다 해결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여기 선생님들은 최소한 여기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전문성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내가 눈 감기 전에, 눈 감을 때까지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애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A2-2)

○ 이용자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인 주간이용시설에서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함

- 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보호 역할도 필요

"제 아이가 주간보호 다니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여기서 단기 보호까지 운영이 돼서 낮에는 제가 활동하고, 엄마가 갑자기 일이 있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선생님, 오늘 제가 저기 해서 거기서 오늘 좀 재워 주세요'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뭐 한 일주일이면 기간을 놓고 거기서 이렇게 주 단기같이 운영이 되는 시스템. 저는 그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참여자 B-2)

- 부모 부재 시에도 이용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만약에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하면 당장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거기서 체계적으로 병원도 어디 가는지 알아서 다 체계적으로 해 주고 저도 그런 거를 바라고 있어요." (참여자 C-4)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 지원기관으로서 주간이용시설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함

- 부모 고령화 대비 지역돌봄 지원체계 부족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필요

"저나 애 아빠가 아직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건강하고 하니까 충분히 케어가 되는데 계획이 돼요. 계획이 되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언제일까? 항상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다가 그쯤 그 단계가 되면 딱 막혀요. 그거는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나중에 얘가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부모가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고.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는 곳은 없어요." (참여자 D-2)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의 고령화 대응 기능 필요

"이용자 분 중에 40대 후반 50대 막 이렇게 되시니까 그런 쪽도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계속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원장선생님 말로는 그 노인시설 쪽에서는 그런 노인과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기를 꺼려한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영역의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전문인력도 아니고 그냥 요양원이나 요양센터, 병원 이런 데로 가게 될 텐데 그럼 케어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여자 A1-4)

프로그램 다양화

- 이용자 고령화 대응 프로그램(전문적 건강관리 및 운동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의료서비스 등) 욕구 및 필요성이 증가함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의 중고령화에 대비한 전문적인 운동프로그램 강화 희망

"4050이 되면 분명히 보행에도 문제 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산책 그런 거, 멀리 안 나가도 산책 같은 거, 운동 쪽으로 많이. 건강관리…." (참여자 A3-2)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전부 하는 이야기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운동이 아니라 전문적인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우리 애들의 운동을 담당해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참여자 C-3)

- 주간이용시설 병원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

"그 보건소 연계해서 저희 아이들 건강 체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참여자 A1-4)

"병원하고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전문적으로, 우리 애들이 표현이 부족하잖아요. 표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팠을 때 뭔가 아픈 거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C-3)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즉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경험 등을 필요로 함

- 주간이용시설 지역사회 시설 연계를 통한 활동 긍정적 변화

"저희는 그래도 연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거 요새 나라에서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직접 수영도 하고 뭐 너무 좋아졌어요. 헬스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니까. 진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참여자 A1-4)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생활 연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연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높음

"어느 정도 한 서른이 되다 보면 이제는 뭔가를 복지관을 갈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게 이 미용 있잖아요. 머리도 지금은 원장님 아시는 분이 와 가지고 해 주시니까 완전 좋은 거예요. 등산 돼, 병원, 치과 돼, 이 미용 연계해서 해 주셔. 그리고 주민센터 거기 공간 이용해서 또 뭐 체육이라든지 이런 거 해 주셔. 그러니까 돈을 내고라도 만족도가 높으니까 있는 거예요." (참여자 A1-4)

○ 단순 돌봄이 아닌 실생활에서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 훈련 교육 강화를 희망함

- 이용자(장애인)의 스스로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중심 운영 희망

"모든 거를 다. 먹여 주고 그냥 애를 스스로 하게끔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무조건 먹여 주고 닦아 주고. 침 흘리면 침을 닦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자기가 하게끔 저는 선생님한테 항상 그렇게 말을 좀 하라고 그러죠. 입을 닦아라. 신발을 신어라.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참여자 C-2)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하다못해 조그마하게 김밥을 싸더라도 김밥 하나 싸서 먹을 수 있고, 자기 손으로 물 따라서 먹고 자기 주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만 된다면 그렇다면 그냥 보낼 것 같아요." (참여자 C-3)

"우리 친구들은 어차피 부모 떠나면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오늘은 프로그램 중에 요리 프로그램에 투입을 시킨다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자 B-1)

○ 믿을 수 있는 주간이용시설에서 보호자의 돌봄휴식과 이용자의 자립생활 훈련 욕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희망함

- 신뢰가 담보된 곳에서 부모들의 온전한 휴식 절실

"그냥 우리 엄마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쉼이 필요하다. [중략]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아이들은 잘 안 떼어 놓아 가지고 떼어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디 센터에서 뭐 한다든가 그러면 믿고서 하루 저녁, 그런 것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여자 A2-1)

- 부모의 온전한 휴식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숙박체험 욕구 높음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때 한 7, 8, 5, 6년 전만 해도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한 달에 한 번은 주간보호센터 안에서 자는 거를 했었어요. 아니, 그거 왜 안 하시냐고 하니까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그런 그 프로그램 자는 거, 주간보호센터에서 자는 거…." (참여자 A1-3)

- 주간이용시설 숙박체험은 자립생활 역량강화

"주간 경쟁력이 떨어진 게 맞아. 그런 좋은 장점을 없앤 거예요. 어느 순간에…. [중략] 우리 자폐 쪽은 정말 그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하루를 어딘가에 자야 되고 그게 훈련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랑 강원도라도 가면 낯선 곳에서 잘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그래도 저희는 늘 두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재우던 거를 어느 순간에 없앴어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장점이었던 게 없어진 거예요." (참여자 A1-4)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 돌봄서비스 이용 진입자 대상으로 현 주간이용시설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주간이용시설의 긍정적 변화에도 과거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어 돌봄서비스 진입자들에게 홍보 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교류하고 있는 선생님, 계속 만나고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때 특수반 선생님하고 중학교 때 특수반 선생님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면 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은 학교보다 더 좋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냥 주간보호센터 선생님이 어디다 홍보하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하면 많이 갈 것 같대요. 그런데 이미지가 그 굳혀져서 그런 게 처음부터…." (참여자 A3-1)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모집을 위해 적극적 홍보 필요

"일단 주간보호센터가 좀 더 전문성, 지금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전문성을 좀 기르고. 일단 우리 대학, 아시죠? 지방대나 이렇게 좀 안 좋은 데들은 다 저기 하잖아요. 홍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배짱 튀기고 있었거든요." (참여자 A3-2)

○ 학령기 이후 적절한 돌봄서비스 선택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이 필요함

- 학령기 이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므로 학교 대상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설명회 필요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왜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마다 가서 설명회 하듯이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 고3이나 아니면 전공과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 한 거 이만큼 갖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A2-2)

- 특수학교 및 학급에서 학령기 이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시스템 필요

"아무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졸업을 시켜 버리면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좀 그런 정보를 줘서 그런 거를 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인 거 같아요. 그게 필요해요. 사실은. 되게 필요해요." (참여자 A2-2)

4) 주간이용시설 운영 개선 정책 제언

시설 인프라 개선

○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이용시설의 이용 선호도가 높아, 이에 대응한 공급 확대가 필요함

-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이용시설은 입소문에 의해 이용 욕구 높아 여석이 없음

"지금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중증은 아니에요. 자기의 신변처리가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선생님이 도와주기는 해도. 그런데 거기서는 자리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C-4)

○ 주간이용시설에서 주간돌봄과 함께 응급 및 일시 돌봄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현 긴급돌봄 문제를 보완하는 응급 및 일시돌봄체계 주간이용시설 도입 희망

"갑자기 지금도 엄마가 입원해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시설로 밖에 갈 수가 없고 아니면 형제들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중략] 만약에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 게 체계적으로 같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낮에 이용하고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A2-1)

- 주간이용시설이 제 2의 집 역할을 위해 단기보호 역할 병행 필요

"주간보호가 중심으로 해서 그냥 아까 우리 집이 제1의 집이라면 여기가 제2의 집, 심리적으로 제2의 집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거로도 그런 거를 갖춰서 잠도 재울 수도 있고, 단기보호, 주·단기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A2-2)

○ 중고령 장애인 특화시설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주간이용시설이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화 필요

"이제 아이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일단 저희가 노인이 되듯이 노화가 빨라지면서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 주간센터는 딱 나이 제한을 뒀어요. [중략] 주활은 아이들이 젊었을 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 때 이용하면 다 따라간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는 4050이여야 해. 우리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참여자 A3-2)

- 중고령 장애인의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이들을 위한 서비스 계속 제공 필요

"주간보호센터 있는 얘네들이 나이 먹어서 다른 데 가서 또 찾아서 전전긍긍 하느니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그대로 이게 주간보호센터에서 반을 나누더라도 반을 선별을 하더라도 [중략] 데이케어로 넘어가기 전에 까지만 이라도 이 주간보호센터를 유지하면서 다니면…. 제 바람도 그렇지만 우리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참여자 A3-1)

"애들이 그대로 늙어서, 여기서 늙어서 그대로 노인시설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우리 애는." (참여자 A1-3)

○ 최중증 돌봄 주간이용시설은 정원 규모 하향 조정이 필요함

- 최중증 돌봄을 위해 주간이용시설 정원 규모 축소 변경 필요

"우리 아이는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낮활동, 주간활동이 안 된다. 나는 꼭 주간보호센터에 가야 되겠다 하면 주간보호센터에서 너무 사람을 많이 받지 말고 이렇게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을 이 챌린지로는 다 수용이 안 되니….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식으로 하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참여자 D-2)

- 제한적 인력 규모로 인해 주간이용시설 이용 규모 최저기준 필요

"누군가가 왔는데 거의 신변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온전히 혼자 선생님이 걔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게도 영향이 가잖아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여자 A1-1)

○ 서비스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충이 필요함

- 주간이용시설 공간 확장은 이용 장애인에게 긍정적

"공간이 작거나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답답한 면이 있을 텐데 그 공간 활용을 넓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 있을 때는 너무 작아서 그게 참 힘들었는데 4층까지 다 쓰니까 먹는 식당도 따로 있고, 운동 체육 하는 데 따로, 공간이 다 따로따로 배치가 돼 있고, 남아, 여아 따로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참여자 A1-2)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의 휴식 공간 확보 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중증이다 보니까 오후에 좀 피곤하고 그러면 또 경기약도 많이 먹어요. 그러면 맨날 가면, 센터 가면 졸고 있거든요. 뭐 좀 어디 소파나 이런 데 가서 편안히 누워 있다가도 그런 것도 좀 쉴 수 있는 공간, 워낙 공간이 좁고 사람은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참여자 A2-1)

- 낙후되고 좁은 곳이 많아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신규 모집에도 영향

"시설들도 오래된 것들이 많으니까 낙후된 곳이 많아요. 대부분 이런 1층이나 이런 건물 하나에요. 건물 하나에서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일단, 학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단 젊은 엄마들이 시설도 중요해요. 요즘. 시설 굉장히 중요해요." (참여자 A3-2)

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비교가 가능한 정보 플랫폼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 주간이용시설 정보에 대한 공식 채널(정보 플랫폼) 운영 필요

"엄마들이 이런 시설 이용하고 싶다. 진짜 모르는 엄마들 많거든요. [중략] 그 엄마들이 알고 싶어 해도 모르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자 D-1)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그런 거를 전부 다 과감하게 어떤 사이트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전부 다 공유해 가지고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A3-2)

○ 돌봄서비스 이용자 특성(돌봄 이해를 돕기 위한)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 시스템의 욕구가 존재하며, 이용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필요

"우리 아이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OO가 어떤 아이구나라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갖춘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B-1)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제공 시스템 필요

"직장만 다니고 애만 오고 엄마들하고 교류가 없는 분들은 아예 몰라요. 정보를. 그리고 엄마들끼리도 자꾸 만나서 하면 엄마들끼리의 정보가 더 진짜 거의 한 80, 90%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라도 이런 낮주간활동이 있다. 긴급돌봄이 있다. 그런 것도 좀 장애인 부모들한테 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A2-1)

서비스 품질 향상

○ 종사자 처우개선(추가급여 등)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 돌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이직도 이직율도 높고 그러니까 월급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게 나가기도 하고 영향이 미치니까. 거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 꾸려 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참여자 A1-1)

- 최중증 돌봄 추가급여 제안

"최중증 친구들이 어디로 가면 그 선생님들한테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편한 친구 보고 싶지 힘든 친구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그만큼 힘든 친구들을 케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추가급여를 좀 지급한다

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최중증 친구들은 도전적인 행동이 심하니까 보기가 힘들잖아요." (참여자 B-1)

○ 서비스 지원 인력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발달장애인 이해 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지원 인력 대상,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중요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내는, 발달 아이들이 일정하게 내는 소리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교육이나 그런 훈련을 좀 채용하기 전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1-1)

3 소결

장애인 부모(보호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 습득

○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들의 입소문을 통해 공유되며 이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기도 함

○ 공적 기관을 통한 적합한 돌봄서비스 연계가 아닌 개인 정보력에 좌우되어 처음 접하거나 여석이 있는 서비스가 선택의 주요 요인임

○ 학령기 이후 지역돌봄 진입 준비자 및 현 이용서비스 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이 필요함

지역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돌봄 공백

○ 과거 대비 다양한 돌봄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서비스 선택권 확대는 체감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양적 공급은 충분하지 않음

○ 돌봄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선택권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돌봄서비스 체계는 전무함

○ 돌봄에 지쳐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돌봄휴식은 대부분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고 부모의 욕구와 동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돌봄휴식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생애주기별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 내 주 돌봄자의 특성과 욕구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지역돌봄서비스의 독보적 위상을 가진 주간이용시설의 위기 봉착

- 주간이용시설 장기이용 보호자는 유사 돌봄서비스의 여러 장점(이용료 면제, 개별지원, 활발한 외부활동, 쾌적한 공간 등)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간이용시설의 익숙함과 안정감이 주는 만족감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돌봄서비스 접근에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주간이용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해 수동적 입장임
- 주간이용시설이 과거 단순 돌봄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개별지원과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설의 부정적 이미지(기존 이용자 텃세, 시설과 이용자 간 힘의 불균형, 인권침해, 중증장애인 기피, 열악한 서비스 환경 등)는 고착되어 있음. 이에 향후 유사 돌봄서비스 확대 시 주간이용시설의 신규 이용자 모집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됨
- 주간이용시설에 비해 서비스 제공 환경이 양호한 유사 돌봄서비스가 아직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고 안정적 시기에 진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30년 역사를 지닌 주간이용시설의 이용 선호도는 아직까지 비교적 높음. 그러나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용자(부모, 보호자 등)의 눈높이에 맞춘 인적·물적·공간적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주간이용시설은 유사 돌봄서비스에 도태될 수 있음

현행 주간이용시설의 역할 확장 필요

-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돌봄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현 서비스 이용 만료 후 대안 찾기는 이용자 부모에게 엄청난 당면과제로 다가옴. 이에 장애인이 수년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익숙하고 안정된 곳에서 노년기를 맞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간이용시설이 지향할 역할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의미 있는 일상 영위를 위해 외부활동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경험과 함께 자립생활 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주간이용시설은 태생부터 장애인 부모(보호자)의 돌봄휴식에 기여하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변화한 생활수준과 부모의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주간이용시설이 유사 돌봄서비스와 차별성을 가지고 지역돌봄서비스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전한 돌봄휴식이 가능한 돌봄체제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주간이용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장애인의 생애주기가 고려되지 못한 지역돌봄서비스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고령 장애인 이용 특화시설의 도입이 요구되며 이에 적합한 시설의 인적·물적 제반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 강화 및 전문성 축적의 주요 요인인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주간이용시설 서비스의 개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5장

결론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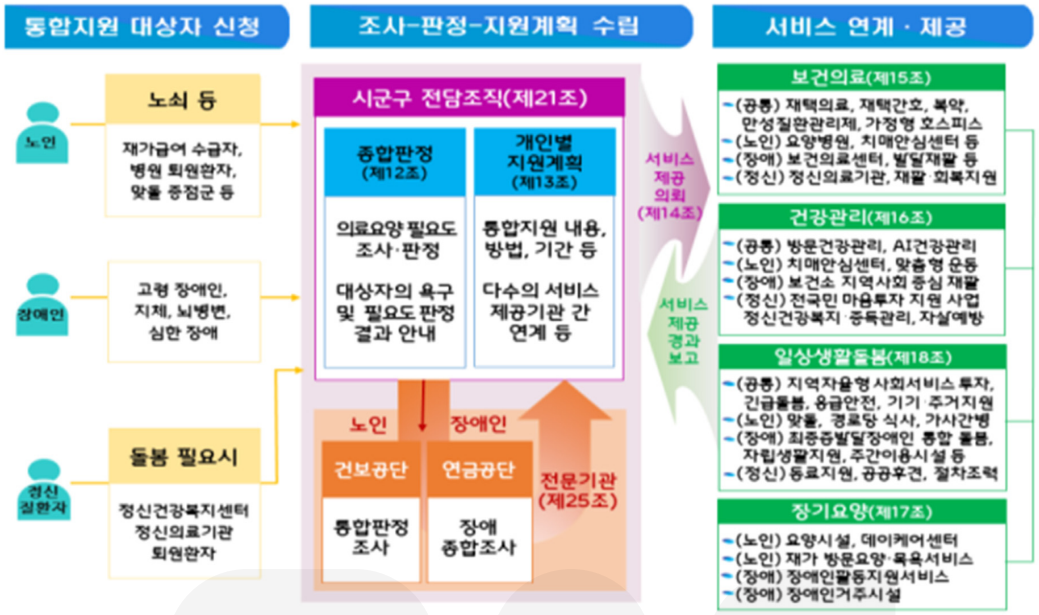
제5장

결론

1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개선방안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16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 3월에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운영 기간이 7년 정도임. 그럴게 길지 않은 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65세 미만 이용제한 해제, 사회복지공제 보험 신설, 발달장애인 지원 종사자 통합교육과정 개편 등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용자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그리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24.3.26공포, '26.3.27시행)에 따라 2026년 3월 전국 본사업으로 추진될 지역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65세 미만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지원법이지만 중고령 장애인 인구 증가 등 장애인 인구사회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책기조임을 알 수 있음



▎그림 5-1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출처: 보건복지부(2023.3.13.), 지역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토론회

- 이렇게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처럼 지역돌봄서비스 정책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모델의 한계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 이에 주간이용시설도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시설 존립의 필요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아직은 안착되지 않은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돌봄서비스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선점할 필요가 있음.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기능은 주간이용시설의 성장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그 배경은 주간이용시설이 이미 이용자 중고령화에 진입하였고 민간 주간활동서비스 수행기관에 비해 법정 복지시설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근로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이용자(부모, 보호자 등)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임
- 중고령 장애인의 주간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기관 역할과 함께 중고령 장애인의 재가돌봄 시 돌발상황(경조사, 가족여행, 가족 의료적 치료 및 회복 등)에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중고령 장애인의 긴급돌봄서비스 기능도 탑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긴급돌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중심이고 이용조건이 까다롭고 낯선 곳에서의 이용자의 적응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용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

- 이에 주간이용시설에서 중고령 장애인에게 긴급돌봄을 함께 제공하면 현행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 맞춤형 서비스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다고 기대함

○ 현행 주간이용시설 운영 목적은 장애인을 서비스 이용의 능동적 주체로 보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2024년 주간보호시설에서 주간이용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부모의 돌봄 경감은 강조되지 않았음. 그러나 향후 주간이용시설이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돌봄서비스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에 노후생활 지원과 함께 가족돌봄 부담 경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표 5-1▐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역할 변화

연도	2023년	2024년~2025년	2026년 이후 기능재정립안
명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 변경사항: 주간보호→주간이용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 ※ 변경사항: (문구 삭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을 제공함. 또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원활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사항: (추가)노후생활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사업 내용	- 일상생활 지원 : 식사 및 간식지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을 배양 - 여가활동 지원 :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취미 활동 등 체험 위주의 여가활동을 제공 - 교육·훈련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양 및 언어·인지 등의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의 이해를 위한 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교육·훈련 지원 -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이용 등 활동서비스 지원 - 특별활동 지원 : 여행, 캠프 및 기념일 활동 등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하고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서비스 지원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 지도 :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지도 - 기타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등		- 기존사업 유지&사업 추가 제안 [추가 제안 사업] - 조기노화 및 고령화 지원: 중고령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세부 내용은 기관의 중고령 이용자 규모, (조기) 노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중고령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주간이용시설 이용 중고령 장애인의 보호자(부모, 형제자매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연도	2023년	2024년~2025년	2026년 이후 기능재정립안
	- 시설장은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수행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 변화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년) :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등 낮활동 지원체계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2024년 6월) 구축 등	• 장애인복지법(2024.1.2.일부개정, 2025.7.3.시행)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자립생활 지원시설 추가 • 2022년~2024년.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 돌봄통합지원법(2024.3.26.제정, 2026.3.27.시행) : 통합지원 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5.3.18.제정, 2027.3.19.시행):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제정, 2026.3.27.시행) (약칭:돌봄통합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 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 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일상생활 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 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유형 다양화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특성(중고령화, 다수 장기이용, 도전적 행동, 만성질환, 환경변화 취약, 고령 부모, 경제적 취약성 등)을 고려한 질적 서비스 제공과 급변하는 지역돌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 유형 및 규모, 필요 공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단일 시설유형에 대한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유형별 시설에 따른 세부 운영 기준 설정이 필요함
-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해 총 6개로 구분(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되어 있는 것처럼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을 고려한 이용자 맞춤형 장애인주간이용시설유형(예시: 뇌병변 주간이용시설, 40+ 주간이용시설, 통합돌봄형 주간이용시설 등)이 필요함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확충

- 중고령 발달장애인 인구가 증가 추세이고 현행 장애인주간이용시설도 이미 이용자 중고령화에 진입한 상태임
- 중고령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한 경우가 많지만 이용연령 제한, 문제행동, 건강상의 이유로 재이용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주간이용시설 서비스를 중단한 중고령 장애인의 80% 이상은 다양한 이유(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움, 다른 이용자와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 가족돌봄 어려움 등)로 재이용을 희망함(이진승, 2019)
- 재가 중고령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여력 미미, 부모 사후의 돌봄 공백에 대한 사전준비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숙한 환경에서 노년기 전환서비스 및 미래계획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부는 2025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여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주간이용시설의 중고령 장애인이 복지부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20년 이상 주거지와 인접한 익숙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다른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매우 적응이 힘든 환경에 처해지는 것임. 이에 노후생활을 주간이용시설을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중고령 장애인에 적합한 인력 구조 및 서비스를 갖춘 특화된 주간이용시설이 긴급돌봄과 통합 운영된다면, 이용접근성이 낮은 긴급돌봄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고 부모 사후에 필요한 지역자립생활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

○ 서울시는 조기노화가 시작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치구별로 40+주간이용시설을 1개소 설치(2030년까지 총 30개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여(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보도자료, 2025.9.16.)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함. 40+ 주간이용시설 운영은 현행 주간이용시설 운영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선진 사례 참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준비될 필요가 있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잠재적 이용수요에 따른 시설 확충

○ 서울시 총인구가 매년 감소함에도 발달장애 인구는 ('20년)33,499명 → ('21년)34,185명 → ('22년)35,125명 → ('23년)36,330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연평균 2.74%의 인구증가률을 나타냄. 이는 발달장애인 조사망률 746.5명(2020년 기준, 인구10만명당)을 감안하여도 향후 10년간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수요 추정을 위해 먼저 2023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15~64세 발달장애 인구(A)에서 고용 추정 인구(B), 타 시설 이용자 수(C), 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 정원(D)을 제외한 현 장애인복지시설 미이용 발달장애 인구(E)를 산출하였음. 미이용 발달장애 인구 추정 수(E)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잠재적 이용수요 비율(27.1%)를 반영하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잠재적 이용수요(F) 2,306명을 추정하였음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잠재적 이용수요 규모는 2,306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유사돌봄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돌봄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용자의 지역돌봄서비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는 측면에서 발달인구 대비 지역돌봄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부터 신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표 5-3 참고). 해당 자치구의 실수요에 따라 경기도 사례처럼 30인 이상 시설도 검토될 수 있음

▌표 5-2▐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수요 추정

(단위: 명)

구분	인원	비고
(A) 서울시 15~64세 발달장애 인구	28,047	2023년 12월말 기준
(B)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추정 수*	8,737	15세 이상 발달장애인(29,419명) × 0.297
(C) 타 시설 이용자 수	9,077	
(-)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정원	531	서울시 이외 소재지 제외(2023.12.)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주 장애: 지적)	303	서울시 이외 소재지 제외(2023.12.) (주 장애 :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 정원	435	서울시 소재(2024.1.). 장애유형 구분 안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정원	683	서울시 소재(2024.1.). 장애유형 구분 안함
(-) 장애인복지관 이용 추정 수**	3,707	15세 이상 발달장애인(29,419명) × 0.126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용 수	1,587	2022년 7월 기준
(-) 유사 장애인주간돌봄서비스	1,83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023.12.누적)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2023.12.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2024.지원규모)
(D) 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 정원	1,722	2023년 12월 기준 (현 이용률 : 15~64세 발달장애 인구의 6.14%)
(E) 현 장애인복지시설 미이용 발달장애 인구 추정	8,511	(A)-(B)-(C)-(D)
(F)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잠재적 이용수요 규모	2,306	(E) × 0.271(잠재적 이용수요 비율***)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년 발달장애인 일과삶실태조사」. 발달장애인 3천 가구 대상 조사. p165. 241.

*2023년 6월 기준,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비율 29.7%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비율 12.6%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잠재적 이용수요 비율 27.1% = 이용 희망률 33.2% - 현 이용률 6.1%

보건복지부.「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경험 13.0%. 이용 희망 33.2%

표 5-3 서울시 자치구별 발달장애 인구 및 장애인주간돌봄시설 분포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발달장애 인구수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주간 활동	최중증 통합돌봄	평생교육 센터	장애인복지관**		A시설 이용비 기준 하위 20%
	15~64세	인구 순위	시설 수 (A)	이용인 규모	이용비* (%)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B)	일평균 이용인	
서울시	28,047	-	135	1,724	6.1	111	76	25	38	13,902	5
종로구	415	㉔	2	25	6.0	3	6	1	1	274	
중구	316	㉕	6	82	25.9	1	1	1	1	149	
용산구	516	㉓	4	47	9.1	5	4	1	1	250	
성동구	722	㉒	4	49	6.8	4	3	1	1	652	
광진구	834	⑲	4	53	6.4	8	3	1	0	0	
동대문구	902	⑯	1	10	1.1	3	2	1	2	579	③
중랑구	1,340	⑧	1	12	0.9	6	3	1	1	516	②
성북구	1,140	⑪	0	0	0.0	9	2	1	1	174	①
강북구	1,162	⑫	6	70	6.0	2	1	1	1	567	
도봉구	1,099	⑬	6	92	8.4	1	2	1	1	224	
노원구	2,263	①	16	233	10.3	11	3	1	3	1,159	
은평구	1,786	④	8	98	5.5	8	3	1	2	666	
서대문구	797	⑲	3	45	5.6	8	4	1	1	470	
마포구	881	⑰	5	63	7.2	5	4	1	1	179	
양천구	1,207	⑩	6	75	6.2	1	4	1	1	521	
강서구	2,001	②	10	124	6.2	6	4	1	2	453	
구로구	1,280	⑨	5	56	4.4	3	1	1	2	772	⑤
금천구	787	㉑	3	46	5.8	1	2	1	1	318	
영등포구	902	⑮	5	71	7.9	2	4	1	1	447	
동작구	919	⑭	4	48	5.2	2	6	1	2	771	
관악구	1,367	⑦	5	64	4.7	2	3	1	1	349	
서초구	775	⑱	8	91	11.7	6	2	1	2	749	
강남구	1,240	⑥	9	111	9.0	6	4	1	5	1,979	
송파구	1,819	③	9	94	5.2	5	2	1	1	198	
강동구	1,577	⑤	5	65	4.1	3	3	1	3	1,486	④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 서울시 내부자료(2024.2.)

*15~64세 발달장애 인구 대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 비율(시설 이용 정원/발달장애 인구*100)
이용 정원은 2024.4.기준(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종합/발달장애인복지관수(지체, 청각언어, 시각, 뇌성마비 대상 장애인복지관 제외)

***주간활동/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시설 수 : 2025.11.현재 서비스 시설 수(https://www.broso.or.kr/seoul)

주간이용시설의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인력 배치기준 개선

○ 서울시 전체 주간이용시설 중 약 85%는 발달장애인 다수시설로 지정되어 사회재활교사가 추가지원되지만, 복지부 인력 배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은 거의 1:1 지원이 필요하나 현 인력 배치기준으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임

▌표 5-4▐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력 배치기준 비교(복지부 vs. 서울시)

복지부	서울시
- 기본 이용인 10명 이상 기준 - 시설장 1명 - 사회재활교사 1명(이용자 3인 당) - 사무원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 기능직 1인	- 기본 이용인 10명 이상 기준 - 이용인 3명당 사회재활교사 1인 추가 배치(최대 2명) - 운전원·조리원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지원(계약직, 생활임금기준, 1일 최대 6시간) [본조사 결과] - 이용자: 평균 이용 규모 12.3명, 현원 11.6명 - 사회재활교사 배치(평균 4명) 대비 돌봄 수준 1:3 - 사무원 및 기능직 0.2명 ※서울시 지원 기능직은 사회재활교사로 대체할 수 있어 대부분 돌봄 인력 채용 - 추가 긴요 인력: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 2019년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이 가장 높은(44.3%) 이유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신변처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임. 정부에서 서비스제공기관 수가를 150% 지원하는 서비스(1:1 집중서비스)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직원관리 비용 및 추가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경기복지재단, 2023)

○ 최중증 통합돌봄에 장애인 돌봄 가족이 갖는 부정적 인식(최중증이라는 분류 라벨)으로 인해 이용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돌봄서비스 제공 기피 대상과 유사 서비스 이용 기피자에게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의 집중돌봄 지원 이용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을 유사돌봄서비스 수준(1:2 또는 최중증 1:1)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부가 업무(행정, 차량 운행, 중식 준비 등)를 축소하여 돌봄에 투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무원과 기능직의 배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현행 복지부 기준에서 사무원과 기능직 배치가 제시되었으나 지자체 의지에 좌우되고 기능직이 배치되긴 하지만 부족한 돌봄 인력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하여 사무 행정업무는 여전히 사회재활교사의 몫으로 남겨져 있음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주 이용자는 발달장애인이지만 뇌병변 7개소, 시각 5개소, 청각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발달·중복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뇌병변, 시각, 청각 주간이용시설은 시설장 포함 3명의 인력이 지원되는데 특히 뇌병변 시설의 경우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 비중이 70% 이상 이므로 사회재활교사의 집중적 돌봄 지원이 요구됨. 본조사 결과에서도 뇌병변 시설이 1.4명 정도의 사회복지사 추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력 지원기준의 개선이 절실함

○ 주간이용시설의 다양한 이용자 특성 및 이용자 욕구 증대, 유사돌봄서비스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면 현행 장애인이용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주간이용시설 운영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될 경우 복지부의 개선 기준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권고사항으로만 인식되기 쉬워 이행 장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대체인력 지원기준 개선

○ 2017년부터 서울시는 종사자처우개선 중 하나로 전체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1,927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 배우자 출산휴가, 퇴직준비휴가 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시비 100%)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등과 같이 소규모 시설은 상기 언급한 처우개선의 대체인력 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개인 연차, 교육 등)에 추가적 지원을 받고 있음

○ 현행 주간이용시설별 최대 5일인데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로 지정되면 1~3명의 추가인력이 지원되기에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조사 결과 시설에서는 적어도 16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현실과 괴리가 큼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특성과 거의 동일한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종사자별 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주간이용시설도 최소한 단기거주시설 기준으로 변경하여 유사시설 간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주간이용시설에서 대체인력 채용 시 겪는 어려움은 '해당 기간만 일할 사람 구하기' 및 '해당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사람 구하기' 등이며 개선안으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인력풀 운영 및 파견' 및 '파견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센터 운영 필요' 등 언급하였음
  - 이에 대체인력 모집을 시설의 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서울시 장애인그룹홈지원센터'나 종사자처우개선 대체인력사업 수행기관(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국비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수행)처럼 대체인력 모집과 파견·교육·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관(예를 들어 관련 협회)이 필요함
  - 주간이용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을 합한 연간 대체인력 투입일은 3,252일(연간 종사자별 3일 적용) 정도 추계되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수준(2024년 기준 파견 실적 3,781일)과 비슷함. 주간이용시설의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려면 단기거주시설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개선

- 매년 상승하는 물가와 이용자의 서비스 눈높이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운영비와 사업비 문제를 이용료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움
- 주간이용시설 서비스와 유사한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료가 무료(중식비 제외)이기 때문에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용자의 경제적 환경(의료비 지출 증가, 부모 경제활동 어려움, 기초생활수급 등) 등으로 인해 주간이용시설의 이용료 인상은 한계가 있음. 2006년 이용료 수준과 현재와 비교해 보면(표 5-5 참고), 매년 증액된 이용료는 물가 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 수준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음
- 시설별 이용료, 무료인원 규모와 감면비율 편차도 크기 때문에 표준 이용료 기준이 필요함. 또한 정원 대비 무료인원과 일정 감면비율 기준에 따른 서울시 추가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표 5-5▐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비 및 이용료 지원기준 비교(복지부 vs. 서울시)

구분	복지부	서울시
연간 운영비	- 기본 16,800,000원 - 추가 : 15인 초과 1인당 1,680,000원	- 기본 10,700,000원 - 추가 : 중증다수 4,000,000원 / 뇌병변 전담 2,000,000원
이용료	- 시설 운영위원회 책정 - 수급자 및 차상위 일부 또는 무료 - 제반비용(인건비, 운영비 등) 사용 가능	[본조사 결과] - 기본 이용료 평균 50,000원~300,000원+중식비 67,000원+(차량이용료 43,000원) ※시각 평균 86,000원, 청각 평균 30,000원 ※2006년 기준 평균 150,000원~250,000원 - 무료인원 0명~최대 7명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 감면비율 평균 15%~60%

○ 주간이용시설 운영비의 45% 이상이 시설의 사업수익과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사업비는 이보다 높은 약 55%로 나타났음(표 5-6 참고). 특히 시각과 청각장애인 전담 주간이용시설의 이용료가 다른 주간이용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아 운영비와 사업비는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에 상당한 부분을(40~50% 이상) 의존하고 있음.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에 의존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안정적 시설 운영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한계가 있음

- 이에 안정적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이용료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의 주간이용시설 선택권 침해 해소 및 유사돌봄서비스 이용자와의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이용료 면제는 피할 수 없는 정책과제임. 이에 복지부를 비롯한 서울시 및 자치구 간의 협의가 요구됨

○ 본조사 결과 주간이용시설의 전체 세입 중 서울시 경상보조금은 약 71%, 관할 자치구 보조금은 5% 정도로 나타났고 자치구 보조금은 서울시 경상보조금의 약 7% 수준임. 그리고 주간이용시설 관리운영비의 약 7%는 관할 자치구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5% 정도임(표 5-6 참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역돌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자치구의 책임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함.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논의를 통해 자치구의 운영비 분담제(예를 들어 5개년 계획 수립 아래 1차년도 최소 10% 적용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6▐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주요세입재원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원, %)

구분			운영비	사업비
전체	총액		**21,131,564**	**36,628,123**
	주요 세입 재원	서울시 경상보조금	7,937,470(37.6%)	10,231,489(27.9%)
		관할 자치구 보조금	1,613,721(7.6%)	1,955,447(5.3%)
		사업수익	7,283,392(34.5%)	15,187,221(41.5%)
		법인전입금+후원금	2,497,006(11.8%)	4,992,200(13.6%)
발달장애인 다수시설 (중복 포함)	총액		21,873,235	38,287,861
	주요 세입 재원	서울시 경상보조금	8,030,273(37%)	11,014,087(29%)
		관할 자치구 보조금	4,728,555(22%)	4,798,695(13%)
		사업수익	10,093,863(46%)	19,075,284(50%)
		법인전입금+후원금	4,591,058(21%)	7,401,308(19%)
뇌병변장애인 전담시설	총액		19,254,747	31,379,275
	주요 세입 재원	서울시 경상보조금	15,226,297(79%)	14,988,893(48%)
		관할 자치구 보조금	1,126,077(6%)	1,871,899(6%)
		사업수익	4,975,164(26%)	14,785,199(47%)
		법인전입금+후원금	680,656(3%)	4,687,036(15%)
시각장애인 전담시설	총액		13,599,930	22,418,478
	주요 세입 재원	서울시 경상보조금	6,060,094(45%)	8,958,600(40%)
		관할 자치구 보조금	-	3,213,000(14%)
		사업수익	2,745,965(20%)	7,194,369(32%)
		법인전입금+후원금	7,707,858(56%)	11,253,338(50%)
청각장애인 전담시설	총액		11,148,696	12,919,954
	주요 세입 재원	서울시 경상보조금	7,126,540(64%)	4,393,350(34%)
		관할 자치구 보조금	-	-
		사업수익	508,555(5%)	1,988,390 (15%)
		법인전입금+후원금	4,514,791(40%)	5,400,964(42%)

기본설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편 및 공간 확보 지원

- 주간이용시설 면적 기준은 유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확연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 쾌적한 시설환경에 대한 이용자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용자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시설 설비 마련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임
- 바우처사업인 유사돌봄서비스는 1인 당 면적은 주간이용시설 보다 작은 수준이나 활동공간만 고려하였기 때문이고 실 연면적은 주간이용시설보다 큼.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서울시 평생교육센터는 1인 당 16.6m^2, 서울형 노인데이케어센터는 18.0m^2로써 주

간이용시설(본조사 결과 서울시는 기본 이용인 1인당 13.7m^{2}로 복지부 기준 상회) 환경의 열악함이 명확하게 드러났음

- 복지관 병설시설은 소속기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공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단독 주간이용시설은 대부분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 설비 환경에서 이용자, 직원, 보조인력(50+ 보람일자리, 사회복무요원 등)이 함께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 이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가 중고령화 단계에 진입하여 돌봄통합지원에 봉착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설공간 확보 기준 미달로 돌봄통합지원사업 참여에 원천적 배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이에 주간이용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연면적으로 설정할 경우 노인데이케어센터(1인 당 18.0m^2) 수준, 활동 공간 기준일 경우 1인당 8.3m^{2}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표 5-7▐ 유사 지역돌봄서비스간 시설면적 비교

구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시설 면적	- 1개 시설당 이용 장애인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 건축물 연면적 : 최소 66㎡ 이상 (개인당 9.9㎡ 권장) - 기본설비 : 거실, 조리실, 의무실, 사무실, 집단 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이용에 필요한 설비 [조사 결과] - 시설연면적 이용자 1인 정원기준 13.7㎡, (서비스 전용 공간 미분리) - 이용자 전용 휴게실 약 12% 보유, 직원 전용휴게실 8.3%, 사무실 전용 운영 65%	- 센터당 이용자 30명 이상(수업실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준 - 시설 총면적 300㎡ 이상 (서울시는 500㎡ 이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 (시설면적 300㎡, 500㎡에 따라 다름)	- 활동공간 : 이용자 1명당 3.3㎡ 이상 전용 공간 필요 (전용 공간 면적에서 3.3㎡를 나눈 인원수가 정원) ⇒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 (지자체 신고 필요)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함	- 주간그룹형 활동공간 : 이용자 2명당 최소 16.5㎡(1인 추가 시 6.6㎡ 추가) - 주간개별형 활동공간 : 이용자 4명당 최소 33㎡ - 24시간개별형 활동공간 : 이용자 4명당 최소 33㎡(1인 추가 시 9.9㎡ 추가) *공통사항 :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은 분리하여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 심리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10명 이상 - 연면적 90㎡ 이상,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 6.6㎡ 이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면적 기준 : 5인 90㎡, 20인 182.4㎡

- 주간이용시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직원 휴게실, 프로그램실, 개별활동실, 심리안정실, 이용자 휴게실이므로 사무공간과 분리된 필수 기본설비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 안내 시설공간 배치기준 명시: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함

- 필수기본설비 마련 및 최소 시설 설치 면적 충족을 위한 임대료 지원 또는 서울시 및 자치구 유휴 공간 무상임대 우선권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선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고 중고령화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중고령 및 노화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교육, 이용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종사자의 교육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교육 수행과는 큰 괴리가 있음
- 이에 법정 필수 교육 이외 강화가 필요한 교육에 대한 이수 시간 설정과 종사자 유형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함.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 지역돌봄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운영 중임
  - 이런 교육과정은 복지부 주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사업에만 해당되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는 교육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 교육과정은 주간이용시설도 매우 목말라하는 교육으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김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교육 참여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중재 및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보장은 대체인력 지원 개선이 전제되어야 용이하므로 서울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8▐ 발달장애인 지원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주체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상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예비)제공인력 - 긴급돌봄센터,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된 종사자 - 그 외 승인받은 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재직자 ※2025년부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 보수과정 운영
내용	- 공통필수과목(3과목), 주간활동서비스 분야별 과목(7과목)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원, 발달장애인 건강, 발달장애인 건강,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 등	- 기초교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해, 도전행동이해, 낮활동 지원, 주거지원전략 등 - 심화교육 : 장애인지원, 의사소통, 공간구성, 종사자소진예방 등	- 온라인과정 : 발달장애인 이해(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원, 가족 이해, 응급상황 대처 등), 종사자 번아웃 탈출 등 - 오프라인과정 :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과정, 도전적 행동 지원과정 등
방법	이러닝센터_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집합교육)	- 온라인(무료) - 오프라인 교육(교육 무료, 숙박비 유료) 연 6회, 회기당 30명 / 2일
비고	유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이용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이용제한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 본조사 결과 이직 및 이직 고려의 주요 사유는 번아웃과 열악한 처우가 압도적임. 처우개선은 3년 주기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기에 본고에서는 소진 예방 지원 중심으로 제안함
- 본조사 결과에서도 종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데 실행되지 못하는 교육이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나타났을 만큼 종사자 소진이 현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에게는 핵심 화두임
- 2023년도 전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은 16.0%이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사자의 이용 선택권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 〉

[마음건강 지원사업] 2022년부터 시행
- ㅇ 지원 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
- ㅇ 지원내용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의 폭언 및 폭력, 사망, 직장 내 스트레스로 회복이 필요한 종사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 ㅇ 지원기준 : 1인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심리상담 10회기 기준)
- ㅇ 지원절차 : 신청 ➡ 초기상담 및 선정 ➡ 상담의료기관 선택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
  - 협약기관 이용 또는 희망하는 상담기관 및 정신건강의료기관 선택 가능
  - 필요시 심리 검사비, 약제비(원내처방일 경우만) 지원
  - 지원한도 초과액은 종사자가 부담, 한도액 미달액은 실제 검진비용으로 지원
-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25년 공모 선정)
- ㅇ 소요예산 : 200,000,000원 ('24년과 동일)

ㅇ 소진 관련 교육의 종사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인재개발원 사례처럼 매년 여러 회 대면교육과정(2일~3일)을 개설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5-9▐ 서울시 마음건강 관련 교육과정

주체	서울복지교육센터(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대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지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시, 자치구, 출연기관
내용	정신건강 이해(조현병, 중독,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과정(인지행동치료) 등	건강증진을 통한 소진예방과정, 자기이해를 통한 소진 예방과정 등	-	- (온라인):e번아웃 stop, e감정노동의 이해, e직무스트레스의 진단과 관리 등 - (대면교육):스트레스 관리, 힐링테라피, 운동처방 등
비고	종사자 심리지원이 아닌 이용자 정신건강 이해 과정	공공인재 아카데미 특화 과정	2021년도 번아웃 관리('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도 보호막이 필요하다') 온라인 과정 이후 폐지	대면교육 14시간 과정

ㅇ 이 외에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동료들 간의 화합과 교류를 통한 재충전인 만큼 서울시 종사자 워크숍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공모사업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사업 선정을 위한 시간적·행정적·인적 소요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이 담보되지 않아 복지현장의 불만이 존재함
- 이에 종사자 워크숍처럼 적은 예산으로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방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사고 대비 보험 지원

- 2025년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신설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보장하고자 함.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보험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동일한 서비스 대상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돌봄 위험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가입 대상이 된다하여도 전반적으로 서울시 보조금과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 보험료에 대한 시설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음. 이에 현실적인 물가 수준과 매우 제한적인 이용료 증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표 5-10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구분	세부 내용
목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가입 대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한 4가지 발달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②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③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 방과후활동) ④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업무
보장내용	- 배상책임(대인, 대물, 음식물) - 비용손해(형사 방어비용, 형사 벌금) - 발달장애인 상해(발달장애인 상해 치료비) - 종사자 상해(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 입원일당비, 상해 골절진단비, 상해 화상진단비,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상해 수술지원비, 상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 의료지원비
가입 공제료	-1인당 150,000원(연간)

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

- 다른 유사 돌봄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나 경험자는 주간이용시설 장기이용자만큼 향후 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의향이 높지 않음. 이는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과거 부정적 이미지 고착, 정보 부재가 주요 원인이므로 특수학교 및 학급, 장애인 부모(보호자)가 이용하는 정보 플랫폼,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누림' 시설 정보제공 사례처럼 앱을 통한 주간이용시설 정보(운영주체, 장애유형, 주소, 연락처, 종사자 현황, 이용자 현황, 정원/현원, 대기, 이용금액, 이용기간, 시설 소개 및 사진, 프로그램, 식단표 등)를 투명하게 개방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 누림, 홈페이지(https://ggnuriminfo.or.kr/home/kor/main.do. 2025.10.10.)

2 제언

보건복지부 역할

-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2025년부터 연령 제한을 해제하여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만큼 장애인주간이용시설도 중고령 이용자의 돌봄통합지원(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설로 운영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지역돌봄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정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어 이분법적으로 지역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이에 체계적·효율적 지역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중앙환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주간이용시설의 중앙환원은 지역돌봄서비스의 총 공급량 관리가 가능하여 지역 서비스 불균형과 이용제한 및 누락 등과 같은 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중앙환원이 단기간에 실행되기 어려우므로 복지부의 장애인 지역돌봄 대표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통합돌봄사업에 서울시비 50%가 보조되는 것처럼 국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거의 30년 가까이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이고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복지부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시설 이용자가 매월 3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논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왜냐하면 주간이용시설과 유사 서비스 간의 이용료 면제 형평성 문제, 이용료로 인한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선택권 침해, 국가 지역돌봄사업에 시비 지원과 같은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임
- 이에 주간이용시설 중앙환원 이전에 상기(上記)한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이용료를 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국비 50%, 시비&구비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역할

-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

여 전국적 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행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기준을 뛰어 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40+ 주간이용시설 운영은 현행 주간이용시설 운영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운영되는 돌봄 모델인 만큼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면밀한 운영 지원기준(인력 배치 및 운영비 지원기준, 시설 설비 설치 기준, 운영 형태 및 예산 분담 방법, 40+ 주간이용시설 운영지침 마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주간이용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자치구 분담 비율의 기본 방향(예를 들어 매년 10% 씩 분담, 5년 내 50% 등)을 설정하되 단순 비율만 적용하기 보다는 시설 개소, 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가중치도 고려하여 자치구의 불만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부의 장애인 지역돌봄서비스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주간이용시설 확충은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 추계한 주간이용시설의 잠재적 이용수요는 향후 복지부의 지역돌봄서비스 공급량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주간이용시설의 실 대기인원 파악 및 유사 서비스 공급 확대, 유사 서비스 이용 전환 의향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해 시설확충의 우선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행정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주간이용시설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역할

- 약 30년 전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의 지역돌봄을 담당한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성장하여 오다가 최근 5년 유사 지역돌봄서비스 공급이 확충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변하는 장애인 지역돌봄서비스 정책으로 인해 주간이용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종사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 대응에 대한 연대도 매우 중요함
- 다양한 지역돌봄서비스 확대 공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이용자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임. 오랜 세월 운영하였기 때문에 주간이용시설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시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결국 이용자의 평가가 서비스 이용 선택에 주요 요인이므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지금까지 장애인의 지역돌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앞으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 위해서는 현행 법적 기준을 개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시설은 연대하여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7.9.).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한다'.
보건복지부(2023.3.13.), 지역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토론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2.22.). '장애인의 건강,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2023.1.).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2025.1.).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2023.2.).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
보건복지부(2005~2012년 각 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3~2025년 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0~2024년 각 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24.12.). 「2024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길종원·박덕규·이상정(200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현황분석. p121.
김미옥·김고은·이은실·정은혜(2023).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입 연구. 보건복지부.
김성중·심미승(20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Gilbert & Terrell의 정책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p20.
박종오(1997). 장애인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 모형개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연구. p70.
이병화 외(2020).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 조사. 경기복지재단.
이진승(2014). 중년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복지학. Vol.25. p142.
전지혜 외(202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제공기준 및 특화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정희경(2018). 일본의 중증방문개호(重度訪問介護):지적장애인 '지켜보기'의 사회화.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여름호. Vol.5, pp31~41.

한연주·정보라(202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현명이(2022).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황주희·김용득·김용진·박혜미·오다은(2017).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2024). 2024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 안내.
서울시(2025.2.). 2025년 서울시 복지실 주요업무보고.
서울시 내부자료(2023.2.). 장애인복지정책과 업무바인더.
서울시 내부자료(2023.2.).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바인더.
서울시 내부자료(2024.2.). 장애인복지정책과 업무바인더.
서울시 내부자료(2024.2.).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바인더.
서울시 내부자료(2025.1.). 장애인복지정책과 업무바인더.
서울시 내부자료(2025.1.).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바인더.
서울시 복지실(2025.1.15.).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서울시복지재단(202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전방안연구.
서울시복지재단(2024). 「2024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2023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2019).「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2024).「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국외문헌]

OCSA(2025). 2025 OCSA Pre-budget Submission. 'The Care That's Needed – The Care That's Wante'.
原田 将寿(2018). 障害者の福祉的就労・日中活動サービスの実態把握及び質の向上に関す る調査研究 .
独立行政法人 国立重度知的障害者総合施設 のぞみの園(2019).「生活介護事業所 就労継続支援B型事業所 実践事例集」.

[온라인]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검색일 2025.4.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4.2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평생배움세상

https://www.nise.go.kr/lifelong/main.do (검색일 2025.5.22.)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4.4.9.)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 누림.

https://ggnuriminfo.or.kr/home/kor/main.do (검색일 2025.10.10.)

서울복지교육센터(서울시복지재단).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sharemain.do (검색일 2025.11.5.)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https://www.welfarekorea.com/main.asp (검색일 2025.11.5.)

서울시인재개발원.

https://hrd.seoul.go.kr (검색일 2025.11.5.)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 (검색일 2025.4.9.)

서울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seoul (검색일 2025.11.2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index.do (검색일 2025.11.2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https://www.kwcu.or.kr (검색일 2025.11.25.)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mainPage.do (검색일 2025.11.21.)

Achieve Together.

https://www.achievetogether.co.uk/our-services/disability-day-centres (검색일 2025.5.8.)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and-social-car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are-act-2014-part-1-factsheets/care-act-factshee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ilding-the-right-support-for-people-with-a-learning-disability-and-autistic-people/building-the-right-support-action-plan (검색일 2025.5.12.)

Life Support HAL.
http://life-support-hal.net (검색일 2025.5.7.)

NADSA(National Adult Day Services Association).
https://www.nadsa.org/about/about-adult-day-services (검색일 2025.5.7.)

OCSA(Ontario Community Support Association).
https://www.ocsa.on.ca (검색일 2025.5.12.)

Ontario Health atHome.
https://www.pas.gov.on.ca/Home/Agency/828 (검색일 2025.5.13.)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html (검색일 2025.5.12.)

United Nations.
https://social.desa.un.org/issues/disability/crpd/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articles (검색일 2025.4.30.)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ttps://www.hhs.gov (검색일 2025.5.14.)

VON Canada(Victorian Order of Nurses for Canada).
https://von.ca/en/von-care/adult-day-program (검색일 2025.5.12.)

Work_for_life.
https://www.workforlife.ca (검색일 2025.5.12.)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index.html (검색일 2025.5.7.)
https://www.mhlw.go.jp/content/001270358.pdf (검색일 2025.5.7.)
https://www.mhlw.go.jp/content/12401000/000684672.pdf (검색일 2025.5.9.)
https://www.mhlw.go.jp/content/001270358.pdf (검색일 2025.5.8.)
https://www.mhlw.go.jp/content/12200000/001321736.pdf (검색일 2025.5.8.)
https://www.mhlw.go.jp/stf/newpage_57417.html (검색일 2025.5.8.)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hahukushi/kubun/index.html (검색일 2025.5.9.)

서울시복지재단-2025-24

서울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발 행 일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처 서울시복지재단
발 행 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 수 희
편 집 인 류 명 석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전 화 1670-5755
팩 스 02-6020-968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 ㈜케이에스센세이션
I S B N 978-89-6298-971-7 (95330)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2025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우 04147)
TEL 1670-5755 **FAX** 02-6020-9680
www.welfare.seoul.kr

비매품/무료
95330
9 788962 989717
ISBN 978-89-6298-971-7 (PDF)